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3년 2월호
공권 386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6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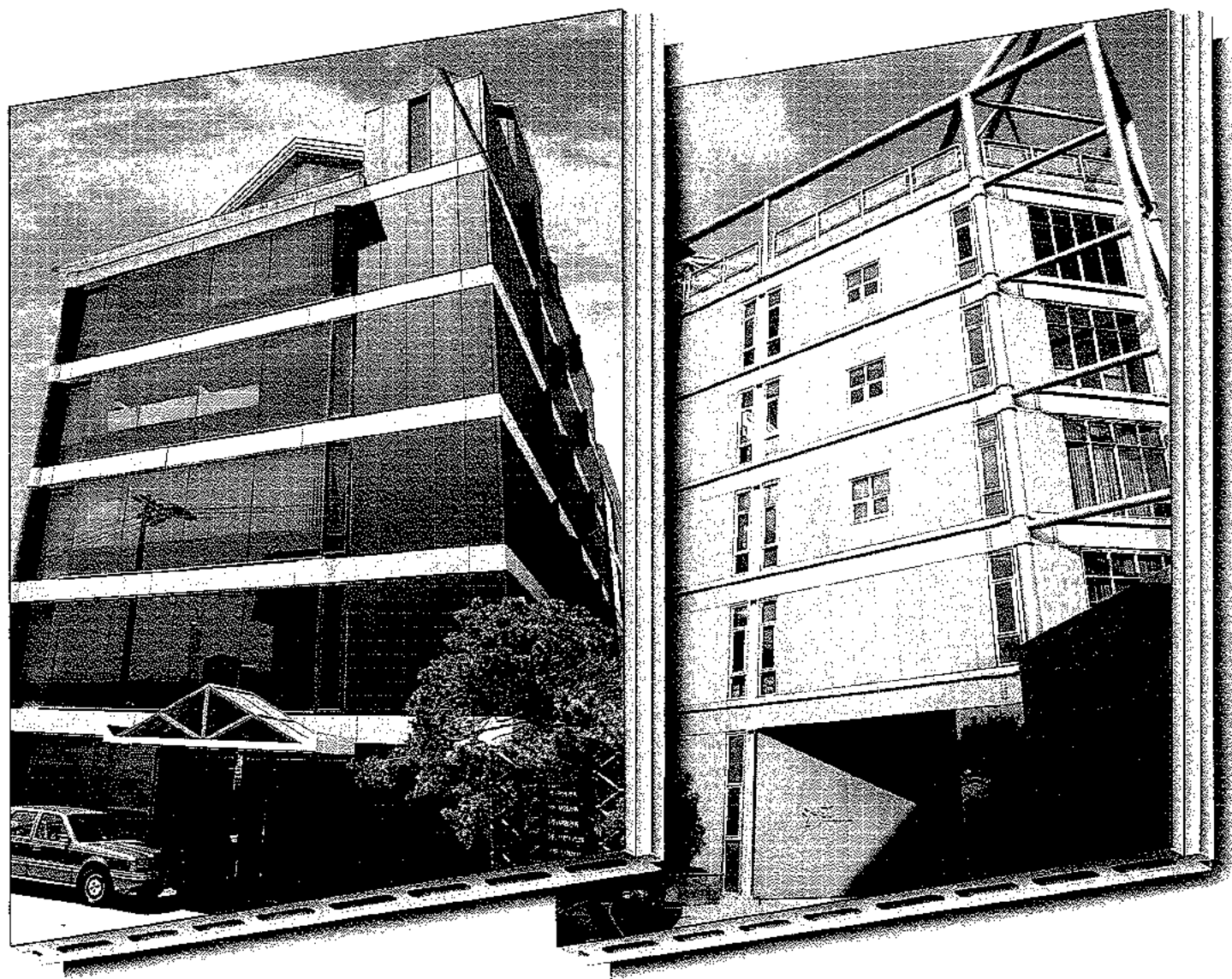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February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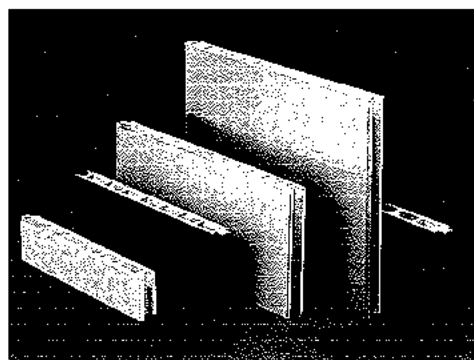


2

FEBRUARY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²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바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정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 | | |
|------------|-----------------|-------------|
| ◎ 세종문화회관 | ◎ 유관순기념관 | ◎ 인양문화예술회관 |
| ◎ 국립극장 | ◎ 충현교회 본당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 웨라튼워커히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계몽센터 예술극장 |
| ◎ 롯데호텔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육군박물관 |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대전시민회관 |
| ◎ 이화여대강당 |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 부곡하와이 등 |

주요생산품목

- | | |
|-------------------------|------------------------|
| ● STAGE & STUDIO | — CONFERENCE ROOM |
| BASIC EQUIPMENT SYSTEMS | — SCHOOL STAGE |
| — THEATRE STAGE | ● DESIGN & ENGINEERING |
| — TELEVISION STUDIO | ● MANUFACTURE |
| — OPERA HOUSE | ● TURN-KEY PROJECTS |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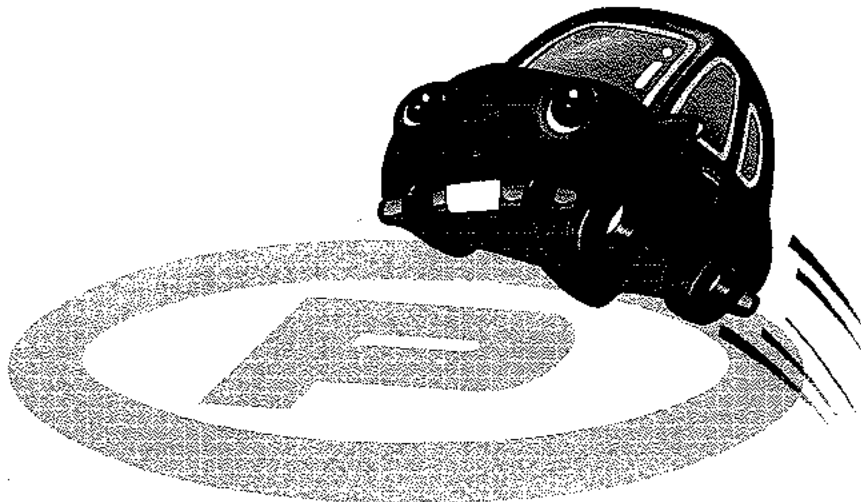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특별시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 209-1 松麻里 山 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장장치와 핸드체인의 강착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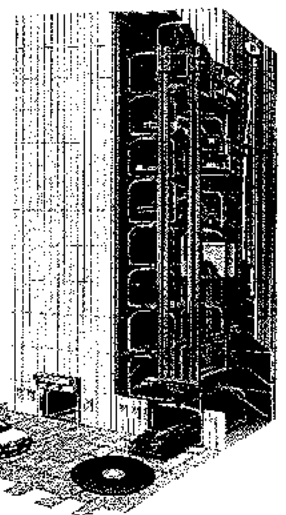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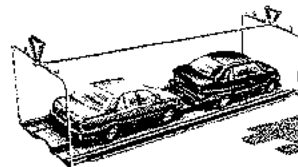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순환입출고방식 대형체인에 차량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배열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제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 엘리베이터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량 실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량 입출고 하는 시스템 (형식, 중식)
- 지하 다중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

삼성중공업

국내 파넬업계 최초 내화구조 지정 고시획득!

INSU GLASSWOOL PANEL

‘파넬이 내화구조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인슈그라스울파넬이 그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화구조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의 내화구조성 시험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실시한 내화구조성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파넬이 내화구조성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화구조성을 가질 수 있는 파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내화구조체, 인슈그라스울파넬의 우수성

하나. 비교할 수 없는 불연성

내부 단열재로 KSF2271, BS476PART4의 관련규격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 인슈그라스울 파넬 — 그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불연성은 이미 내화구조로 지정 고시되어 불에 강한 단열파넬의 기준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완벽한 내화구조성능 인슈그라스울파넬.

둘. 완벽한 방수성과 단열성

누수를 유발하는 상부하중과 그로 인한 내부 단열재의 수축을 뛰어난 인장 및 압축강도로 방지, 완벽한 방수성능을 유지합니다. 특히 시공시 볼트부위를 CAP으로 마무리, 누수발생을 차단하여 누수현상에 의한 단열효과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0.029%의 낮은 열전도율의 인슈그라스울파넬 — 그 가볍고 균일한 조직의 내부 단열재는 효율적 에너지 활용 효과를 거두게 합니다.

셋.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 파넬은 내부 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결을 수직으로 성형, 기존제품보다 압축강도가 열배나 뛰어나며, 특히, 균일한 두께 유지로 타리현상을 완전히 방지합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부 설 기 술 연 구 소



본사/연구소 : 경기도 안성시 백지면 교항리 29-2
TEL : (02)745-0697, (0336)34-6880 FAX : (0336)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556-6891, FAX : 553-1651

ARRIS

ARRIS가 실현 합니다.



■ 작업 시간 단축

중산지구 아파트(1960세대, 780세대, 980세대)
설계작업시 수작업으로 3개월 걸리던
설계작업은 불과 20일 만에 끝냄.

■ 다양한 3rd PARTY 기능

상세도처리
일반상세, 실내배관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실가구상세, 외부시설상세등 총450개
한글 단/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강기능,
칸메우기 기능, 공간 채우기 기능등
구조일람표
철근(보, 슬라브, 거동)과 철골집합상세등

◎ 해인슈퍼하우징◎

인공 지능3S를 채택!
(Simple, Speed, Smart)

- 해인슈퍼하우징의 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구현
사용자의 단순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기능
창호도 자동작도기능
벽체 마감자동 작도기능
벽체 헤칭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제단 작도 기능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기능
MULTI-WINDOW 기능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완성된 한글(약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약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서통 시사업부 514-0386

• 대구전시장 : 421-2856 • (주)빌리언시스템 : 325-1623 •

귀사개선 어떤 건축자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시험기관인
거점민당검사소에서 보증됨.
한국화학시험검사소
TEL. 834-0034



여기 강화유리도아 H후램이 선택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후램이란 강화유리 도아 상·하부에 후램에 틈이
없어 방풍·방음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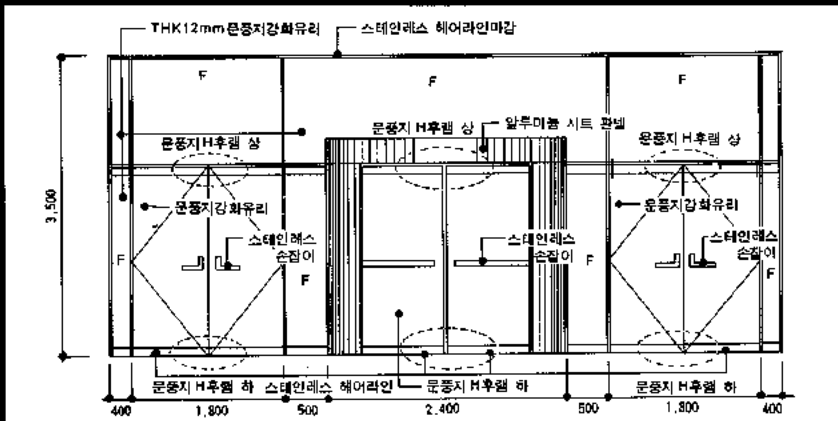


방풍 설치

- 냉·온방 냉차단
- 방진음
- 방수
- 수명반영구적

(예)

스테인레스 스틱 머닝이문 Fix



**“문풍지H후램
은 열손실
100% 보장”**

← B제품은 여기에서
열손실이 많이 되는
부분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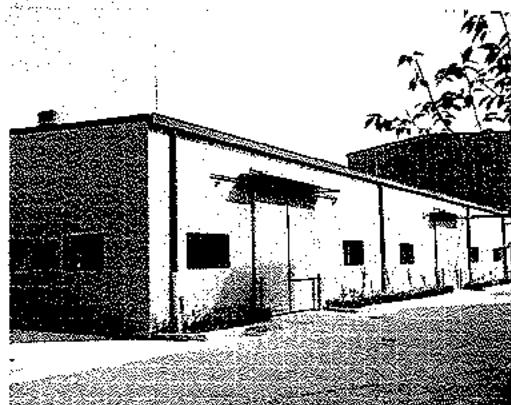


성 광 산업

본사:
부산시 북구 삼락동 342-18
TEL : (051) 302-1100 ~ 2
FAX : (051) 301-4 5 7 5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5-3
TEL : (02) 576-0 0 8 3
(02) 577-0 0 4 1
FAX : (02) 574-9 3 5 5

조립식패널의 품질은 중간단열재가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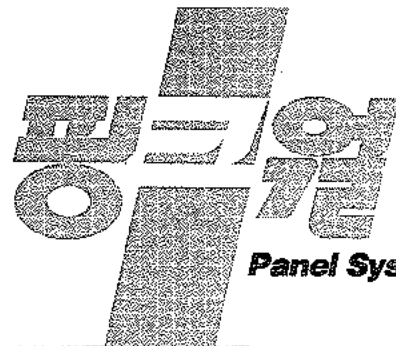


최고급 난연·방수단열재 아이소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그 명성에 걸맞는 품질로 조립식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터스트리(UCI)사의 진공 압출발포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인 아이소핑크를 중간 단열재로 사용하여 세계적 명성의 조립식패널 메이커인 네델란드 아이소월 인터내셔널 (ISOWALL INTERNATIONAL B.V.)사의 샌드위치 라미네이트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 ☐ 핑크월은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 핑크월은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 핑크월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 핑크월은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 핑크월은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Pane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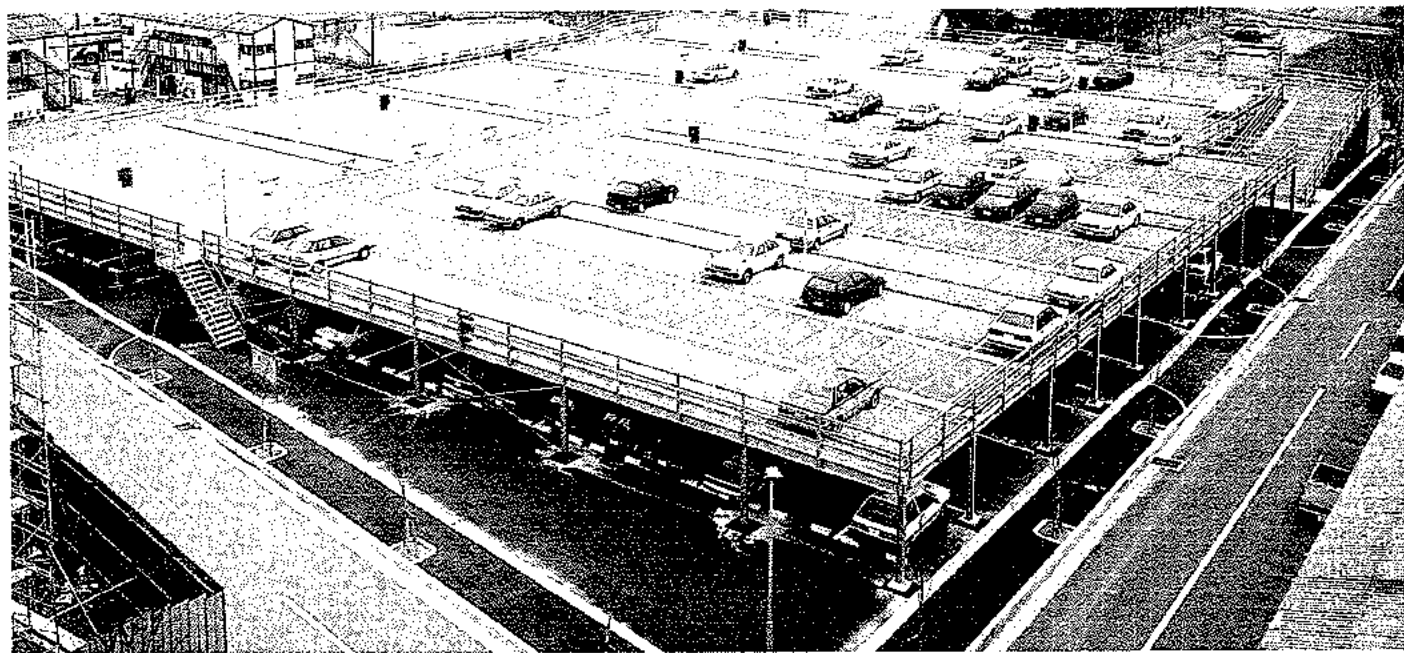


동국통상주식회사 (기전사업부)

(日本: 明興金屬株式會社 기술제휴)

자주식입체주차장

한정된 土地를 유효하게 활용할수 있는 1층 2단식 입체주차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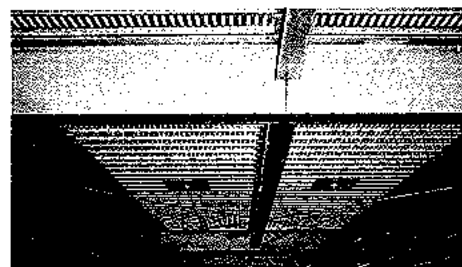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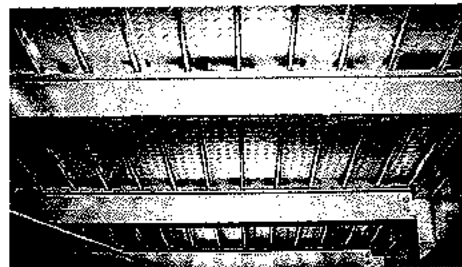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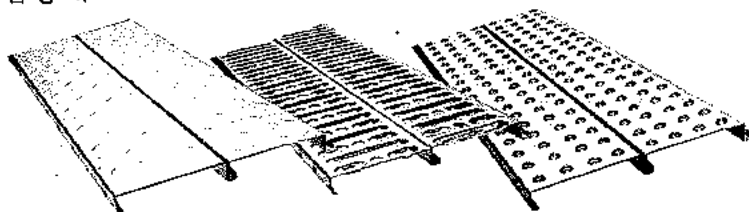
- 건설코스트 약 1/2로 최대의 효과
-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치 않음
- 용융도금으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미관이 수려함
- 주차가 간편하여 주차능력이 2 배이상
- 공작물로써 견폐울 산정시 제외됨
- 어떠한 지형도 설계가능
- 100% 안전 및 완벽한 A/S보장

적용

- 백화점 ● 병원 ● 철도역 ● 공항 ● 아파트
- 오피스텔 ● 음식점 ● 기타 교통유발 예상지역

인양업종목

- 자주식 주차장설계 · 시공 · A/S
- 주차장 바닥재 및 창고용 바닥재판매
- 건축용 DECK PLATE 판매
- 대형 H-BEAM 및 칼라C형강재
- 기타수입강재



동국통상기전사업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B/D 4층
 직통 (02)704-6507 ~ 9
 FAX. 719-4757

시거츠 내이자개 화석石 BIO-HAPPY STONE—

구려천하의 그 기승과 면세운 천국이 프린트 되어있다

세라믹제품 제조전문업체로 국가 중화학공업 발전에 이바지 해온지 30년—
'91년 우수KS업체대상수상에 이어 '92년 제 18회 전국 품질관리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계 수준의 각종 염기성 내화물, 국내 최초의 신전축자재
소결석 BIO-HAPPY STONE, 신소재 FINE CERAMICS를
고려청자를 빛는 장인정신으로 최고급 제품을 생산,
21세기 최고기업으로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2년 은탑산업훈장수상

BIO-HAPPY STONE의 3가지 자부심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9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워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9가지 색상 외 주문생산 가능)

2. 뛰어난 가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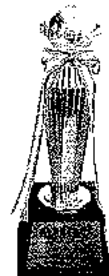
1,200℃이상에서 소결(燒結)한 불연체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선택의 다양함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600mm×25,
600×900mm×25로 언제 어디서나 건물 외관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을 창조합니다.



'92년 전국 품질관리
본원조 경진대회 은상수상



'91년 우수KS업체 대상수상



'91년 전국 품질관리
본원조 경진대회 동상수상

BIO-HAPPY STONE 직판장 및 전국 각 대리점

본사 : 건재사업부 TEL.(0562)91-2051~3 / 서울직판장 TEL.(02)516-7772~4 FAX. 516-7775 전국각대리점 / 서울지역 : 옥산산업 : TEL.(02)540-1637~9
FAX. 540-1640 / 대구지역 : 삼호특수 : TEL. (053) 756-9994, 742-1576 FAX. 751-5884, 우성상사 : TEL. (053) 562-5750~1 FAX. 562-5751 / 광주지역 :
성신금속(주) : TEL.(062) 524-7151~3 FAX. 524-7154, (주)청담건설 : TEL.(062) 222-1224, 285-9009 FAX. 285-1951 / 울산지역 : 삼화상사 :
(0522)43-7068~9 FAX. 43-7069 / 미산지역 : 중앙건설(0551)92-3335~6 FAX. 55-5700 / 포항지역 : 동양상사 : TEL.(0562)81-2220, 81-7482



새 韓國 • 새 環境 • 새 建築

'93 全國建築士大會

日 時/1993. 3. 18(木)~19(金)

韓國綜合展示場 (KOEX) 3層 大西洋館

建築人 여러분의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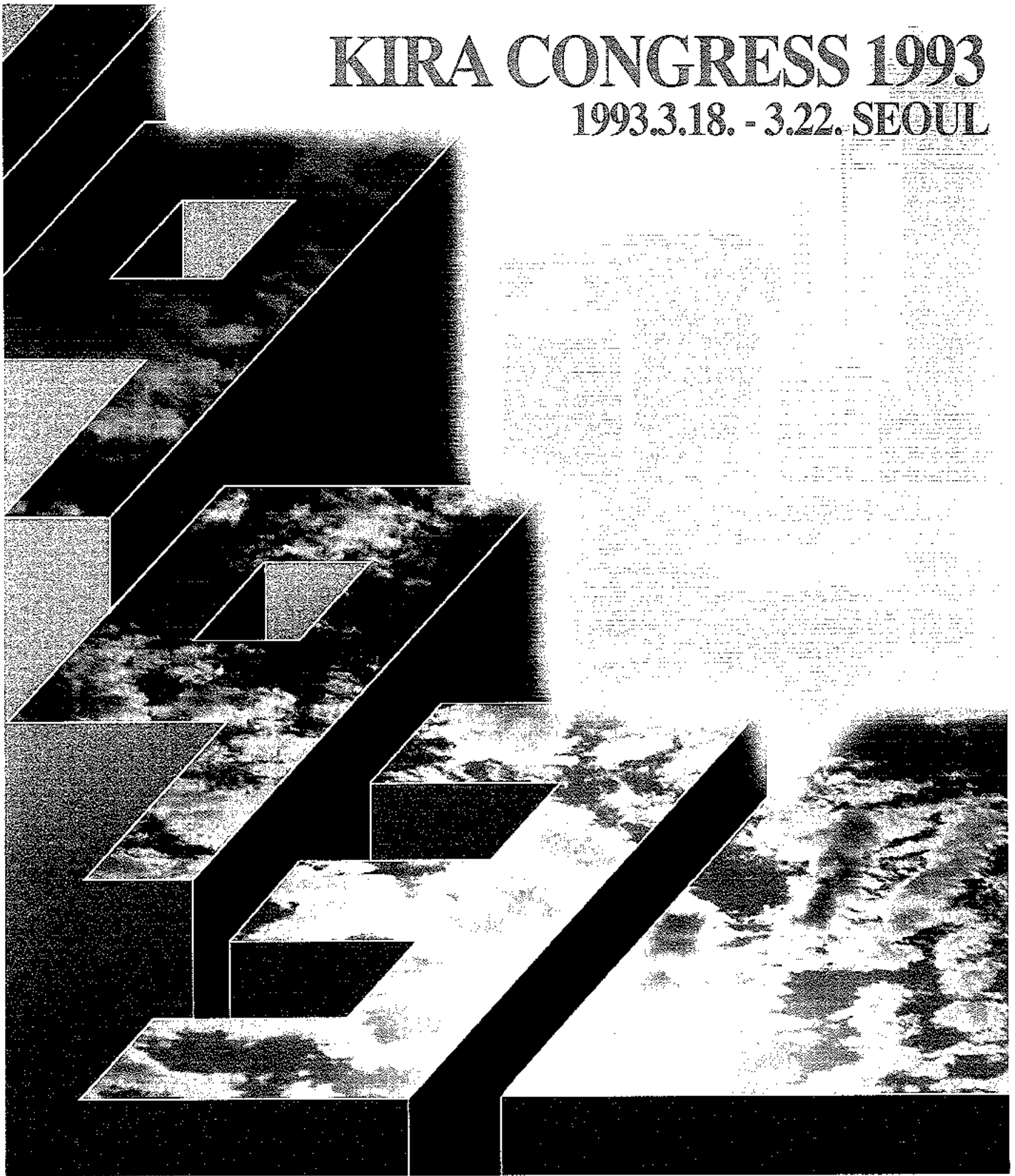
主要行事日程

日字	時間	内容	日字	時間	内容
3.18 (木)	14:30 ↓ 16:00	開會式	3.19 (金)	10:00 ↓ 11:00	特別講座 I
	16:00 ↓ 17:20	特別講演會		11:00 ↓ 12:30	討論會
	17:20 ↓ 18:00	夕食 場內整理		12:30 ↓ 14:00	中食
	18:00 ↓ 21:00	“建築士の 밤”		14:00 ↓ 15:00	特別講座 II
				15:00 ↓ 16:00	特別講座 III
				16:00	閉會式

大韓建築士協會

KIRA CONGRESS 1993

1993.3.18. - 3.22. SEOUL



'93 韓國建築大祭典

새 한국 · 새 환경 · 새 건축

기간 / 1993.3.18.(목) - 3.22.(월)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 전국건축사대회

3층 대서양관 1993.3.18. - 19.

■ 한국 건축전

1층 태평양관 1993.3.18. - 22.

■ 한국국제건축자재전

1층 태평양관 1993.3.18. - 22.

후원 / 건설부 · 상공부 · 대한건축학회 · 한국건축기협회 · 대한건설협회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대리점협회 · 대한주택공사 · 서울경제신문

차례/1993년 2월호 통권 제286호

칼럼	기술이 존중되는 사회 / 李光炯	16
읽으며 생각하며	시장경제면 장땡이나? / 咸仁善	18
회원작품	위례 상업고등학교 / 黃一仁	20
	기독교 방송국 / (주) 정림건축	24
	성 이나시오 관 / 夫大珍 + 金武鉉	30
	한국타이어 본사 사옥 / 金厚錫	34
	인크라인 II / 朱榮正	38
	서울대학교 부설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 / (주)서울건축	42
	광주 Y씨 주택 / 韓瑱洙	44
스캐치	군산 K볼링센터 / 全恩倍	46
계획작품	전북 농지개발조합 청사 / 盧亨來	48
비평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의 자푸라기 / 李廷根	50
전문건축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V) / 張順鏞	58
법률	건축법 질의·회신 / 건설부 건축계획과	64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 콘 페더슨 폭스의 건축세계	70
현상설계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영업본부 사옥 구리 시청사	76 86
기획연재	패러다임 (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6) / 吉成鎬	90
연구	지하공간 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 / 兪 洸	98
	한국설계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禹時庸	108
통계	1992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8
협회소식		120

發行人: 李永熙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昌浩

委員: 金文圭, 金仁喆, 吳元根, 金相景,
金倬孜, 姜建熙

編輯·取材 出版事業部 / 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Lee, Young-Hee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Park, Chang-Ho

Member: Kim, Moon-Kyu/Kim, In-Cheol
Oh, Won-Keun/Kim, Sang-Kyeong/Kim, Kyeong-Ja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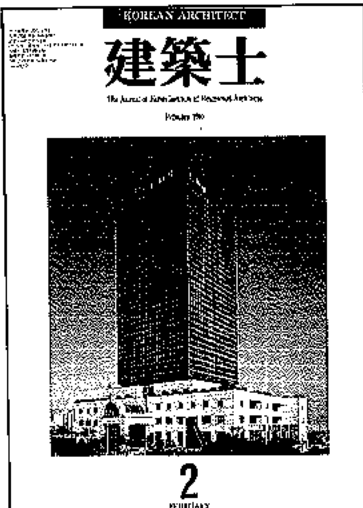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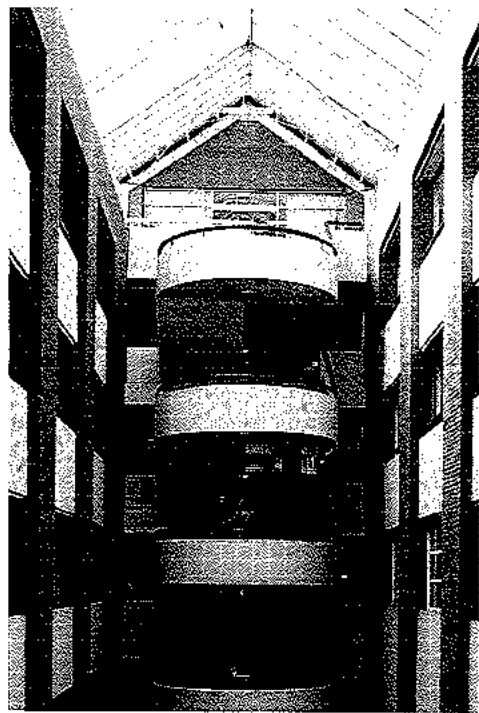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사진: 기독교방송국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COLUMN	<i>The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Korean Society / Lee, Kwang-Hyung</i>	16
ESSAY	<i>The Market Economy is not Best Policy / Ham, In - Sun</i>	18
WORKS	<i>Wuirye Commercial High School / Hwang, Il - In</i>	20
	<i>Christian Broadcasting /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i>	24
	<i>ST. Ignatius House / Boo, Dae - Jin & Kim, Moo - Hyun</i>	30
	<i>Han Kook Tire Head Office Building / Kim, Hu - Seuk</i>	34
	<i>Incline II / Joo, Young - Jung</i>	38
	<i>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Advances Machinery Design / Seoul Architects & Engineers</i>	42
	<i>Kwang Ju Y's Residence / Han, Jin - Su</i>	44
SKETCH	<i>Kunsan K's Bowling Center / Jun, Eun - Bae</i>	46
PROCESS WORKS	<i>Chunbuk Improvement of Farmland Association Building / Roh, Hyung - Rae</i>	48
CRITICISM	<i>The so-called Zeitgeist, a Piece of Straw / Lee, Jeong - Keun</i>	50
TRADITIONAL ARCHITECTURE	<i>A Methodological of the Korea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 Jang, Soon - Yong</i>	58
LAWS & ORDINANCES	<i>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i>	64
OVERSEAS ARCHITECTURE	<i>Go Toward the 21C Architectur - Kohn Pedersen Fox</i>	70
COMPETITION	<i>Korea Tobacco & Gienseng Cooperation, Seoul Blanch Kuri City Government Building</i>	76 86
REPORT	<i>Type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 Kil, Soung - Ho</i>	90
	<i>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 / Yu, Wan</i>	98
	<i>Th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in Korea and a Proposal for Its Improvements / Woo, Si - Yong</i>	108
STATISTICS		118
KIRA NEWS		12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서초구사조동 1603-55, 581-5715~8 · 시대문화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문화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문화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문화회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문화회 /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문화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문화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문화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종로문화회 / 종로구구수동46-18, 735-0905 · 마포문화회 / 마포구상산동275-1, 336-5057 · 송파문화회 / 송파구송파50-12, 423-9158 · 강북문화회 / 강북구2가49-11, 279-1415 · 용산문화회 / 용산구원로1가129-22, 712-7647 · 서초문화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문화회 / 은평구북악동79-32, 352-6720 · 동작문화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문화회 / 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 노원문화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문화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문화회 / 중랑구민복동166-46, 923-6123 · 성북문화회 / 성북구상선5가410, 923-4401 · 구로문화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시진구 범천동 847-18, 28(051)634-43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6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동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대안동3가124-5, (0331)47-6129~30 · 각할문화회 / 경기도수원시대안동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문화회 / 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문화회 / 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문화회 / 성남시수정구대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문화회 / 의정부시외정동182, (0351)2-1083 · 송탄문화회 / 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 고양문화회 / 고양시원당읍주교38동166호, (0344)63-8902 · 구리문화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문화회 / 이천시이천읍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문화회 /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문화회 / 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문화회 / 원주시중앙동60-54, (0371)43-7290 · 강릉문화회 / 강릉시상대동6-14, (0391)2-2262 · 속초문화회 / 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문화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문화회 / 영월군영월읍영동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3, (0431)56-2752, 53-7342 · 홍주문화회 / 홍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문화회 / 제천시리항동8-8, (0443)43-6253 · 옥천문화회 / 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동동452-2, (042)256-4088 · 천안문화회 / 천안시분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문화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 · 부여문화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17 · 대천문화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북빌딩 508), (0562)87-6007~8 · 이리문화회 / 이리시남강동1가77-22, (0653)52-3304 · 군산문화회 / 군산시신광동35-4, (0654)445-4060 · 남원문화회 / 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783-23(추진회관) (062)364-7567, 33-9944 · 목포문화회 / 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 순천문화회 / 순천시장천동51-11(0651)3-2457 · 여수문화회 / 여수시관촌동441번지, (065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21285번지, (053)425-4904 · 포항문화회 / 포항시북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문화회 / 경주시동천동771-4, (0561)3-3638 · 구미문화회 / 구미시원광동964-264, (0546)52-6351, 52-7547 · 안동문화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문화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 · 영주문화회 / 영주시후천2동642-52, (0572)33-7504 · 정선문화회 / 정선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문화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3-47, (0561)46-4530~1 · 울산문화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문화회 / 진주시상봉동7-20, (0591)41-6403 · 통영문화회 / 통영시서초동163-18, (0557)44-3232 · 김해문화회 / 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문화회 / 밀양시내일동382-1, (0527)355-4848 · 거창문화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문화회 / 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문화회 / 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문화회 / 삼천포시동등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문화회 / 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62-2233

기술이 존중되는 사회

The Proposal for the Reformation of Korean Society

李光炯 / KAIST 전산학과 교수

by Lee, Kwang - Hyung

나는 한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다. “나는 왜 하필 후진국에 태어났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간직하고 있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몇년 전의 일이다. 나는 파리의 콩코르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세느강 너머로 국회의사당과 에펠탑이 보이는 광장에는 사방으로 화려한 조각과 분수가 어우러져 웅장하고도 고풍스런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광장의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눈길을 끌었다. 수십 미터나 되는 이 기념비석은 기원전에 꽃피운 나일강문화의 산물로서 비석의 사면에는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집트 비석이 여기에 와 서있는 사연이 궁금하던 차에 프랑스로 쓰여진 비석의 좌대에 눈이 머물렀다. 좌대에는 이 비석에 관한 사연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었다. 19세기 초에 이곳으로 옮겨다 세웠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 공사는 엔지니어 누구에 의하여 몇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대통령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았다.

이것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 간직하고 있던 의문점을 풀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대로 한다면 이 공사를 지시한 왕이나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법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은 공사를 지휘한 기술자의 이름을 새겨 이 기념물과 함께 영광스럽게 기리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펠이 세운 에펠탑

서양 사람들은 모든 기념물에 공사 책임자인 엔지니어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고 한다. ‘에펠’이라는 기술자가 설계하여 세운 기념탑을 ‘에펠탑’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이 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기술자가 되기를 희망했고, 따라서 기술이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자. 국보 1호인 남대문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경복궁의 설계자 또는 공사를 지휘한 도목수는 누구인가, 조선시대의 기념물에서 그와 관련된 기술자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농공상의 기술 천대사상 속에서 기술자의 이름이 명예롭게 기억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나는 쟁이이지만 자식에게는 이 기술을 주지 않겠다”고 기술을 천시하던 사회에서 우수한 인력이 기술자가 될리도 없고, 따라서 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기술 천시 사상이 우리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말았으리라는 생각이다.

남대문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서양에서는 왜 기술과 기술자를 숭상했는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였다. 종교혁명 후 서양에서는 실용주의와 함께

“

서울역의 새 역사를 가보자. 철도청장의 이름만이 멋있는 동판에 새겨져 있지 실제로 그 건물을 책임질 사람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과학 교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 과학관에 가 보아도 공사 기간 중에 재임한 관장들의 이름만 대여섯명씩 비석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회풍조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다리가 강물에 빠지는 소리가 그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감독관의 이름으로 새기어 자자손손 길이 보전한다는 것이 명예와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대가일 뿐이다.

”

부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이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은 농업과 상업 외에 부를 창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혹시라도 임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던 것이 조선시대의 사회상황이었다. 심지어 “기묘한 병기를 만들어 역적모의를 하려 한다”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같은 동양에 있으면서도 일본은 사정이 달랐던 것 같다. 얼마전에 철거한 창경궁의 장서각에서 나온 상량문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량문에는 공사를 맡았던 목수 3명, 공사 발주자, 설계사, 제도사 그리고 감독관들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 있을법한 왕이나 총독의 이름은 없었다. 일본사람들은 1백년전부터도 기술을 숭상하고 기술자를 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러한 차이를 보였는가. 그들은 통일전까지 봉건영주들이 사무라이들의 무력에 의지해 세력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사회였다. 이 사무라이가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칼이 좋아야 했다. 따라서 당연히 좋은 칼을 만드는 기술자, 즉 좋은 쇠를 만드는 기술자가 우대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술 우대 사회인 일본은 19세기 중엽에 서양문물을 신속하게 흡수하여 부국강병의 길로 들어섰다.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었던 것도 그 원인을 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때 가졌던 “나는 왜 후진국에 태어났는가”하는 질문도 결국 “나는 왜 기술을 천시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는가”하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셈이다.

부국강병의 길

그러면 기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오늘날은 어떠한가. 서울역의 새 역사를 가보자. 철도청장의 이름만이 멋있는 동판에 새겨져 있지 실제로 그 건물을 책임질 사람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과학 교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국립 중앙 과학관에 가 보아도 공사 기간 중에 재임한 관장들의 이름만 대여섯명씩 비석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사회풍조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다리가 강물에 빠지는 소리가 그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감독관의 이름을 새기어 자자손손 길이 보전한다는 것이 명예와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대가일 뿐이다.

시장경제면 장땡이나?

The Market Economy is not Best Policy

咸仁善/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건축

by Ham, In - Sun

참으로 내뺄기 싫은 용어이지만 그것 아니고는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이 주유소에서의 『만땅』이라는 것과 밤에 택시 잠을때의 『따블』이라는 단어이다.

어제밤에는 『따블』을 안부르고 도대체 얼마만에 빈차가 서주는가를 오기로 세어보았다. 물경 20여분간 20여대의 빈차가 지나간후 어떤 골빈차(?)가 『싱글』로 받기로 하고 서주었다.

아예 밤에는 요금을 두배 받기로 하면 수산시장 생선중개인 모양 손가락을 흔들며 달밤에 체조하는 추절을 안 떨어도 되지 않겠는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 소위 『공식가격』과 『실질가격』이 따로 노는 것이 택시값 뿐이라?

얼마전 상업은행 명동지점장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것은 『공식금리』와 『실질금리』의 이중구조 때문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은행금리를 가지고 예금을 유치해야 하는 지점장은 물주에게 차액만큼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난도하고 꺾기도 하다가일이터졌던것이다.

낮과 밤의 요금이 다른 택시값의 이중구조, 책상위와 책상밑의 금리가 다른 이중구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반 사회주의 국가, 반계획, 반시장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완전경쟁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계획경제하에서는 가격이 비용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쇠고기 1 kg 값을 1루블로 정했으면 생산하는 비용이 10루블이 되어도 10년이고 20년이고 1루블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폐쇄사회가 개방화가 되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컨대 러시아 엘친대통령의 한달 월급으로 흑백 TV 한대도 못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장황한 서두를 꺼내는가 하면 현실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무조건 이상적인 자유시장주의를 도입하다가 지리멸렬된 소련의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목하 우리사회는 동구권의 붕괴 등에 고무되어 「자본주의 승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찬미」로 들떠 있는 듯 하다. 건축계 역시 「탈권위주의」, 「문민화」, 「시장논리에 의한 건축계 재편」 등의 구호가 만발하며 이들이 건축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그럴 것인가.

과연, UR 용역업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본있는 건설업체가 용역업을 겸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인가.

과연, 법인 설계회사가 큰 규모 용역을 하고 개인 설계 사무소는 작은 일만하면 전반적 설계의 일이 좋아질 것인가.

과연, 건축사를 대량 배출하여 시장논리에 의해 경쟁 도태하게 되면 수준이 높아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의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구체적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도 얘기 했거니와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자유시장경제체제를 운위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독재의 계획경제 논리와 군사문화의 권위주의적 잔재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으며 전반적인 시장의 수준이 아직도 일천하기 때문에 공급측의 일방적인 고급화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도 대다수 서민은 합승·총알택시에 시달리며 욕을하긴 하지만 모범택시 탈 배포까지는 없는데 일방적으로 모범택시로 다 바꾼다고 택시문제가 해결되느냐

“

작금의 논의들은 인턴제를 도입해야 한다, 건축사를 대량배출 해야 젊은 건축사들이 큰 사무소로 다시 돌아온다는 등 기득권층 이해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다.

시장논리도 좋고, 자유경쟁도 좋다.

그러나 시장이되 어떤 시장인가가 문제이다. 점점 건축시장은 『좋은생각을 가진자』가 아닌 『자본을 가진자』를 위한 불공정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화』, 『문민화』를 빙자하여 자본의 힘으로 건축의 논리와 양심을 지배하려는 기도는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

”

말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건축수요의 수준은, 편법으로 평수 늘이기, 빨리 허가내기, 준공때 눈감아주기, 싸고 빨리 짓기인데 일방적으로 엘리트 건축을 대량 공급한다고 이들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되는가 말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시판되기도 전 공고만 보고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차를 예약하는 나라,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정한 평수에 정한 가격으로 사기로 하는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수요측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채, 공급측이 무한 경쟁을 통한 양질의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인 것이다.

둘째, UR 을 빙자하여 자본(건설업)이 용역업까지 진출하겠다는 것은 단지 이윤극대를 꾀하는 자본의 요구일 따름이지 그 어떤 다른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체제가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체제이며 이 논리하에서는 자본력이 있는 건설업체만이 기술력을 용이하게 확보하여 대외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대외경쟁력 열세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시공능력 결여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과거 증동특수등 물 좋았을 때 돈벌어 탄짓 하느라고 기술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지, 당국에서 용역업 하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자본이 용역업까지 아우르겠다는 논리에 있어서 UR 등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소극적으로는 설계비마저도 아껴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나마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력으로 남아있던 전문가 집단의 양심까지도 구입하여 자본의 이해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벌산하 설계사무소들은 엄청난 물량작전으로 공공사업의 설계권들을 쓸어감과 동시에 재개발 등 공공적 부문에서도 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는데 막강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말로는 건축이 문화입네, 예술입네 하면서 건축계가 시장경제논리, 즉 지극히 반문화, 반예술적 논리에 의해 재편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좋은 건축은 돈 많고 큰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가? 물론 기술적으로 충실한 설계가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건축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적으로 더 의미있는 건축사회의 공공적 이해에 더 부합되는 건축은 제도화 되고, 보수적인 조직보다는 젊고 진취적인 집단에서 오히려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논의들은 인턴제를 도입해야 한다, 건축사를 대량배출 해야 젊은 건축사들이 큰 사무소로 다시 돌아온다는 등 기득권층 이해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다.

시장논리도 좋고, 자유경쟁도 좋다.

그러나 시장이되 어떤 시장인가가 문제이다. 점점 건축시장은 『좋은생각을 가진자』가 아닌 『자본을 가진자』를 위한 불공정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화』, 『문민화』를 빙자하여 자본의 힘으로 건축의 논리와 양심을 지배하려는 기도는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

위례 상업고등학교

Wuirye Commercial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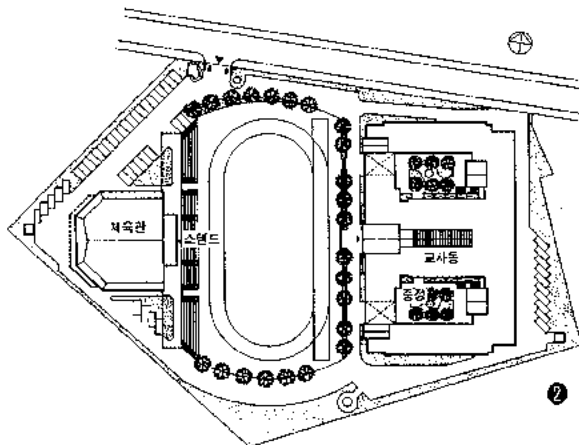
黃一仁 / 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Il-In



①

- ① 교사동 남측 전면
- ② 배치도
- ③ 교사동 남측전경
- ④ 스탠트와 연결된 체육관 남동측 전경
- ⑤ 교사동 홀 부분 아트리움
- ⑥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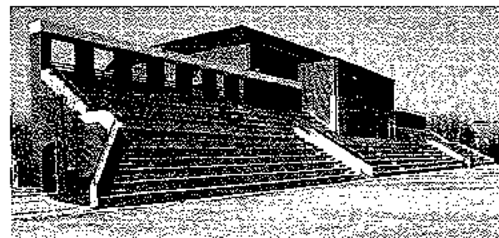
②



③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62-4번지
 대지면적 / 18,833.59㎡
 건축면적 / 4,959.18㎡
 연면적 / 21,620.4㎡
 건폐율 / 26.33%
 용적률 / 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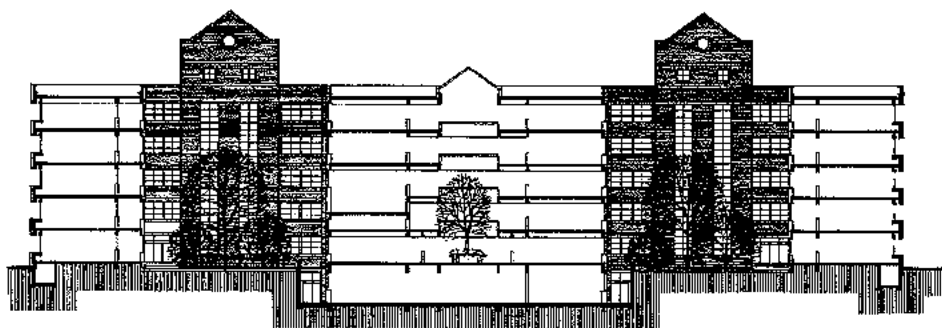
규모 / 교사동-지하 1층, 지상 6층
 체육관-지상 3층
 수위실-지상 1층
 구조 / 교사동-철근콘크리트조
 체육관-철근콘크리트조 + 브러스코
 외부마감 / 붉은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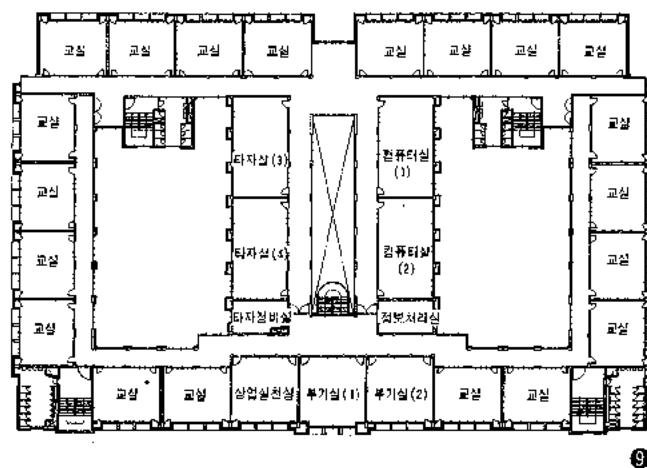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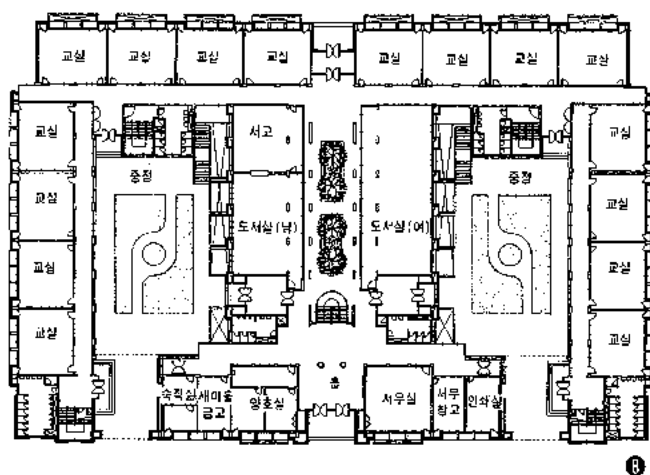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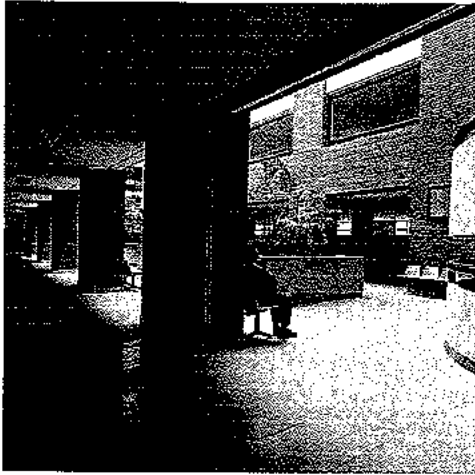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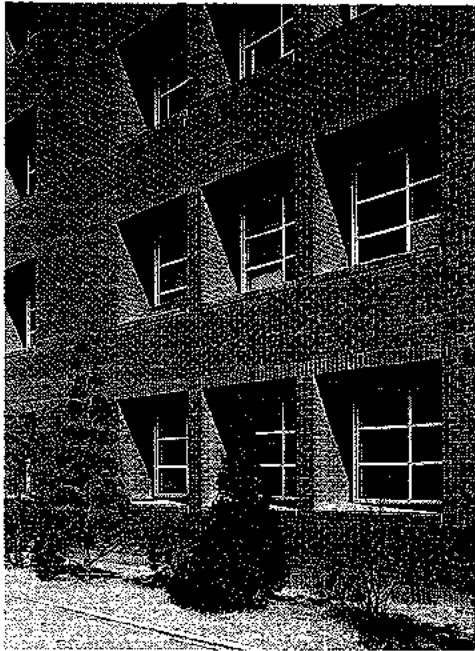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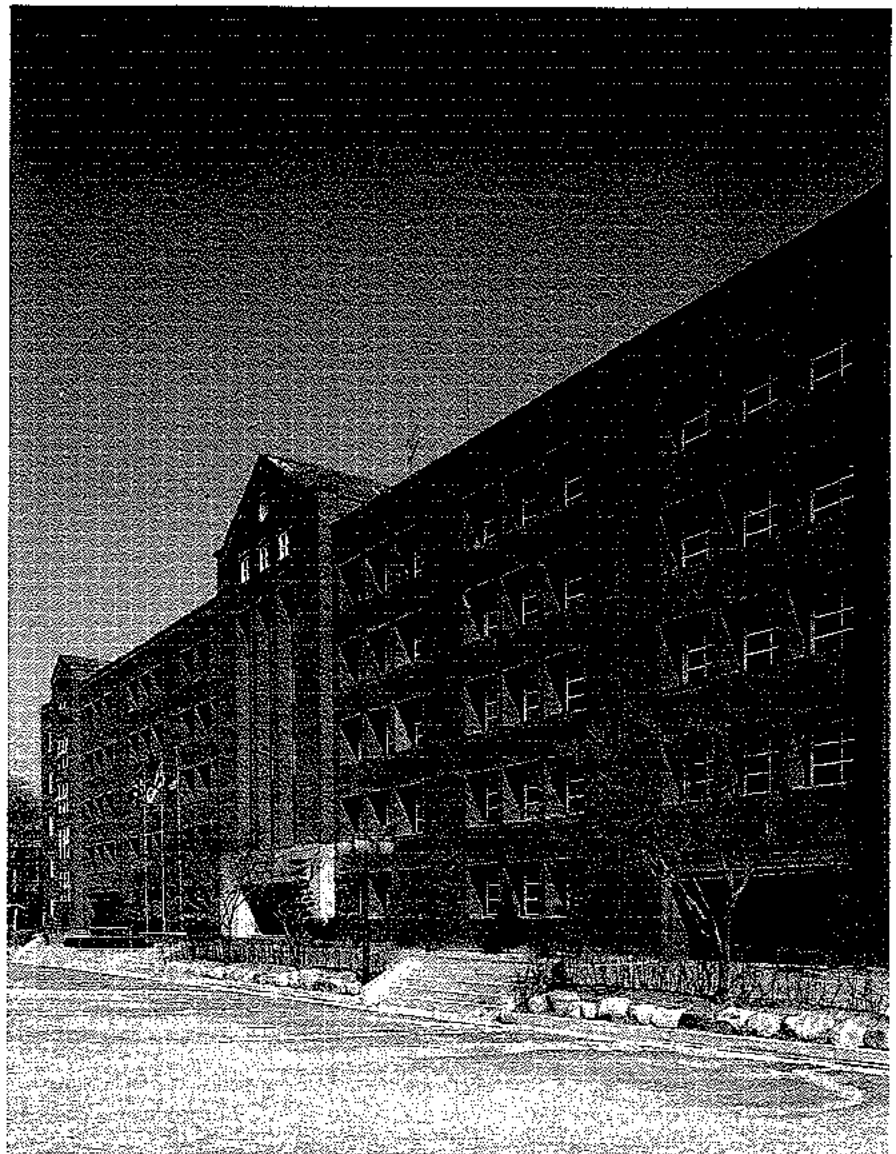
- ⑦ 중정에서 본 교실 창문
- ⑧ 1층 평면도
- ⑨ 기준층 평면도 (5층 평면도)
- ⑩ 중정에 면한 회랑
- ⑪ 교사동 외벽상세
- ⑫ 측면에서 본 교사동
- ⑬ 북서측에서 본 교정 전경



⑩



⑪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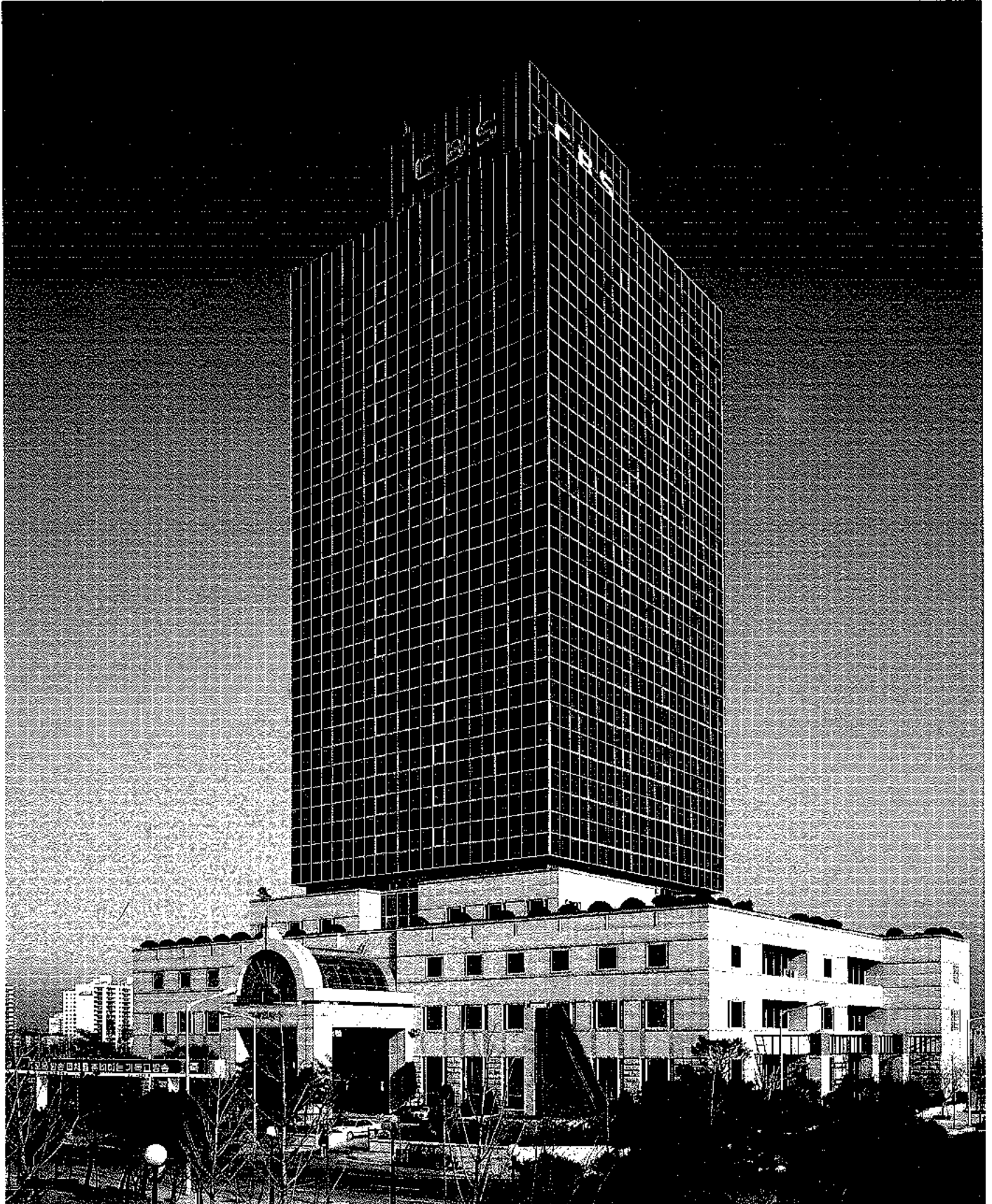
⑬

기독교 방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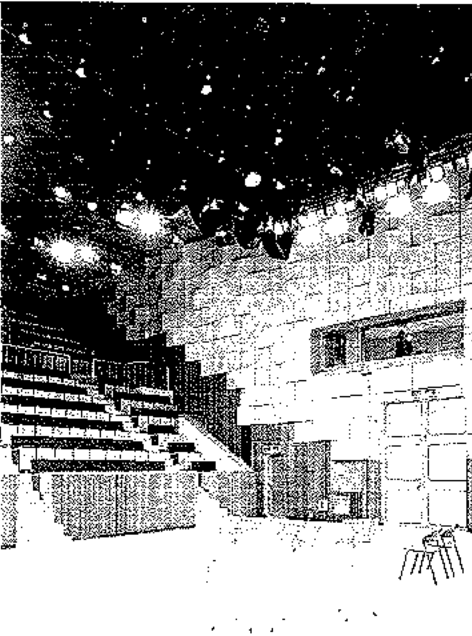
Christian Broadcasting Station

(주)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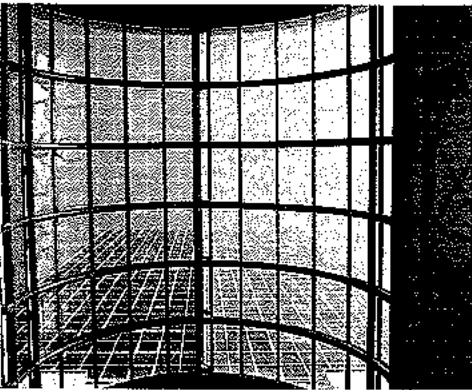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 ① 전경
- ② 방송스튜디오
- ③ 현관캐노피
- ④ 로비에서 본 주출입구
- ⑤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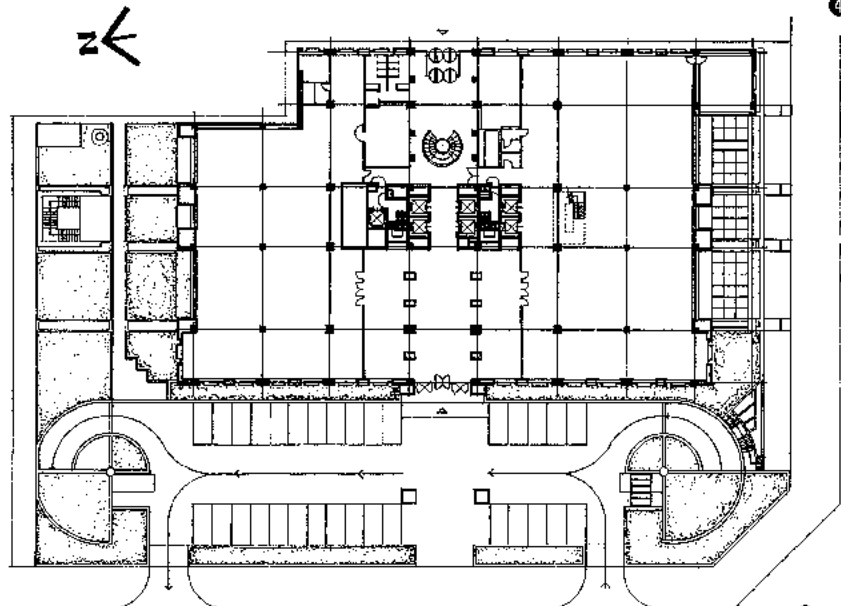


③



④

대지위치 / 서울사 양천구 목동 중삼지구 7-1블록
 지역·지구 / 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1층 집단 미관지구
 대지면적 / 6,730.0㎡
 건축면적 / 3,102.0㎡
 연면적 / 48,493.65㎡
 건폐율 / 44.76%
 용적률 / 399.26%
 규모 / 지하 5층, 지상 20층, 옥탑 2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옥외 38대, 옥내 39대
 외부마감 / 벽 : 30mm, 화장석 및 커튼월
 지붕 : 도박방수 위 인조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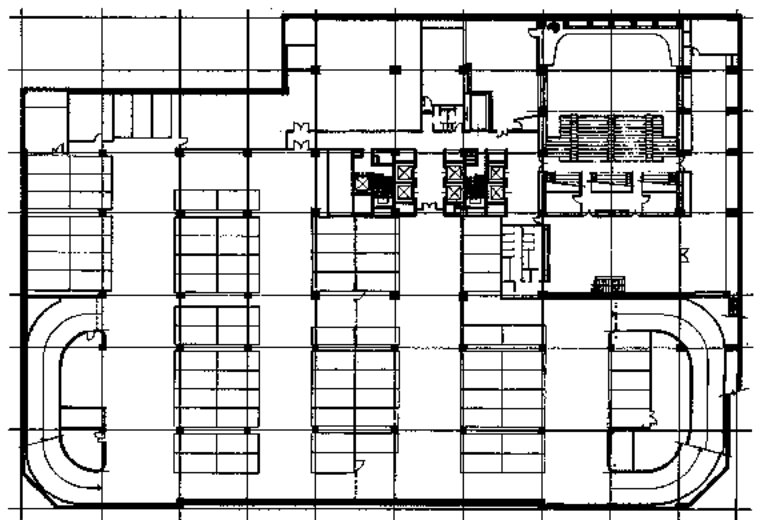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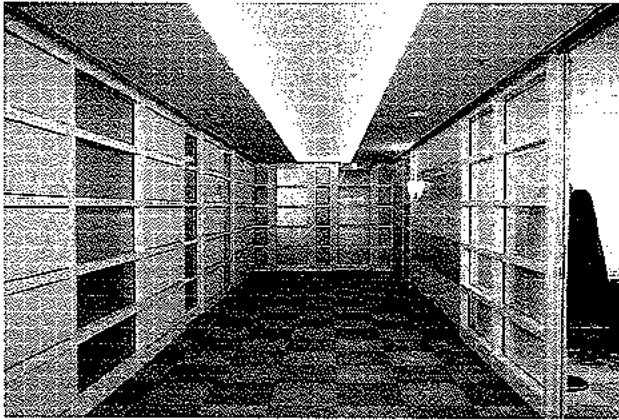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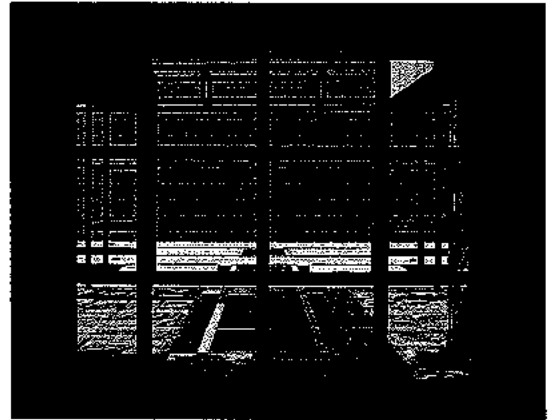
- ⑥ 측면 전경
- ⑦ 지하 2층 평면도
- ⑧ 임원실 복도
- ⑨ 선긋가든
- ⑩ 올라다 본 측면 디테일
- ⑪ 3층 평면도
- ⑫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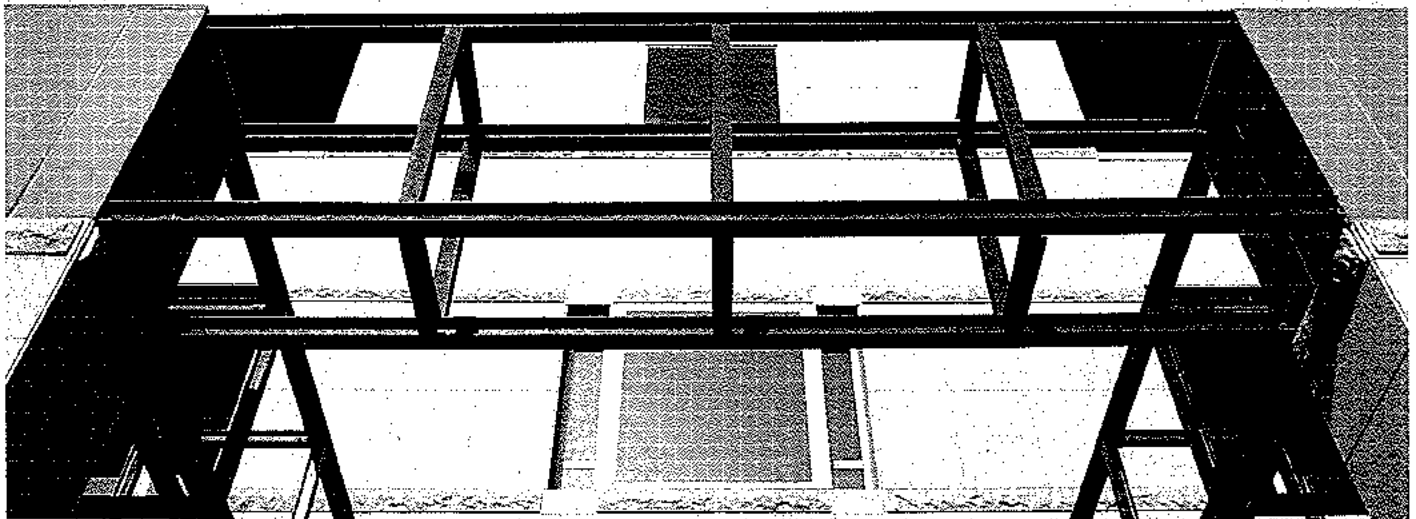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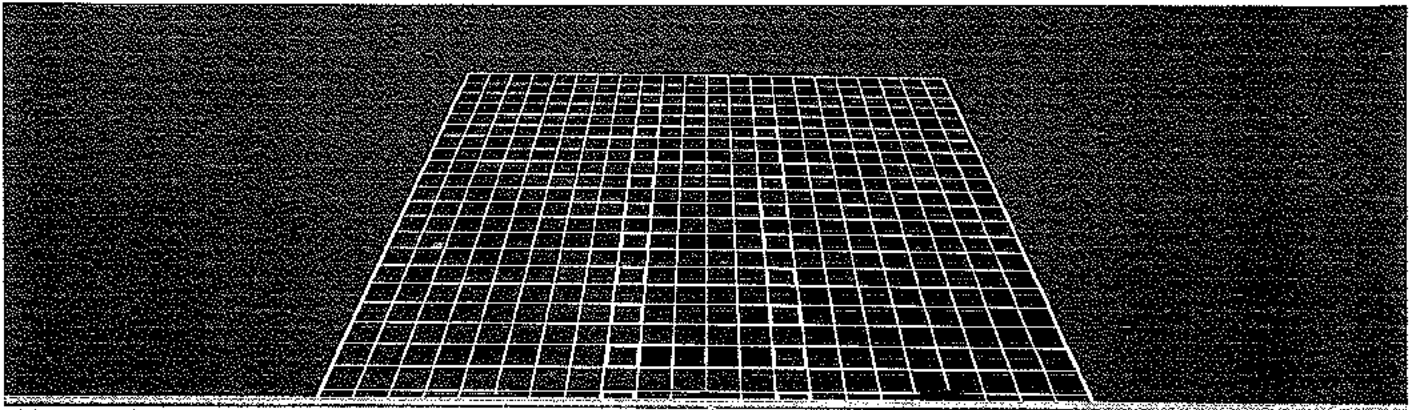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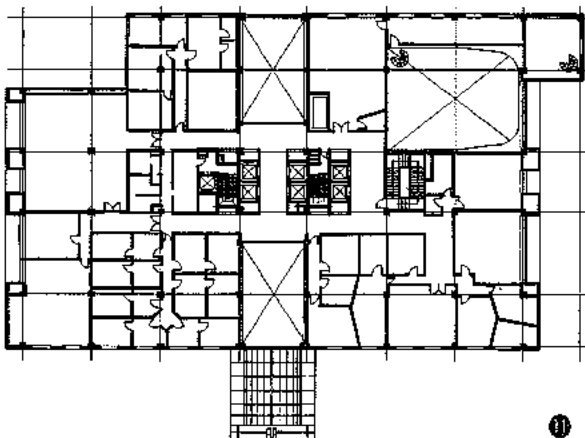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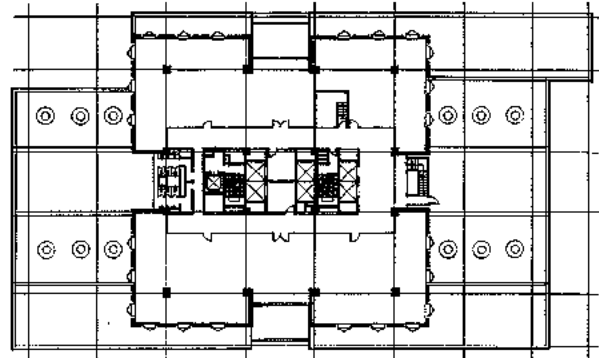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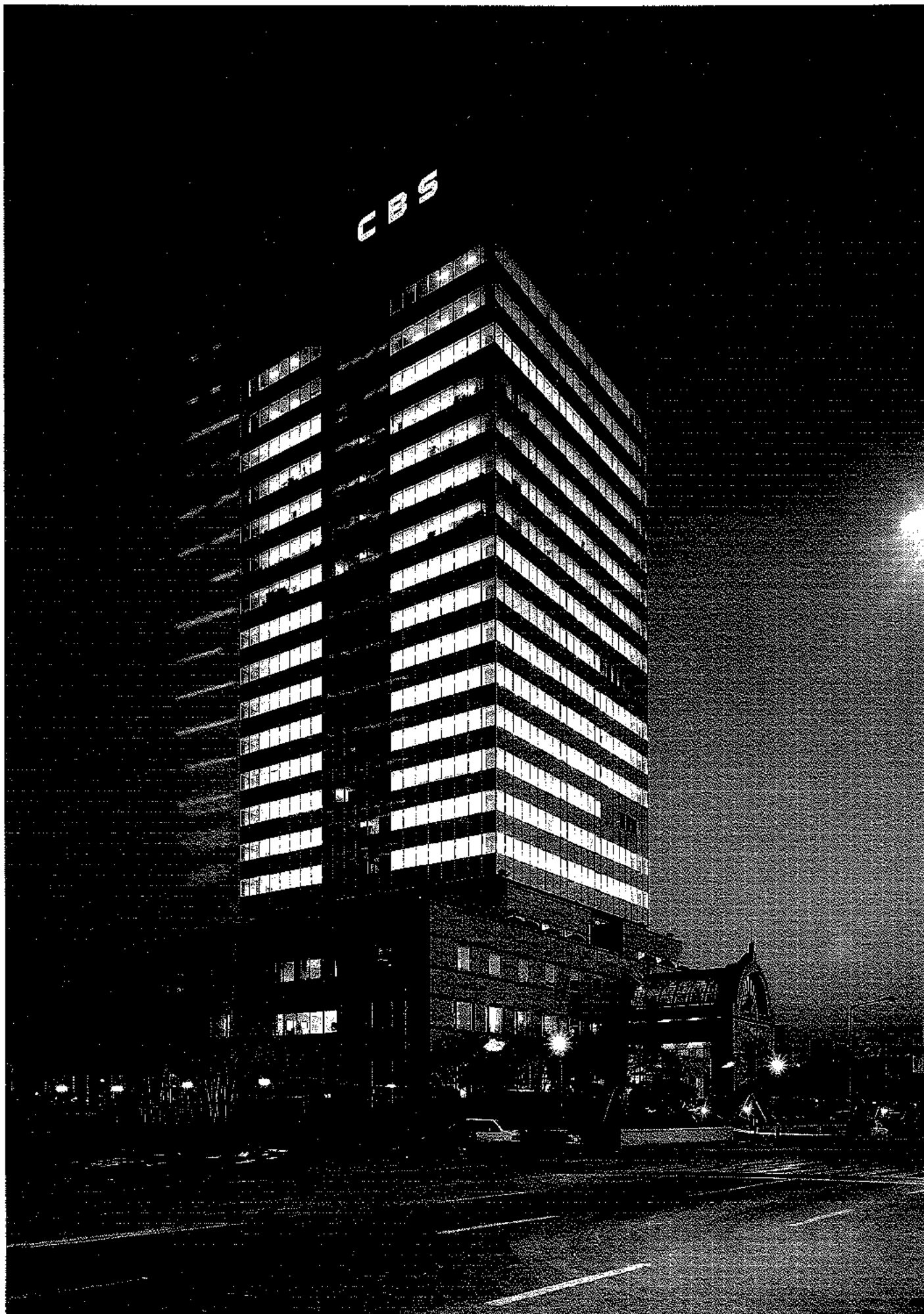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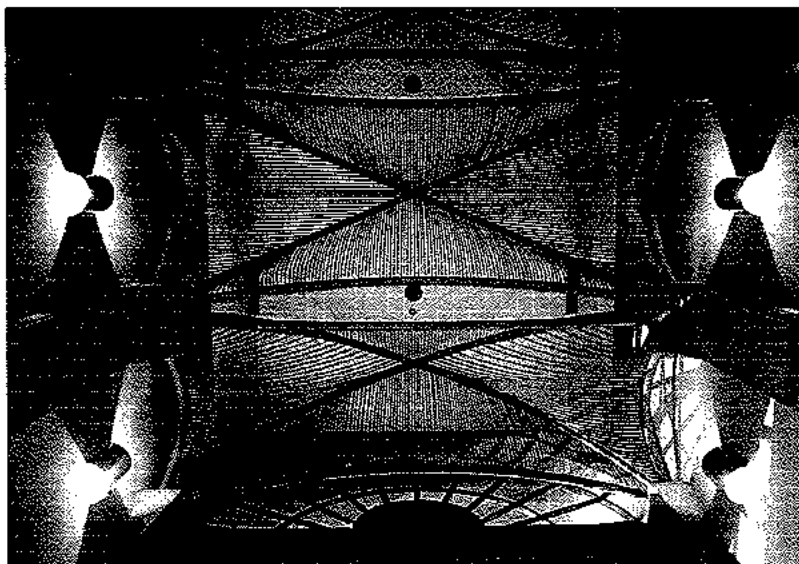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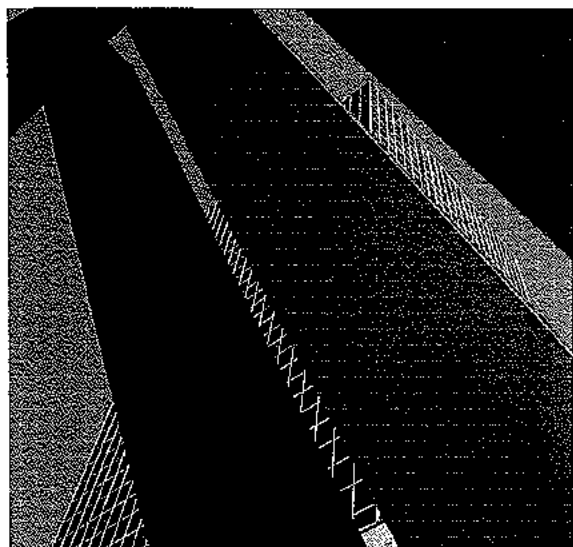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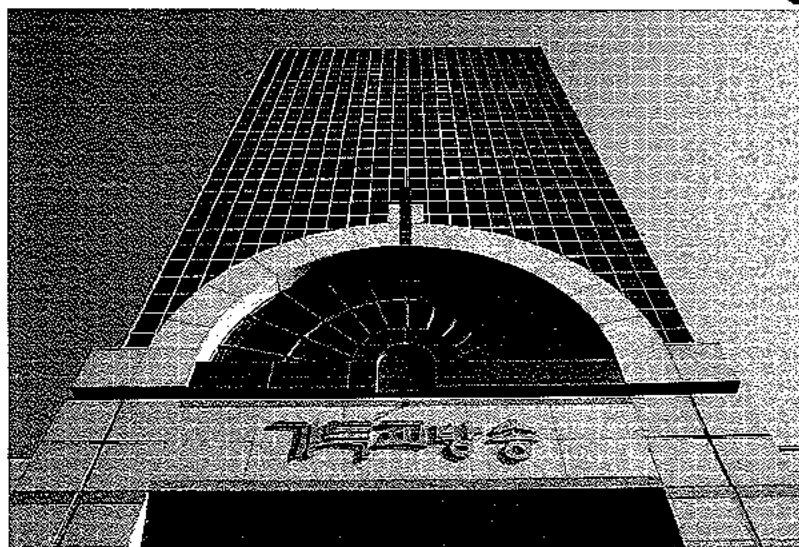
- ① 야경
- ② 로비천정
- ③ 디테일
- ④ 전면 파사드
- ⑤ 옥탑층 평면도
- ⑥ 기준층 평면도
- ⑦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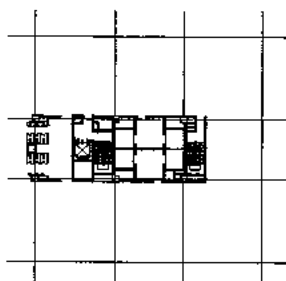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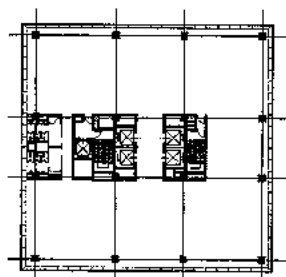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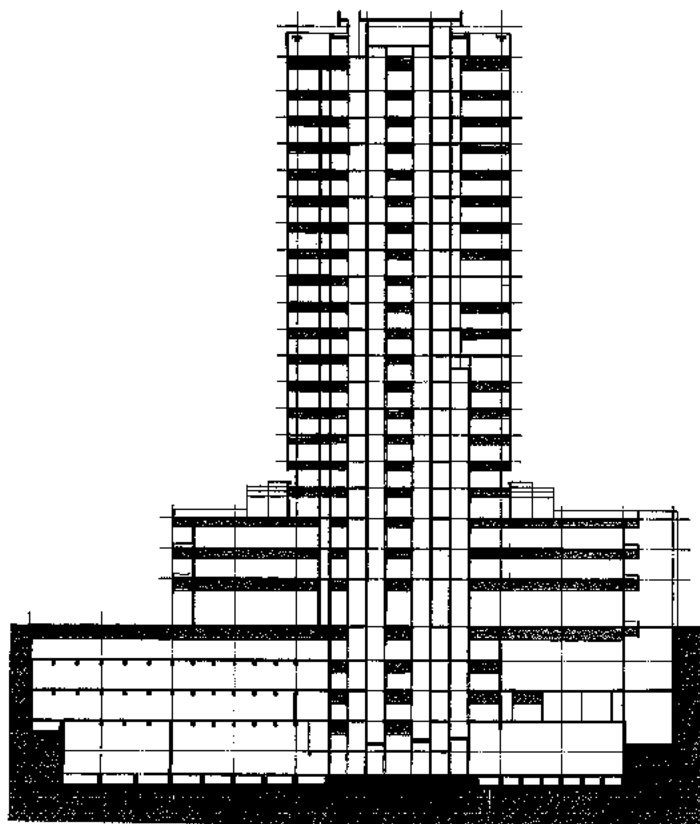
④



⑦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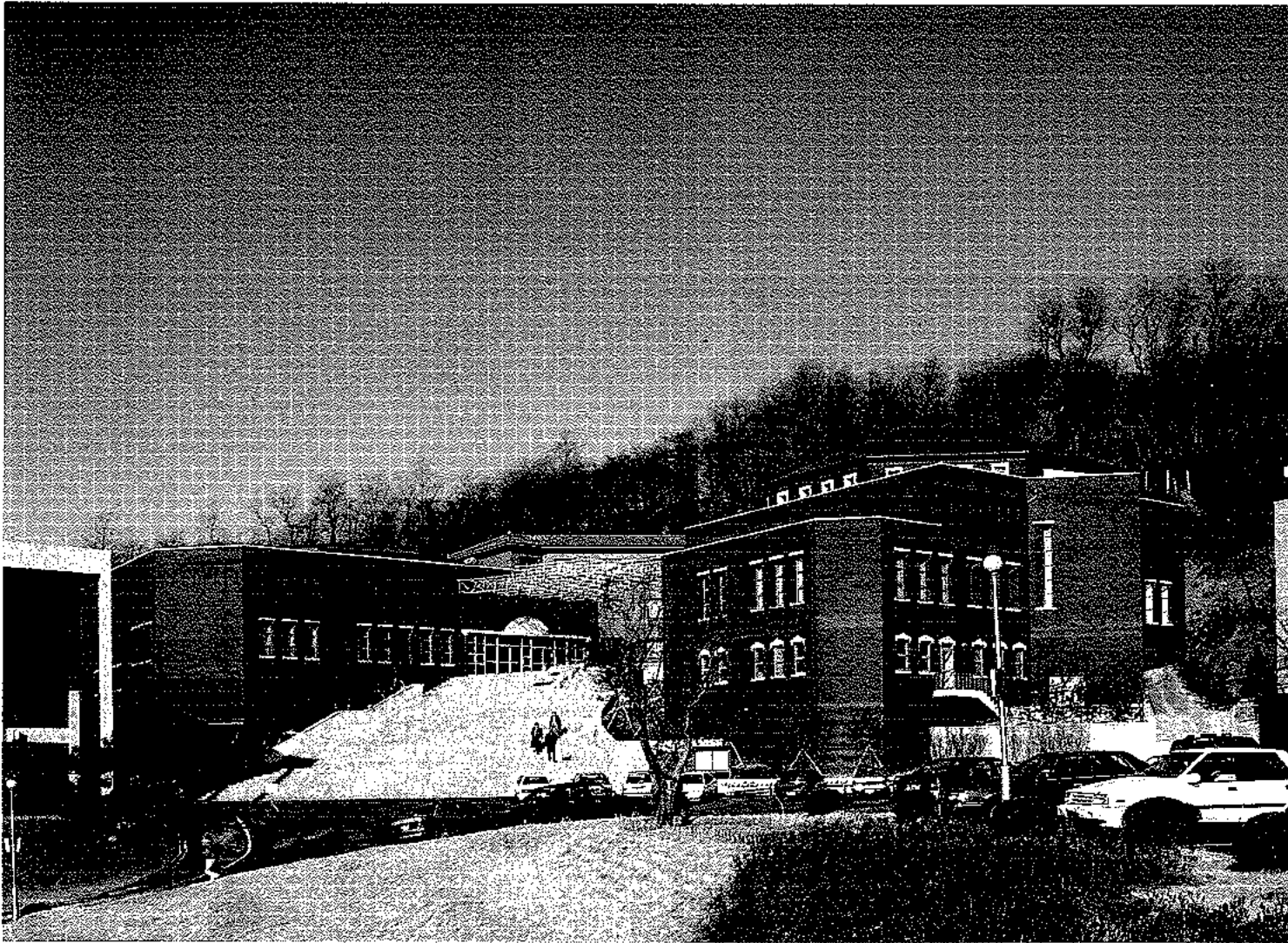
⑦

성 이나시오 관

ST. Ignatius House

夫大珍 + 金武鉉 / (주) 진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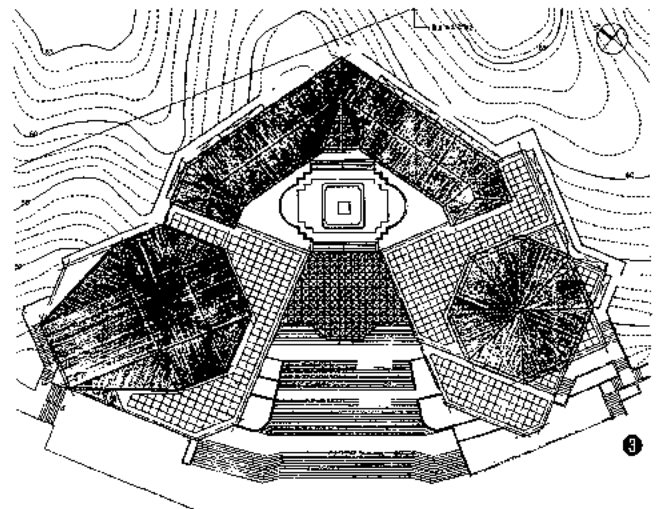
Designed by Boo, Dae - Jin & Kim, Moo - Hyun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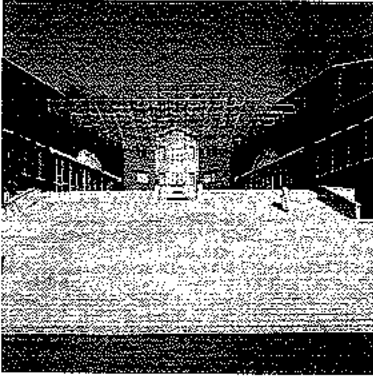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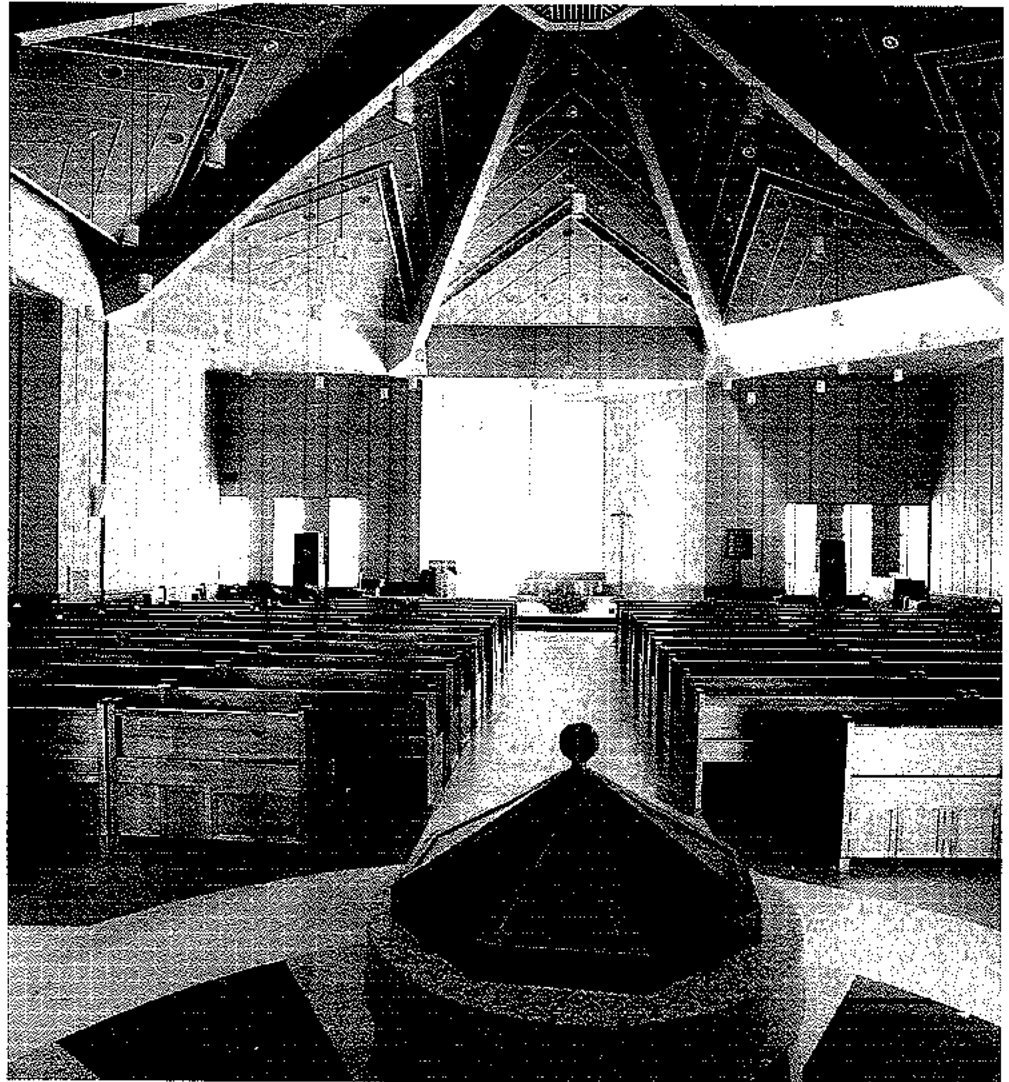
③

- ① 전경
- ② 모형사진
- ③ 배치도
- ④ 외부계단에서 본 주출입구 철골트러스
- ⑤ 성당내부 전경
- ⑥ 지하 1층 평면도
- ⑦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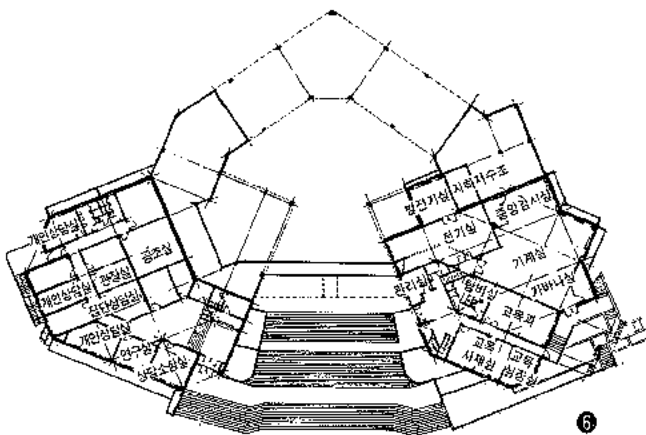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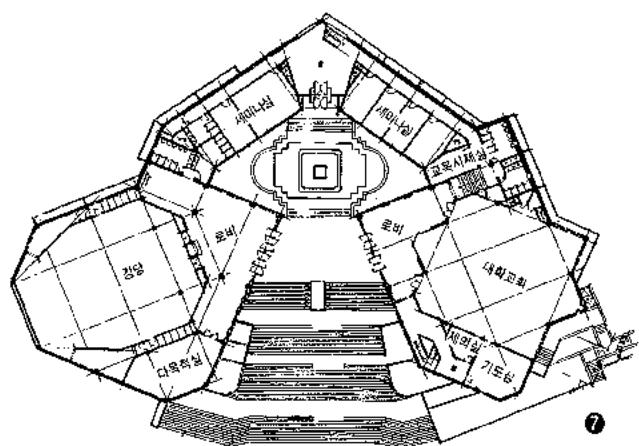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서강대학교 구내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제 2.4종 미관지구, 풍치지구
대지면적 / 3,729.20㎡
건축면적 / 1,918㎡
연면적 / 4,040.1㎡
건폐율 / 11.07%
용적률 / 35.68%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의장재 / 적벽돌 치장양기
주차대수 / 2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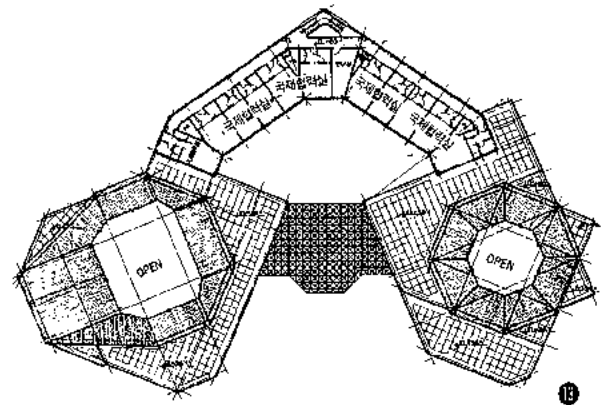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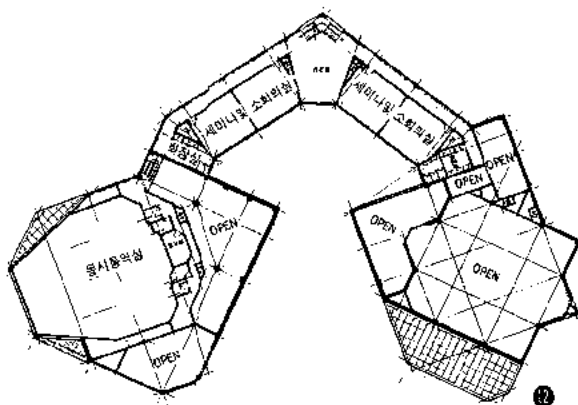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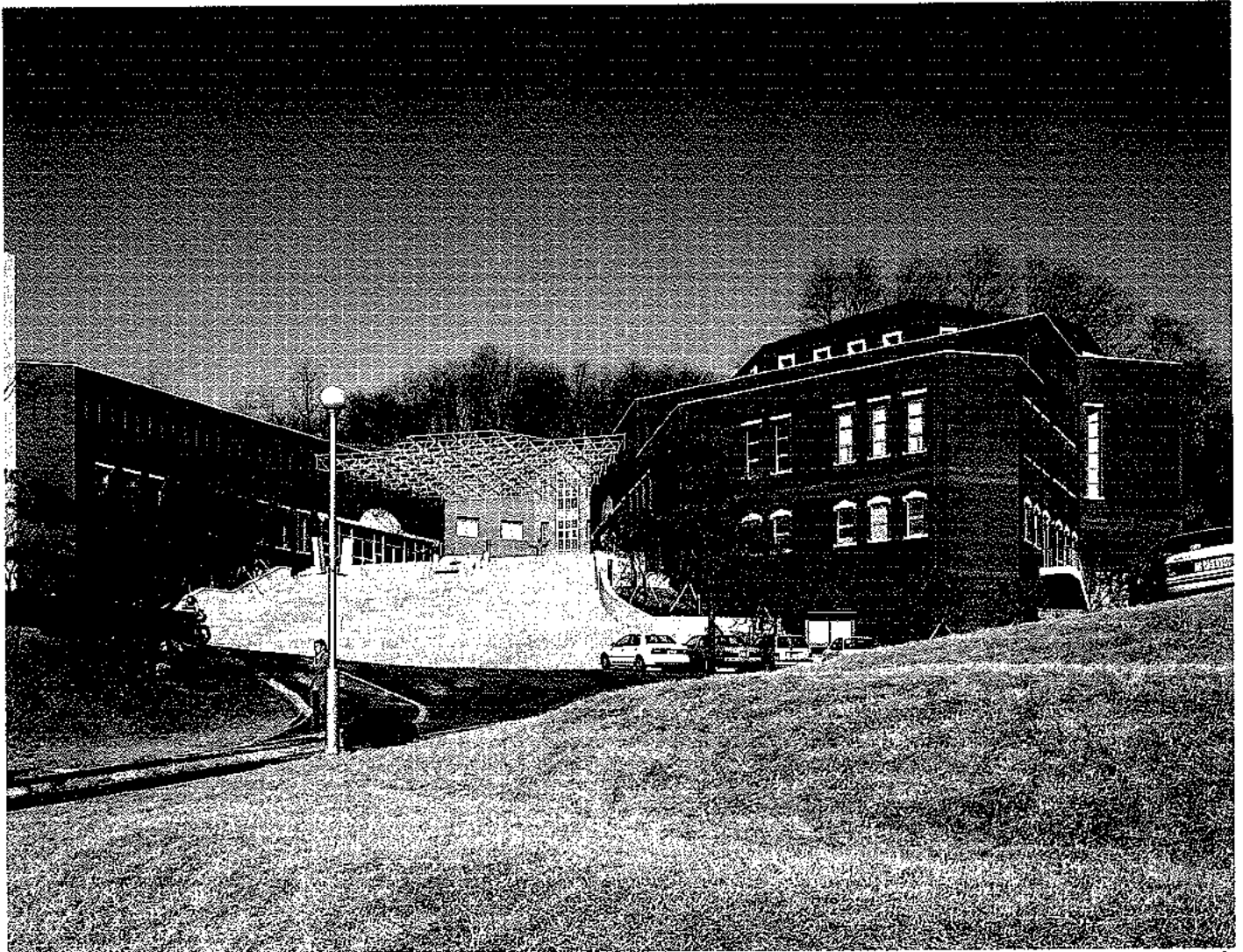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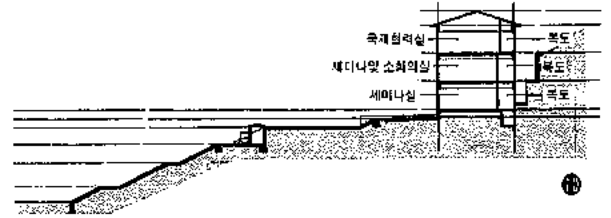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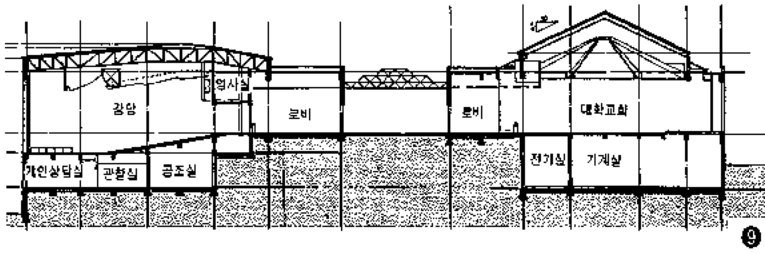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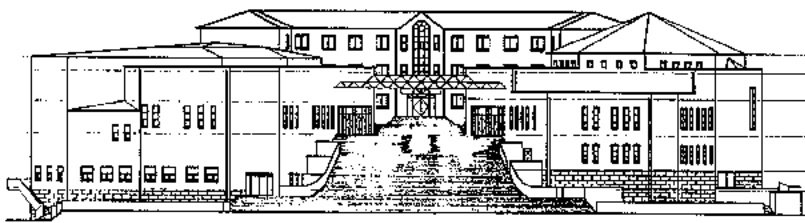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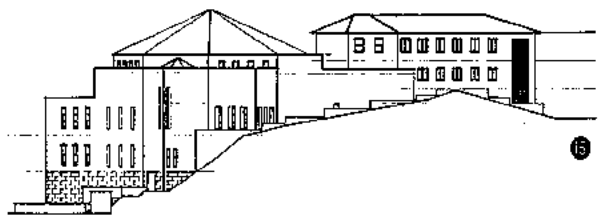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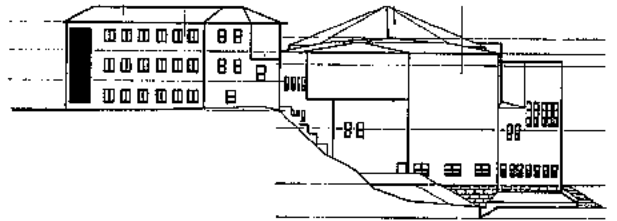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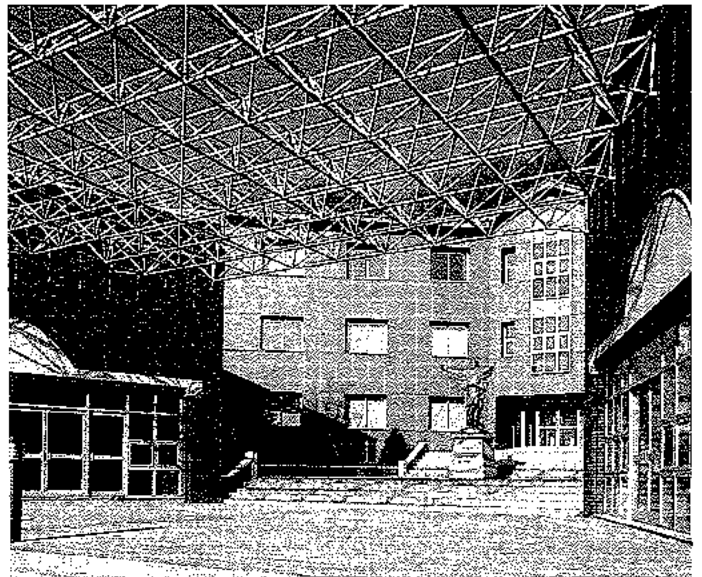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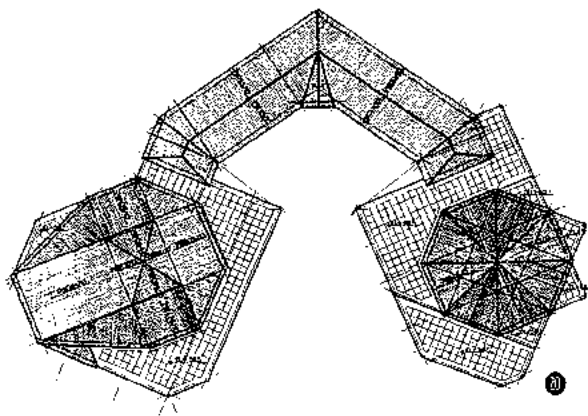
12



13



14



15

- 9 횡단면도
- 10 종단면도
- 11 전경
- 12 2층 평면도
- 13 3층 평면도
- 14 정면도
- 15 우측면도
- 16 배면도
- 17 좌측면도
- 18 현관에서 본 외부
- 19 행사광장
- 20 지붕층 평면도

한국타이어 본사 사옥

Han Kook Tire Head Office Building

金厚錫 / (주) 피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u-Seuk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지역·지구 / 상업지구, 1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 1,776.60㎡
 건축면적 / 998.55㎡
 연면적 / 24,895.53㎡
 규모 / 지하 5층, 지상 19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THK 24mm 칼라 복층유리,
 알루미늄 복합패널
 주차대수 / 180대

하나의 건물은 크제는 도시에서부터, 작제는 그 지역과 인접 가로와 사회적, 경제적 성격과 모양새 등 기존질서에 긍정적으로 부합 되어질 때,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로서의 본질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국타이어 사옥을 설계함에 있어서 위의 내용 외에 건물주의 절대적인 기호 충족을 전제로 기능과 미의 조화, 즉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도 어떻게 형태적인 미를 최대한 살릴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배치 및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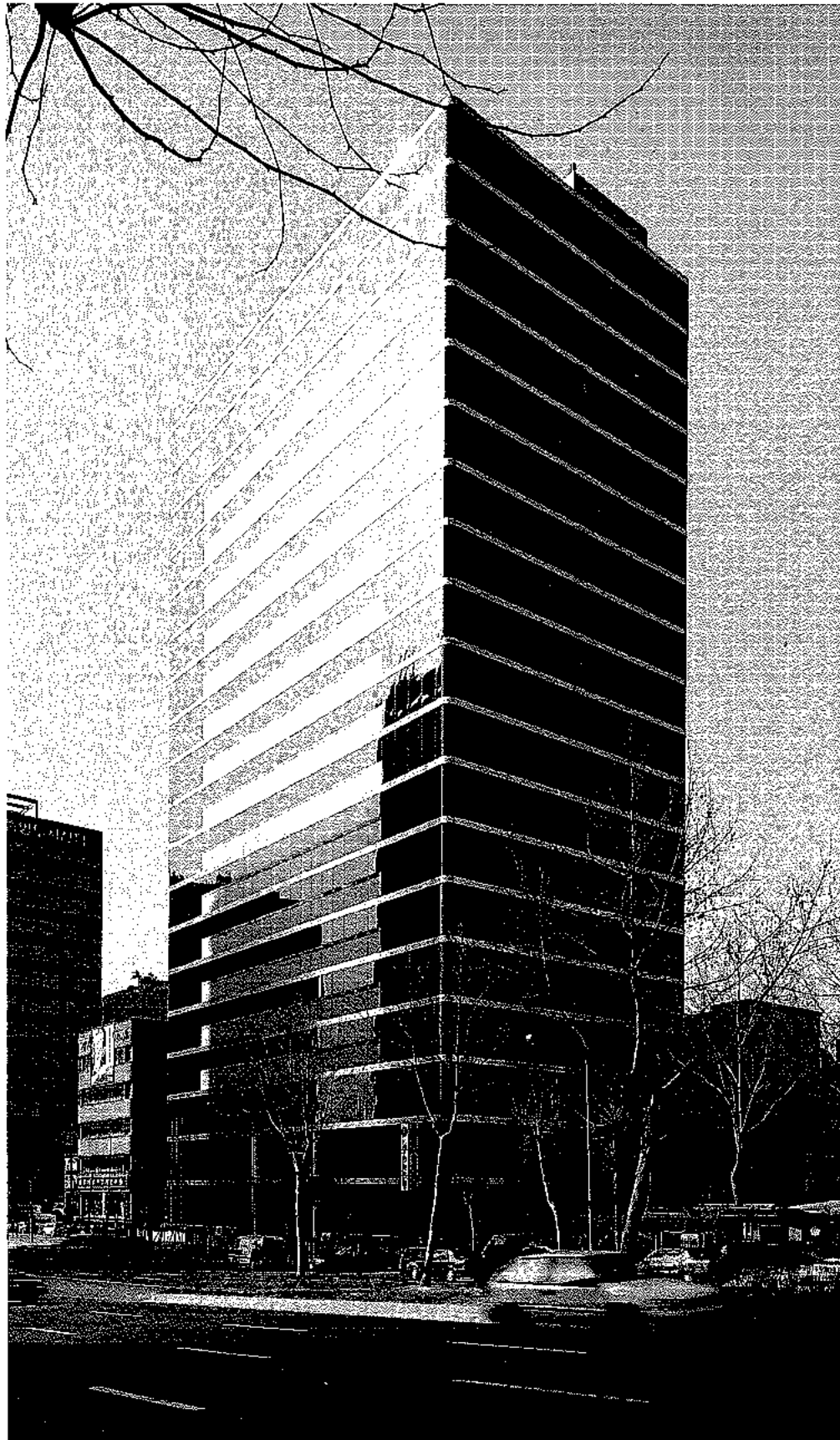
50m의 테헤란로와 8m 도로의 코너에 위치한 본 대지는 50m 도로 방향으로 장방향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적, 상업적 줄기인 테헤란로를 전면으로 한 배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평면계획은 심플한 평면 구성이 되도록 하였으며, 코어는 북측에 배치하여 균등한 채광면적의 확보와 용도에 따른 가변적 배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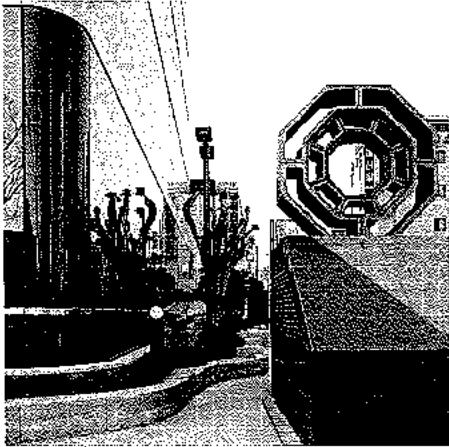
8m가로변을 따라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꾸미고 그길을 따라 차량 진입을 유도하여 북측 부현관을 거쳐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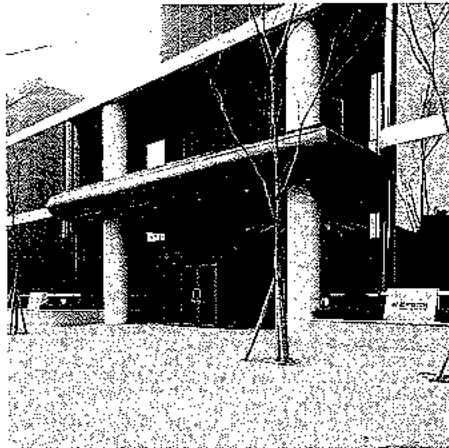
2



1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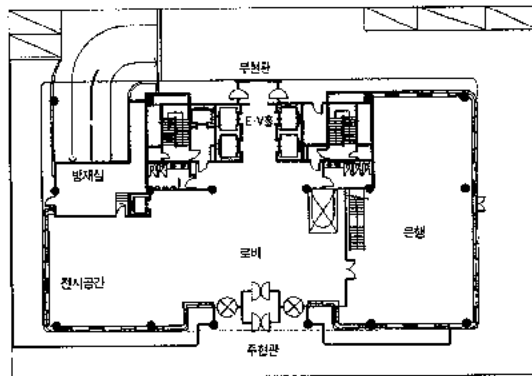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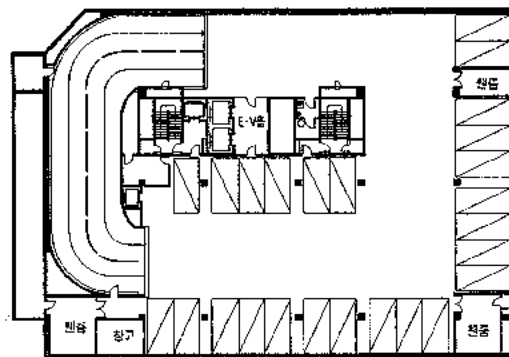
⑤

입면계획

대지가 갖는 조건과 건축주의 요구, 복합적인 공간의 효율성, 경제성 등 제반 문제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기업의 사옥으로서 깨끗하고 명쾌한 이미지 부각에 역점을 두고, 계획에 전제가된 All Glass Curtain Wall을 Negative한 요소로 설정하고 하리벽 부분을 유리면과 같은 평활한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구성하여 날씨가 시각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색유리와 고정된 색감을 주는 알루미늄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창문의 개폐로 인하여 정년성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안갯힘 창을 설치하고 외부는 알루미늄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 고정하여 자연적 환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문턱해질 수 있는 건물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하고 스텐레스 스틸 수평띠로 연속성을 부여하여 경쾌하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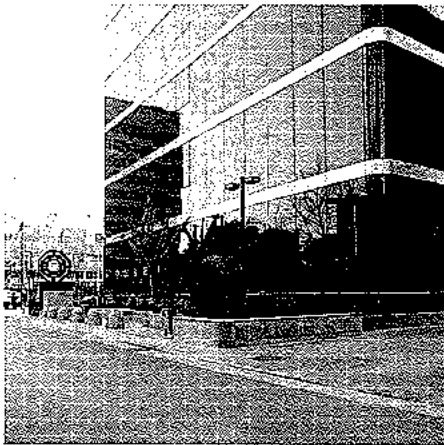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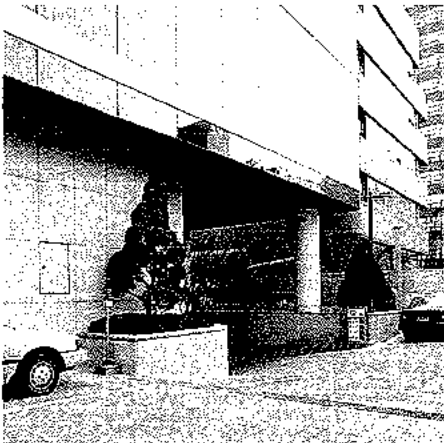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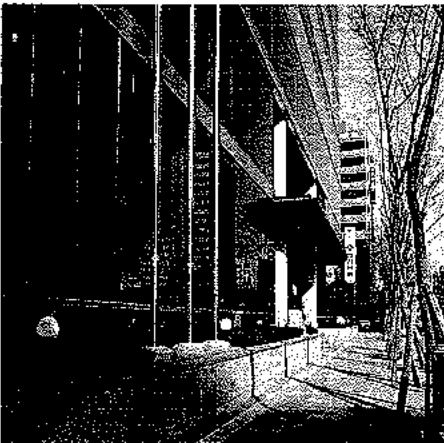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로비에서 본 주현관
- ③ 외부 상징 조형물
- ④ 주출입구 상세
- ⑤ 1층 로비 전경
- ⑥ 1층 평면도
- ⑦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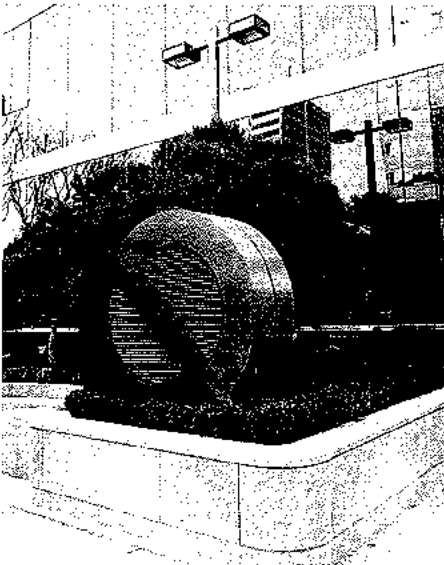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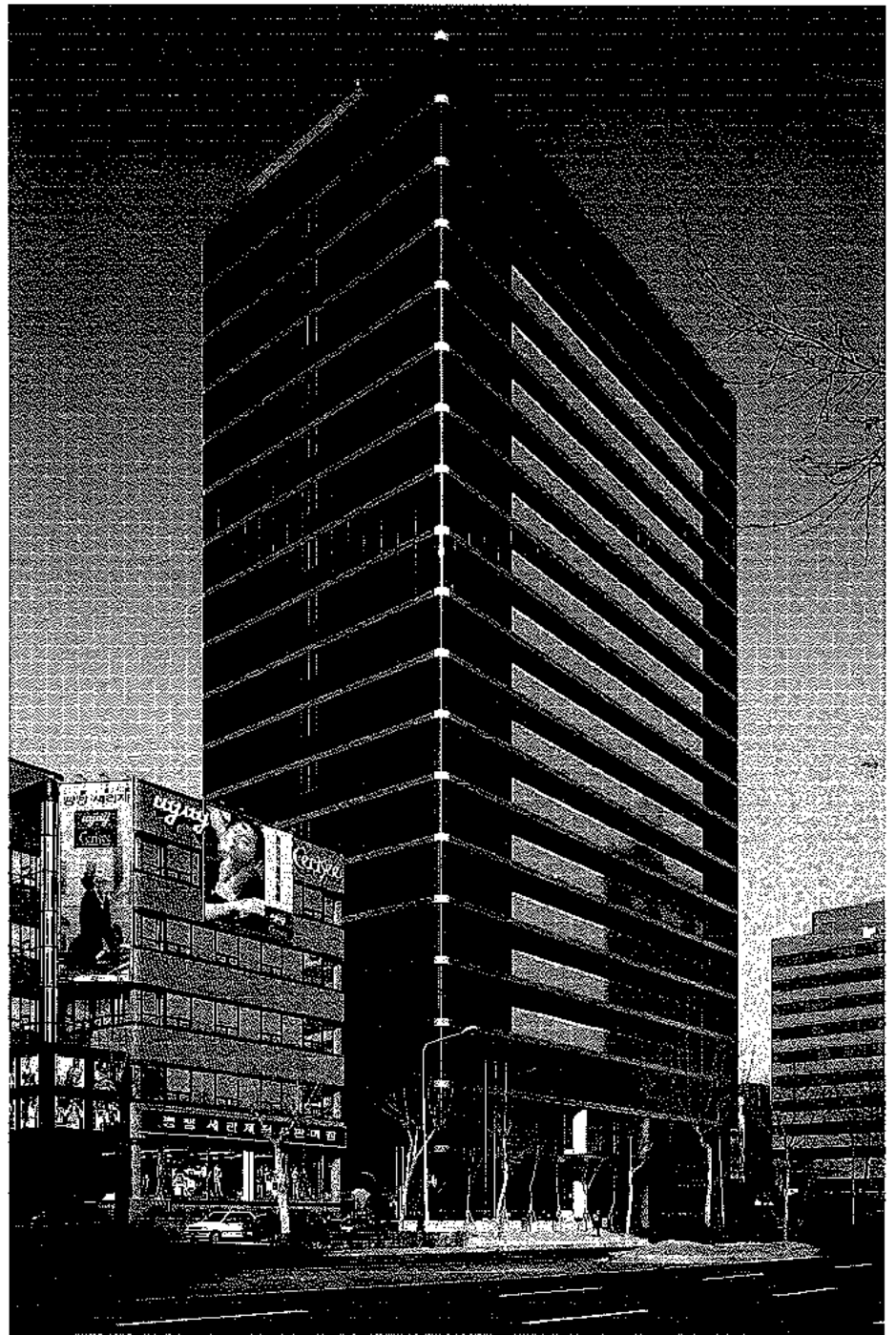
④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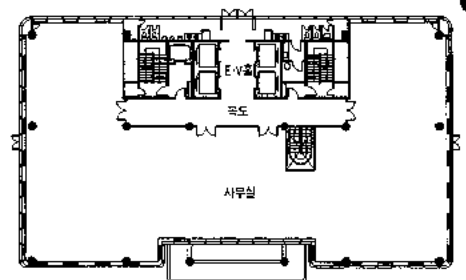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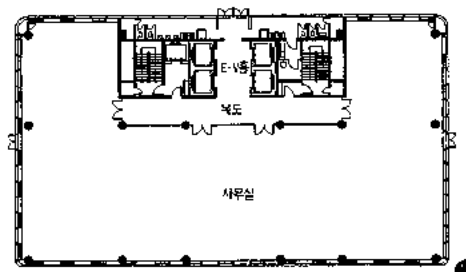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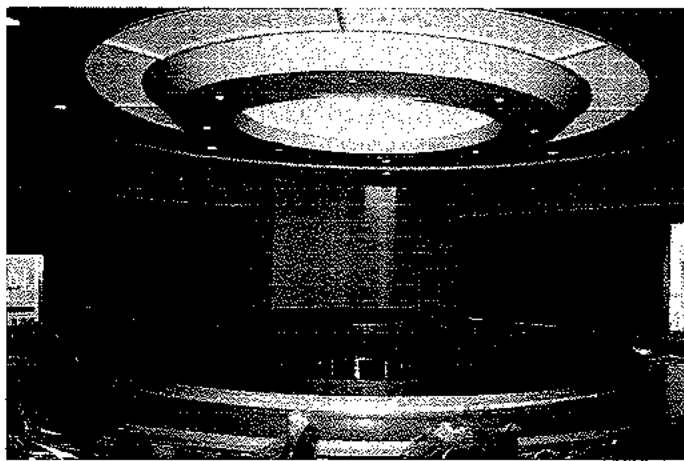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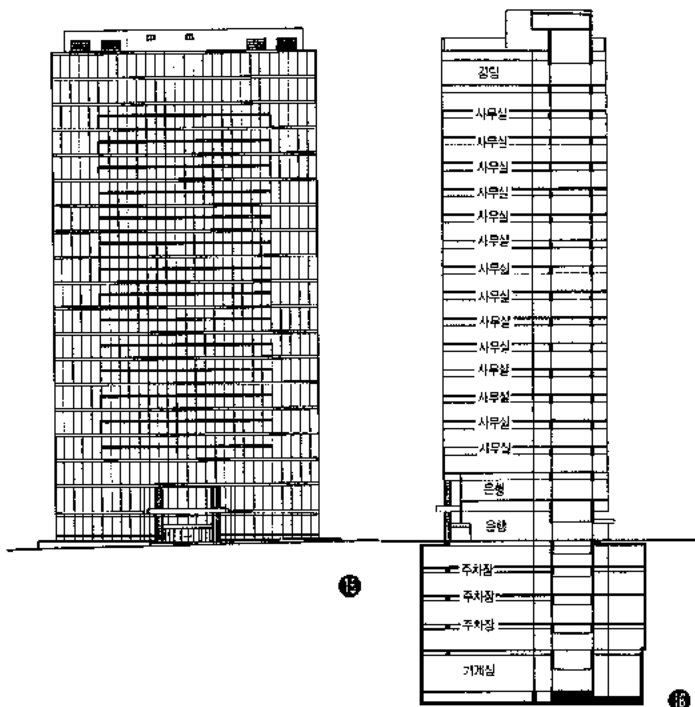
- ③ 외부상세
- ④ 지하주차장출입구측 상세
- ⑩ 주출입구측 외관상세
- ⑪ 급기탑
- ⑫ 측면에서 본 전경
- ⑬ 2층 평면도
- ⑭ 기준층 평면도
- ⑮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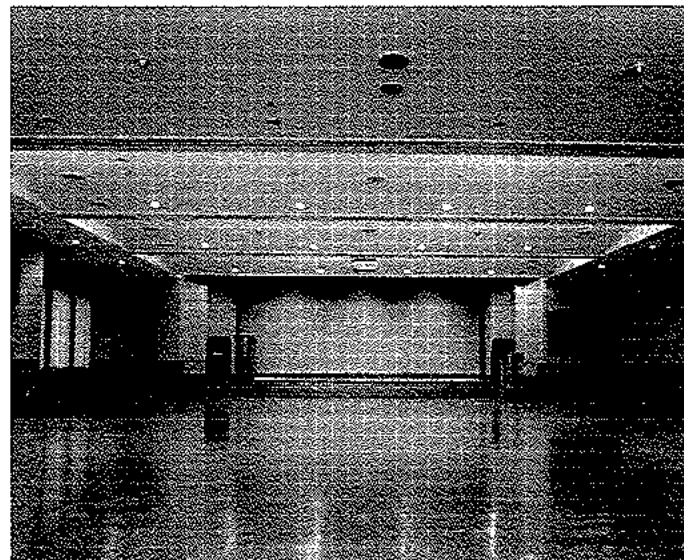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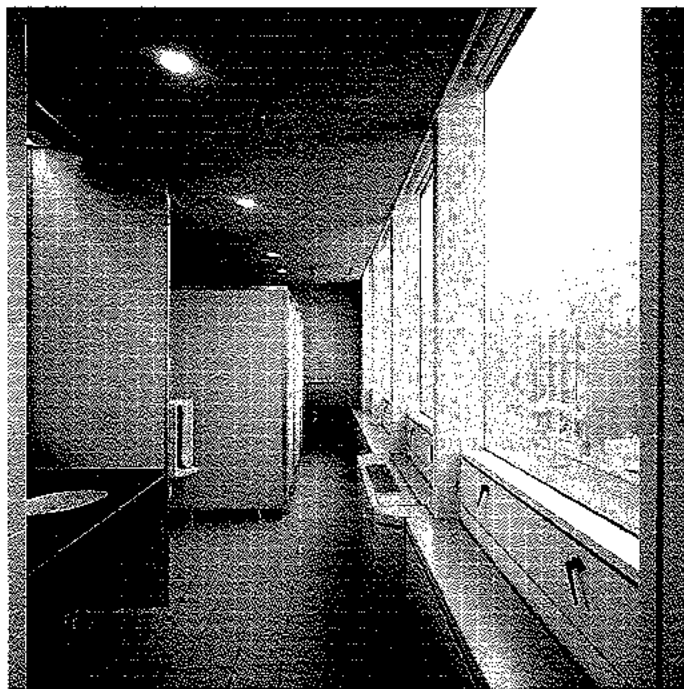
⑬



⑭



- 16 단면도
- 17 회의실 전경
- 18 엘리베이터 홀
- 19 화장실 내부 전경
- 20 18층 카페테리아
- 21 18층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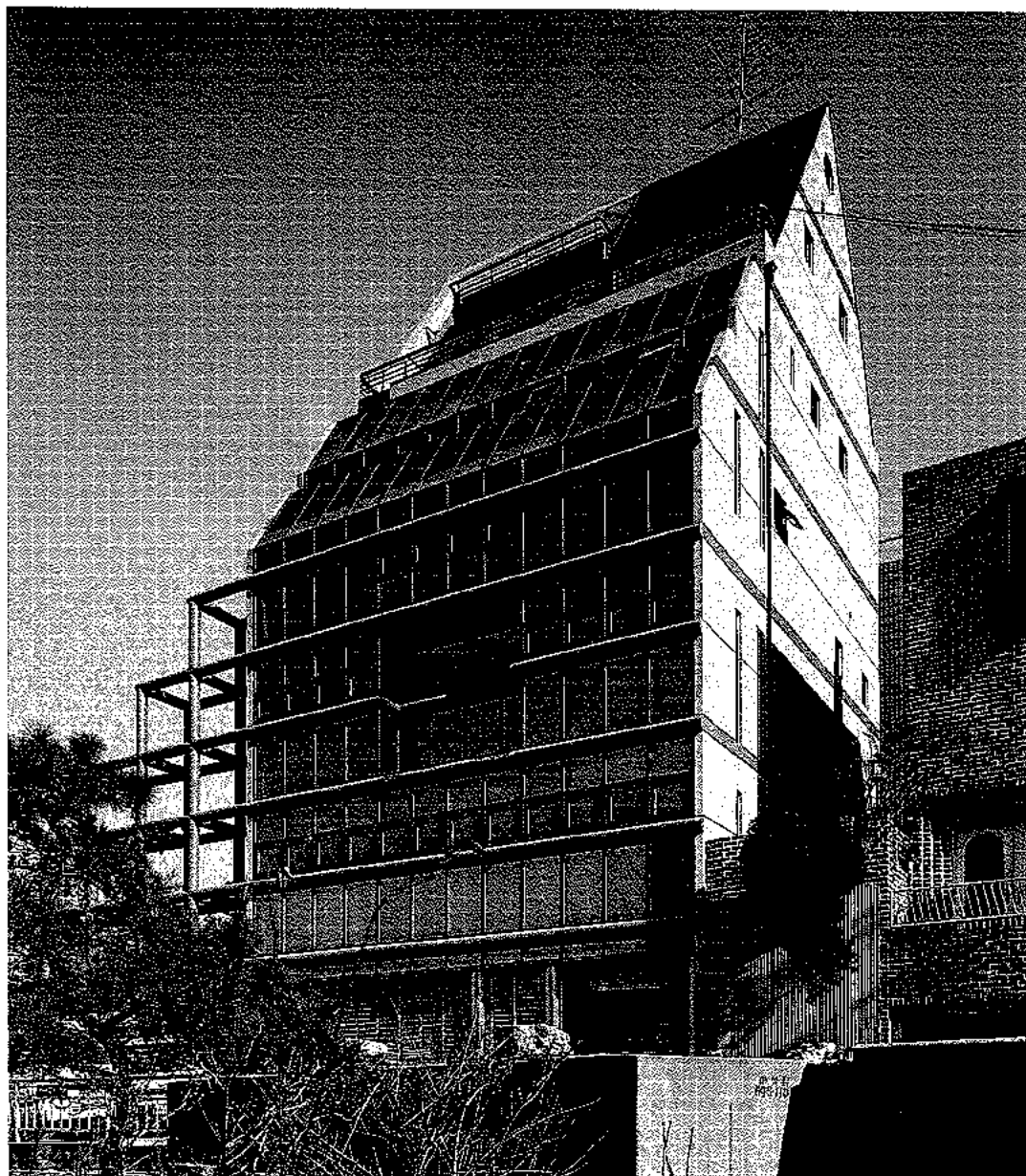


인크라인 II

Incline II

朱榮正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예건

Designed by Joo, Young-Jung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26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93.0㎡

건축면적 / 93.0㎡

연면적 / 589.16㎡

건폐율 / 48.18%

용적율 / 239.13%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드라이비트 외단열마감

+ 18mm 착색 복층유리

- ① 동측 전경
- ② 5층에서 올라다본 계단부 상세
- ③ 전경
- ④ 5층 거실
- ⑤ 원경
- ⑥ 기준층 평면도
- ⑦ 1층 평면도

대지 및 주변상황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공항로와 직교하는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는 본 대지는 공항로변의 대지 못지않게 인지도가 높고 대로와의 관계가 밀접한 위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건축주의 왕성한 의욕은 본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에 긴장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대지는 도로보다 약 6m 높은 레벨에 위치해 있고 공항로에서 대지의 2면에 향하는 시선을 차단할만한 차폐물이 없으며 대지의 동측면에는 푸른숲이 배경을 형성하였다.

배치 및 평면계획

대지의 형태와 규모, 접도조건이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결코 수월치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당거리가 공항로로부터 후퇴된 대지이면서도 도로변의 기존질서와 맥락을 의식해야 하며, 동시에 랜드마크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별성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점에 본 계획의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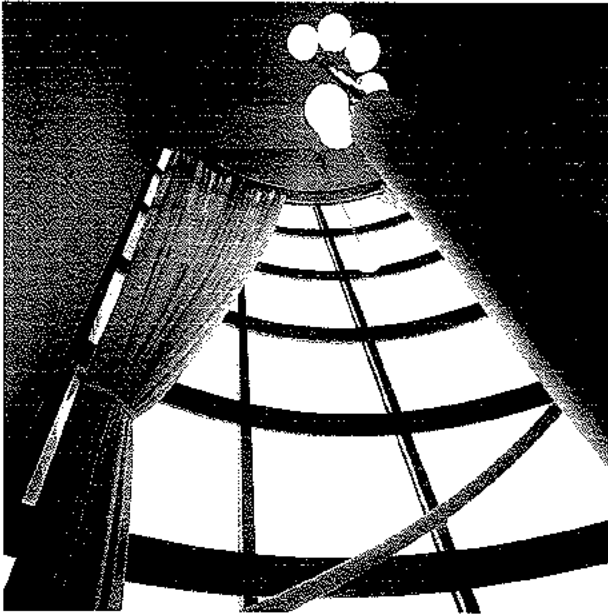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건축주의 사무실과 주택, 임대사무실을 넘겨치 않은 대지에 수용하다보니 대지의 개발용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따라서 대지의 삼각형 부분을 주차장으로 할애하고 삼각형의 평면을

4층 까지 올려 사무공간을 배치하였으며, 사선 제한에 의해 사선절제된 공간의 5,6층에 복층된 주택을 배치하였다. 코아를 전면 우측에 배치하고 대지의 잔여공간을 삼각형 자투리에 집중배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면도로의 여유공간 결핍을 1층 일부의 필로티 및 지하로 통하는 선크스페이스로서 보완교차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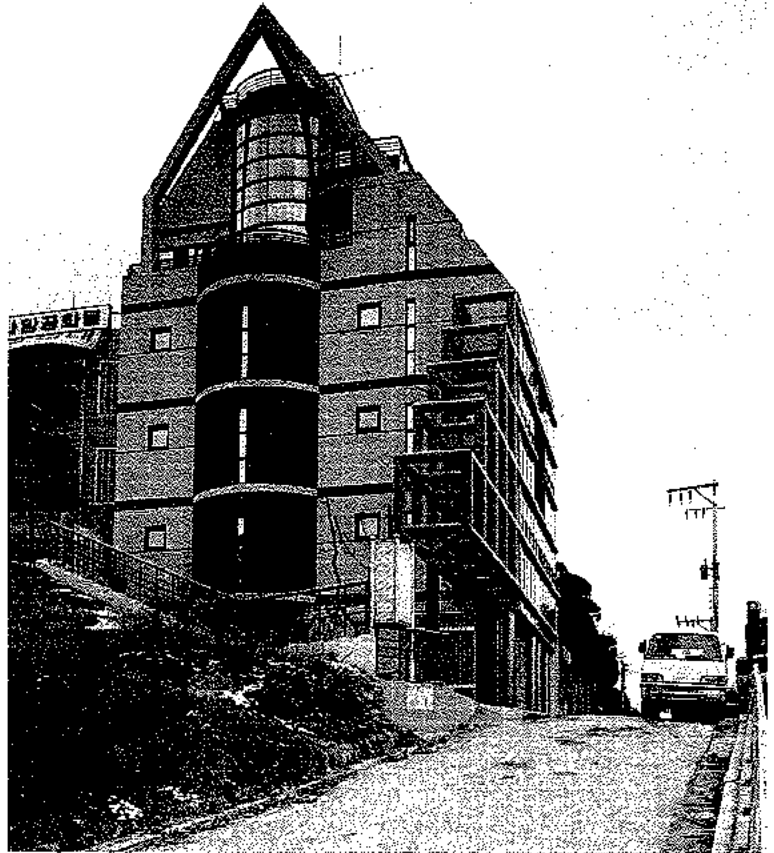
주택에서 거실, 안방, 침실은 동쪽에 펼쳐진 자연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형태 및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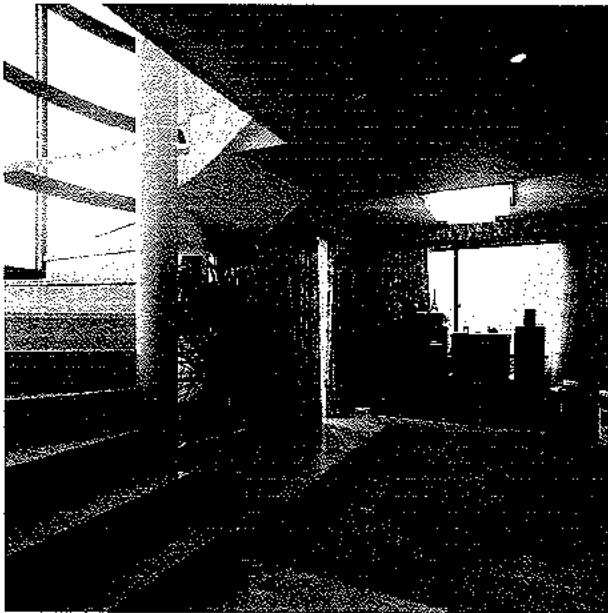
전면도로에 면하고 공항로에서 인지도가 높은 서측면에 정면성을 부여하였으며, 삼각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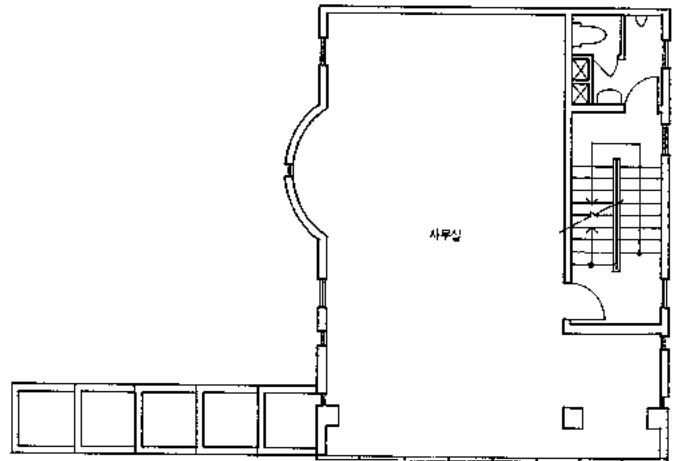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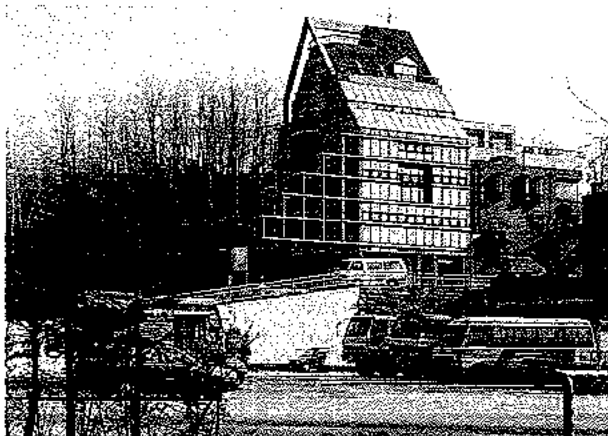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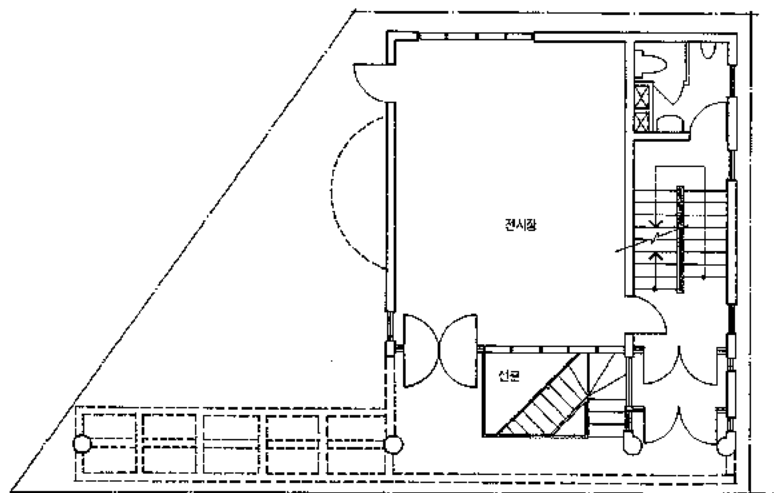
4



6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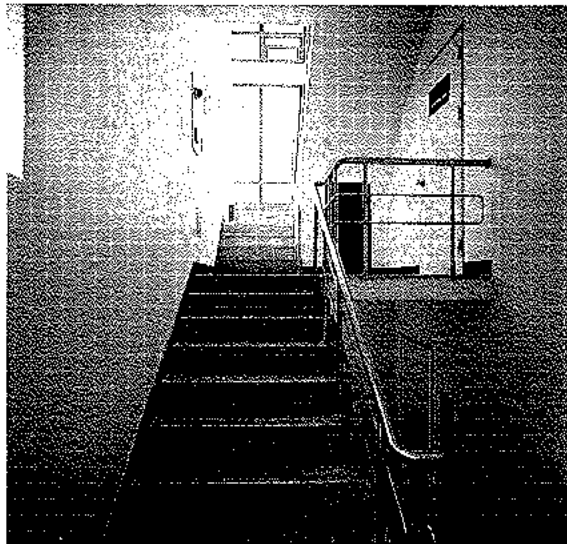
박공면이 드러나는 북측면을 매스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경쾌한 분위기와 주변 건물(V.I.P오피스텔, 에바스사옥)과의 조화를 의식하여 전면에는 반사유리를 사용하였다. 또한 측면 매스부분의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 곡면을 중심에 노출시키고, 상부 주택에서 후퇴된 곡면에 전면에서의 유리를 반복 사용하였다.

다소 복잡하게 부분 삭제된 상층부에 전체적인 윤곽을 유지하고, 자유로움 속에서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흰색골조로 형태를 갖추었다. 하늘과 조화를 이루도록 6층 사선 지붕면까지 유리를 연장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유리면을 층별로 분절시켜 변화를 주었다. 사선의 박공과 조화를 이루며 삼각형 잔여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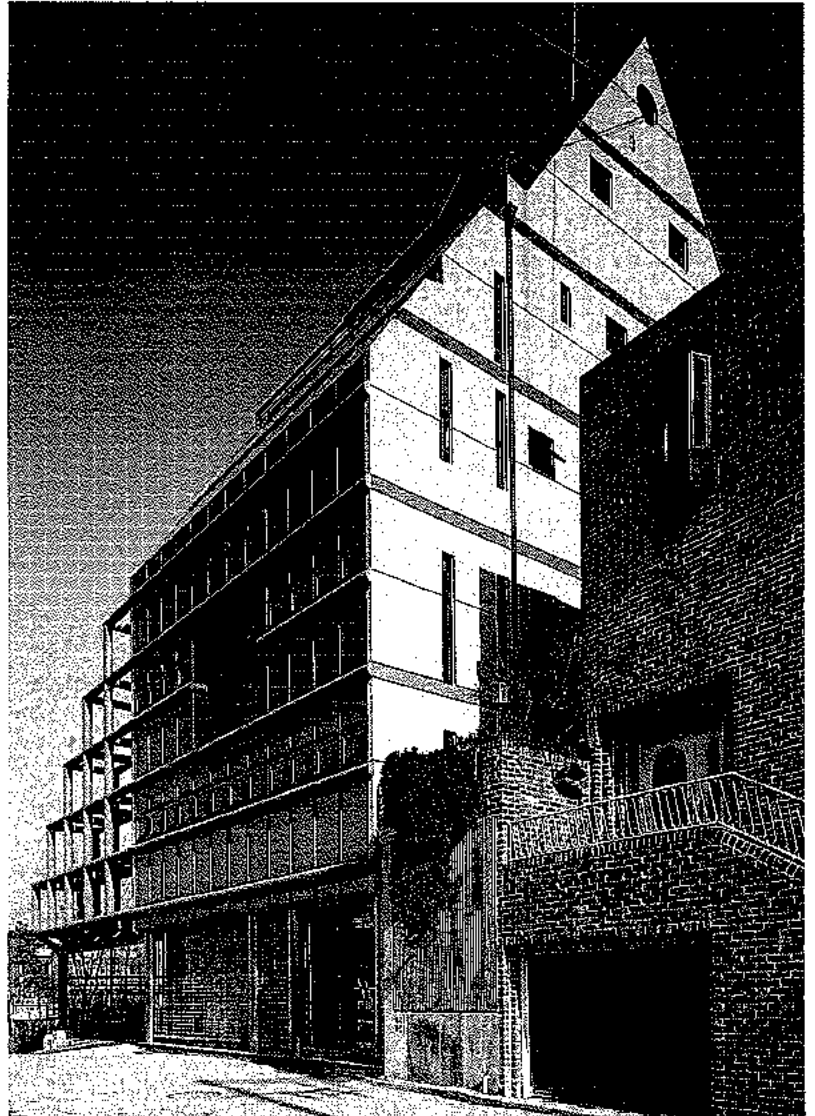
를 수직으로 세운듯한 철재프레임을 설치하여 형태 및 입면의 다양성을 꾀하여 보았다. 이것은 또한 서측과 북측 양면의 정면성이 상충되는 것을 해소시키면서, 동시에 전면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공항로를 지날때 나타나는 입면의 연장성과 경관을 강조하며, 측면으로 향하는 시선을 필터링 하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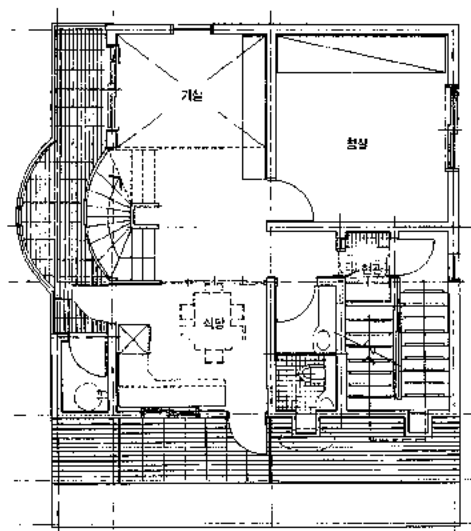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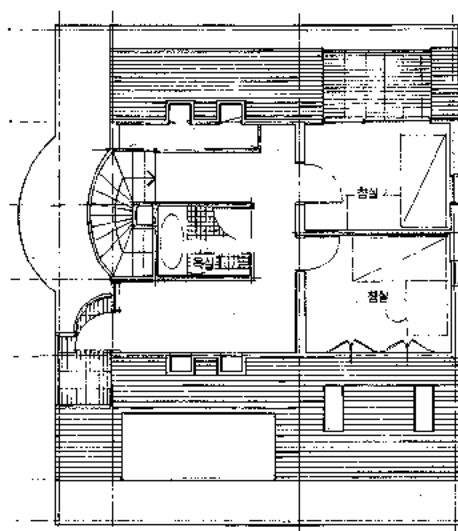
9



10



11



12

- 8 5층에서 본 계단부
- 9 연결 계단부
- 10 남동측 전경
- 11 5층 평면도
- 12 6층 평면도
- 13 스케치
- 14 입면투시도
- 15 전면상세
- 16 북동측 전경
- 17 올라다 본 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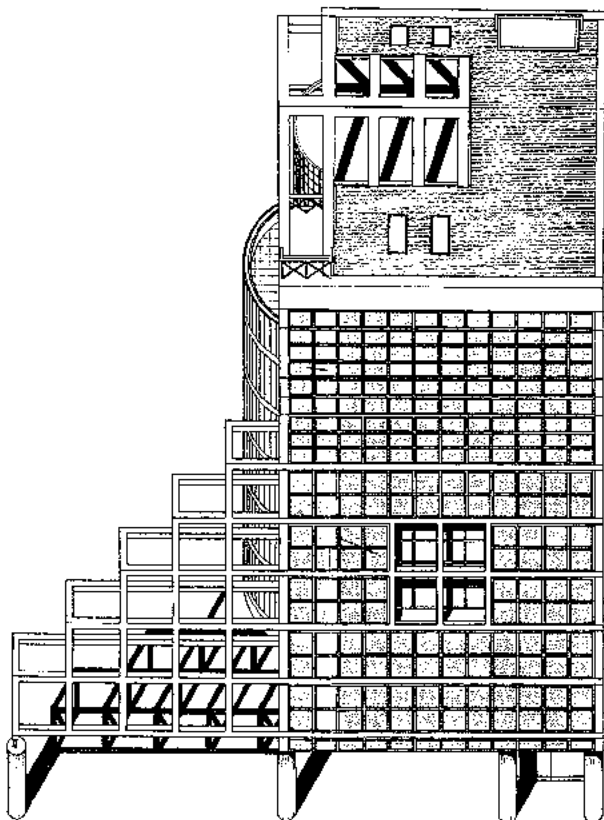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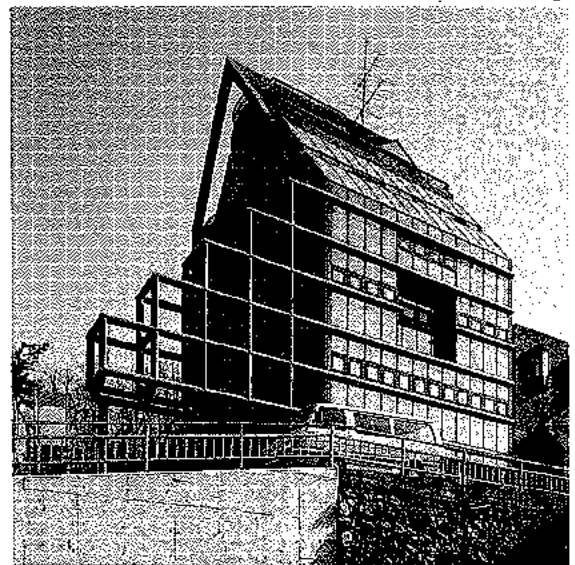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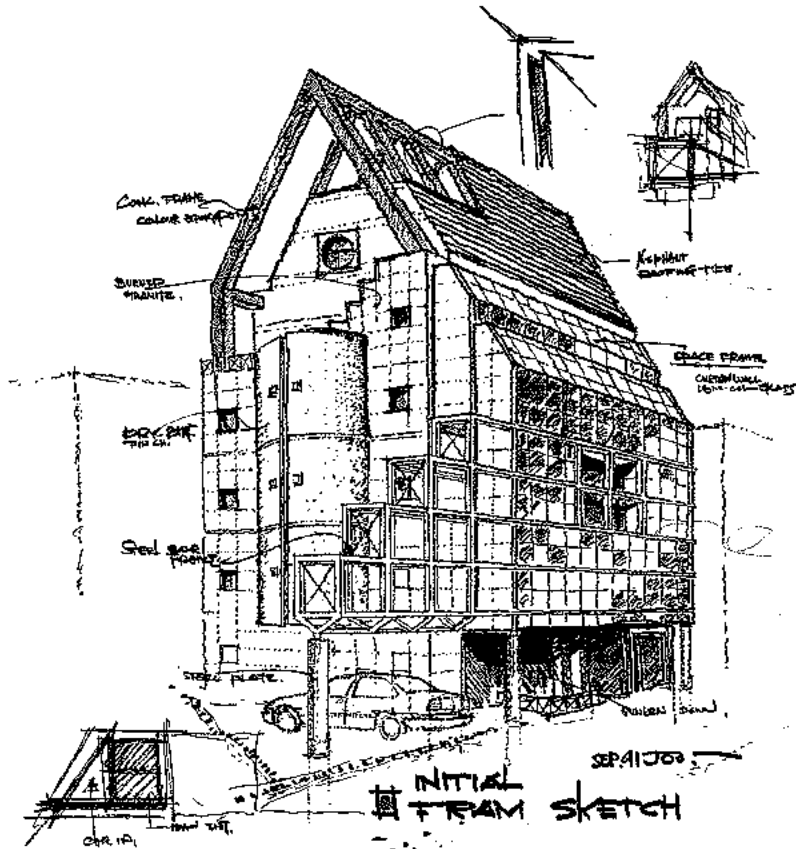
본 대지는 도시의 맥락 속에 속해있으면서도 대지 주변 배경이 인공환경과 더불어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 색채의 주류를 이루는 무채색이나 저채도 중명도의 중성색에 건물 자체가 Ground 보다는 Figure서 부각 될 수 있는 강한 고채도의 주황색을 액센트색으로 사용 하였다. 그리고 정면 중앙부 후

퇴된 부분에 사용한 순색은 2년전 설계하였던 인근 V.I.P오피스텔에서 도입하였다. 철제 프레임의 색은 원경의 배경이 되는 자연의 숲과의 색상 대비, 근경의 배경이 되는 측면 매스 부분과는 채도 대비가 되도록 과감한 색채계획을 시도하였다.

도시 맥락 속에서 개별성과 통일성, 형태의

자유와 질서, 외부적 형태와 내부 기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부딪힐 때마다 차선과의 타협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과 번민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새벽창가 새소리에 잠이 깬다는 건축주의 소박한 만족, 그 작은 위안이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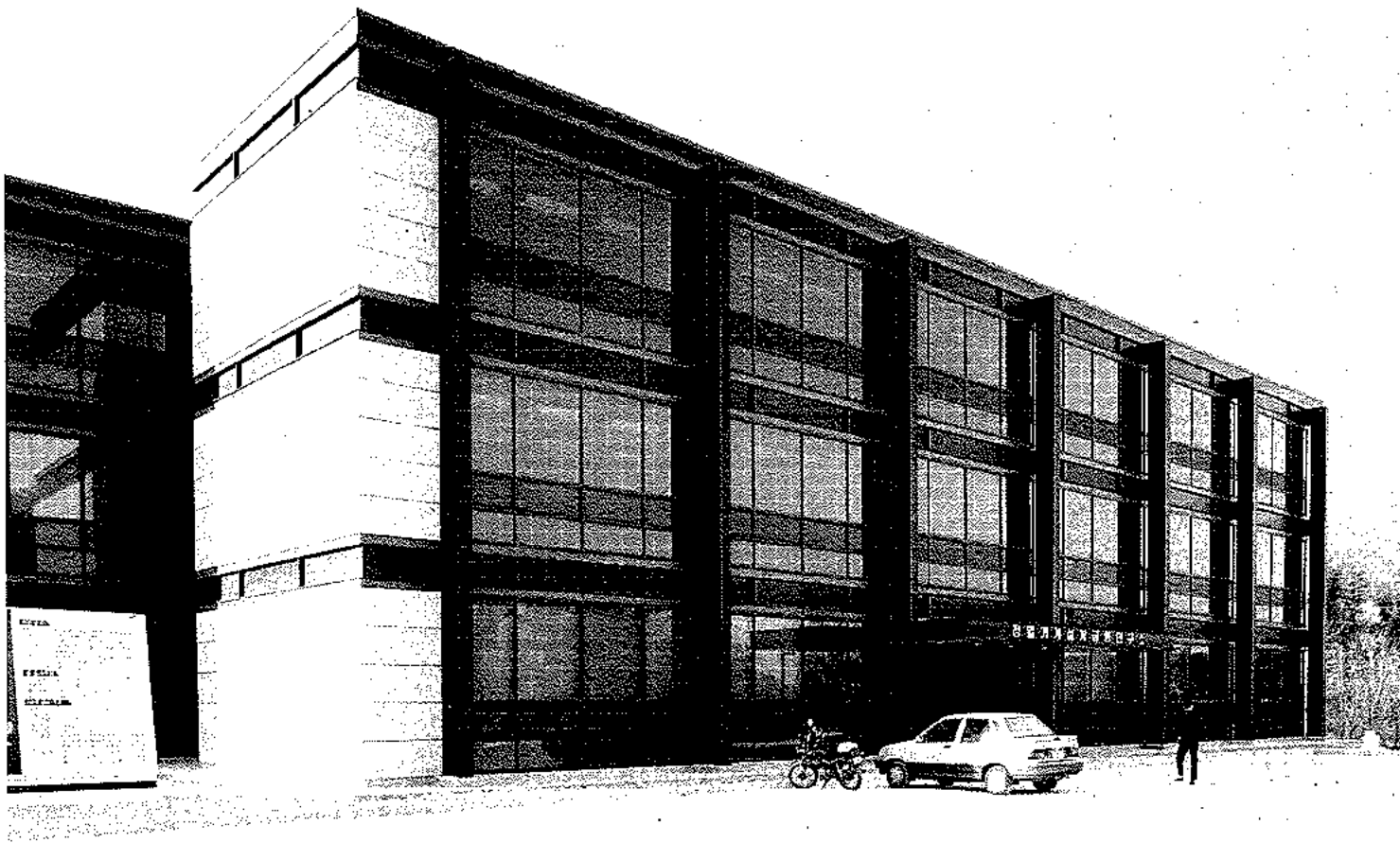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부설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Advanced Machinery Design

(주) 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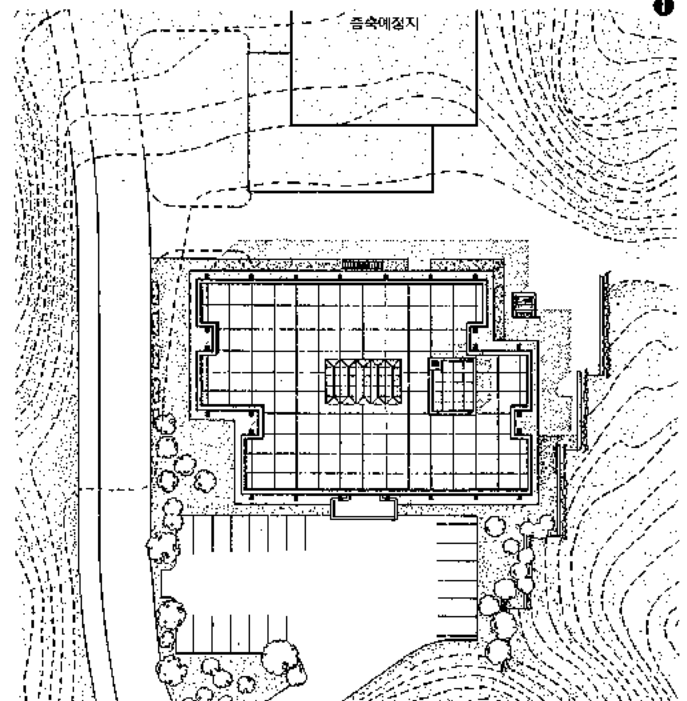
Designed by Seoul Architects & Engineers



배치계획 : 본 건물 (연구소본관)은 주변의 산세와 앞으로 건립되어 연결될 예정인「공장형 연구센터」의 건물 위치도 함께 고려하여 배치했다.

평면계획 : 건물의 남쪽부분에는 주로 연구원실등의 사무기능을 북쪽부분에는 연구실을 배치하고, 두 기능 사이에 아트리움을 설치하고 3개층이 관통되어 있는 내부공간에 천창으로부터 유입되는 자연채광이 고루 퍼지도록 계획했다.

건물의 외관 : 「정밀기계설계 연구소」라는 이미지를 건물의 외관에 표현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유리 철골 등의 정확하고, 깔끔한, 마감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재료들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구조체를 완전히 노출시켜 엄격한 비례를 갖는다.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외벽상세
- ④ 배면 외벽 상세
- ⑤ 천창으로 빛이 유입되는 Open부

- ⑥ 정면도
- ⑦ 종단면도
- ⑧ 1층 평면도
- ⑨ 2층 평면도
- ⑩ 3층 평면도

대지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학교내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학교용지
 대지면적 / 2,956.32㎡
 건축면적 / 1,163.5㎡
 건폐율 / 3.731%
 용적률 / 12.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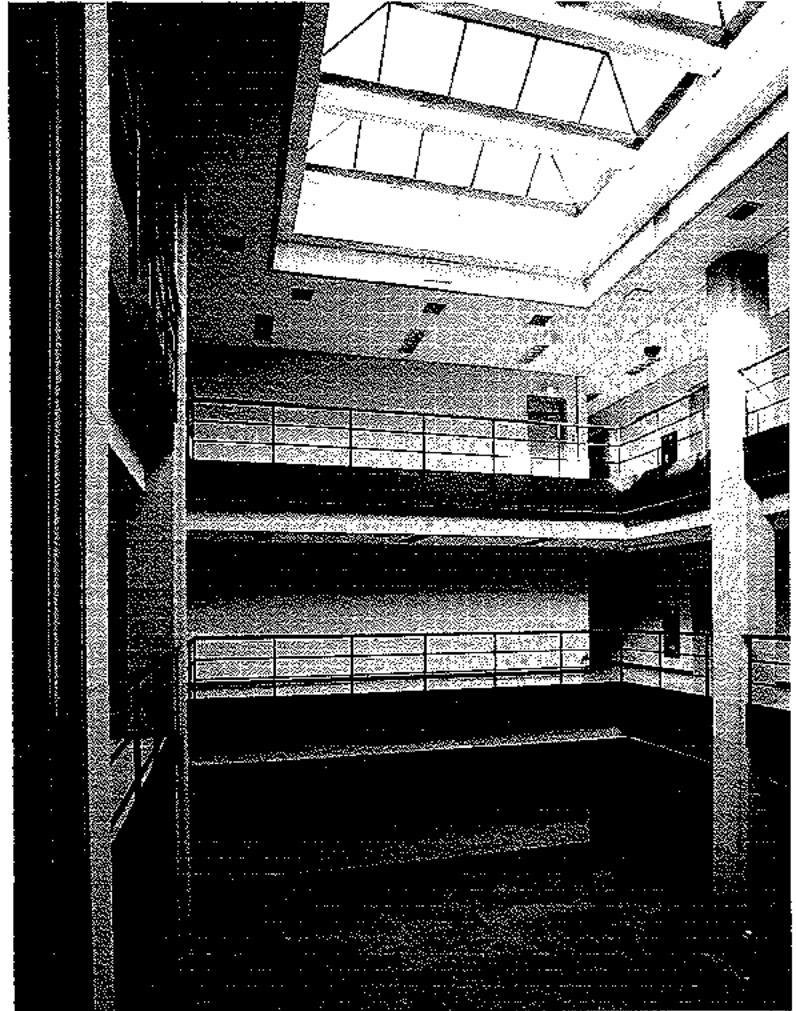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방식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 알루미늄 복합패널,
 노출철골
 주차대수 / 19대 (육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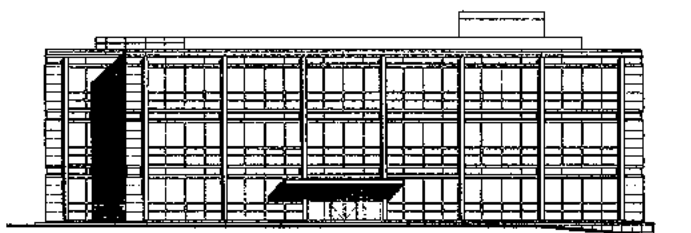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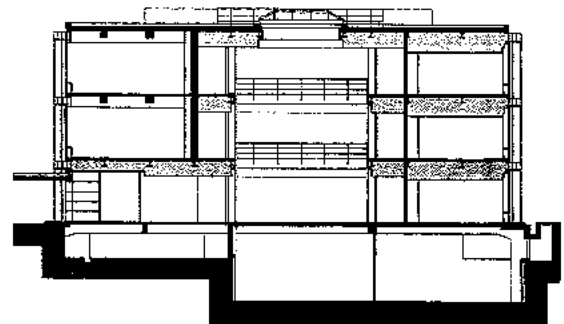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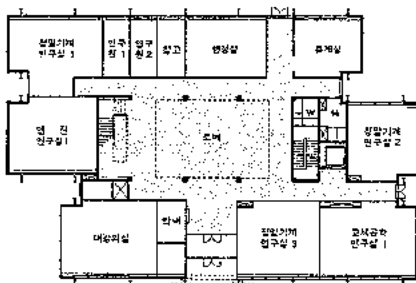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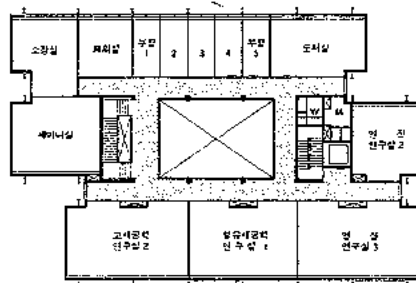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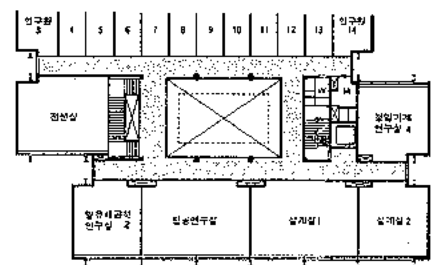
7



8



9



10

광주 Y씨 주택

Kwang Ju Y's Residence

韓瑛洙 / 건축사 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 - Su



대지위치 / 광주 직할시 북구 산안동

대지면적 / 126.69㎡

건축면적 / 48.16㎡

연면적 / 83.80㎡

건폐율 / 38.48%

용적률 / 66.15%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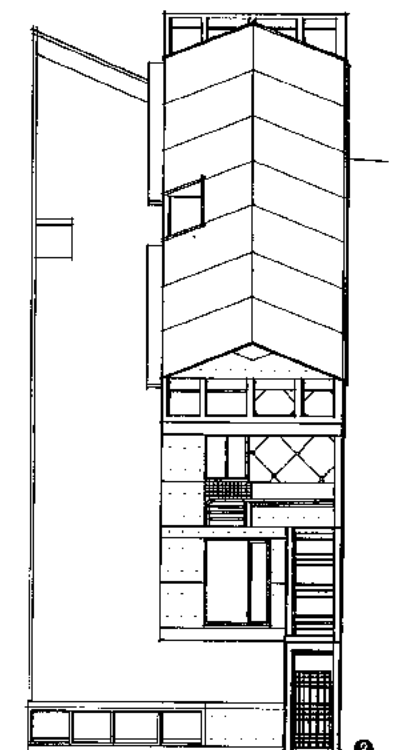
외부마감 / 외벽-노출 콘크리트

지붕-시멘트 몰탈 뿌림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도, 진입로 주변에는 눈과 밤이 있어 계절을 한층 느낄 수 있고 주택지로서는 다소 형성이 덜된 입지여건이다.

2면이 도로와 남측에 공원이 접하며 공원 계획에 의하여 일부의 대지가 떨어지고 남은 38평 정도의 소규모 대지이며, 부부와 두 자녀를 둔 직장인으로서 적은 예산으로 소규모의 주택을 갖고 싶어 하였다.

정원을 갖기 위해 도로에 한면을 접하고 2층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소 주택에서 오는 폐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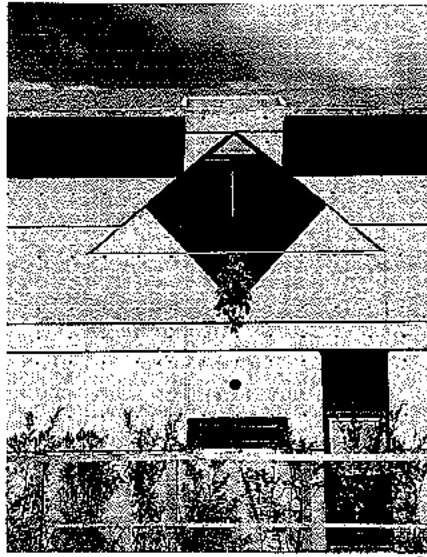


인 느낌을 고려, 거실과 식당을 한실에 이루어지게 하고 2층의 자녀방에서 발코니로 나갈 수 있으며, 조망을 고려한 코너창과 각실의 수납 공간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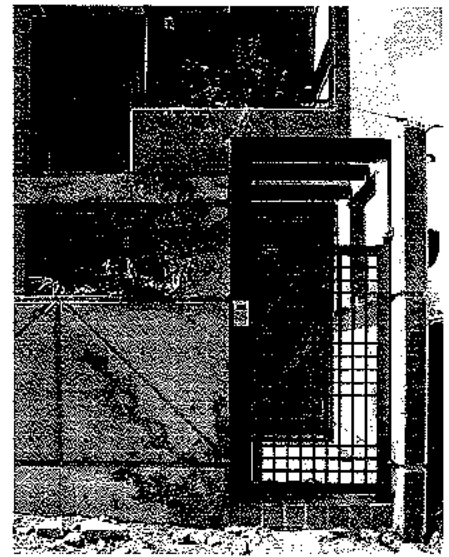
휴먼 스케일에 의한 높이와 자연에 친숙하게 하고 창을 바닥까지 수직으로 하여 흠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작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다.

1,210의 합판 모듈로 전면 9장과 측면 4장으로 하여 외벽을 노출 콘크리트로 하고 지붕은 물탈을 뿌려 마감하였으며, 경제성과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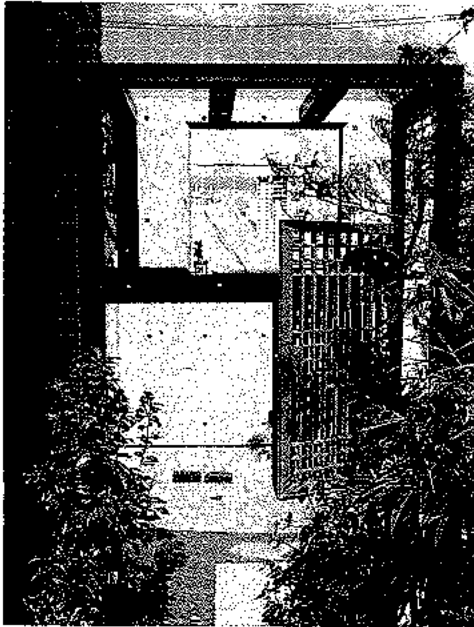
가급적 담을 Open시켜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으로의 확보를 유도하였으나, 다소 주거 환경이 높은 담에 폐쇄적인 문화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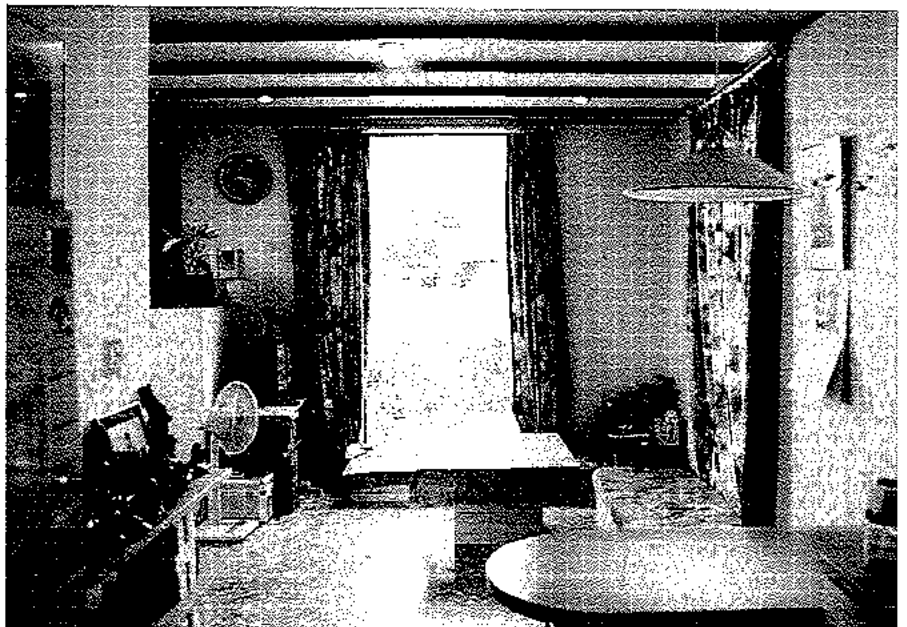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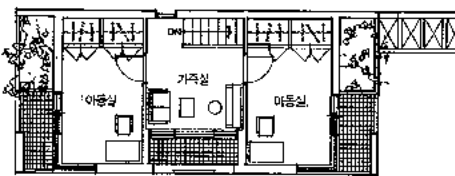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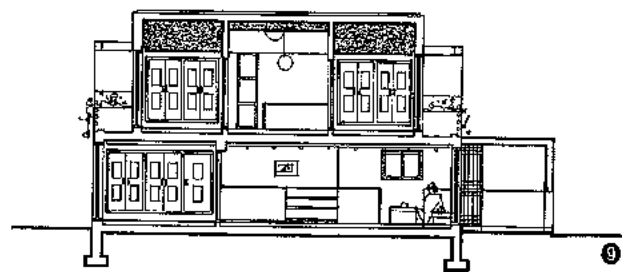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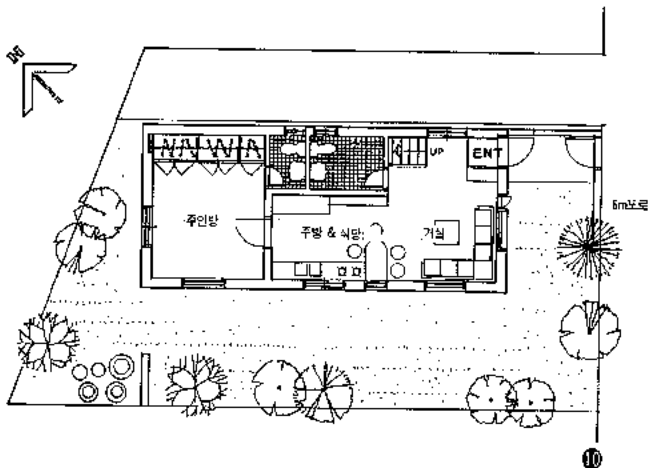
7



8



9



10

- ① 전경
- ② 2층 가족실
- ③ 엑소노메트릭
- ④ 전면 상세
- ⑤ 현관상세
- ⑥ 외부상세
- ⑦ 거실전경
- ⑧ 2층 평면도
- ⑨ 단면도
- ⑩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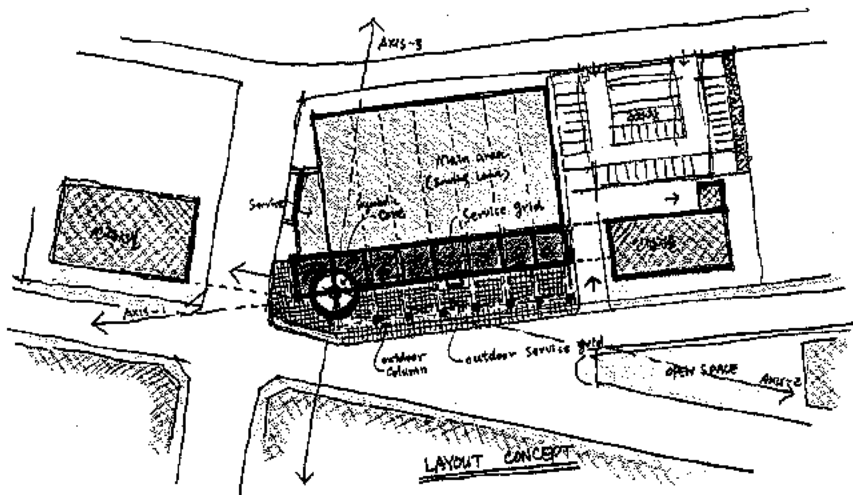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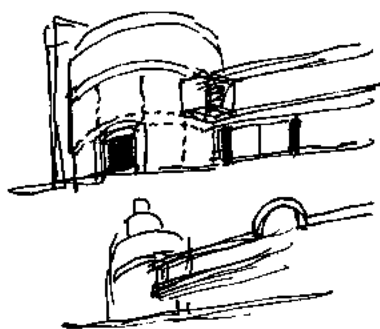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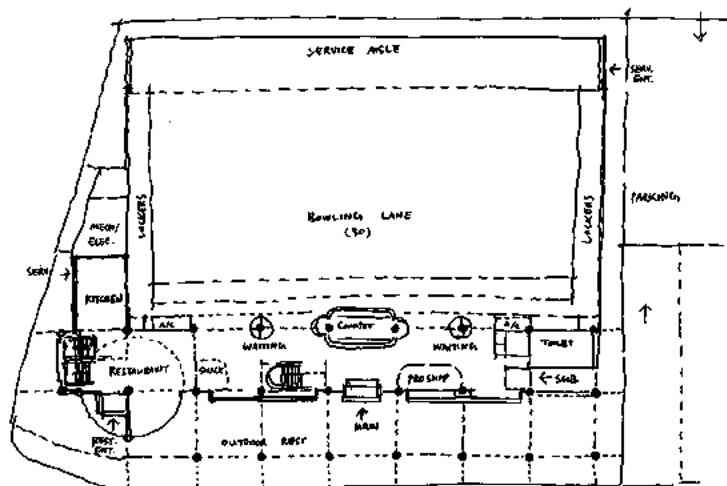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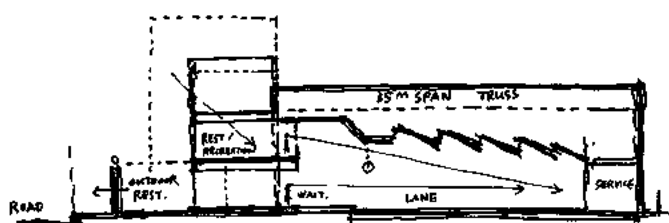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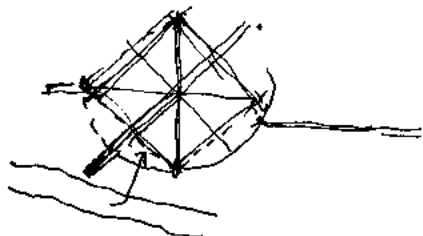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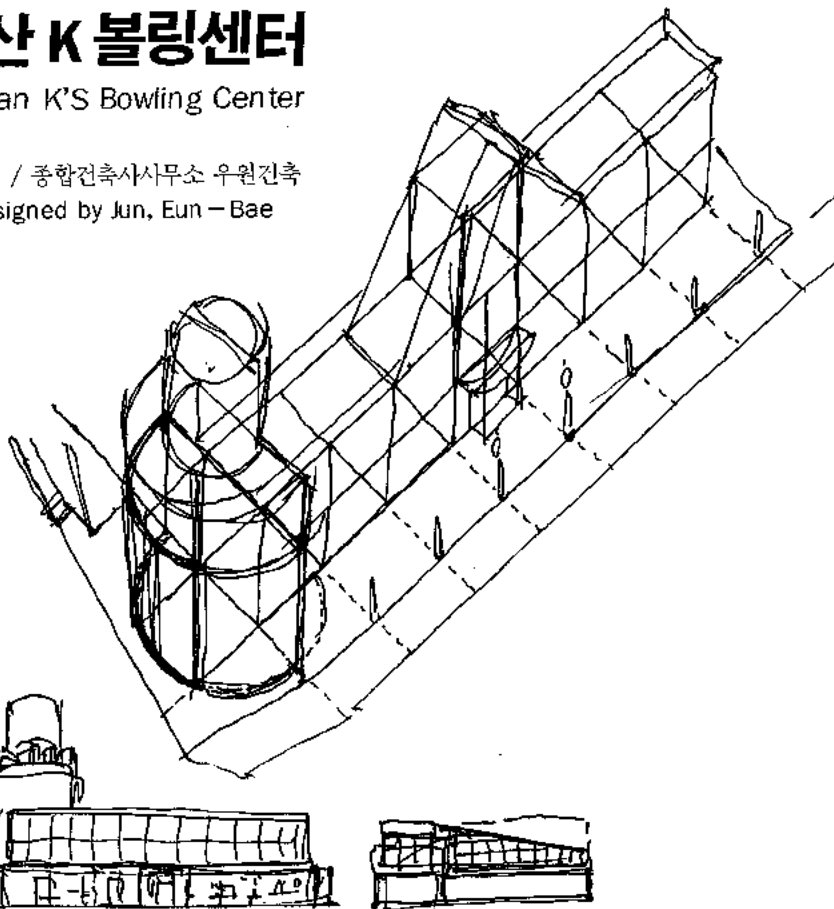
군산 K 볼링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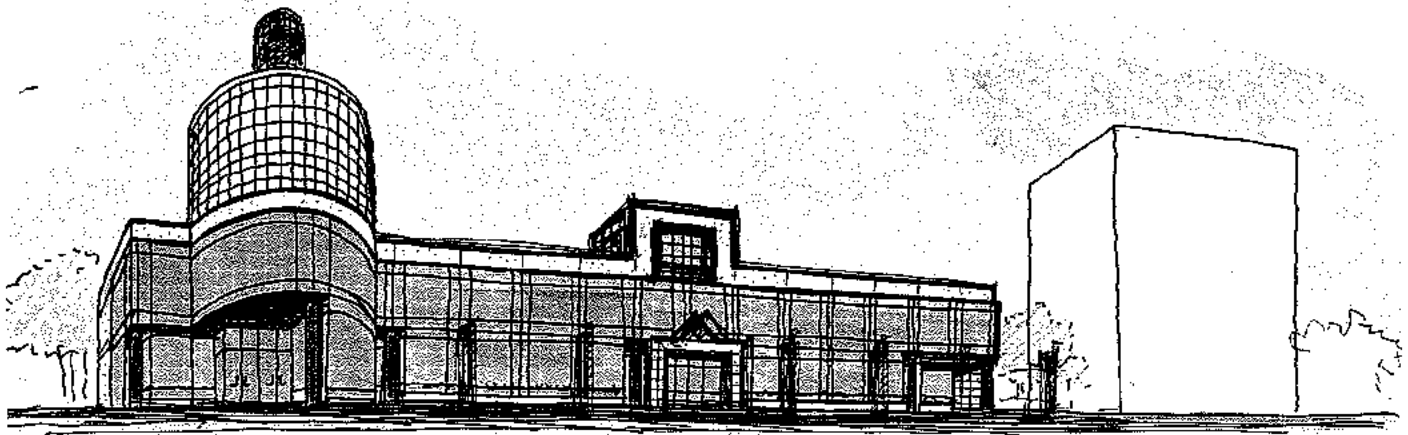
Kunsan K'S Bowling Center

余恩培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Designed by Jun, Eun - 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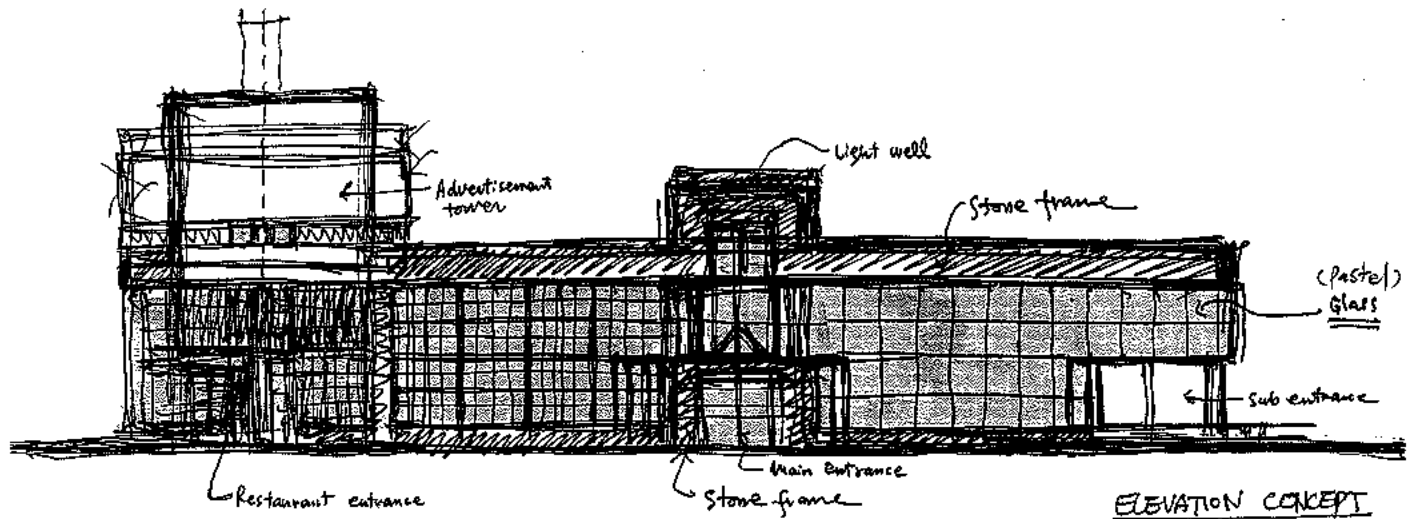
점, 선, 면, 원, 사각형, 삼각형, 시간, 공간, 빛,
그림자...

기억의 틀 속에 남아있던 원래의 모습들을 찾아
조립하면서 낡은 모습의 도시 가로에 작은 활력을
주는 장소를 시도한다. 도시속의 작은가로, 좁은
일부분이지만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지루한
길이기 보다는, 잠시 머무르고 갈수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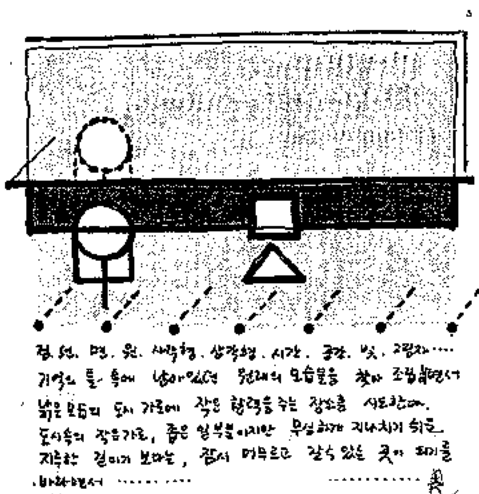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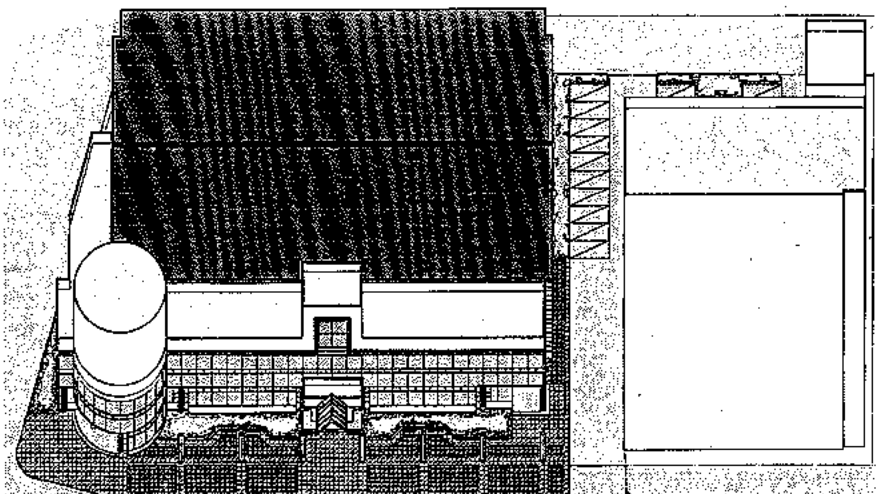
Bowling Center *Sketch*
A.14.8



ELEVATION CONCEPT



점. 선. 면. 원. 사각형. 삼각형. 시간. 공간. 빛. 그림자....
기억의 틀 속에 남아있는 무한대의 모습들을 찾아 조합해낸다.
눈은 보지만 손이 가늠할 수 없는 장력을 주는 장치를 시도한다.
도시들의 장을 가로, 좁은 일부분이지만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지속한 결미가 보이면, 잠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본다.



전북 농지개량조합 청사

Chunbuk Improvement of Farmland Associatio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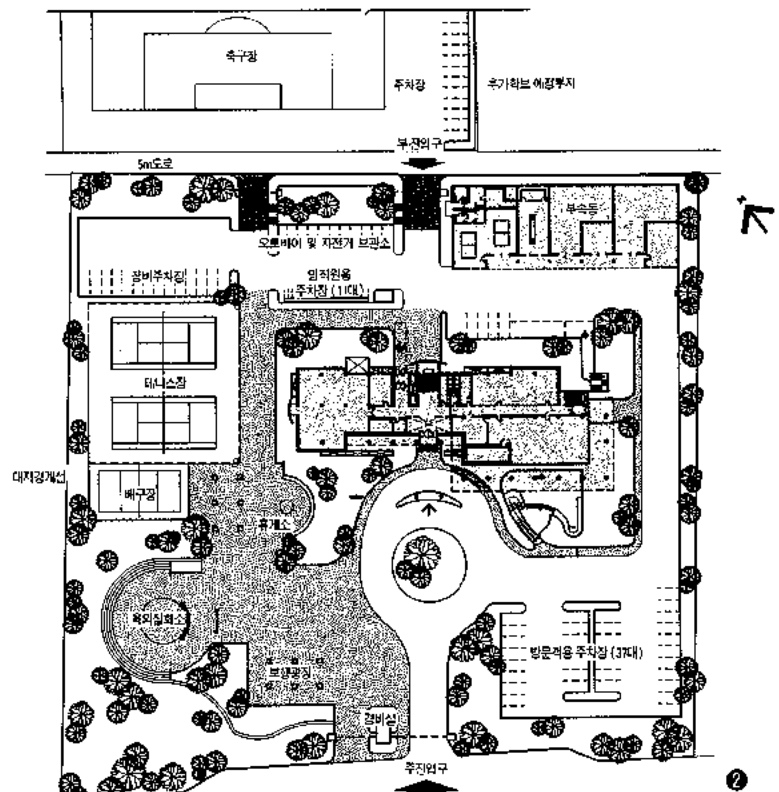
盧亨來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정

Designed by Roh, Hyung - R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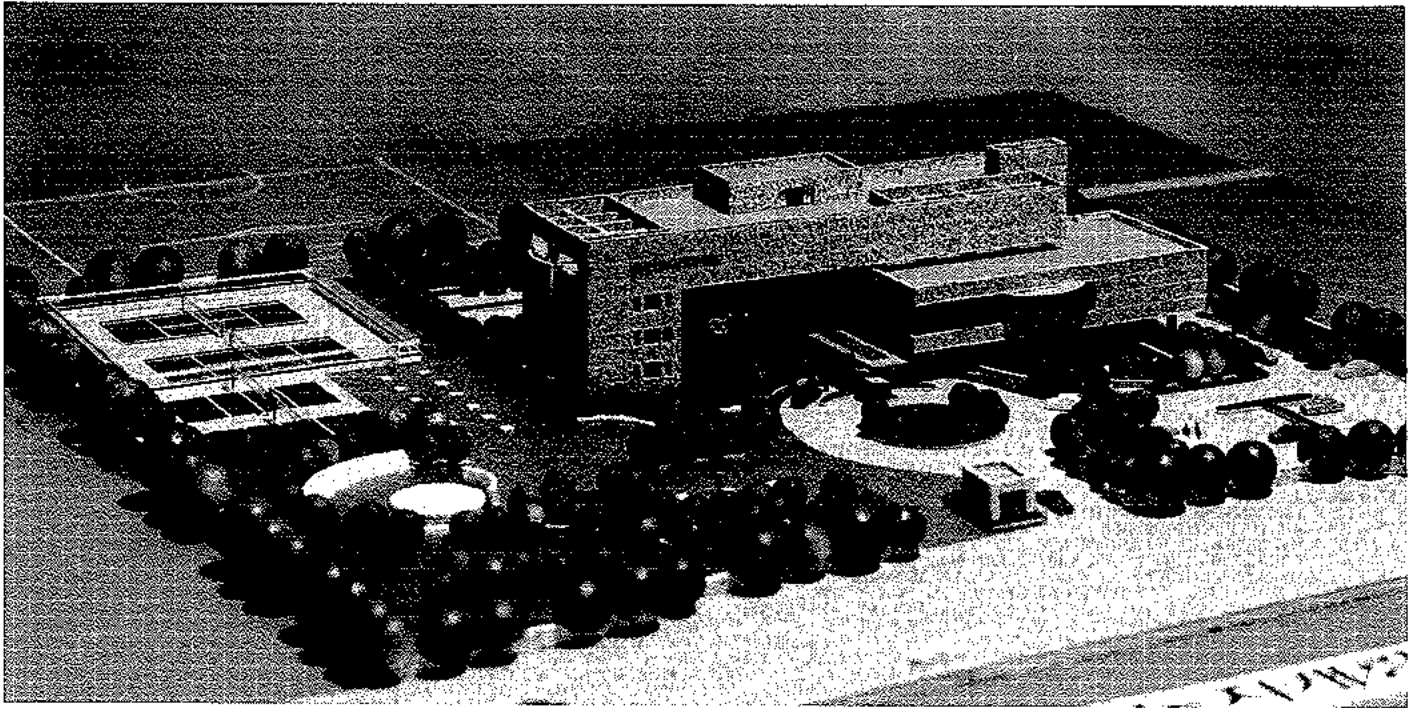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 이리시 목천동 715-22 외 2필지
 대지면적 / 16,551㎡
 건축면적 / 2,345.81㎡
 연면적 / 5,584.99㎡
 건폐율 / 14.17%
 용적율 / 28.13%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화강석
 주차대수 / 5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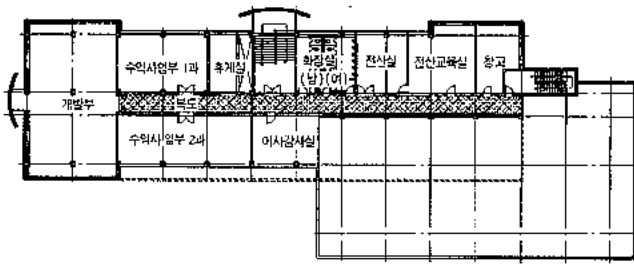
이 건물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무공간, 상황실, 대회의실, 전산실, 도서실, 식당, 사무실등 사무의 효율화 및 조합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 건물의 특징은 명료성, 통일감, 단순성, 비례감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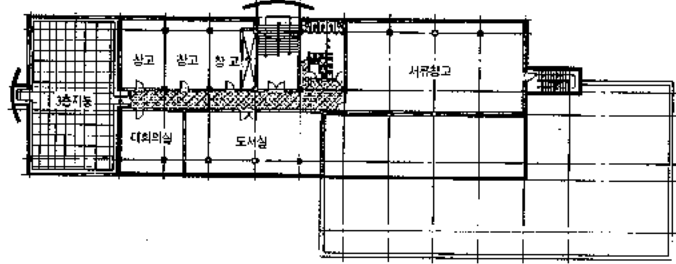
- | | |
|----------|-----------|
| ① 투시도 | ⑥ 1층 평면도 |
| ② 배치도 | ⑦ 4층 평면도 |
| ③ 모형 | ⑧ 지붕층 평면도 |
| ④ 3층 평면도 | ⑨ 종단면도 |
| ⑤ 2층 평면도 | ⑩ 횡단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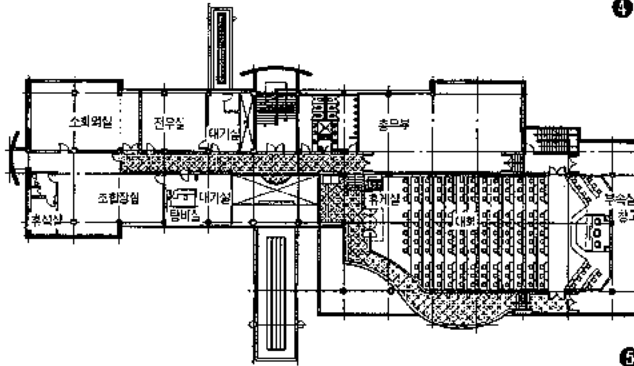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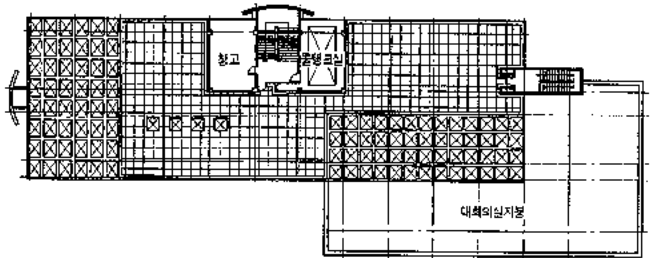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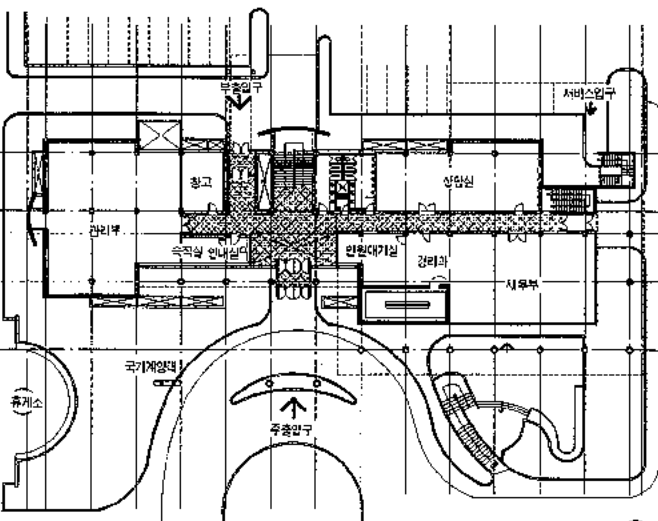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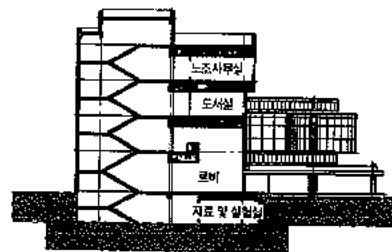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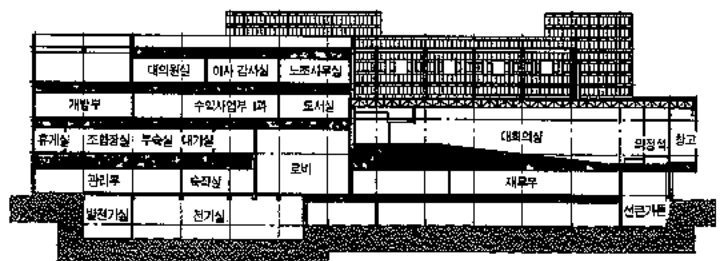
8



6



9



10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의 지푸라기

The so-called Zeitgeist, a Piece of straw

李廷根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by Lee, Jeong-Keun

지난해 연말에 4.3그룹 전시회가 '이시대 우리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연초에 건축과 환경 1월호에 게재된 특집을 통해서 다시금 전시내용을 재음미할 수 있었고, 심포지움의 지상 증계를 통해서 작가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 그룹으로서의 단체적인 발언과 각 참여 건축가들의 추구하는 바를 읽을 수 있었다. 전시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방향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건축계에 작은 파문을 던졌다. 개인적인 성취에 골몰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이제 외면해 버리는 한국의 건축

전문가 집단을 향해 말꼬를 텃다. 실령 결으로 보기에는 조용해도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회의 현실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과 의식이 마비된 건축행위의 풍토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에 건축하는 사람으로서의 목마름과 갈구가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의 전시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오늘의 우리 건축계의 상황을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참여 건축가들의 금번 건축전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설명과 토론자들의 논의 중에

공통적으로 많은 비중이 두어진 개념들 중의 하나는 시대정신이었다. 전시의 주제 '이 시대 우리의 건축'이 암시하는 바와같이 오늘 우리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느냐가 그들이 팬먼저 자신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던 것 같다. 만약에 이 시대를 규정할 수 있다면 오늘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표방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건축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했듯이 오늘의 우리 건축계가 처한 시대상황이 어떤것인지



솔(松)의 집 (곽재환)

명쾌히 정의할 수 없었던 것 같고 따라서 그에 대한 답안도 마련할 수 없었다는 토로가 역력하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시대정신이라는 허구에 빠졌다면 당연히 받아들이야만 할 결과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시대를 규정하기 위해 세기말적 현상이라는 고삐풀린 소의 새끼줄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이 처한 연대가 서양력상의 세기말이기 때문에 19세기말의 서구의 상황과 오늘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기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과장된 유추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가 지구상에 삶을 펼쳐면서 태양력상의 100년 단위 끝마다 공통적인 어떤 증세를 나타낸다고 진단한다면 이것은 기시스케일의 미신일 수밖에 없다. 흘러가는 시간에 매듭을 짓는 것은 역사라는 지나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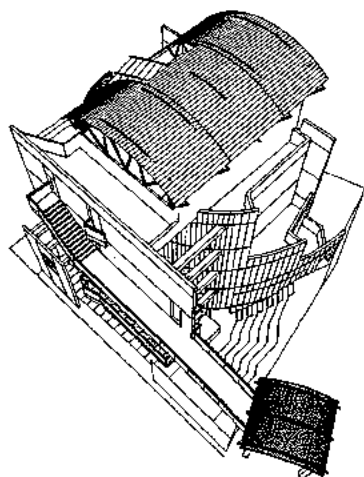
축적을 편의상 인위적인 단위로 묶어낼 때 생기는 인간의 인식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단지 오늘 한국땅의 건축적 상황이 지난 세기말 근대건축이 태동하던 서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했다.

4.3그룹이 주장하는 대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서구의 지난 세기말과 유사한 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진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만약에 상기의 가정이 옳다고 인정된다면 서구의 근대건축 창시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는 있겠다. 삶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건축행위가 일회성을 띄우고 있다고 보면 타산지석보다는 타산지적을 발미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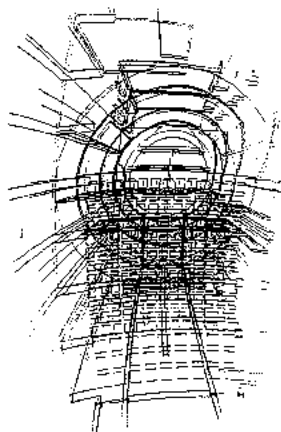
우리의 건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아무데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건축적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지난 세기의 다른 곳 상황과 동일시하여 그곳에서 답을 구하려는 것은 답이 준비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은 모험이다.

오늘 우리 건축인들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먼저 거듭 되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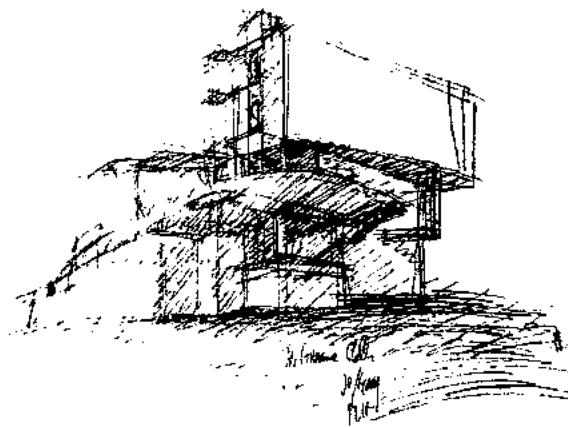
그리하여 다시 잡은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지푸라기라면 역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지난 세기말 근대건축 태동기에는 어떤 시대정신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오늘 우리의 건축도 우리의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지난



Bridges for Us(김병운)



Heavenwards(김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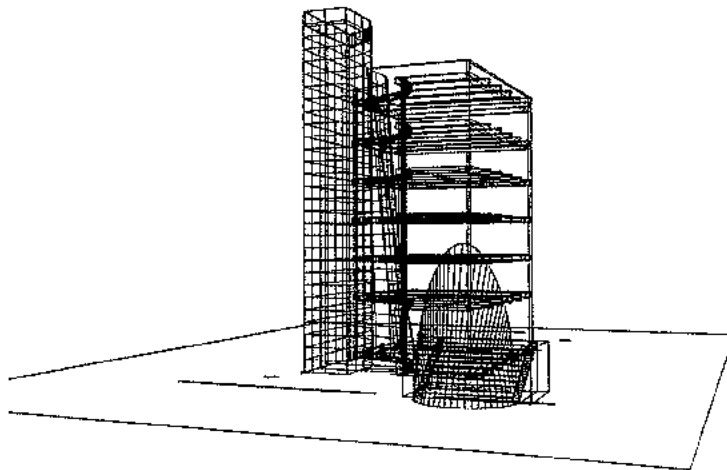


Performance Hall(도각)

세기말의 시대정신은 무엇이었고 그래서 근대건축 태동기의 건축가들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오늘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이기에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등식마저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평행동식을 만들지 않은 것이 의식한 것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결과를 보면 오히려 다행스럽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지난 세기말의 서구 사회에는 미리 마련된 어떤 시대정신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읽고 깊이 자각하여 해결안을 내는 건축가들이 많았었다는 것이다. 역사에 기록된 그들의 그 시대 사회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각기 달랐고 그에 따른 건축적 제안도 여러가지였지만 그들이 어떤 정해 놓은 시대정신 밑에서 건축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지나간 시기를 뒤돌아보며 그 시기에는 건축행위에 있어 어떠한 경향이 매우 강했으며 주도적이었다 하는 말은 성립한다. 그러한 건축행위의 흐름중에 어떤 것은 그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꽃을 피우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사장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까지 살아남은 경향은 옳고 사라진 경향은 옳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가 요구된다. 하여튼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프로파간다로서의 시대정신은 있을 수 있으며, 미리 정해진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한 철학적인 논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주체사상이나 새마을 정신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시 반복하면 어떤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같이 한데 모여서 합의해 놓는 것과 같은 시대정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 근대건축의 태동기에 어떤 건축가는 생산방식의 표준화와 대량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건축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부류는 사회 변혁기에 대량생산과 공업화, 자연과학적 사고와 기계에 대한 신앙의 맹대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중시하여 이러한 경향으로 인간생활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극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늘 돌이켜 생각하면 이 둘중 어느 태도가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건축가들은 공업화된 생산방식의 과정으로부터 관심을 돌려 그 수단으로서의 기계의 구조와 형상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건축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월드북 센터 (동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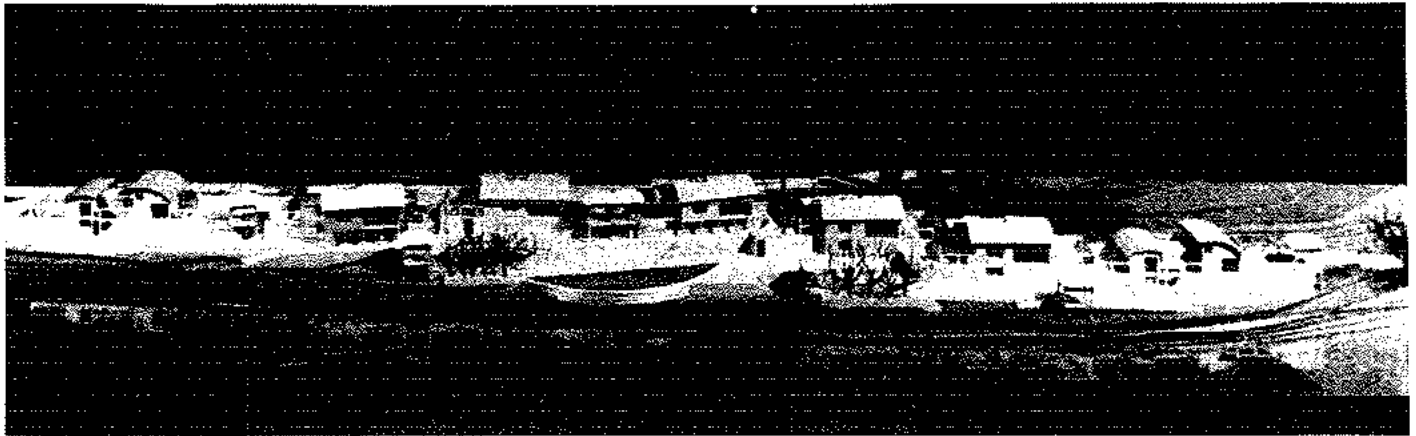


미당 깊은 집 (민현식)

오늘 우리는 서구 계몽주의 사조가
 풍미하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의
 시대정신은 이성주의였다고 말하고 그 시기를
 이성주의 시대 (The age of reason)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인간 이성의 힘을
 강조하고 모든 사고의 발원과 귀착점은 다른
 것이 아닌 인간 이성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
 사고의 조류는 그들 스스로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의 서구 정신사에서
 인간사고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된 그들이
 돌파구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인간
 이성이었을 뿐이다. 오로지 시대정신이라는
 개념을 우리시대의 절실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건축행위를 삼자는 의미에서 제시하는
 것이라면 굳이 특정한 의미를 내포로 가지고

있는 슬어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시대정신이란 개념이 건축용어로 편입된 것은
 근대 미술사의 기원이 독일 문화권의 철학과
 역사학의 부산물로써 태동했기 때문에 당시
 독일의 문화사조를 휩쓸던 전체주의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보편적 의미에서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회학이론의) 영향으로
 보아야한다. 이러한 사조에 큰 몫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헤겔의 논의는 개체와 전체의
 관계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편적인 논의가 당시 사회운동의 필요에
 전강부화하여 전체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했고 그래서 시대정신이란
 개념이 그 목적에 봉사한 것이라면 한정적인
 목적이 더 이상 필요없는 사회와
 시기에서까지 보편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는
 없다.

건축에서의 '시대정신'이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건축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가상적인 사회의
 시대정신이란 있을 수도 없다. 건축인으로서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철저하고 냉철한 스스로의
 깨달음이 앞서야 한다. 각 건축인들의
 깨달음이 건축행위라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경향이 다음시기에까지도 유효한
 건축행위의 지침을 형성하였을 때 후세의
 사람들이 이십세기 말에는 어떠한 경향이
 있었고 그 시대를 특징지우는 어떤
 시대정신이 있었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건축계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건축의 상황을 진단하는
 개념들은 사실상 외래 문화권에서의 현상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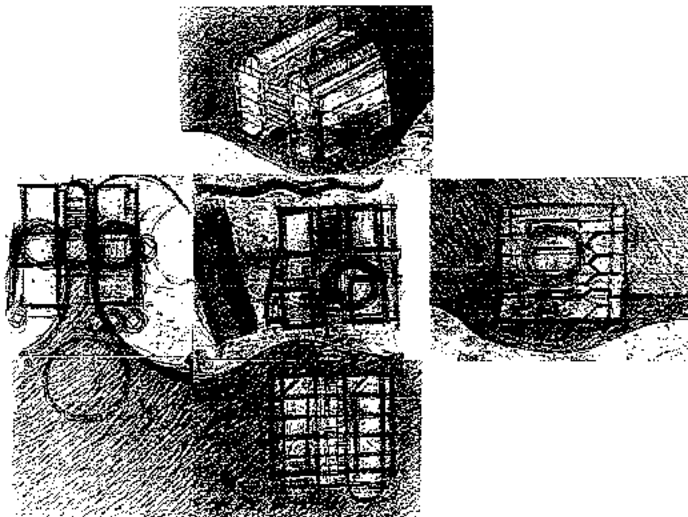
潘心樓가 있는 마을 (방월린)

과악하고 인식하는 내용들일 뿐 그 개념들이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가령 80년대 이후를 다원주의시대라고 자주 얘기하고 60년대를 영웅주의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교과서와 잡지를 통해서 주입된 정보이었지 당대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의식한 건축행위와 밀접히 결부된 개념이 아니다. 선동적인 목적을 가진 구호가 아니라면 당대를 어떤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아래 묶기는 참으로 어렵다.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슬들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노력들이 그 시대를 진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때 후세인들이 그 노력의 집합적 특성을 어떤 시대정신이라고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주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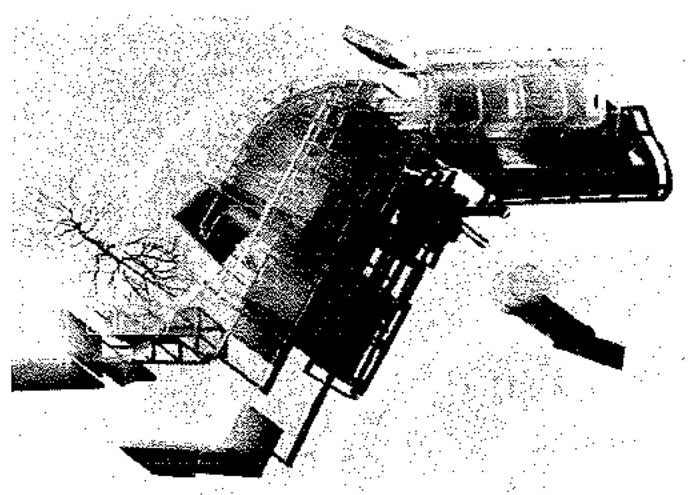
종래에는 서구 근대주의의 모태가 되었다고 보지만 그것은 후세의 평가인 것이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격리시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어떤 레이블을 붙인다는 것은 매우 가상적인 것이다. 조선조 영정조 시대에 실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청나라 문화를 접한 조선의 유학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당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청나라 문화를 접한 조선의 유학자들이 자신들이 처한 당시 사회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새로운 세계관과 경세관을 피력하였을 뿐이다. 계몽주의가 서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실사구시의 사상이 왕조사회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한국사회의 건축행위에 어떤 새로운 개기를 마련해 주었다면 한국

건축에도 나름대로의 근대주의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의 이상적인 가상의 경로를 꺾어서 지나갔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이시대의 건축인들이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지나갔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이 시대의 건축인들이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하여 대응했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었는 하는가에 따라 후에 정의될 일이다. 오늘 우리의 몫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문가로서의 삶을 실천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오늘의 생활 공동체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迷路 (백문기)



鶴岡 守拙堂 里門 291 (송효상)

현실주의라는 것은 삶의 이상을 밀어두고
현세적인 타협에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자각하여
지나간 역사와 다가오는 시대를 단단히
연결하는 튼튼한 고리를 만드는 노력이다.
현실을 정확히 투시하지 못하고 탄침을
부린다거나 현실세계의 표피적인 현상에
안주하는 것은 바로 4.3그룹전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자폐증을 보여 주는 것이다.
건축이외의 전문분야나 산업 및
생활공동체의 삶의 영역 등과 상호 교류하며
생각을 주고 받아서 건축을 살찌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자기 충족적인 영역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자폐이며 스스로의
영역을 축소하고 퇴화의 길을 걷는 것이다.
건축이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여러 타분야,
산업, 그리고 이것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생활공동체로부터 고립하여 자기완결성에
집착할 때 우리 사회에서 전문영역으로서의
위상유지 자체에 대한 도전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 귀를
막고 생활공동체의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그리는 건축인의 꿈은 우리의 과거와 외래
문화를 도피처로 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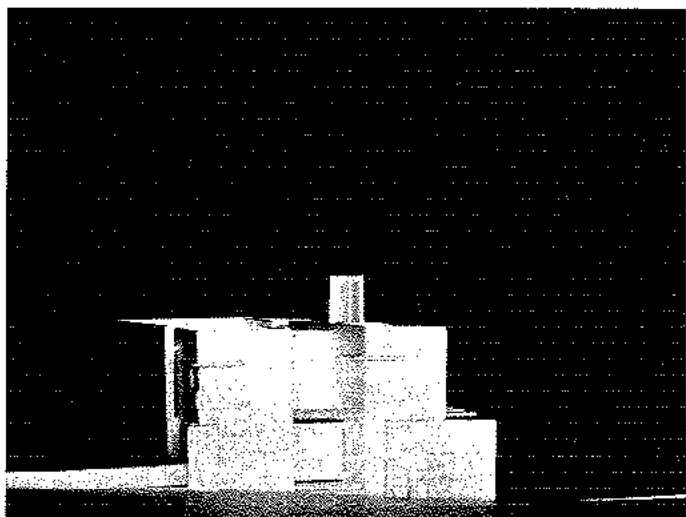
오늘 우리의 건축적 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일은 건축적 현실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건축 전문인으로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건축행위의 실천적 과제가 되는 셈이다. 오늘
우리의 건축적 현실에 대한 관점과 이에 대한
실천적 대응은 가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4.3그룹전이 제기해 준 오늘 우리의 건축적
현실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본다. 이

관점을 구성하는 세요소는 건축환경에 있어
인공과 자연, 전체와 개체 및 기존과 새것의
상호 연관작용에 관한 문제이다.

첫째, 건축행위는 원초적으로
사회구성원이 자연의 일부를 그들의 의도에
따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여줄 인공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공동체의
생활공간은 이 인공물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으며 자연과 더불어 상호 관입하여 균형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삶의 풍경은
날로 자연의 영역을 무화시키는 인공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자연의 영역이 극소화되고
오직 문화의 영역만이 팽대한 생활공간이
과연 생활공동체의 생활을 지탱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둘째, 건축행위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인공물은 이미 틀지워진 생활공간의 체계속에



觀水亭 (우경국)



자비의 침묵수도원 윤율제 (이일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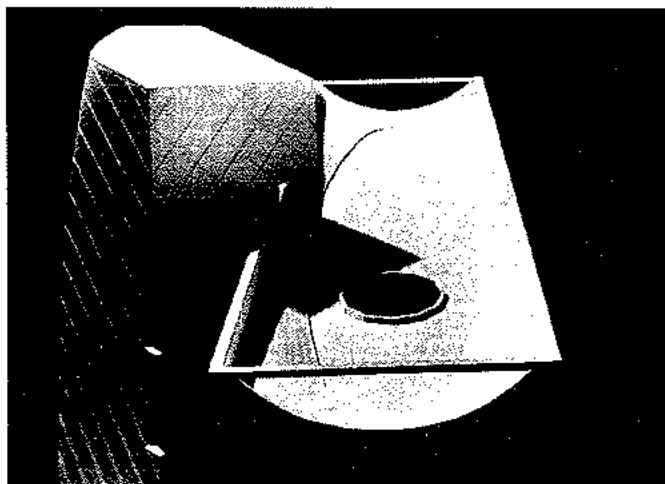
편입하여 또 다른 하나의 전체를 지향하게 된다. 인공물로서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일부가 되는 여타 건축물들과의 관계체계 안에서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행위에 있어 건축행위의 대상을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공물을 생산해 내는 데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건축을 하나의 집합체로 인식하려는 도시건축이라는 개념보다 더 근원적인 개념으로서의 개체와 전체의 관계가 오늘의 건축행위 속에서 실종되어가고 있다.

셋째 건축행위의 결과로서 탄생되는 어떤 건축물이던 이미 행하여진 건축행위가 누적되어 있는 건축물들의 관계체계 속에 새로운 건축물로 편입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관계체계를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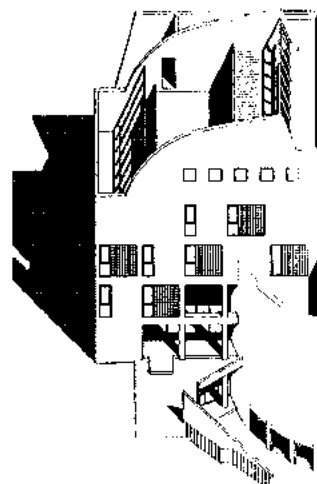
건축행위는 항상 기존과 새로운 건축물과의 긴장관계를 유발하게 하며 긴장관계의 해소는 새로운 질적관계로의 승화를 유도한다. 새로운 건축물이 하나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기존의 건축환경이란 이제까지의 건축행위의 결과가 누적된 하나의 관계체계이다. 따라서 어떠한 건축행위도 생활공동체의 건축행위의 과정이 집적된 기존의 생활공간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건축행위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기존과 새 건축이 대립하며 다시 하나로서 합쳐지는 생활공간상의 어떠한 위치도 시간의 흔적이 겹겹이 켜를 이루는 장소일 뿐 빈공간일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행위는 시간과 공간의 추상적인 이해에 맴돌고 있을 뿐 우리의 삶과 긴결된 축적된 시간의 흔적과 장소성을 발산하고 있다.

상기의 관점을 오늘 우리의 건축적 현실로 받아들이는다면 건축인으로서 어떠한 해결안을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건축적 현실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며 적절한 건축적인 대응은 오늘의 문제를 다음 시대까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맞아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제기한 건축적 현상의 밑바닥에서 오늘 이땅의 건축인 모두를 옥죄고 있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이다. 서구 근대건축 태동기의 건축현상을 설명하는 커다란 잣대로 등장했던 시대정신이라는 개념에는 그 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건축의 재료, 기술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며 그 건축행위는 비도덕적이라는 감성을 밑바닥에 깔고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의



말죽거리 BLDG. (이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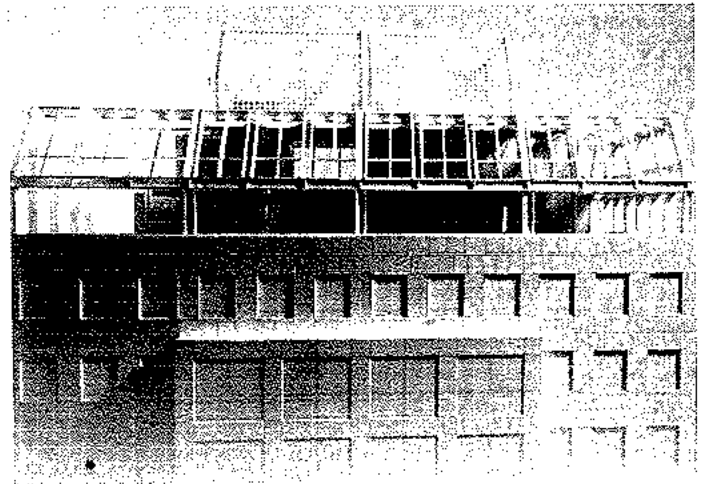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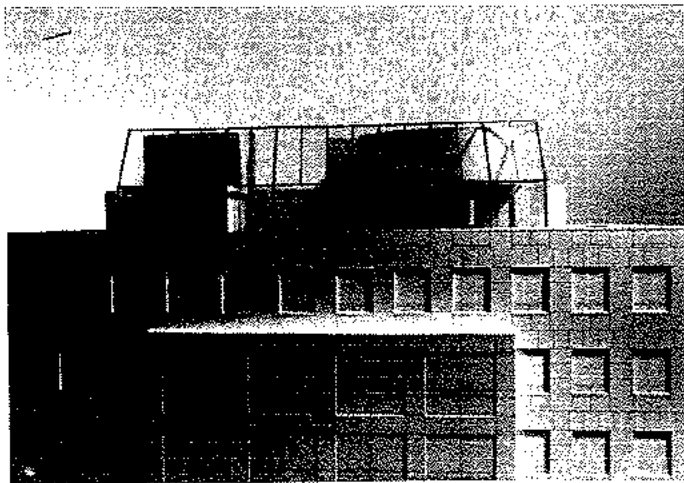
良才1/ 良才2(조성호)

도덕성의 문제는 건축행위의 내용에 관계되는 것보다 건축행위의 과정에 연루되는 것에 더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건축창조환경에 개입되는 각종의 불합리한 관행은 건축행위의 정도에 대한 가치판단을 막아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비정상적인 건축행위의 과정이 보편화되는 건축창조의 환경에서는 건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에서 건축전문가의 위상은 발 디딜데가 없는 것이다. 설자리가 없는 곳에 서서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외쳐 보았자 공허한 것이다. 건축인들이 서야 할 자리를 확보한 다음에야 건축행위도 가능한 것이다.

시대정신이란 개념뒤에는 개인적인 추구에 선행하는 가치를 가진 의명성과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의 의지를 뛰어넘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이다. 시대정신이 지푸라기이건 아니건 이것을 내세우며 개인적인 창작의자들이 스스로 합해져서 시대정신을 대변해 주기를 원했다면 관점과 행위가 엇갈리는 모순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세기말마다 백년을 간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인간사회에 집단적인 사회병리 현상이 찾아온다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다. 단지 말세라는 어휘가 의미하는 바처럼 세기말 현상이라는 개념은 이 세계를 총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세대관을 암시하며 지금 상태로의 이 세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는 현실 비판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싶다. 우리는 4.3그룹 회원들이 전시회와 그 부수행사를 통해서 넓혀놓은 지평을 다시 좁히지 않도록 건축계에 대화의 광장을 계속 열어가야 할 것이다. 공통의

관심사와 문제들을 같이 걱정하고 서로 힘을 덜어주는 자세를 가지도록 이번의 전시회는 요구하고 있다. 서로의 힘을 덜어 준다는 것은 건축생성의 장에서 같이 고군분투하는 건축인들 상호간에 스스로를 내 보이고 서로 비판해주고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 생활공동체가 요구하는 건축 전문인으로서의 공동선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건축행위의 틀을 잡아간다면 이 시대 우리 건축은 스스로의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자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1. House (이성관)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V)

A Methodological Study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張順鏞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탐

by Jang, Soon-Yong

14. 창호

창호는 벽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개폐가 되어 빛·공기·소리·물체가 통과되는 곳이 되며, 주택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기능적이고 미적인 면에서의 비중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옥에서 형태적인 창호의 종류는 몇가지 안되면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한옥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창과 문이 양옥처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창호로 일괄되게 표현하게 된다.

양옥에서 사용되는 유리에 상응되는 재료가 한옥에서는 얇은 창호지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상대적인 건축적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반투명하고 얇고 질긴 창호지는 빛을 확산시켜 실내를 부드러운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실내외의 음이 상호 관통되어 창문을 열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하며, 창에 비치는 음영으로 외부의 접근자를 실내에서 인지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이 한국적인 접객예의에도 반영되어 서양식의 노크 대신에 인기척을 내어 존재를 알리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양옥이 두꺼운 유리 한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한옥에서는 창호지로 바른 창을 여러겹으로 사용하여 주간과 야간, 그리고 계절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

1) 쌍창(雙窓)·영창(映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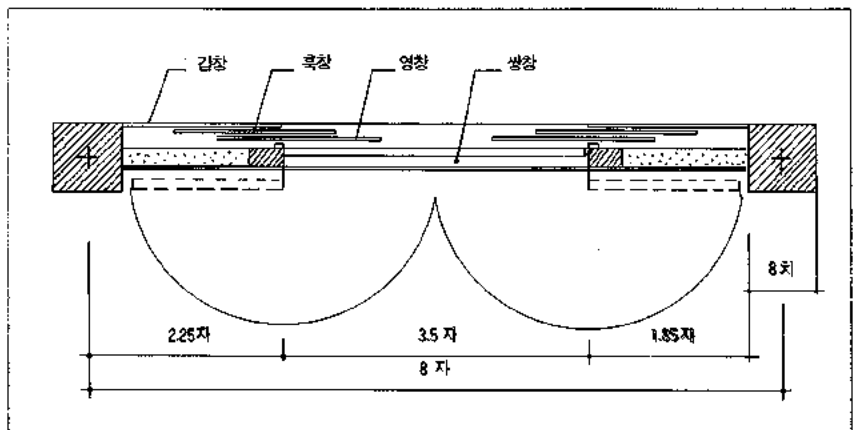
한옥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애용되는 창호로는 우선 쌍창을 들 수 있다. 창문이 두쪽으로 구성되어 여닫게 된 것을 쌍창이라 하고, 쌍창에 사용된 창살의 모양으로 흔히 떠살창 또는 세살창이라 호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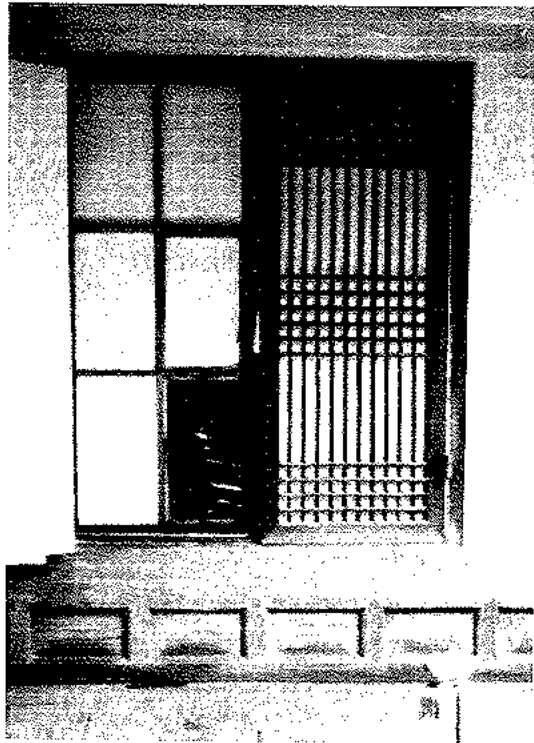
쌍창은 통상 방바닥에서 1자 내지 1.5자 정도의 높이로 설치되며, 표준적으로는 1.2자 내외가 된다. 쌍창의 하부로 머름대가 구성되고 하인방과 머름대

사이로는 머름동자가 동간격으로 배치되고, 그 사이에 머름판이 끼워진다. 따라서 머름대는 동시에 쌍창의 하인방을 겸하게 된다.

창문을 방바닥에서 약간 올리게 한 머름대의 효용성을 생각하자면 첫째로 겨울철에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의 냉기가 온돌바닥으로 직접 휘돌아치는 것을 완화시켜서 대류 및 환기시에 유리한 점이 있고, 둘째로는 실외자에게 실내의 상황을 어느정도 가려주는 시각적 은폐효과가 있다. 셋째로는 창가에 앉아 머름대 위로 편안히 팔을 걸치고 내다보기에 편리한 기능적인 면이 있다. 흔히 말하는 인간적 척도(Human Scale)가 사용된 때문이다.

쌍창 자체의 높이는 4자 내지 5자 정도로 평균적으로 4.5자 높이로 만든다. 따라서 쌍창과 머름대의 높이를 합하면 5자7치(약 171cm) 정도가 되어 표준적인 성인의 신장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쌍창을 출입하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며, 옛 풍속대로 의관을 갖추고 갖을 쓴 경우에는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더욱 크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갑주인에 대한 예의절차를 갖추도록 건축적으로 고려하여 높이를 낮추었다는 일설도 있으나, 그 보다는 환기와 대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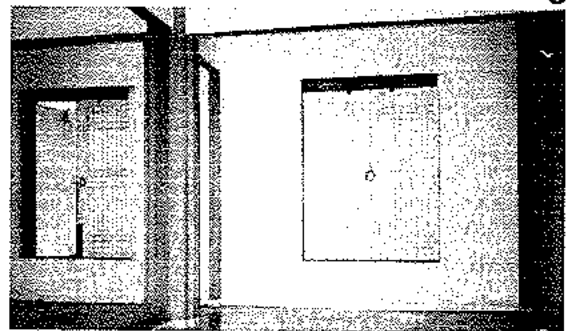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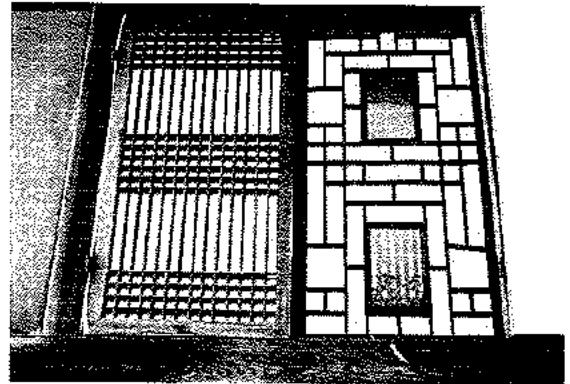


급격히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개구부를 적게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하겠다. 실제로 온돌방의 천장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자 높이를 7자반 내외로 만들고 있어, 겨울철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배려로 해석되고, 결과적으로 창문을 높일 여유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쌍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벽체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표준적인 8자 주간에 쌍창을 설치할 경우 개구부의 폭은 3.5자 내지 3.7자 정도가 된다. 설계시에 쌍창의 폭을 결정하려면 창을 열어 쫓았을 때 창호가 기둥에 닿지 않도록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8자 주간의 기둥의 폭이 8치라면 기둥 안쪽치수는 7자2치가 되고 이것을 절반으로 나눈 3자6치가 쌍창 개구부의 폭이 되고, 여기에 약간의 여유를 두면 3자5치가 된다. 따라서 쌍창 한쪽의 폭은 1자8치가 된다. 따라서 쌍창 한쪽의 폭은 1자8치가 되어 문 한쪽만 열고서는 정상적인 출입이 곤란하여 문을 옆으로 틀거나 아니면 두쪽을 열고 출입하게 된다.

쌍창에서 창살의 구성은 수직살은 등간격으로 배열하고 수평살은 상부 중앙하부의 세곳에 구분되게 등간격으로 배열하며, 상하부 보다는 중앙의 수평살이 1~3개 정도 많게, 통상적으로는 2개 정도 많게 하고, 전체 수평살의 수량은 창호의 높이를 고려하여 조정한다.

쌍창의 실내측으로는 영창(映窓)이라 하여 창을 거미에 가로살 둘 내지 셋에 세로살 하나 내지 둘로 구성하고 창호지를 바른 창호가 미닫이로 설치된다. 창살의 구성형태를 따라 용자창이라고도 하며, 또한 살의 간격이 넓다고 하여 범살창이라고도 한다. 영창은 외창의 내측에 설치된 위치를 따라서 호칭한 것이고 용자창 또는 범살창은 창살의 구성형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쌍창의 울거미 두께는 1치5푼 내외로 되지만 영창의 두께는 5푼 내지 6푼 정도로 얇게 만든다.



고급의 주택에서는 영창의 살대구성에 변화를 주어 아자창 등의 장식적 구성을 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영창의 창호지 대신에 방충망을 발라 기후환경에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시 영창의 내측으로는 흑창(黑窓)이라 하여, 울거미와 살의 구성은 영창과 같으나 안팎으로 한지를 바른 문이 역시 미닫이로 설치된다.

또 흑창의 내측으로 갑창(甲窓)이 설치되는데 이것도 울거미와 살의 구성은 영창과 같으나 기능상으로는 창외의 좌우로 고정되는 창문이며, 여기에는 실내측에 벽과 함께 벽지를 바르게 된다. 갑창을 고급으로 꾸미면 갑창의 중앙부에 시구(詩句)나 그림을 표구하여 실내의 격조를 높이고, 주인의 품격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쌍창과 그 내부의 실질적인 창을 합하면 3중창이 되고, 이 세가지 창을 조합하기에 따라서 실내환경을 조절하도록 사용하는 것이다.

쌍창 내측의 창호는 벽체에 상하인방을 덧대어 구성하므로 벽면보다 돌출되므로 고급의 주택에서는 그 상하부의 벽에도 별도로 살대를 설치하고 도배하여 벽면에 요철이 없도록 만든다.

그리고 영창과 흑창에는 각각 문짝이 마주닿는 부분에 풍소란대라 하여 바람막이의 가는 나무오리를 한쪽문에 홈을 파서 끼워넣고 맞은편 문에도 홈을 파놓아 문을 닫으면 풍소란대가 끼워지도록 하여 외풍을 방지하는데, 이 역시 고급의 창호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또 쌍창과 영창간의 간격은 한치 이상이 되므로 쌍창의 문선 내측에 수직으로 소란대를 고정하여 간격을 좁혀주어 외풍의 유입을 축소시킨다. 이제는 이와 같은 내용도 설계도서상에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생략되기 일쑤인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시대적 변화상황인 것이다.

- ① 쌍창 평면도
- ② 쌍창과 용자 영창
- ③ 쌍창과 안자 영창
- ④ 쌍창의 실례측 모습 갑창의 붙박이로 설치되고 상하부도 창과 같이 구성하여 벽면의 요철을 두지 않았다.



2) 세살청판분합

온돌방에 설치되는 창호의 대표적인 것이 쌍창이라면, 대청의 전후면으로 설치되는 일반적인 창호가 세살청판분합이다. 문올거미와 창살의 구성은 쌍창과 같으나 문짝의 하부로 대략 머름대 높이가 되게 나무널을 끼워댄 창문을 말한다. 세살청판분합이란 살의 구성은 세살문이고, 하부에 널판, 즉 청판이 있고,

⑤

⑤ 세살청판분합 분합의 상부로 교살 고정되어 보이고 평주의 창밖에 분합걸쇠가 달려있다.

⑥ 세살청판 분합을 분합걸쇠에 매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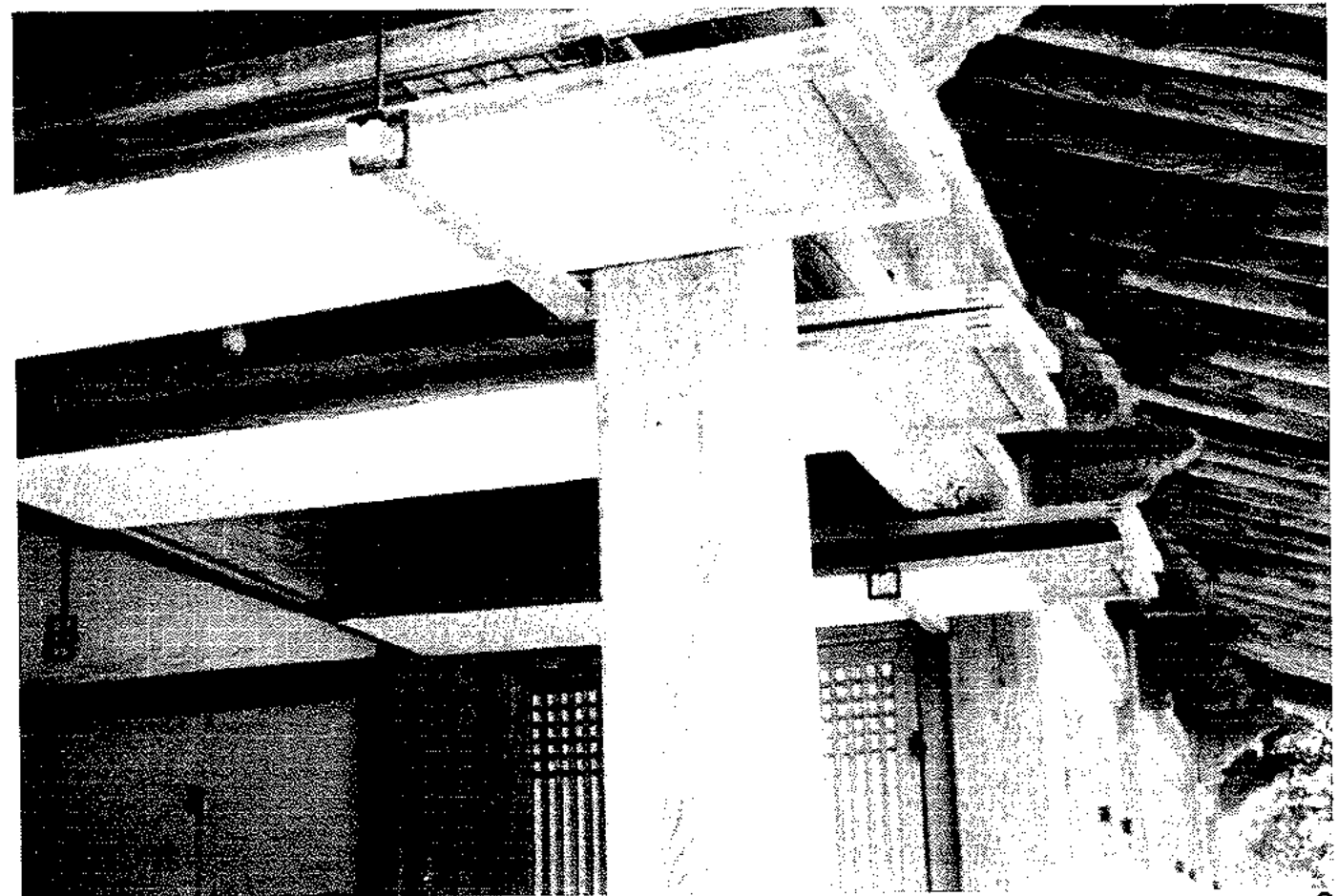
보통은 4짝을 접어 열게되는 분합(分閤)이라는 용어가 합성된 것이다. 대청에서는 통상 4짝으로 구성되어 중앙의 두짝을 열고 다시 이것을 들어올려 분합걸쇠에 매달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달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분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분합문의 높이는 6.5자 내외가 되고 고주열에 분합이 설치될 경우에는 분합문 상인방 위로 고창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온돌방에서는 천상이 낮게 구성되나 대청에서는 대개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대청에 반자를 설치하더라도 높게 설치되기 때문에 천장부의 공간에 빛이 추가되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분합문의 폭도 8자 주칸인 경우 기등폭 8치에, 좌우 문선폭을 각각 4치정도를 제하면 6.4자가 되고 이를 사등분하면 문 한짝의 폭은 1.8자가 되어 앞에서 계산한 쌍창의 폭과 같다. 세살청판분합일 경우는 내측으로 4짝의 미닫이인 영창이 설치되나 혹창은 설치하지 않는다. 대청과 방의 기능적 차이를 생각하면 그 이유가 짐작된다.

3) 연창(連窓)

온돌방에 쌍창, 대청에 세살청판분합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창호설치방법이며, 온돌방과 대청사이에 설치되는 창호를 연창이라 한다. 연창은 창호가 설치되는 위치로 지칭되는 용어이므로 창호의 형태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창에 사용되는 창호는 불발기문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불발기문의 형상은 사진에서 보듯이 문의



상하부는 안쪽으로 도배하고 중앙부에만 장식적인 문살을 구성하여 노출시킴으로서 채광과 장식을 겸하도록 한 것이다. 불발기문의 중앙부 장식적 처리는 윤곽이 되는 울거미를 사각형 또는 팔각형을 많이 사용하고, 드물게는 원형으로 하기도 하며, 살은 격자살 또는 완자살 등으로 다양하게 장식하고 있다. 연창의 개폐방식은 분합문과 같이 여단이 문이고, 그 내측으로 영창을 두되 웅자살 또는 완자살로 구성하여 미단이문으로 만든다. 연창의 여단은 방식이 분합문과 같으므로 연창에도 분합걸쇠를 대청에 설치하여 들어올려 걸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여름철에 유효하게 개방되도록 하여 환기와 아울러 연창에서의 반사광선으로 실내를 명랑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4) 판문(板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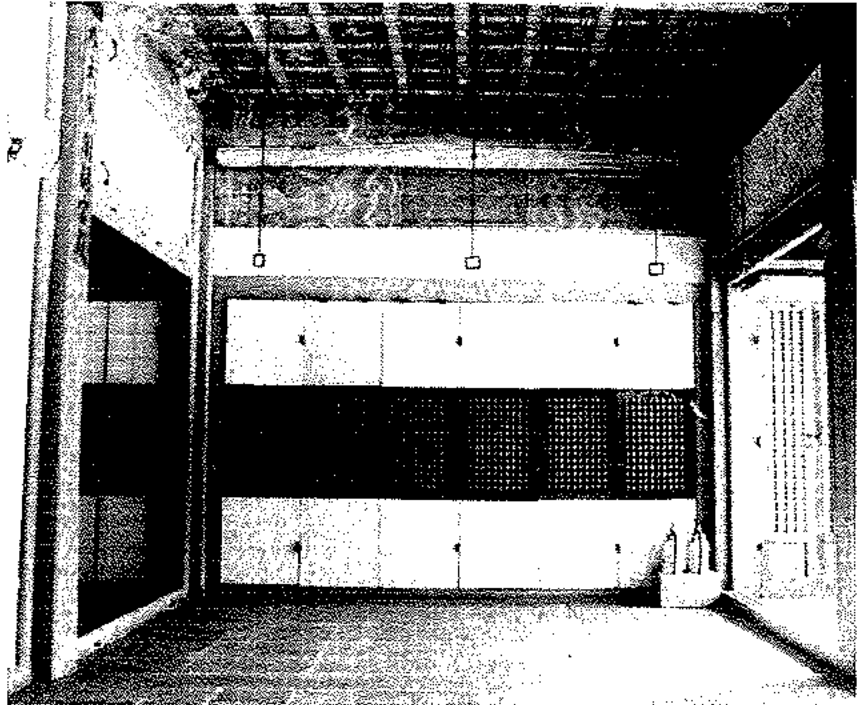
대청의 전면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후면에는 벽과 창이 구성되며, 특히 이 경우에는 판벽과 판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박한 시골의 주택에서는 널판에 피장을 대고 상하로 문문테를 설치하여, 대문의 구성을 축소한 듯한 모습의 판문이 사용되기도 하나, 여염집에서는 문울거미를 짜고 널판을 끼운 판문이 사용된다. 이와같이 약간 고집스런 판문을 우리판문이라고 한다. 기축의 우리를 짜듯이 울거미를 짜아 만든다고 하여 우리판문이라 부르게 된 듯하다.

5) 장지문과 맹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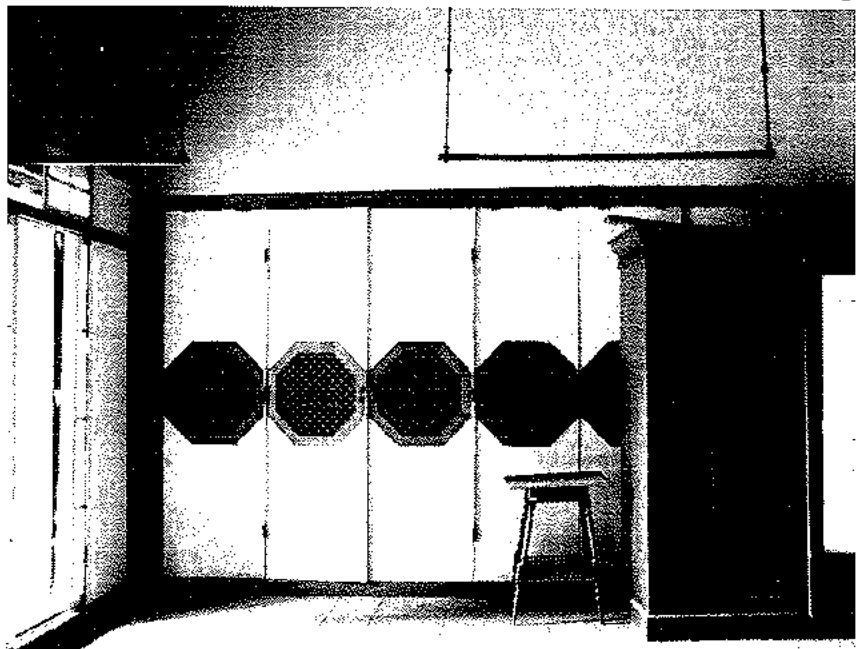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창호는 방과 대청에 설치되는 창호이며, 고급의 주택에서는 방에 부속된 골방과 뒷방 등으로 방과 방이 연속될 경우에 사용되는 창호로는 장지문(障子門, 障紙門)과 맹장지가 미단이문으로 설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가지만 사용되기도 하며 벽의 전체를 창호로 구성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의 기능과 사용방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맹장지는 쌍창에서의 흑창과 같이 한지를 안쪽으로 두껍게 바른 창호이고, 장지문은 영창과 같이 한면에만 창호지를 바른 것으로 살의 구성은 완자문이나 아자문이 자주 선택된다.

장지문이 설치될 경우에 창살이 어느쪽으로 향하게 되는가의 결정은 주실과 부속실의 개념이 정리되면 된다. 즉 주실쪽이 창호지면이 되고 부속실로 창살이 향하게 되는 것이다. 한옥에서는 창살이 실외측으로 설치되는 상황이 일본의 창호와는 대조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나, 근래에 양옥의 실내장식을 한옥처럼 꾸미면서 창살이 실내측으로 향하게 만든 경우를 볼 수 있으며, 그렇게 설치된 이유도 심분 이해가 되지만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한옥의 창호설치개념과 장식적 효과와의 상충되는 상황에서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옥의 은은한 멋을 살리려면 아무래도 창살이 실외측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점은 설계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장지문과 맹장지가 이중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맹장지가 주실쪽에 설치된다. 쌍창에서 영창의 실내측으로 흑창이 설치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또



7



8

7 즉조당 연창
8 노략당 연창

경우에 따라서는 맹장지는 분합문 식으로 여닫고 장지는 미단으로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사랑채 등에서 개방성이 큰 실과 실사이에 사용되며, 외쪽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닫이와 미단이가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기단(基壇)

한옥의 모습을 머리속에 떠올리면, 곡선이 이리저리 얹힌 지붕과 창호로 조화시킨 벽체와 석축으로 이루어진 기단을 연상하게 된다. 기단이 없는 한옥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한옥에서 기단이 높직하게 구성되는 배경으로는 몇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목재와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목구조는 습기에는 약점이 있어 가급적 습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단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적절한 배수시설과 마당의 포장이 갖추어지지 않고, 또한 천연의 방습재료가 마땅치 않았던 시절에는 기단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둘째로는 양옥과는 달리 좌식생활의 관습 때문에 창이 높게 설치되지 않고, 창과 문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건물의 개방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단이 없이 건물이 세워진다고 가정하면 외부에서 실내를 내려다보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므로 기단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 과거의 신분제도상으로는 주종관계가 엄격하였으므로 대청에 앉은 주인마님이 마당석을 내려다 보며 지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도 기단의 높이는 필요하였다. 물론 이점은 현대에서는 무의미하고, 달리보면 두번째의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은 현대에도 유효한 것이라 하겠다.

현대건축에서는 기능적인 편리성을 추구하여 수평동선에는 가급적 단차이를 두지 않고 심지어는 문지방도 없애는 추세로 보이어서는 한옥의 기단부를 설계할 때에는 늘 기추장스러운 문제가 된다. 특히 예전보다는 1인당 점유면적이 커지는 때문에 평면규모도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지붕이 높아지므로, 입면구성의 비례상으로는 기단이 높아져야 하나 기능상으로는 오히려 낮춰야 하는 점이 서로 상치되는 문제가 있다. 대지가 약간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전면의 석축은 높게하고 측면에서는 마당에 단차이를 두어 양측면과 배면의 기단은 낮게 구성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기단에 사용되는 재료는 돌과 흙이며, 과거에는 백성의 집에는 품이 많이드는 다듬은 돌, 즉 장대석은 사용치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되었다. 따라서 시골의 주택에서는 근방에서 구할 수 있는 석재를 채취하여 돌의 생긴 모습을 보아서 보기 좋게 석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조시대의 불교억압정책으로 사찰이 폐쇄한 곳이 많았으므로 약간 세력이 있는

집안이면 근방의 폐허화된 사찰에서 석재를 운반하여 기단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요즘에도 향교건물에서 사찰의 석담재로 판단되는 재료가 건물의 기단석 또는 디딤돌 등으로 사용된 경우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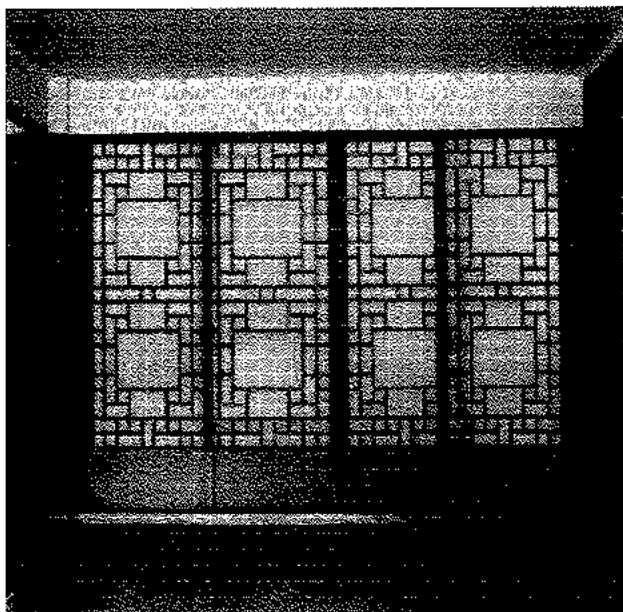
삼국시대 이래의 사찰이나 궁궐건축 또는 사찰건축의 기단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고급의 기단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기단이 단순한 것은 고급의 기단을 구성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택이건 사대부의 주택이건 건립되는 시대적 상황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기 때문이며,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심성에는 주어진 여건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그런점이 건축에 반영되어 기단을 그와같이 만들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옥의 여러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제한된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심리적인 풍성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이점을 "미완성의 미"라 표현하기도 하나 그보다는 "단순함 속의 자유분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고급의 주택에서는 기단에 장대석이 사용된다. 장대석이 몇단높이로 쌓아지는가에 따라 2벌대, 3벌대 등을 부른다. 장대석 1단의 높이가 1자정도 이므로 3벌대라 하면 기단의 높이가 3자 정도가 되는 것이다.

석축이나 성곽을 비롯하여 대개의 석축쌓기에는 퇴물림쌓기 또는 물림쌓기라는 기법이 사용된다. 퇴물림쌓기의 예로는 궁궐건축의 기단부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대석의 석축을 쌓을 때 하단의 석재면 보다는 3푼 내지 5푼 정도 상부의 석재를 들여쌓는 기법이다.

현대건축에서 석축을 수직면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시공상의 오차로 인해 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는 시각적 불쾌함을 이 기법을 사용한다면 시공오차를 흡수하는 여유를 갖게 되며, 더구나 안정감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계단부에도 퇴물림쌓기가 적용되며, 계단은 측면도 노출되기 때문에 삼면으로 이 기법이 사용된다. 따라서



- ⑨ 원자 장지문
- ⑩ 판벽과 우리 판문(운감고택)
- ⑪ 2벌대 장대석과 계단 퇴물림 쌓기 기법이 사용되었다.



하단의 계단석 폭이 4자이고 퇴물림 깊이를 4륜으로 하고 계단의 단수가 4단이라면 상단의 계단석 길이는 4자에서 2치4륜이 짧아진다.

16. 맺는말

간혹 어떻게하며 한옥의 멋을 농축시키고 핵심만 추출하여 현대적인 한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다. 질문한 당사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쉽게 질문하지만 답변은 매우 궁색해진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옥의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할 수 밖에 없다. 한옥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어느부분을 생략하거나 변형하려면 그런 모습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로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조금도 변형시키지 못한 설계가 되기 쉽상이다. 현란한 기교나 장식이 사용되었다면 생략과 변형의 여지가 있겠지만 단순 소박하면서 단정한 모습이기엔 변형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 현대화된 한옥을 주문하는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바와 다름없다. 완전하게 설계자의 창의력을 믿고 맡기는 것도 아니면서 칼의 양날을 휘두르는 격이 된다. 변형하면 그런게 있는가 묻고, 답습하면 좀더 현대적인 감각을 나타낼 수는 없는가 라고 힐책한다. 이쯤 되면 설계자를 환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마술사로 보았거나, 설계자를 주눅들게 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리라. 아마도 후자의 경향이 농후하겠지만.

변형과 재창조라는 과제는 늘 간직하고 있던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를 풀기에 앞서 한옥의 원형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설익은 글을 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연구해야 할 과제만 확대되었음을 알게되었다. 어느 누가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긴 세월이 필요하리라는 것도 짐작이 간다. 설계를 위해서는 깊이도 있어야 하고 넓이도 있어야 하므로, 그 두가지를 충족시킨다는 욕심이 무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미완성의 글을 끝내면서 설계와 연구작업을 동시에 병행시킬 수 있는 설계사무소의 미래환경을 몽상하면서 관심있는 분들의 연구가 결실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건축법 질의·회신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건설부 건축계획과

▶ 질의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시 공사시공자의 면허증명 및 날인여부

▶ 회신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시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동별지서식 제19호의 규정에서 공사시공자의 면허증명 및 날인에 대하여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자 : '93.1.8 서울 강남 어광호)

▶ 질의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무선통신방식에 의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특정통신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일반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에서 근린공공시설인 전신전화국 및 방송통신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망

▶ 회신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공시설인 전신전화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별표1 제2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시설중 전신전화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2.12.28 체신부 장관)

▶ 질의

가.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제89조 제1항 규정의 조례제정 이전까지의 적용가능여부

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 (높이 12m 미만의 경우)인 경우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바, 도로사선제한 및 일조권 제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

가.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시행중인 개정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용 불가능한 것이며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은 시행중인 개정 건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아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나. 질의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분은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시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2.12.31 대한건축사협회)

▶ 질의

가. 도로사선제한선을 벗어나게 돌출창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계단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신

가. 질의와 같은 돌출창은 도로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선의 밖으로 돌출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이며,

나. 건축물의 외부계단의 수평부영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면적에 전체면적이 산입되는 것이며 바닥면적의 산입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19 서울 중랑 최상혁)

▶ 질의

'93.1.1부터 상업용 건축물의 면적 제한없이 전면 해제되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12.31까지 건축허가제한중인 건축물중 수도권지역 (5개 신도시구역 제외)안의 위락시설에 한하여 '93.6.30까지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기타 지역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93.1.1부터 해제조치 하였습니다. (질의자 : '93.1.19 서울 도봉 이성철)

▶ 질의

도로너비 6미터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35미터 접하고, 현재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너비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가능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동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1호 및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대지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자 : '93.1.20 서울 마포 이남주)

▶ 질의

유치원에 설치되는 교원사택을 부속용도로 보아 노유자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부속용도라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교원사택은 동별표 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니 복합용도로 건축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 '93.1.25 서울 강남 김군식)

▶ 질의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의 신고서점은?

▶ 회신

건축물을 철거하고자하는 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축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점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질의자 : '93.1.25 광주 북구 진순홍)

▶ 질의

질의의 그림과 같이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나 대지의 원상부분은 그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대지의 경우 농 대지위에 건축가능여부.

▶ 회신

질의의 통로부분이 건축법령상 대지의 일부본인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 : '93.1.21 서울 동대문 우종환)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상 25층의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12층부터 25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서 1층부터 11층까지는 업무용으로서 업무용의 면적이 더 클 때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공동주택과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전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동 용도를 제외한 면적 또는 층수로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자 : '93.1.26 서울 송파 장정원)

▶ 질의

1988년 하반기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26 서울 중로 구영하)

▶ 질의

주거 및 상업복합건축물중 공동주택부분에 설치된 박코니 (노대)가 기둥안쪽에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의 위치, 구조 등과 관계없이 농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26 서울 송파 박종인)

▶ 질의

'93.1건축허가 준공검사를 받은 업무용 건축물에 위락시설이 설치가능여부.

▶ 회신

질의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및 세부건축물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건축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위락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당부에서 '93.6.30까지 시행중인 건축허가제한 조치와 관계없이 단적증감이 없는 단순한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자 : '93.1.26 서울 강남 이봉훈)

▶ 질의

운동 및 업무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적법상 지목이 종교용지인 경우 동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는 반드시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질의의 종교용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용도지역제한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령상 운동 및 업무시설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2.28 서울 강남 진옥운)

▶ 질의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용도변경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받은 경우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는 하지아니하여도 가능한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100제곱미터이상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검사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29 서울 영등포 윤영용)

▶ 질의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난간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 높이산정에서 제외된 때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 적용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하고 적용가능한지 여부.

▶ 회신

질의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 높이산정에서 제외되는 옥상난간은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의 높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29 대구 북구 이병천)

▶ 질의

제2종 미관지구안의 기존 건축물중 전면부분의 내력벽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고자 할 때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도로변에서 3미터 후퇴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와 같이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자 : '93.1.28 서울 동대문 박상일)

▶ 질의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경우 동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 도로를 개설한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전에 도로로 개설한 토지를 건축물 준공전에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한후 당해 관청에 반드시 무상기부채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 "가" 에 대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미터 이상을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바, 미개설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대지에 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건축할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나"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청이 아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되는 것을 알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 (통로)를 개설한다면 그도로는 무상귀속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7 경기 동두천 문선보)

▶ 질의

가. 일체적인 하나의 아파트건축물이 당해 대지의 경사로 인하여 14~16층이 같이 있는 경우 건축법령상 몇층으로 보는지 여부.

나. 아파트의 입주기간중 미입주된 이웃과 전한 발코니의 칸막이 파손 및 창틀 시공장치의 파손에 의해 도난을 당했을 때 재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 회신

가.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하는 것이고,

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는 민사 및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관리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자 : '93.1.4 충남 당진 한원남)

▶ 질의

가처분 결정된 대지에 대하여 법원에 상소하여 승소한 후 가처분 해제결정을 법원에 신청중이나,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는 건축할 당해 대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지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동사용제한권의 해제결정이 완료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자 : '93.1.5 경남 창원 강인석)

▶ 질의

단열재 설계가 안된 창고 및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바, 건축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단열재 50퍼센트 시공시 실시하는 중간검사대상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단열재시공이 50퍼센트공정에 달했을때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위 문의의 공장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나, 단열재가 허가도서에 없다면 설계도서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자 : '93.1. 경기 광주 유한열)

▶ 질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용도가 타용도 (근린생활시설)와 복합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지하층인정여부

▶ 회신

위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3분의2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2.12.31 경기 수원 윤연화)

▶ 질의

공동주택의 주민을 위하여 단지내에 설치하는 취사·난방 등 가스저장시설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보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가스저장시설이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자가난방 및 발전에 사용되는 저장시설이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자 : '92.12.31 충북 청주 박인순)

▶ 질의

85년도에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시공중인 건축물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발견되어 감리사 및 건축주가 관계법에 의해 고발 및 사업조치가 완료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추인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동 건축물을 직범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위 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건축물이라면 건축법령상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11 경북 영덕 임주)

▶ 질의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시 사·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 경우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을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을 말하나 다만, 건축법상으로는 동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의자 : '93.1.12 서울 종로 이성범)

▶ 질의

법원의 토지분할에 따른 확정판결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도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화신

위 질의의 경우 법원의 토지분할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다하더라도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분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자 : '93.1.18 경기 수원 진동엽)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1면이 너비 6미터의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부지 (철도부지의 일부분에 역사가 건축되어 있음)에 접해있는 경우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여부.

▶ 화신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편에 철도부지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철도부지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15 경기 부천 김병식)

▶ 질의

가. 1층을 근린생활시설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나. 대지여유공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 화신

질의 "가"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을 타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라도 동일 건축물의 규모는 3층이하 (지상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대지여유공지가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인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의한 공지인지 여부와 주차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15 경기 부천 조한경)

▶ 질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규정한 근린생활시설의 "가목" 및 "나"목 상호간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

▶ 화신

위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용도 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질의자 : '93.1.15경남 양산 신진철)

▶ 질의

골프연습장 시설을 타석시설 (가동, 벽, 지붕이 있음)부분과 철탑, 앵글을 세워 그늘막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폐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 화신

건폐율이라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인 바, 질의의 골프연습장중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건폐율에 산정되는 것이나,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 건폐율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14 전설부 도시계획과장)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한 곳을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화신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는 대지안의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주차용건축물 등의 설치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자 : '93.1.15 경남 김해 정구영)

▶ 질의

지목이 서로 다른 2필지의 토지에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화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하나의 건축물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14 경기 시흥 정수동)

▶ 질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자동차정비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화신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자동차정비시설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4 제2호 타목의 규정에 의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의 규정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자동차정비시설의 건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자 : '93.1.26 경남 함천 김윤철)

▶ 질의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15층)의 기초바닥부분이 지하층바닥일 경우 다음번 중간검사는 지상 4층바닥인지 아니면 지상 5층바닥인지 여부.

▶ 화신

질의 건축물의 구조가 건축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구조인 경우 동 건축물의 중간검사는 위의 규정에 적합하게 중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5층이상의 공동주택은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마다 중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도 지상 4층 바닥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중간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자 : 경기 고양 김현균)

▶ 질의

가. 건축허가받은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대상인지 여부.

나. 중간검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화신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질의 "나"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 (아파트 제외)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축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21 경남 창원 임석기)

▶ 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도중 시공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을 포기한 경우 건축주가 새로운 시공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 스스로 시공한 후 사용검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므로 위 질의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공사포기를 하였다면 새로운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시공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주는 건설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 및 제79조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조치가 완료되고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모두 적합한 경우 사용검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자 : '93.1.13 경남 창원 한광호)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광장 등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6 경기 안양 구현수)

▶ 질의

음식점·정육점 등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지하1층을 각 점포별로 구분하여 집합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조상·이용상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독립 구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유부분으로 기재하기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자 : '93.1.4 경기 성남 김영조)

▶ 질의

철골조 단층 공장건축물 (연면적 3,600㎡)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가. 철골조지붕틀 (처마높이 27m)의 경우 내화피복을 하여야 하는지?

나. 기둥의 경우 내화피복을 지붕틀 바로 밑까지 하여야 하는지?

다. 외벽이 비내력벽인 경우 그 벽을 조적벽 및 석면슬레이트로 할 수 있는지?

▶ 회신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경우 이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내화구조는 도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에

해당하는 철골조 지붕틀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으로서 바로 아래에 반사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지붕틀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화피복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기둥의 경우에는 전부분을 동 법령에 적합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 부재가 외벽의 마감구성재로서 비내력부분인 경우에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25 경남 울산 박철규)

▶ 질의

용도가 관광호텔인 건축물을 증축 (4,373㎡)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축부분중 지하주차장부분 (3,110㎡)이 기존건축물과 연결 또는 분리되는 경우로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숙박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동규칙 제21조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은 신축·증축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호텔의 경우 그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주용도와 부속용도의 연면적합계 (동일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에는 동 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21 서울 마포 서경중)

▶ 질의

공동주택 축벽의 열손실방지를 위한 조치방법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축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질의 경우 두 표의 기준중 어느 기준의 하나에 적합한 구조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19 경기 파주 정달용)

▶ 질의

가.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나. 계단실의 4면중 1개면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그 계단을 옥외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동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옥외피난계단의 설치여부는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 (예:공연장, 집회장의 당해 실면적)을 기준으로 매층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옥외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고, 그 계단실의 1개면 이상이 항상 옥외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 '93.1.19 광주 서구 송정화)

▶ 질의

신고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작성자 및 그 날인은?

▶ 회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동 신고를 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현황도면을 시장 등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 경우는 현황도면 작성은 건축사 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날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93.1.19 대구 동구 이준형)

▶ 질의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000㎡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여부는 당해 층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매층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93.1.18서울 마포 신태영)

▶ 질의

15층인 복합건축물(1~5층:사무실, 6~15층:아파트)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갯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인 층에서의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 건축물은 아파트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최고 층수가 층이 15층이고 사무실의 용도로 쓰이는 부분의 층수가 5층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93.1.18 서울 종로 이희관)

▶ 질의

주용도가 공장(1,900㎡)이고 부속용도가 사무실·창고(800㎡)등인 2층 건축물인 경우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고 그 당해용도의 바닥면적 산정은 주용도인 공장과 부속용도의 실의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 경우, 부속용도를 합한 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93.1.18 경남 김해 박영준)

▶ 질의

기존의 지붕틀이 내화구조가 아닌 철골조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분 및 기존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 기존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라면 그 대수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93.1.12 경기 구리 서경덕)

▶ 질의

공장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2,000㎡이상인 경우 그 주요구조부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질의 기존 건축물과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경우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93.1.12 서울 종로 오종렬)

▶ 질의

비KS표시품의 음용수 배관재료인 경우 음용수 배관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음용수 배관재료는 KS표시품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나, 그 KS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음용수 배관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재료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의자: '93.1.12 서울 서초 최진립)

21C 건축을 향하여

콘 페더슨 폭스의 건축세계

Kohn Pedersen Fox

-폴 골드버거-

번역 / 이용재

Translation by Lee, Yong - Jae

콘 페더슨 폭스에 관련된 몇가지 건축일화가 있다. 어떤 사무소들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반면 어떤 사무소들은 상업적으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면서도 최고의 디자인 업적을 남기는 경우를 쉽게 보아 왔다. 우리 시대에서 이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켰던 건축사무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1년전만 해도 콘 페더슨 폭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이 사무소는 필립 존슨과 존 버기, 이요밍 페이, 케빈 로치, 스킵모어, 오웬스 & 메릴과 같은 선각자들과 비견될 만한 위치에 올랐다. 그들만큼 역사적인 폭을 점유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같은 젊음이 그들의 작품에 신선한 생명력을 제공해 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콘 페더슨 폭스의 가장 뚜렷한 업적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과 상업적인 성공 사이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미국건축의 제도약을 선도한 점일 것이다. 그같은 역할은 이전 시대의 리처드슨이나 다니엘 번햄, 루이스 설리만 등이 이룩했던 업적에 비견되는 것이다. 그들 건축가들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당시대 최고의 디자인 업적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상업적인 성공도 이룩했었다. 물론 미학적인 혁신을 상업적인 실부와 공존시킨다는 것은 어느정도 모순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에 이같은 공존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됐다. 다시 말해 창조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축가들과 대형 상업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은 엄격히 구분되기 시작했다. 당시 상업적인 건축가들의 선두주자였던 SOM은 그래서 보수적인 디자인 경향을 견지했다. 그들은 50년대에 독특한 미스풍의 건축으로 상업건축의 첨병 역할을 했다.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킵모어는 변하기 시작했고, 이요밍 페이 역시 더이상 미학적인 방향을 선도하지 못했다. 당시 필립 존슨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탈해 버림으로써 콘 페더슨 폭스는 그들의 가장 어려운 난관인 미학적인 혁신과 상업적인 성공 사이의 공존을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제 KPF는 대형 상업건축의 상업적 의도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학적 의도들간의 만족스런 상호교섭을 가능케 할 유일한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성공의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우선 그 조직의 결속력을 꼽을 수 있다. 윌리엄 페더슨(1938년생, 마네스타대학 출신)은 아주 창조적인 디자이너이며, 유진 콘(1930년생, 펜실베이니아대학 출신)은 아주 추진력이 강한 마케팅 맨이다. 페더슨 같은 강력한 디자이너와 콘 같은 능력있는 세일즈맨 간의 환상적인 조화가 이 집단의 오늘을 있게한 것이다. 특히 콘은 페더슨을 최고의 건축가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끼쳐 자임하면서 그에 대한 끊임없는 내부적인 비판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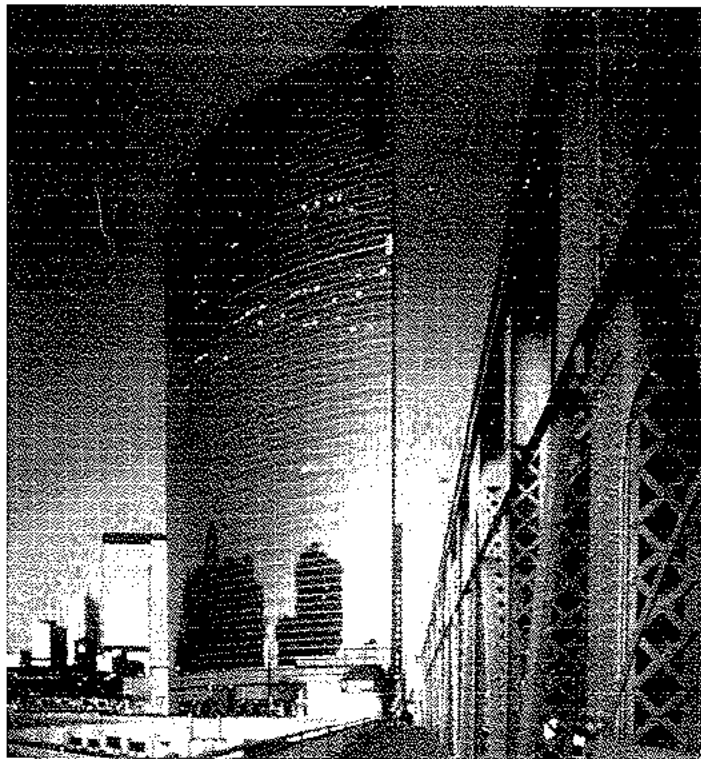
또 한사람의 파트너인 쉘던 폭스(1930년생, 펜실베이니아대학

출신)는 앞의 두 파트너를 조정하는 탁월한 매니지먼트 능력을 보여 준다.

이들도 처음 몇년간은 평범한 상업건축을 만들어 내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1938년 시카고에 완공한 「333와커 드라이브 빌딩」은 이 조직의 전환점이 된다.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든 기단부 위에 얹혀진 녹색의 세련된 유리타워로서 KPF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시카고강에 면한 삼각형 대지라는 조건에 어울리게 그들은 강쪽으로는 우아한 곡면으로 처리하고 그 반대편은 도시 그리드에 맞게 기하학적인 직선으로 처리한다. 대체로운 화강암 기단과 녹색의 유리타워와의 관계는 마치 포스트 모던 기단위에 올려진 레이트 모던의 타워를 보는듯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로 일체화된 형상은 강위에서의 기념비적인 모습과 기존 도시 그리드에 따른 앞음새를 충분히 만족시킨다. 이 작품은 도시적인 건축은 주변 문맥을 직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페더슨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신시내티에 있는「프록터 & 갬블 본사」는 아마 KPF의 가장 성공적인 상업건축일 것이다. 이 작품은 L자 모양의 7층 규모의 기단 건물위에 17층 규모의 8각형 쌍둥이 타워가 얹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저층 기단부는 전부 석회암으로 처리하고 타워부 자봉은 피라미드 형태로 처리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신시내티 스카이라인에 중요한 시각적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그들 작품들은 간상주의를 벗어난 깔끔한 구조들로 1920년대의 절충주의 마천루들의 절충주의를 환기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모방의 함정에 빠져 들지 않으면서 반세기 전 마천루들의 낭만적인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들의 경향은 일단 편안함을 준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최근 모습은 1950년대의 SOM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스킵모어가 미스풍의 어휘들을 계속 혁신시켜 나가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KPF는 역사적인 형태로 회귀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지하여 상업적인 신뢰감을 얻고 있다. 물론 50년대의 미스풍의 건축을 추구했던 SOM과 8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했던 KPF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장 다른 점은 KPF는 자신들의 건물을 오픈스페이스내에 특 떨어진 미니멀리스트적 추상채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복잡한 도시환경내에 끼여 들어 그 환경의 개선에 기여해야 하는 오브제로 간주한다. KPF의 건축은 무슨 기괴한 오브제로서 보다는 전체 도시열거를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점이 SOM과 KPF간의 유사한 성격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건축대담—

*콘 페더슨 폭스의 파트너들

유진 콘 (1930-) : 펜실베이니아 대학 건축과 졸업, 월턴 배킷 소 근무

윌리엄 페더슨 (1938-) : 미네소타대학 건축과 졸업, 이요밍 페이와 협동설계

셀던 폭스 (1930-) : 펜실베이니아 대학 건축과 졸업, 루이스 칸에 사사

패트리시아 콘웨이 (1937-) : 뉴욕대학 영문학과 졸업, 인테리어 설계 책임자

아서 메이 (1940-) :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루이스 칸에 사사, 이요밍 페이와 협동설계

윌리엄 루이 (1942-)

질문 : KPF를 한팀으로 묶어주는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

폭스 : 100퍼센트 완벽한 팀워크란 있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우리 세명의 파트너는 각기 독자적인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 철학을 찾아 나간다. 조직의 힘은 이들 개성적인 구성원들간의 상호교섭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콘 : 우리는 최고급의 디자인과 디테일,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 세사람의 파트너들은 물론 공유하는 철학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디자인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사실 이런 차이가 우리 디자인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페더슨 : 우리의 파트너십은 다양한 개성의 어셈블리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다양한 개성이 디자인에 완벽하게 표현되는데 기여한다.

루이 : 우리 작품에는 분명히 꽤 양식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그것은 일종의 이화수분 (Cross-Pollination)으로서 우리 작품의 개성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름테면 이른바 KPF의 창은 그같은 개성표현의 하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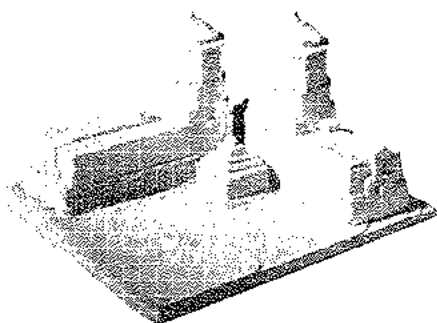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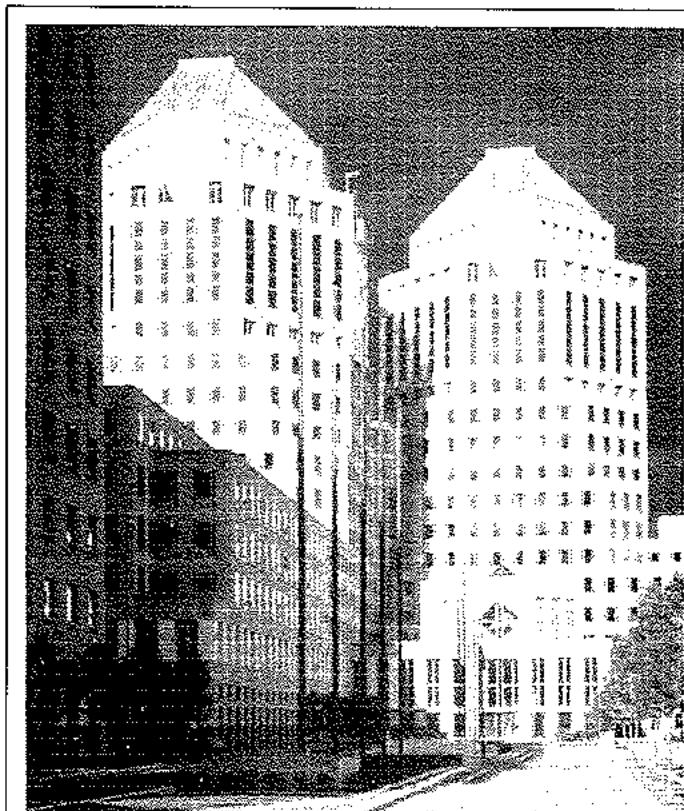
메이 : 우리 역시 다른 건축조직의 구성원들처럼 어떤 문제들 안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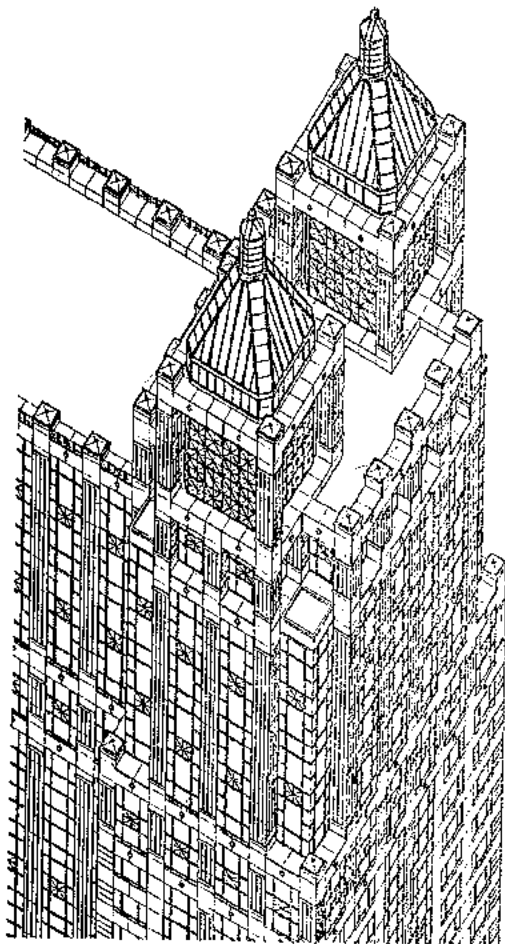
질문 : 그렇다면 이 조직의 디자인 철학의 다양함을 범주화할 수 있겠는가?

쉽게 설명해 달라. 이름테면 각 발전단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은 어떤 것인가.

페더슨 : 대부분의 우리 작품은 도시열개속에 자리하는 고층상업건물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업건물유형의 원초적인 모습을 찾으려는 일련의 전략속에서 찾아진다. 다시말해 우리 도시내에 공존하는 공통관심사를 담아낼 수 있는 더욱 사회적인 유형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작업은 처음에 건물자체의 내적인 힘과 건물 바깥의 문맥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힘 사이를 조정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때 건물의 형상이 주관심사가 된다. 이들 두 힘은 거의 물리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매스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같은 위계적인 압력때문에 건물의 전후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펜 센터의 전면은 유리, 후면은 콘크리트, 모서리는 곡면으로 처리됐고 「333 워커 드라이브」는 강을 면한 파사드를 대형 곡면 유리로 처리하고 도시에 면하는 모서리는 변화무쌍한 기하학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건물을 어떤 압력의 산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아주 유용하다. 하지만 그것이 장소와 스케일의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건물 주변의 문맥은 대개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신호들로 가득차 있기 마련이다. 대개 대형건물들은 그것이 두드러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아주 감각적인 스케일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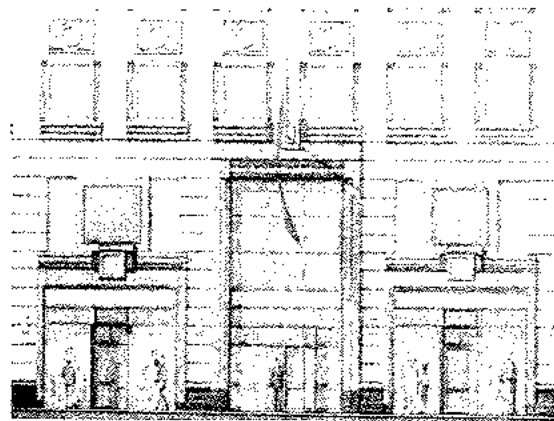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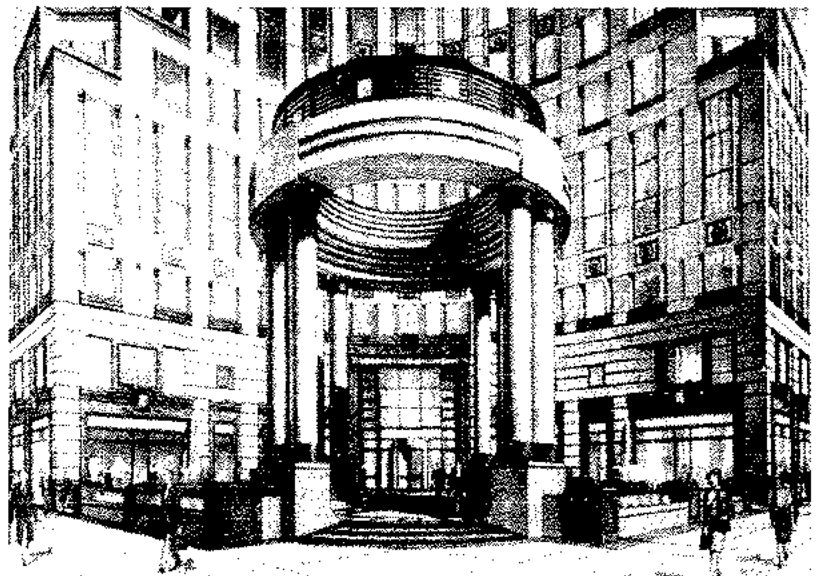
3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도시의 복잡성을 개별건물에까지 끌어들이려 하기도 한다. 「골동저축은행」, 「휴스틴 265, 142」같은 건물들이 그같은 의도를 담고 있는 건물들이다. 이 개별 건물은 다만 도시의 복잡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말해 우리 건물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우리 건물들은 동질성의 성취에 익숙해 있다. 고층건물의 문제는 가로와 만나는 파사드의 처리에 모아진다. 그래서 도로와의 연속적인 일체감의 성취가 우리의 주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표피의 일체화와 짜임새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고전적인 구성 테크닉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들은 형태나 형상보다는 표피가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식적인 전환에 고민하고있다.

메이 : 나는 역사의 성분들을 풀라주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여 작품에 적용하려 애쓰고 있다. 그래서 최근 작품들은 건축의 역사와 훨씬 더 밀착돼 있다.

질문 : 최근 사무소건축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경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콘 : 우리 작업은 그 건물이 놓여질 장소의 본질, 즉 문맥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어떤 대지는 역사적인 선례, 즉 고전건축에의 직설적인 배려를 요구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설적인 건축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직설적인 대응은 너무 단순하고 강하며 동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식적인 요소와 풍부한 디테일감은 인간적인 스케일이나 시각적인 즐거움에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경제와 시장상황이 더욱 단순한 형태와 디테일의 고층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시애틀 오피스



4

빌딩」은 그같은 디자인 방향을 상징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 건물은 고전적인 비례와 강렬한 형태로 인지도가 높으며 풍부한 디테일과 장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한 건물에 담아내고 있다.

질문 : 당신의 건축은 끊임없이 고전적인 선호를 암시한다. 이처럼 계속 모더니즘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루이 : 모더니즘은 지난 4천년의 교훈을 무시하여 실패하였다. 그로인해 모더니즘은 예술적, 역사적 발전에서 소외된 채 효용성의 표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브루니 타우트의 말을 빌리면 '유용성 (Serviceability)은 이제 미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된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전주의 인간적인 속성을 부정한 채 기술적인 전략만을 신봉했다. 우리가 고전주의에 애착을 갖는 것은 과거 60년 동안의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현재 건축가들은 안정감과 신뢰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페더슨 : 근대건축의 역사는 독립된 건물 위주로 배타적으로 기술돼 왔다. 하지만 우리는 건물을 디자인할 때 이웃건물과의 시각적인 연계를 고려한다. 고전주의의 건축언어는 에지와 경계에 집착하고 동시에 공존하는 단편들의 결합과 자율성을 증시했다. 그래서 고전주의 구성전략은 어바니즘의 건축시대에 아주 적합했다. 전통적인 도시에서 공적인 영역은 도로와 광장을 의미하며 사적인 영역은 개별건물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같은 개념에 따라 건물이 공간속의 오브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지난 50년동안 독재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의 미국도시들은 이같은 개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오히려 최근에는 사적인 영역의 대명사였던 도시 건축물들이 공공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같은 추세를 반도시적인 경향이라 부른다. 그래서 나의 작업은 특정한 오브제를 전제하지 않는 고전언어의 구성전략, 즉 균제, 중심화, 그리드화, 층화 같은 어법들을 즐겨 사용한다.

루이 : 역사적으로 건축은 언제나 과거로부터 어떤 언어를 차용해오곤 했다. 그렇게 빌어온 모티브들은 자신의 특정 시대나 장소에 어울리도록 복사, 변안, 변형, 종합되곤했다. 이를테면 로마네스크건축은 고대 로마시대의 기둥들을 재사용하거나 재조립하곤 했다. 그 사이에는 600년이라는 갭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의 건축가들은 모티브의 직설적인 사용과 해석적인 변안에 모두 능해 모더니즘을 휘어잡았던 마스터 빌더들의 위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유리상자들은 그같은 고전주의의 전통을 파괴하는데만 몰두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페더슨 : 우리는 지금 그리스 복고 구조물 위에 타워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경우 기존의 것으로부터 모티브를 끌어오는 방법이 정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그런 문맥을 해석하는 나의 건축적 도덕성일 것이다. 이처럼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모티브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최근 나의 관심사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고전언어의 특이한 모티브들은 구조의 현실성에 대응해 만들어져왔다. 이때 나의 관심사는 진실성이다. 만일 그리스시대와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면 그때처럼 장식하는 것도 정당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가 철제구조로 그같은 건물을 짓는다면 그 구조안에 잠재된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표피에 장식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표피가 구조의 직설적인 재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전주의는 그같은 모더니스트의 관점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융통성과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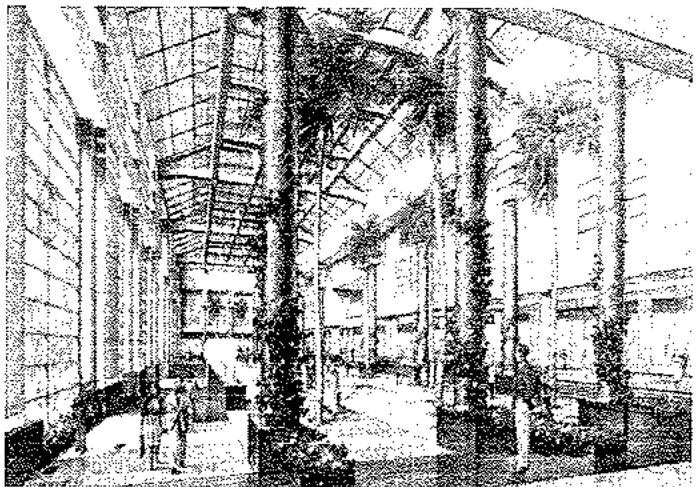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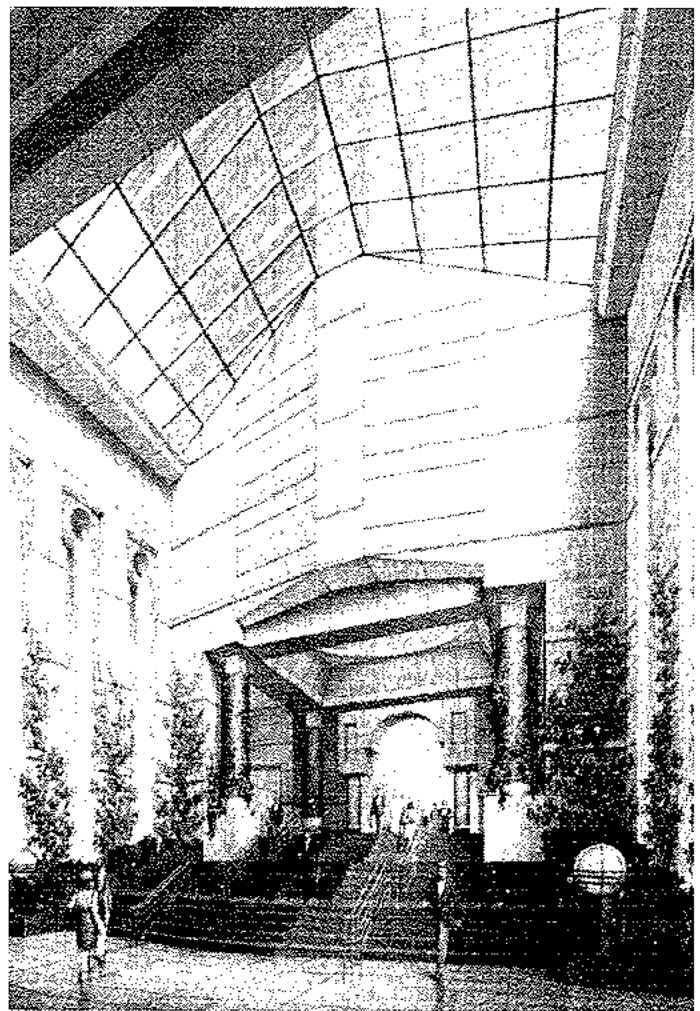
메이 : 과거의 모티브들을 복사하는 문제는 대단히 부적절한 문제이다.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전제는 모든 것을 재발명해낼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지만 사실 이것은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오류였다. 그들은 역사의 선례를 무시하는데서 출발했다. 당신이 보기에 카피 (Copy)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것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수천년 동안 쌓아온 역사적인 선례들로부터 기꺼이 배움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 역사적인 선례들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디자인문제를 풀어나가는가?

페더슨 : 우리 작업을 지배하는 역사적인 선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역사를 바라볼때 주어진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꼭 해야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파사드의 표피를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때 우리는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환영을 창출해내는 화가처럼 작업하기를 원한다. 또한 콜린 로우의 도움을 받아 바자리와 비올라,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16세기 이태리 매너리스트 건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그들은 환영을 만들어 내기 위해 표피에 수평, 수직 그리드 체계를 도입했었다. 이때 표피는 합판으로 만든 것같은 일련의 커로 만들어진다. 이 구성기법은 그리드로 구성되는 철제 프레임 구조를 예견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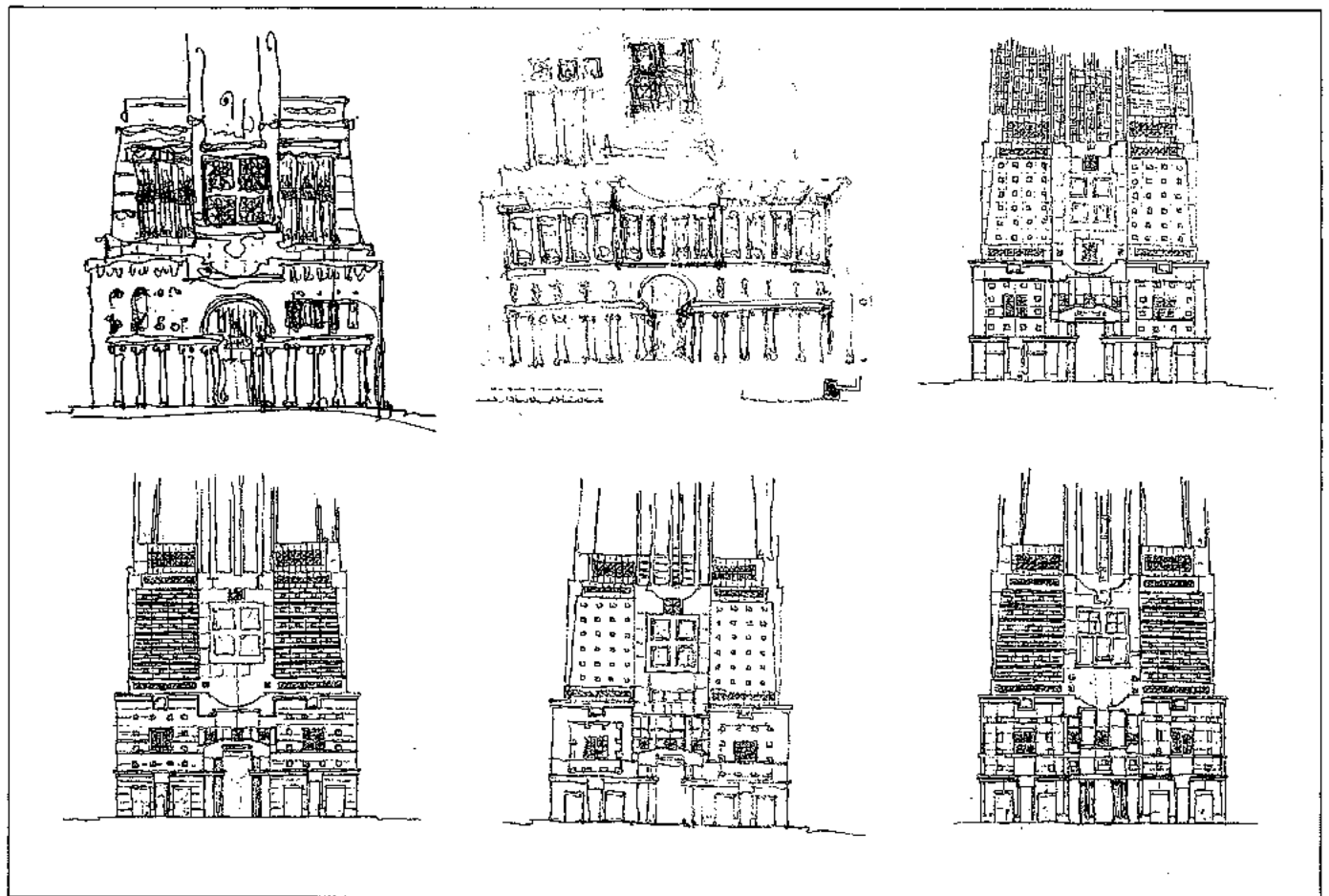
질문 : 당신이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해 달라? 당신도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아닌가?

메이 :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굳이 정의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장식, 문맥주의 그리고 역사라는 세계의 중요한 키워드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이들 단어들은 분명히 모더니스트들이 간과한 것들이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사의



6

- ① 333와커 드라이브 빌딩 전경
- ② 프록터 캠프 본사 전경과 모형
- ③ 900 노스 미시건 애버뉴 빌딩 엑소노메트릭
- ④ 125 이스트 57 스트리트 빌딩 스케치
- ⑤ 1111 브릭엘 애버뉴 빌딩 스케치
- ⑥ 383 메디슨 애버뉴 빌딩 스케치
- ⑦ 383 메디슨 애버뉴 빌딩 모형



직설적인 차용보다는 풍자적인 인용을 즐긴다. 하지만 우리는 유머러스하거나 풍자적인 구성요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콘웨이 : 우리도 주변건물과의 연관성이나 인간적인 스케일을 고려한 논리적 표현체로서 장식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인정한다. 우리도 고전건축이나 아르데코의 언어로부터 장식체계를 빌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가 아니라 건물 그 자체이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역사주의나 풍자, 유머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질문 : 역사적인 선례들을 참조한다는 것은 건축적 재해석이나 직설적 해석 그리고 키치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콘웨이 : 우선 키치를 정의해 보자. 키치는 현실을 가장한 프로그램의 모방이거나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로서의 건축의 역할은 결코 가짜만들기에 있지 않다. 직설적인 재해석은 단순히 재생산하는 기예에 불과하다. 건축은 특별한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이어야 한다. 그와달리 건축적 재해석은 지난 4천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들어진 건축언어이다. 근대건축은 너무 자신의 어휘를 만드는데 집착하여 전통을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과거에 대한 재해석의 거부새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근대건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은 대중문화의 용이한 해독성과 관계가 깊다. 어떤 디자이너들은 키치라 불리는 것으로 그에 대응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키치는 근대이전건축의 인식도가 높은 이미지를 경솔하게 차용해오거나 심지어는 저급예술의 걸다르고 속다른 모조품을 흉내내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문제는 과거에의 향수에 대한 저속한 참조에 의해 해결되지는 않는다.

질문 : 학계에서는 상업적인 건축집단이라는 굵지 않은 시선으로 KPF를 바라보는것 같은데,

콘 : 우리가 상업건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대규모 상업건축 프로젝트를 접하지 못하는 건축가들의 시샘도 있을 것이다. 상업건축에 임하는 우리의 디자인 철학은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나 장소성, 생동감을 제공하여 도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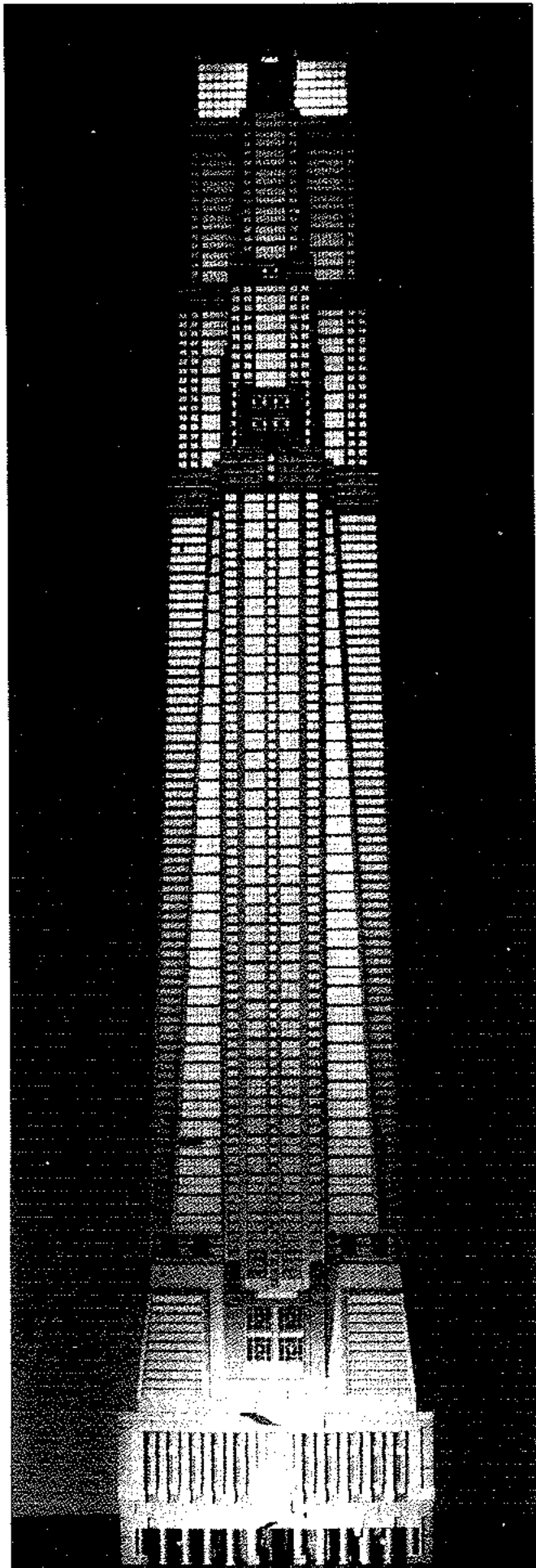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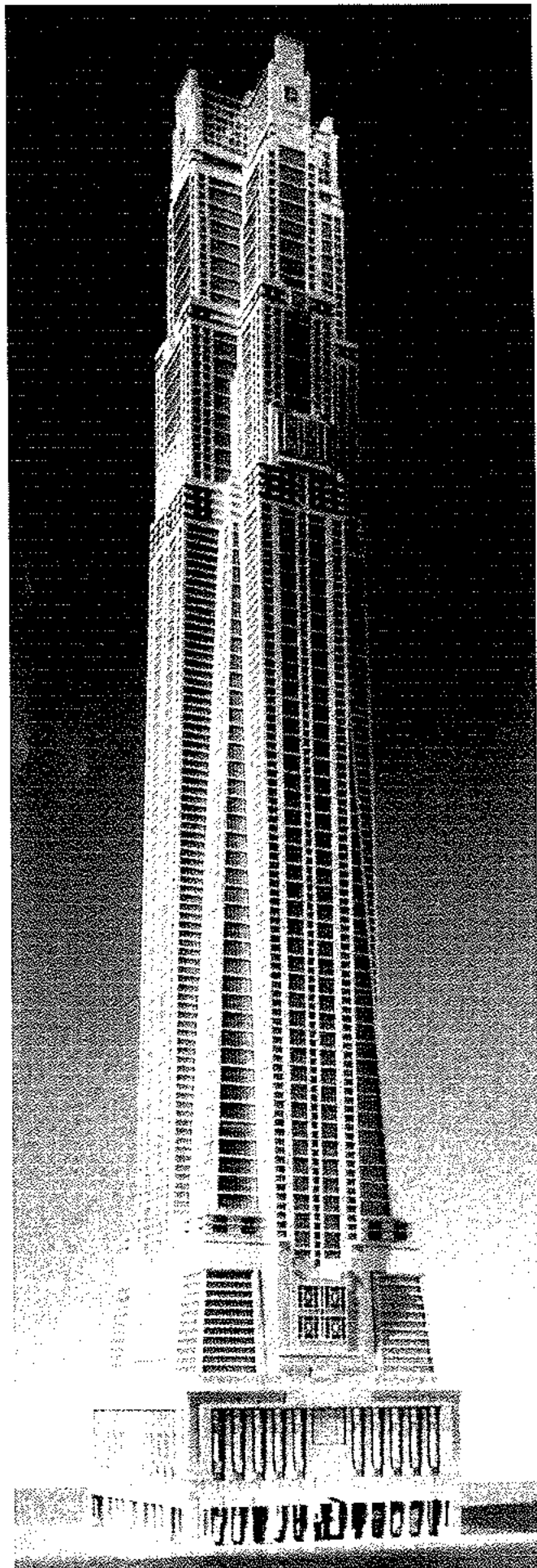
폭스 : 우리가 비록 사변적인 사무소건축에 전념하기는 하지만 우리 건축에 등장하는 고도의 디테일과 디자인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라 자부하고 있다. 너무 많은 건축가들이 상투적인 디자인만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더라도 각기 특이한 프로그램과 요구조건을 갖는 도전이라 생각하고 디자인에 임한다.

질문 : 설계과정에 건축주를 참여시키는가?

루이 : 건축주들은 자본을 낸다. (웃음) 그들 대부분은 우리 작업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 온다.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한계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건축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정상에서 이런 한계들의 조화점을 찾아 나간다.

콘 : 건축주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건축가들을 편집중적으로 의심하곤 한다. 보통 건축주들이 설계과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는 최소한 2주에 한번씩 건축주와 만나 의견을 들곤 한다. 가능하면 개념화 단계에서부터 최종 완공 단계에까지 건축주와 함께 작업을 진행해 나가려 노력한다.

페더슨 : 우리는 초기 만남에서부터 건축주와 함께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 나간다. 이들 대안은 모형작업으로 발전해 나간다. 물론 주변의 건물들도 덩어리 메스로 함께 표현된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요구조건 뿐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력과의 대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흙 모형은 도시열개내에 사무소건축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다. 보통 4~5개의 대안 모형을 그 도시문맥내에 얹혀봄으로서 건축주의 이해를 구해 나간다. 우리는 설계과정의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쉽게 건축주의 동의를 이끌어내곤 한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영업본부 사옥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는 기존의 서울영업본부가 노후화 되었고 기능의 확대수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1997년부터 서울영업본부로 쓰일 사옥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주)건원건축(대표:곽홍길) 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92년 10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이번 설계경기는 총 24개 사무소가 응모신청을 하였고, 그중

14개 사무소가 응모를 하여 당선작 외에 (주)동남아·태건축(案)과 (주)선진엔지니어링(案), (주)정림건축(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당선작 1점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상금 500만원씩이 수여되었다.



투시도

당선작

건원종합건축(案)

(양재현 + 곽홍길)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1층 미관지구, 업무지구

대지면적 / 9,548 m²

건축면적 / 4,628 m²

연면적 / 62,489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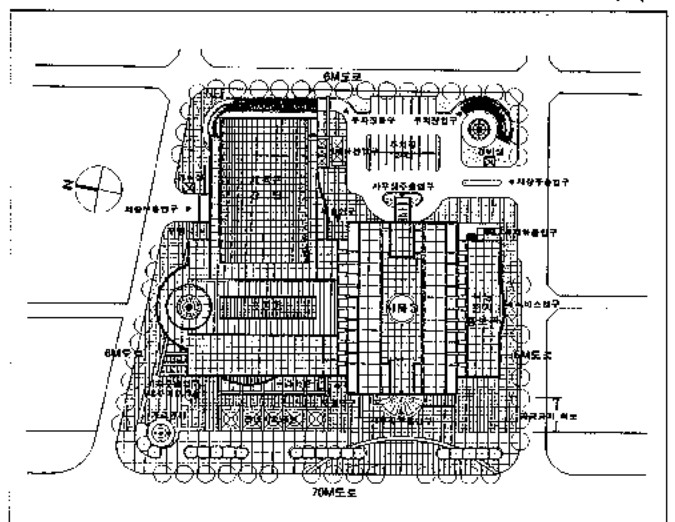
건폐율 / 48.4%

용적률 /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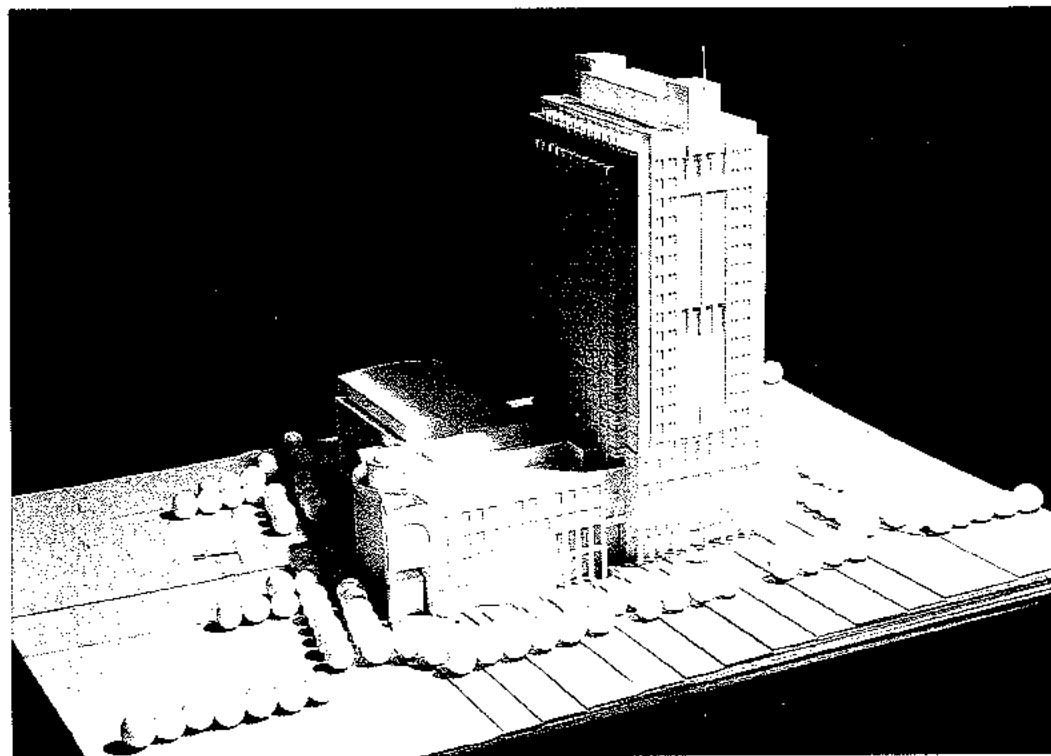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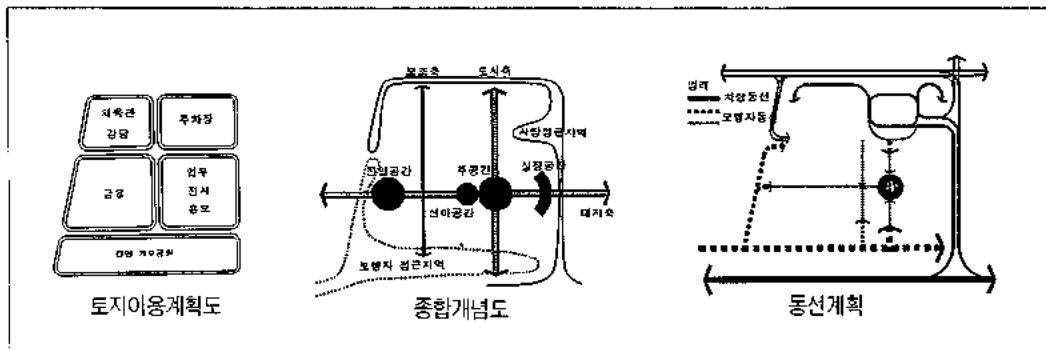
규모 / 지하 4층, 지상 20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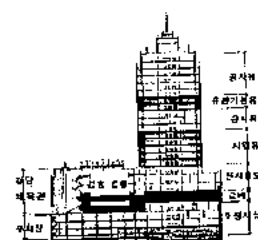
외부 마감 / 화강석 + 복층단열반사 유리 + 커튼월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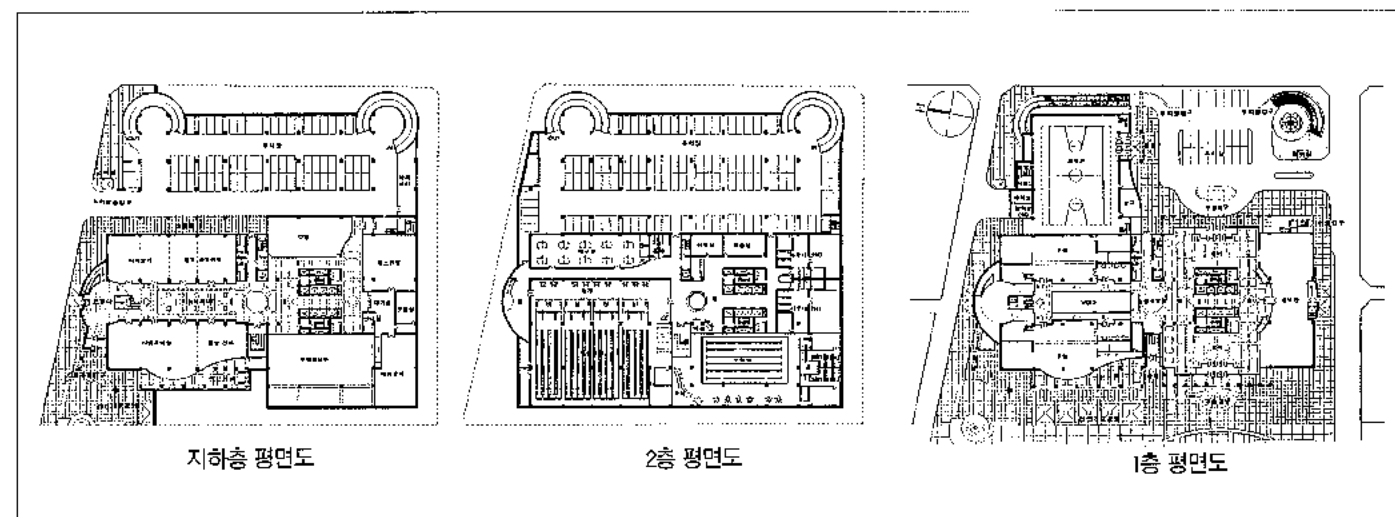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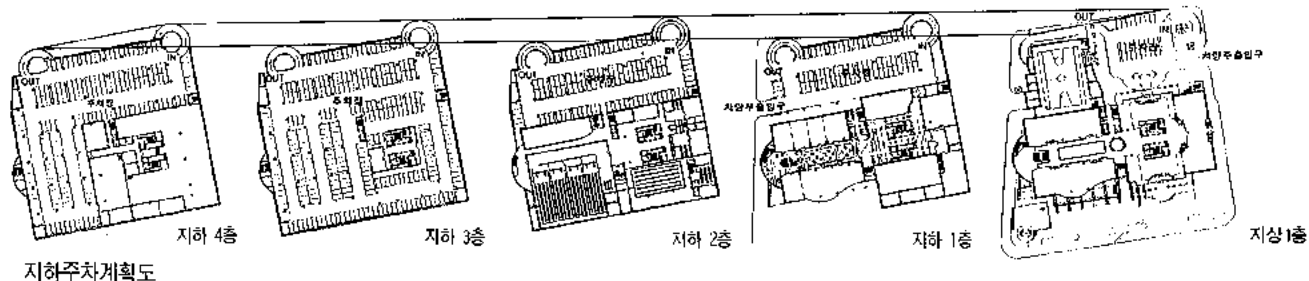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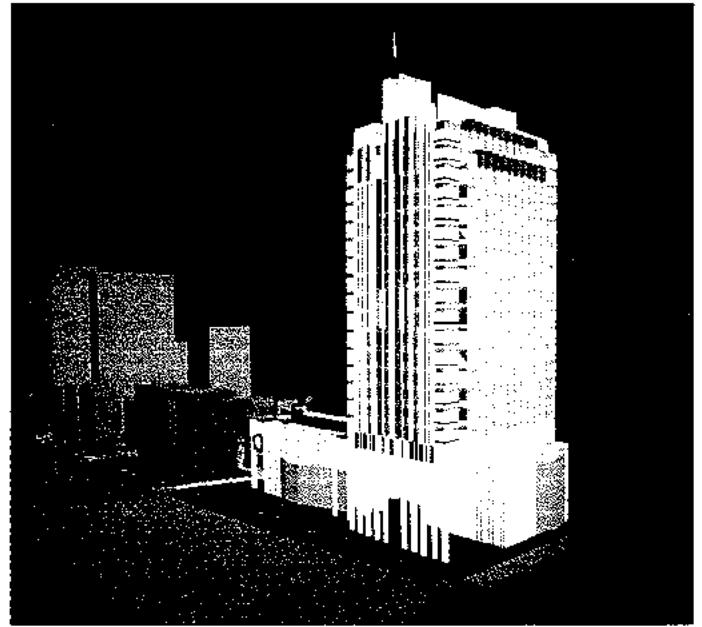
매스계획개념도



용도배분계획도

모형도





계획개념

담배인삼공사의 서울영업본부 사옥은 서울지역의 영업지점을 주도하는 핵심으로 또한 담배인삼공사의 구심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는 장소적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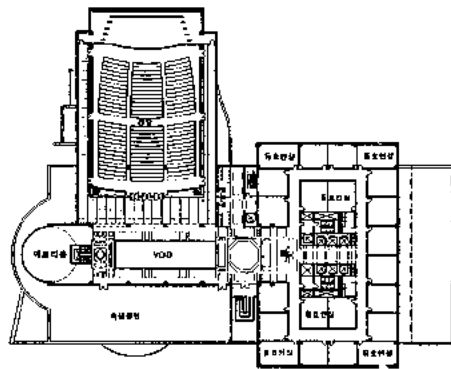
공사의 업무기능 외에 복합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공사로서의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갖는 건축형태로의 표현이 본 계획안의 목표가 될 것이다.

계획의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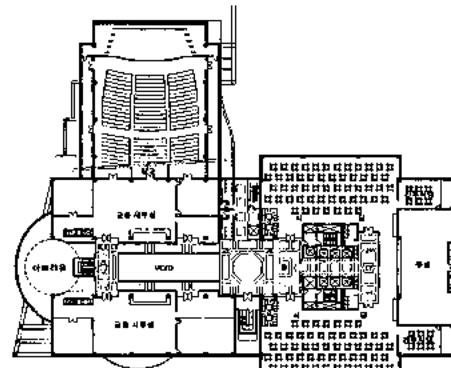
— 국민의 기호 및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담배인삼공사의 공공청사로서의 이미지 구현은 전통적인 3분법적 구성으로 안정된 기단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강한 생명력을 갖는 상징의 의미를 순수한 건축적 형태로서 표현하고자 했다.

— 공간구성에 있어서 기능별, 성격별로 명쾌한 구분을 함으로써 동선의 혼재 방지 및 효율적 이용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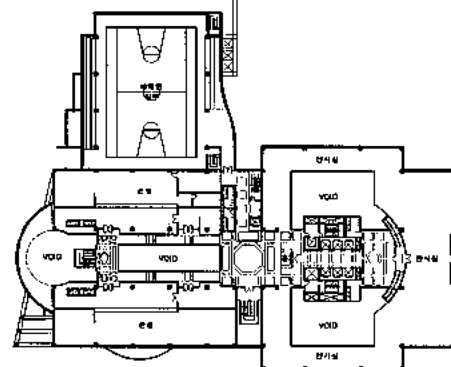
— 대지는 삼성역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지역 내에 위치하며 테헤란로를 도시축으로, 장소적 인지성을 제고하여 고층부의 주축으로 설정하고 대지의 전면도로인 영동대로를 대지축 및 가로축으로 전면 가로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저층부의 수축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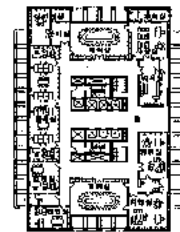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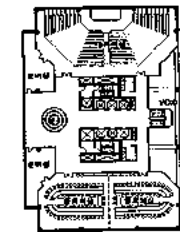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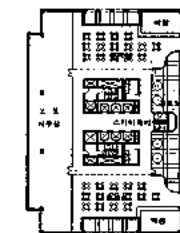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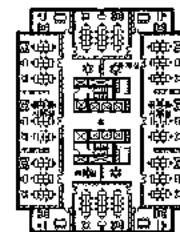
2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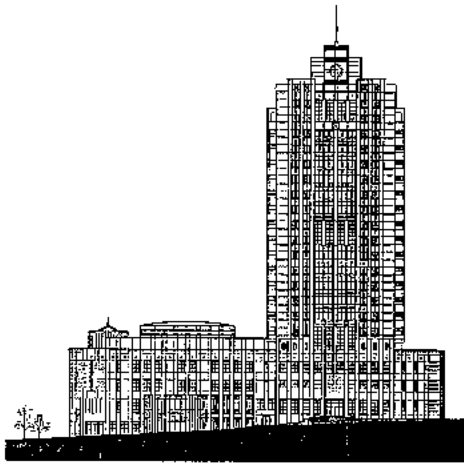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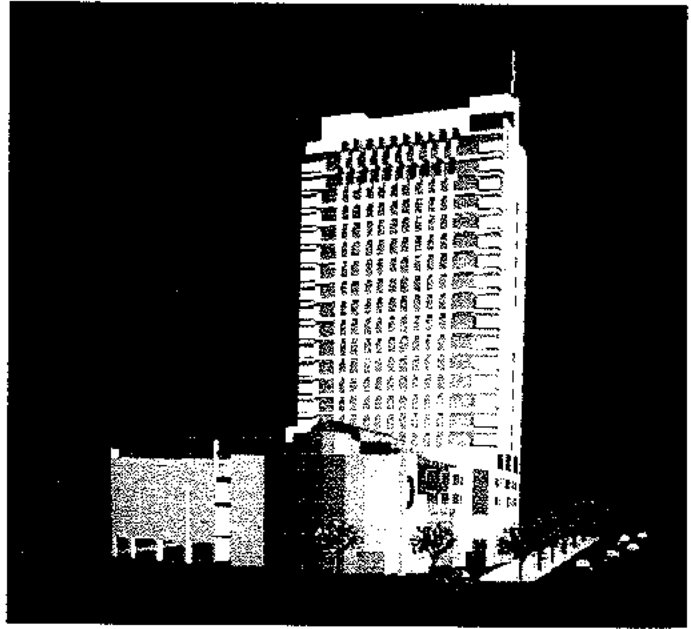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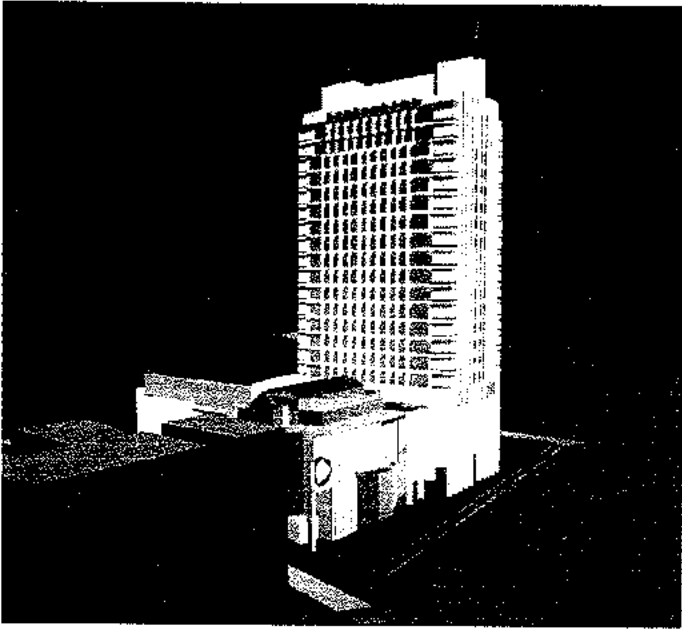
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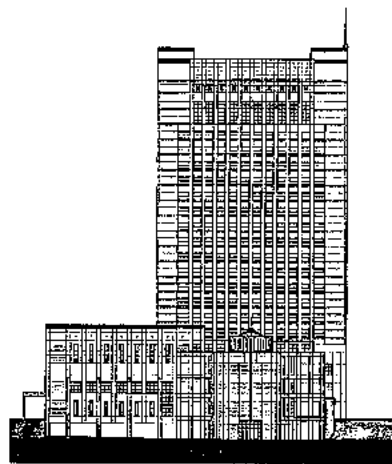
11층 평면도 스카이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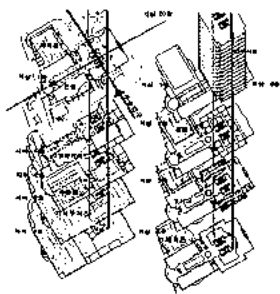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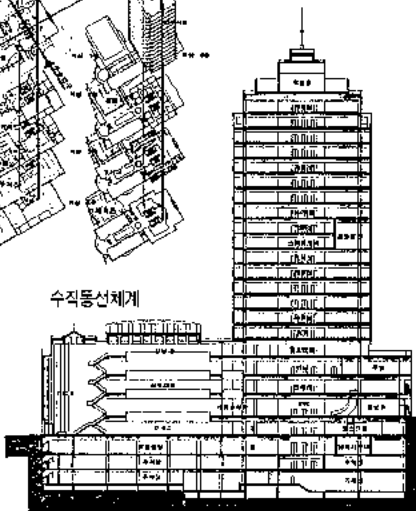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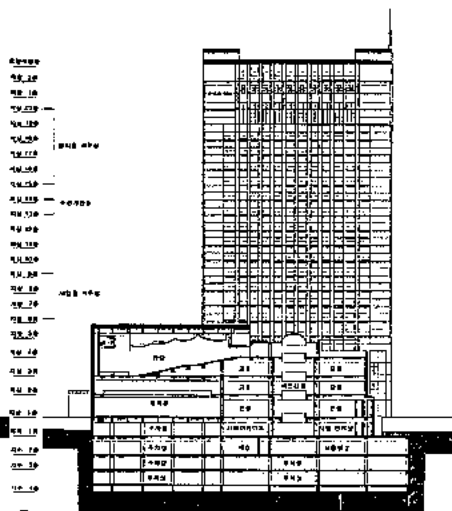
우측면도



수직동선체계



종단면도



횡단면도

- 각 기능별 위계와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각 시설에 이르는 접근 체계를 차등화 하였다.
- 사옥의 주기능으로 접근하는 체계와 부대시설로 접근하는 체계의 분리를 꾀하였다.
- 주변환경을 고려한 배치형태 계획과 외부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였다.
- 저층부와 상호 호흡하는 공간 및 형태 계획하여 사옥 및 대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 사옥의 업무 및 복합용도의 연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아트트리움 시설을 계획하였다.
- 주차공간의 시설과의 명쾌한 구분 및 원활한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 공사 및 유관 업무시설과 사업용 업무시설 사이에 스카이를 계획하여 공사용과 사업용의 상징적 구분 뿐만 아니라 대민 로비 및 사원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어지도록 배려하였다.

주요특징

(주)선진엔지니어링(案) (대표 : 김병년)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내치동 1002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1종 미관지구, 업무지구

대지면적 / 9,548 m²

건축면적 / 4,791.72 m²

연면적 / 65,853.41 m²

건폐율 / 50.2%

용적률 / 351%

규모 / 지하 4층, 지상 20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 알루미늄쉬트 + 복층유리

배치계획

— 전면 Band 형태의 공공공지에 대한 부담감을 Public Space의 집약으로 면적치환 가능성을 타진하여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동남쪽에 Private Space를 마련하여 사용자들의 안락한 휴식공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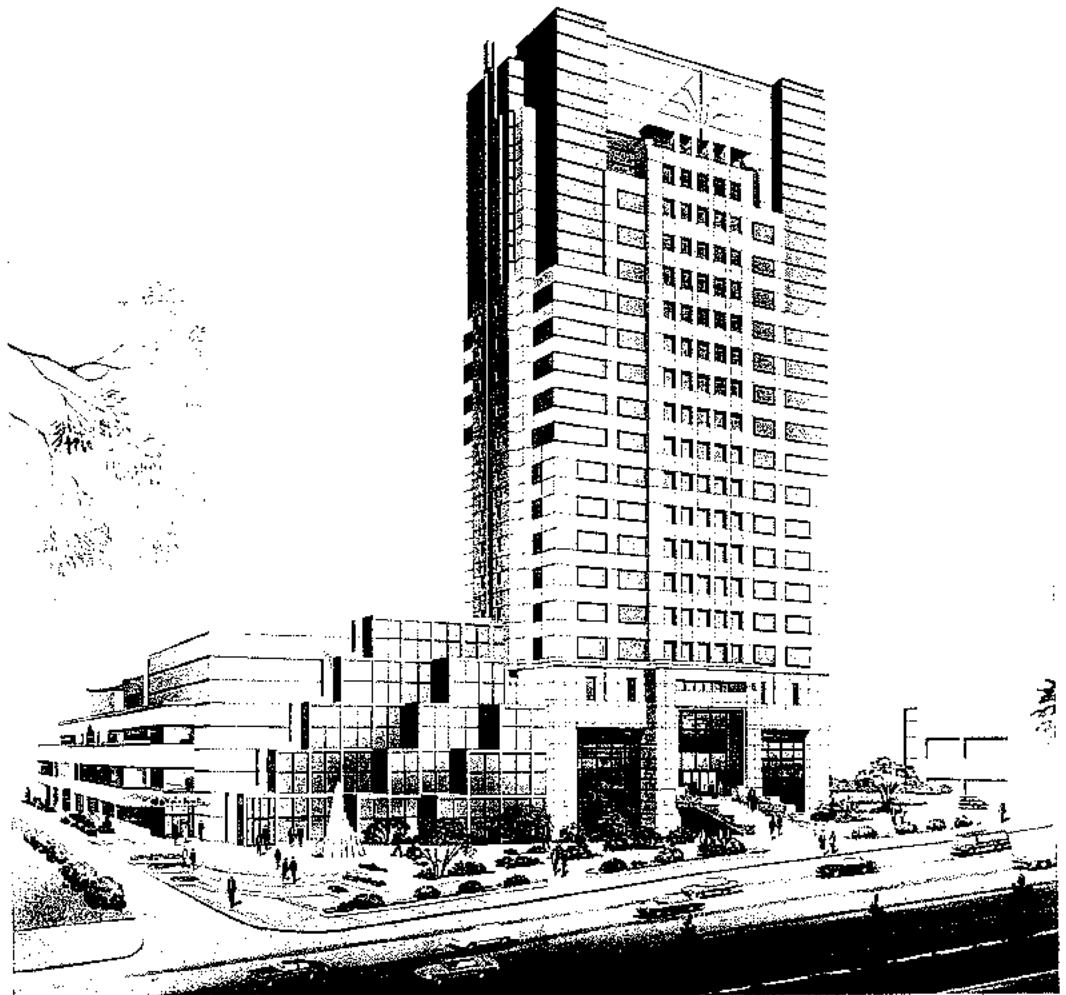
— 동선은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Ground Level (로비층) 이하의 선권이 있는 1층으로 차량을 진입시켜 완전한 보차분리를 시도

평면계획

— 아트리움 및 Open Space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배치하여 공간적 연계성 강화
— 저층부에 에스컬레이터 및 보조 코어설치로 고층부의 업무시설과의 동선 혼재 방지
— 업무공간의 장스판(Span)처리로 가변성, 융통성이 강한 미래지향적 공간 창출
— 자연채광 및 환기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운영이 가능한 쾌적 공간 제공
— 인텔리전트 빌딩 System 도입으로 업무효율 극대화

입면계획

— 담배 인삼공사의 인문적·상



투시도

장적 이미지 구현

•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한국적 정서 수용
• 안정속의 성장을 표현하기 위해 저층부·중층부·고층부의 Mass를 분할, 종합한 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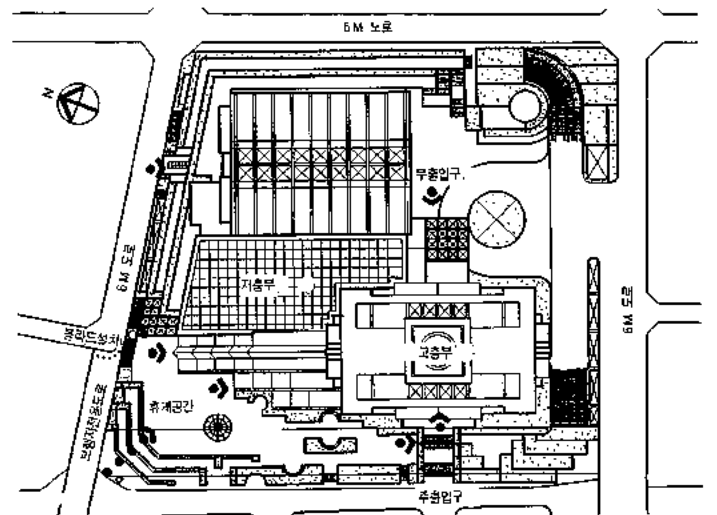
— 도시맥락에의 대응

• 영동 대로변의 Land mark로서 주변의 Sky line을 주도할 수직 고층 Mass의 창출
• 대형 건물의 위압감을 해소할 Humanscale의 도입
• 매스의 변화를 통한 사선제한의 극복 및 난조로움 탈피

— 복합기능표현 및 통일성 추구
• 각각의 기능은 내용적, 형태적 특성을 가지며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단면계획

— 대지의 Level 차를 이용 보·차동선의 입체적 분리
— 고층부와 저층부의 기능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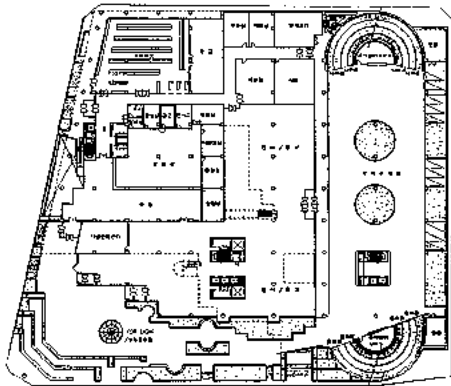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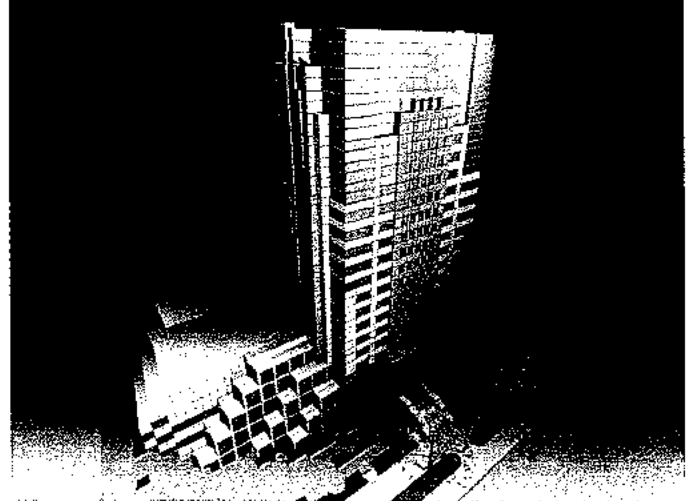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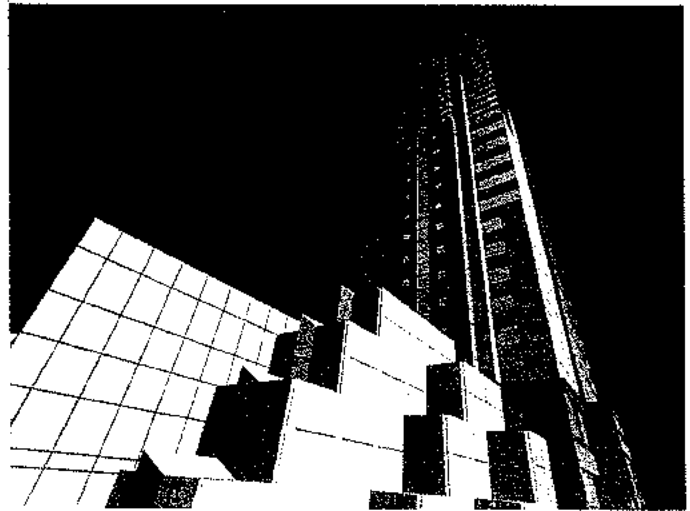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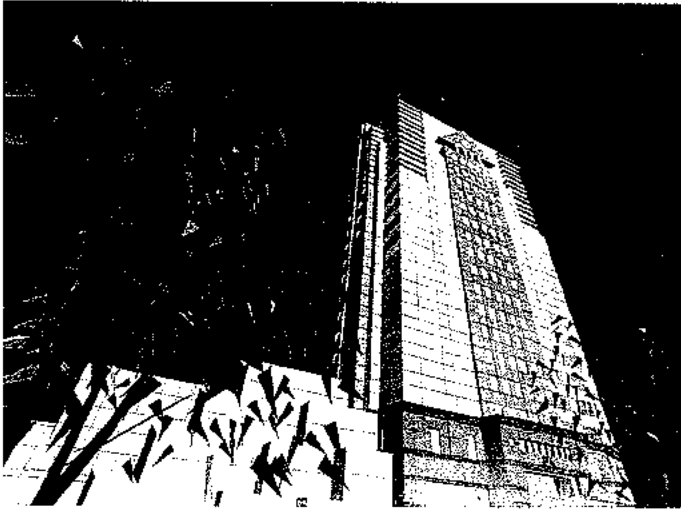
배치도

로 동선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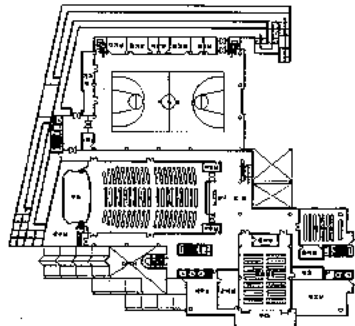
— 아트리움과 Void 공간의 적극적 도입으로 극적인 내부공간 연출
— 대형공간요구 기능들을 저층부의 최상층 또는 외부공간 하부에 위치시켜 구조의 경제성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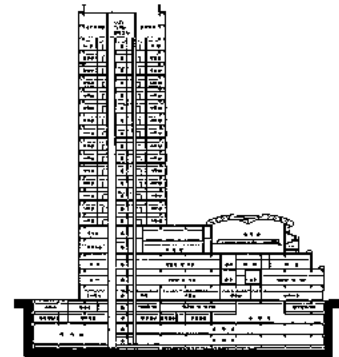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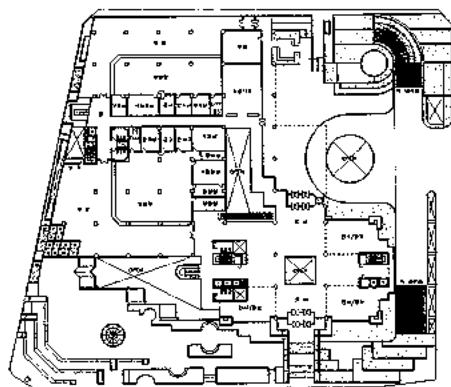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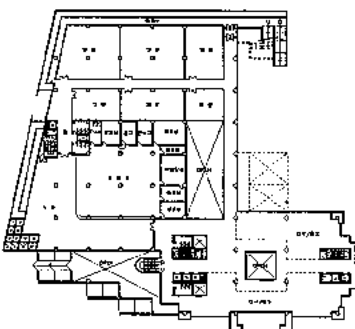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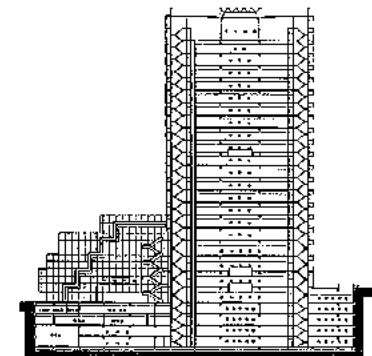
중단면도



로비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횡단면도

정립종합건축(案)

(대표 : 김정철)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바지구, 1종 미관지
구, 업무지구

대지면적 / 9,548 m²

건축면적 / 4,473.5 m²

연면적 / 66,981.8 m²

건폐율 / 46.85%

용적률 / 359.9%

규모 / 지하 5층, 지상 19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일부 포스트 텐션구조)

배치계획

— 건물을 고층부와 저층부로 구분하며 배치의 주축을 가로축으로 설정한다.

— 고층부는 업무시설 중심이고, 저층부는 후생시설 및 채력단련시설 중심으로 구성한다.

— 저층부의 배치는 삼성역에서의 접근성 느끼는 상승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로축선상 북동측에 위치하도록 하며 접한도로의 형상과 부합되는 형태를 따름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변과 도시분맥에 순응하는 공공적 이미지를 지니게 한다.

— 고층부는 대지(언덕)가 지니는 특징을 강조하는 의미로 가로축선상 남동측에 위치하도록 하여 업무시설로서 에너지절약 측면의 고려와 더불어 담배인삼공사 서울영업본부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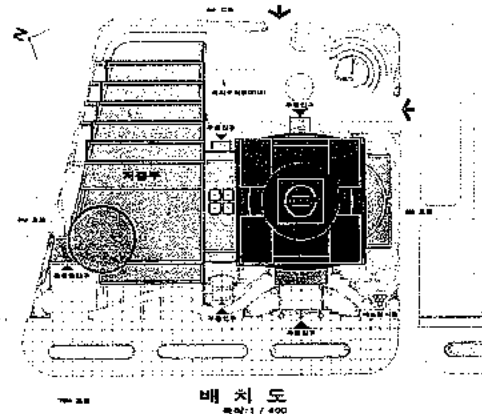
— 고층부와 저층부를 연결하는 부분은 가로축과 직교하여 대개 공간을 형성,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하며 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평면계획

— 공사용 업무시설과 채력단련



투시도



배치도
축척 1/400

시설, 후생복지시설, 금융기관, 임대시설 등의 복합시설의 명쾌한 공간분리에 의한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 고층부는 동선의 명확한 처리, 제반 설비기능의 집약과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을 고려하여 코아를 북서측 중앙에 배치한다.

— 저층부는 각 공간의 기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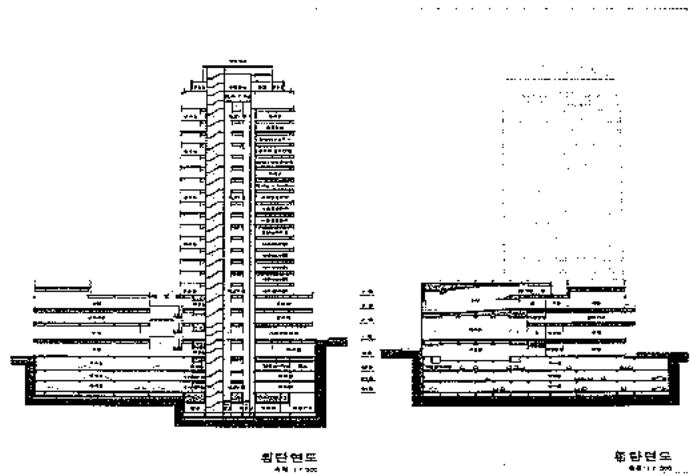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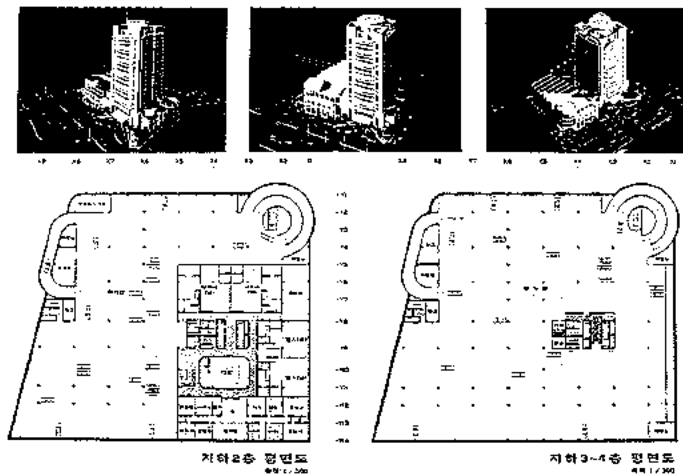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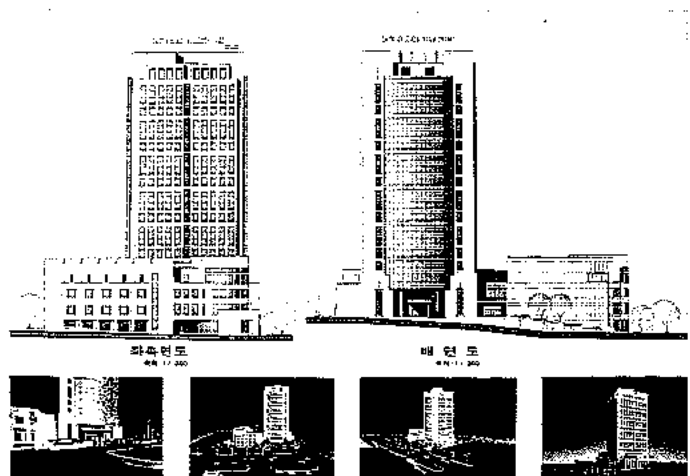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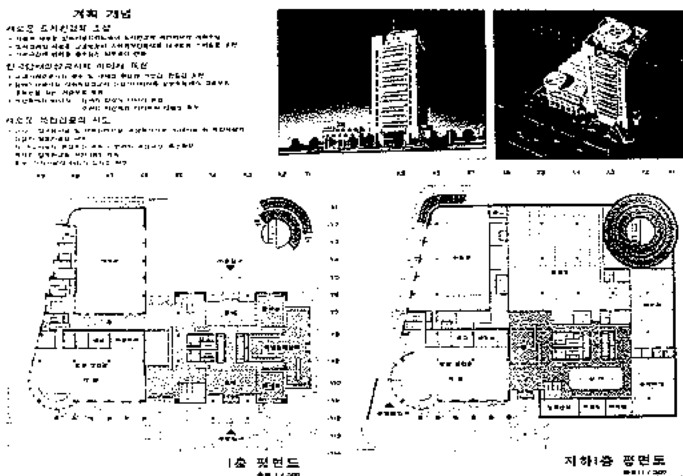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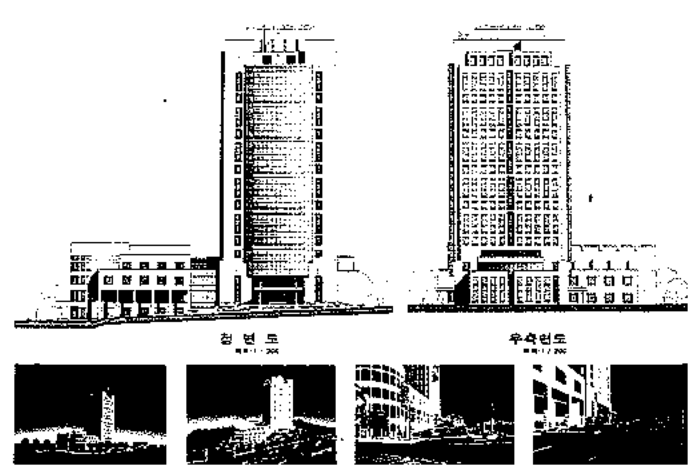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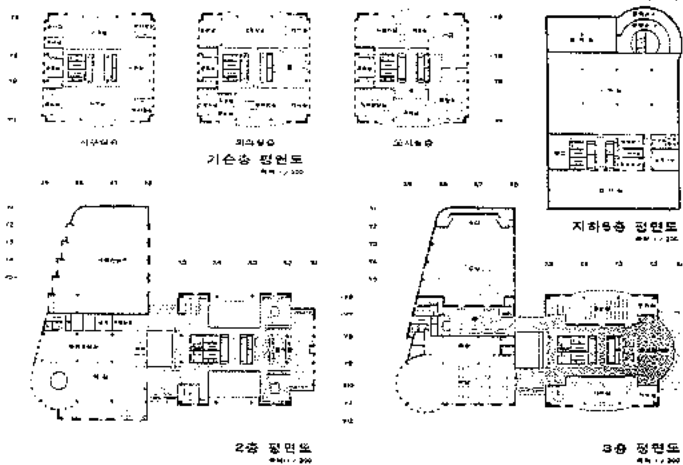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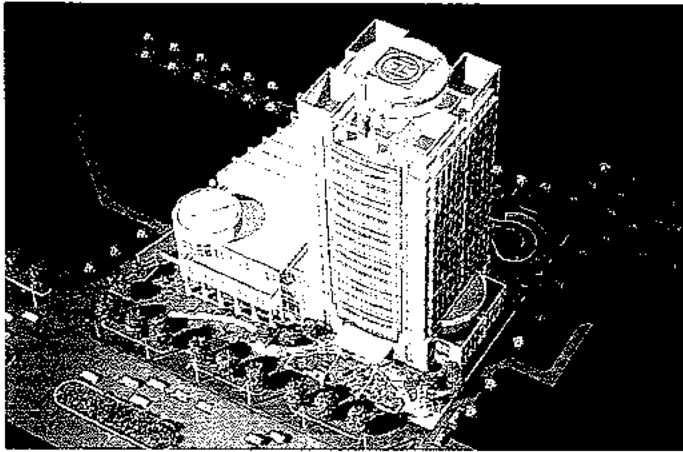
따라서 명확한 구분을 하였고 아울러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시설을 저층부의 앞부분에 채력단련시설 및 대강당은 저층부의 뒷부분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동선처리를 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단면계획

— 합리적인 층고계획과 설비체계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단면계획을 한다.

— 지원시설 및 옥내주차 구역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하층에 배치하고 저층부와 고층부의 연결부는 아트리움을 형성하여 자연채광을 내부로 유입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금융기관 및 전시, 홍보시설, 채력단련시설, 후생복지시설 등은 저층부에 배치하여 이용동선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동남아·태 종합건축(案) (양해준 + 석정훈)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1종 미관지구, 업무지구

대지면적 / 9,548 m²

건축면적 / 4,089.2 m²

연면적 / 65,131.7 m²

건폐율 / 42.83%

용적률 / 335.09%

규모 / 지하 5층, 지상 21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비너구이 + T 24층 복층유리



투시도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영업 본부사옥은 서울K역 영업지점을 주도하는 핵심부로서 체계적, 효율적 영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며, 공사의 사업 및 제품과 관련한 홍보, 전시 기능의 설치로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유기적 동선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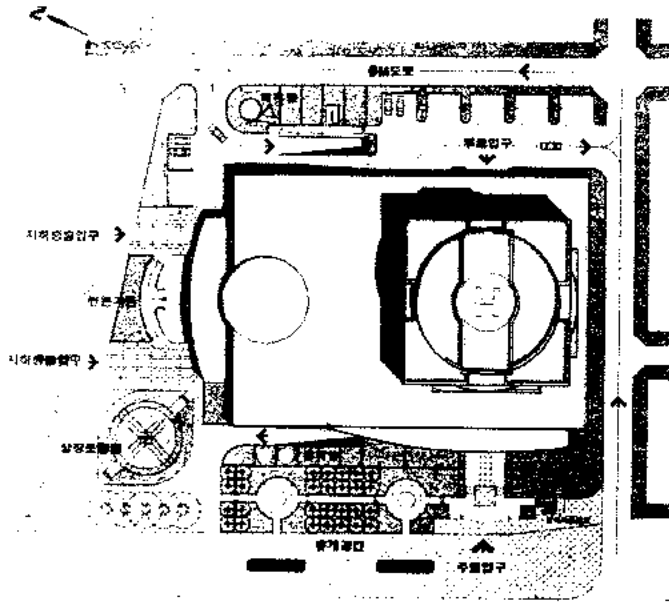
자연측과 대지측에 따른 건축 배치로 소망을 확보하고 인식도의 증진을 꾀하였고, 건물대지고 주차를 이용한 진입으로 접근성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주차 및 보행동선을 전, 후면으로 분리하여 동선의 혼재를 배제하였다.

평면계획

다양한 요구기능을 이용의 빈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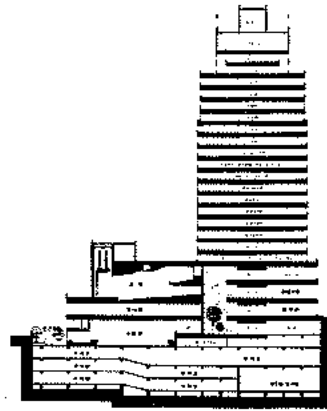
단면 배치에 적용하였다. 저층부는 이용빈도가 많은 금융관련시설, 전시홍보시설, 체육관련시설 등을 배치하고, 고층부는 사무관련 기능을 수용하였다.

특히 체육관련 및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의 Sunken Garden으로부터의 진입을 확보하여 동선을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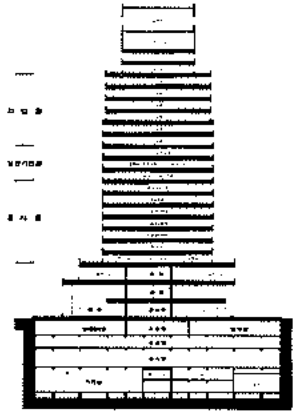


70M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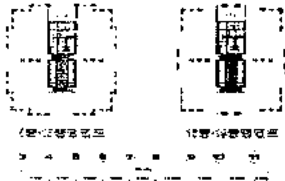
배치도



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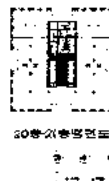
남향



1층



2층



3층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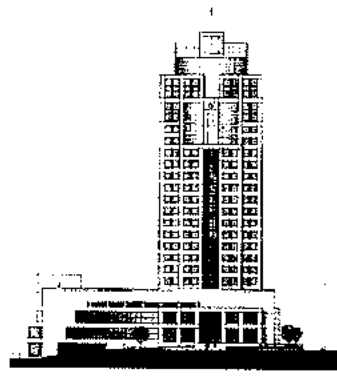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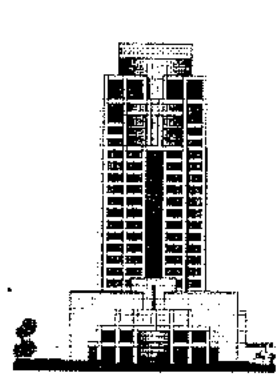
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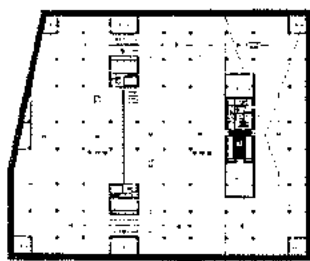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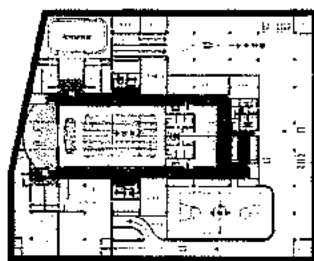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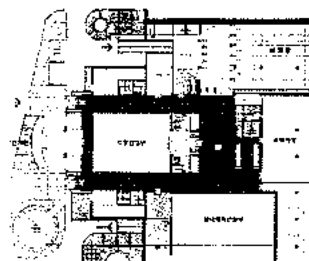
서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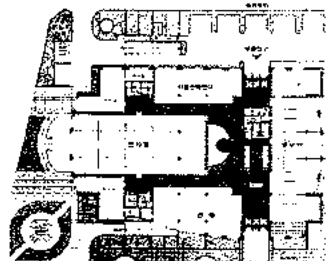
8층



9층



10층



11층

조형계획

공공청사로서의 상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3분법적 구성 - 기반부, 중층부, 고층부로,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의 수평적 패턴의 도입으로 친근한 집권이 가능토록하고, 중층부는 한국 남배인삼공사의 Image를 사가형과 원형의 복합구성으로 표현하였으며, 고층부는

도약을 향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Building Crown의 현대적 해석으로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설비계획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인간 행태를 분석하여 이를 설비계획에 반영, 종합적인 Energy 절약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BA, OA 및 TC 등 미

래첨단 정보시설을 위한 시설이 수용가능토록 계획하였다.

구리 시청사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민의 편의와 각종 대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시의 심벌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이고 창조적이며, 지역적 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구리 시청사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하였다.

지명현상설계로 실시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시공 종합건축사무소를 비롯한 6개의 건축사무소가 참여하여 시공 종합건축(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시공종합건축(案) (대표 : 우사웅)

대지위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산 94-2 일원
대지면적 / 자연녹지내 9,465평 중 6,553평

건축면적 / 2,674.5 m²
연면적 / 18,484.68 m²
건폐율 / 12.35%
용적률 / 65.8%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대회의실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행정 본관동 - 지하 1층, 지상 5층
민원 및 대회의실동 - 지상 1층
시의회동 - 지상 3층

외부마감 / 화강석 네더구이, 18mm 저반사 복층유리
주차대수 / 247대(육내 - 98대, 육 외 - 14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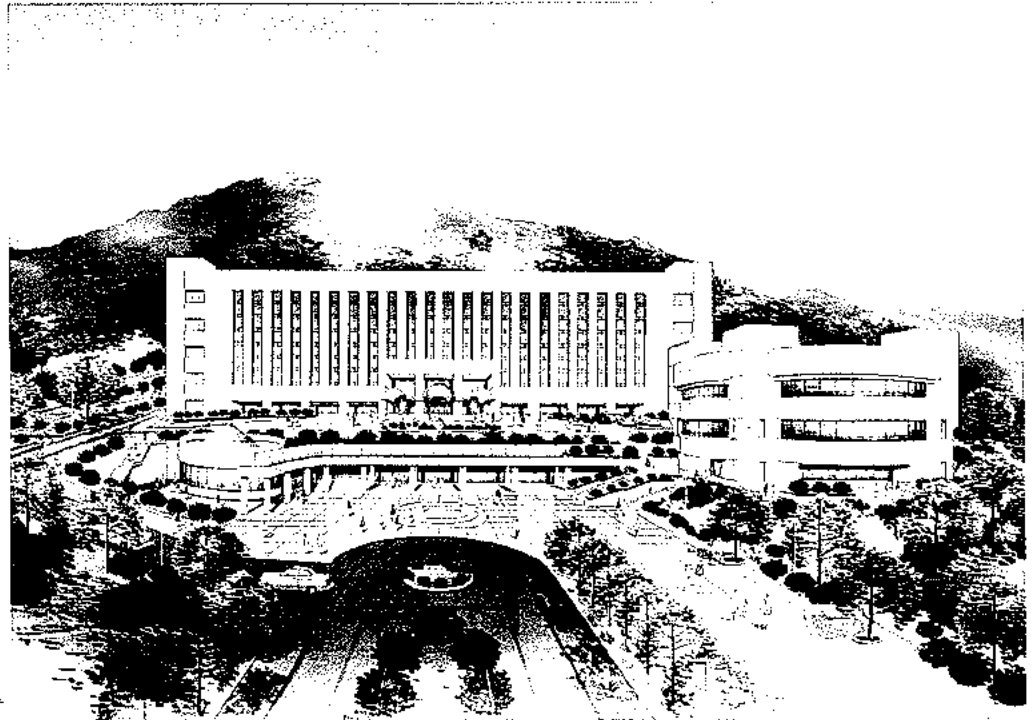
배치계획

- 전면도로와 건물의 중심축 유지
- 전면서가지와 조화를 이루며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
- 진입도로로부터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여 진입하여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민원실, 의회, 대회의실을 두어 시민 이용의 편의성, 쾌적성 부여
(대민 봉사기능 강화)
- 진입도로로부터 행정동, 민원동, 의회동의 조형적인 이미지 부각
- 경사지를 이용한 시설물의 배치로 시각적인 개방감, 상승감 부여
-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
- 장래 증축을 고려한 공간 확보 및 주차건물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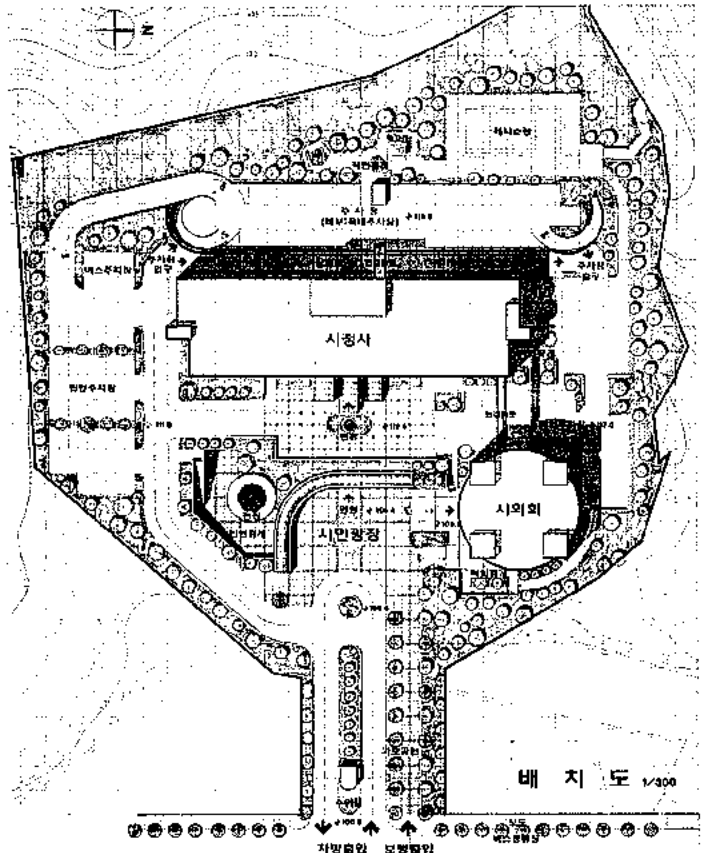
- (행정동 증축시 주차건물의 증축 가능으로 주차대수 확보 가능)
- 주진입도로면에 시민 휴게 공간의 설치로 자연스러운 접근 유도
- 주차장을 일반이용객과 직원용으로 분리(혼잡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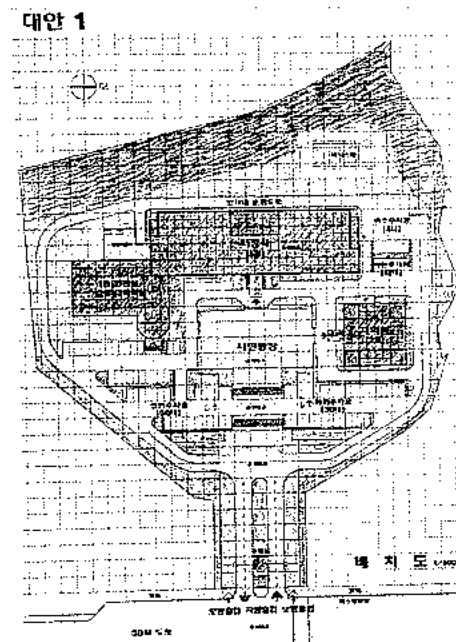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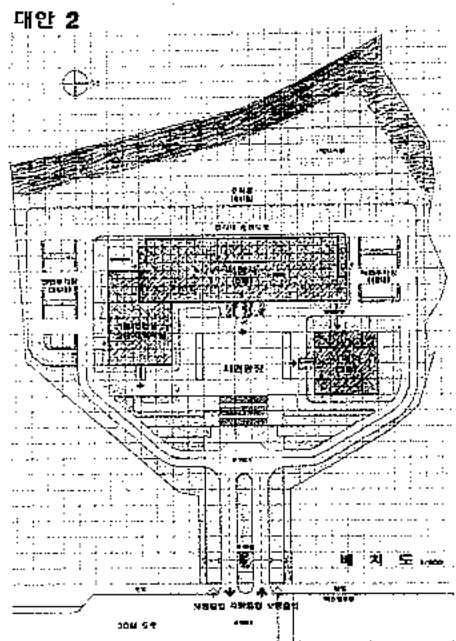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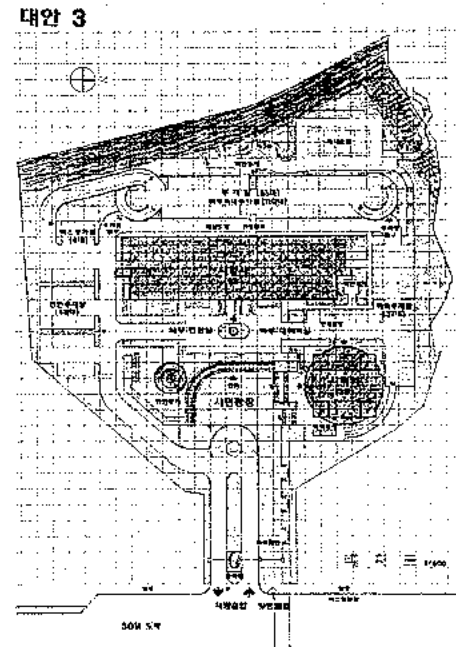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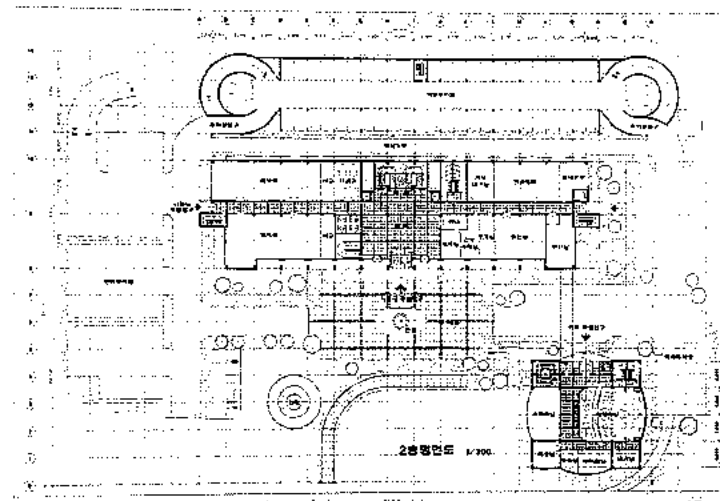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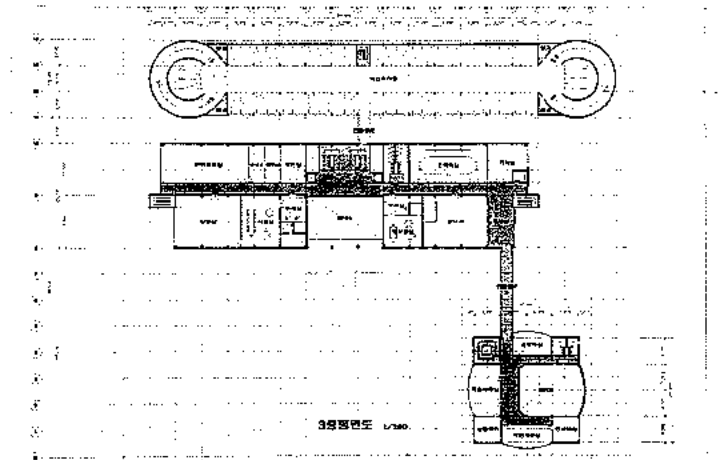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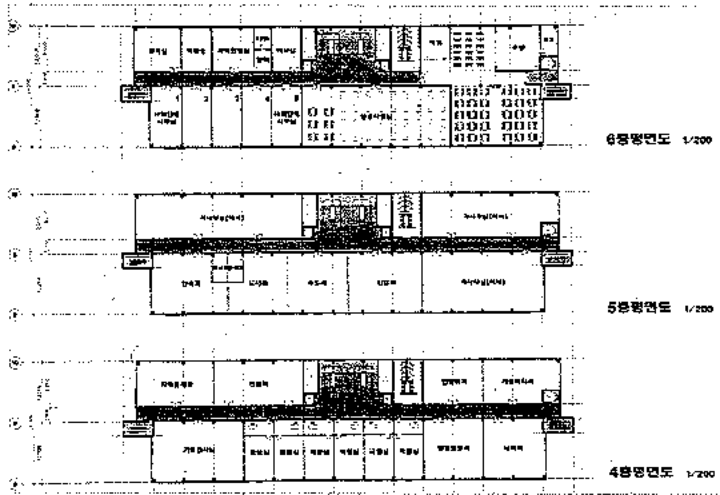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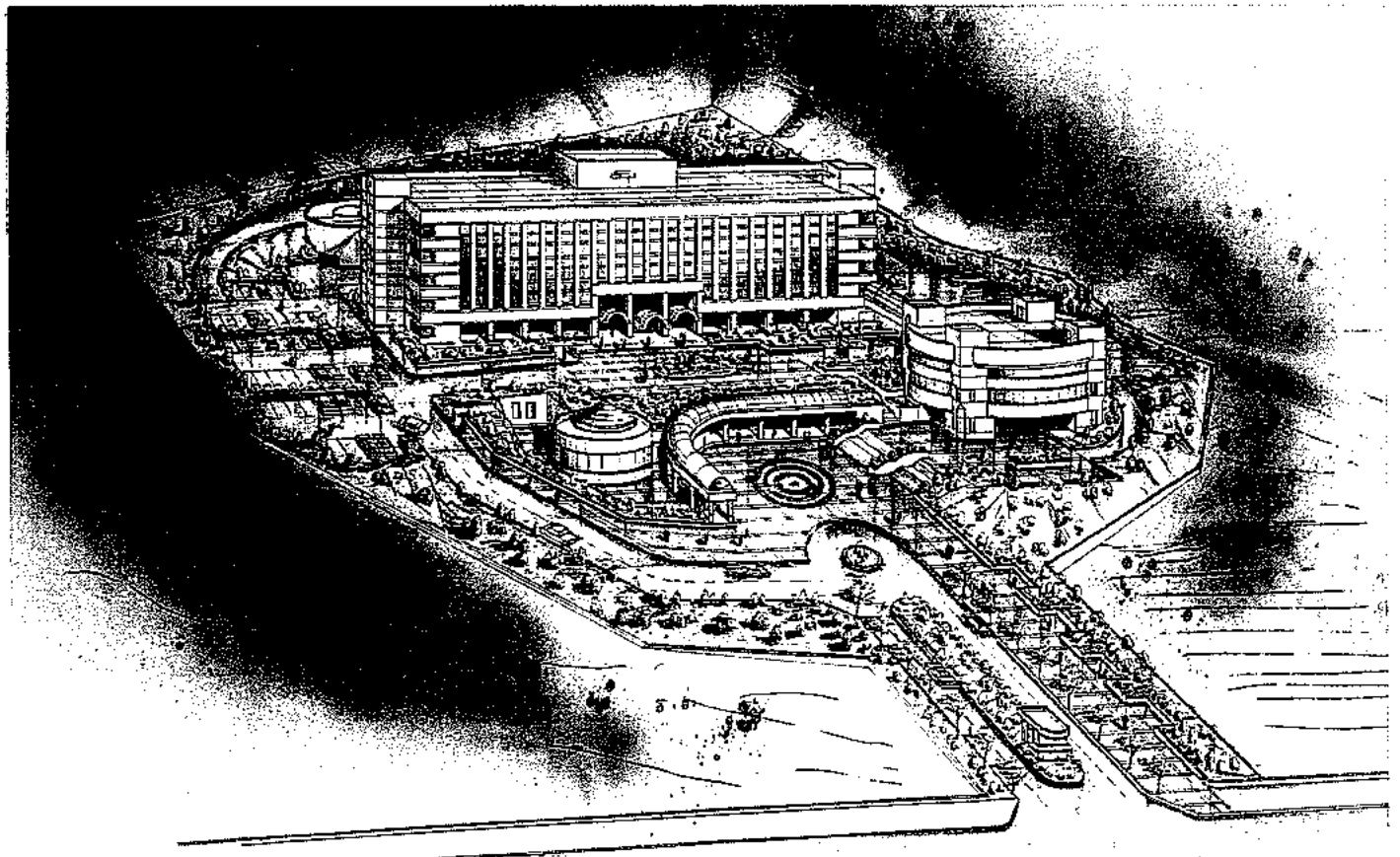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종 집회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육내·외 공간을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시의회, 대집회실을 근접 배치
- 시의회 독자성과 원활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성격 부여
- 행정 효율화를 위한 사무공간의 합리적 배치 및 미래지향적 시설 설비기능의 부여
- 각 사무실을 각과의 고유업무와 연관입무를 고려한 합리적인



투시도







조감도

동선 계획

- 시민에게 개방된 전시홀을 통한 행정동 1층의 개방된 홀로의 연결로 폭 넓은 시민의 참여와 편리한 접근기회 부여
- 기능의 성격에 따른 동별, 층별 분리계획 (행정, 의회, 민원, 후생, 주차건물)
- 사무공간
 - 적절 단위 공간 산출에 따른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
 - 기능적이고 쾌적한 공간계획 (천정고, 복도폭, 실유효폭)
 - 공간 변화에 따른 융통성 부여(파티션)

동선계획

- 행정본관동
 - 기능별 평면 구성을 중심으로 기능동선을 최소화
 - 시민홀과 본관의 유기적인 관계 수립
 - 이용율에 따른 출입구 분리 계획
- 의회사무동
 - 1층에 사무기능, 2,3층에 의회기능을 배치함으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ZONE 형성
 - 3층으로 행정본관동과 연결

• Core의 배치

- 규모와 기능에 맞는 Core의 배치
- 중복도형으로 동선을 최소화
- 집회시설
 - 직원과 일반 시민의 주용도의 대회장으로 업무동과는 분리
 - 시민광장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1층에 위치하여 의회와 더불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도 증대
 - 대규모 인원이 일정시간에 이동함으로 타동선과는 혼잡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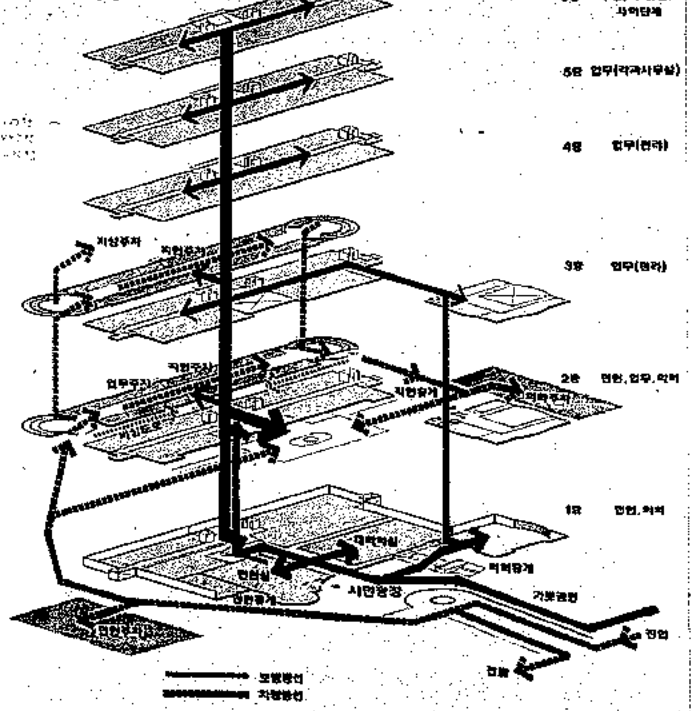
• 식당, 후생시설

- 직원을 대상으로 함으로 행정동 최상층에 위치시키어 밝고 쾌적한 환경의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업무능률 향상 제고
- 식당을 최상층에 둠으로서 음식 냄새의 환기에 유리하고 쾌적한 조망을 확보

• 주차시설

- 경사지를 이용하여 행정 본관동의 후면에 주차 건물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차량 운행이 용이하고 대지내의 일반 차량 동선과 교차를 방지
- 행정 본관동 증축시 주차시설 증축 가능

■ 동선기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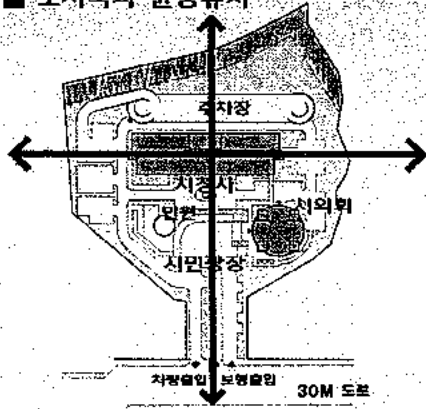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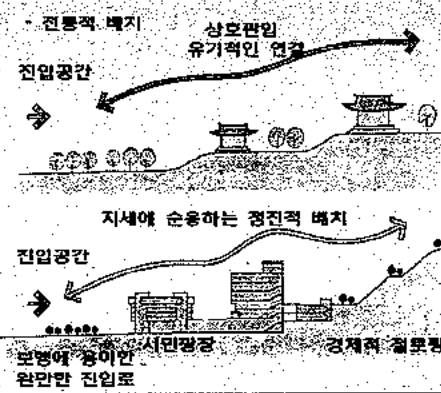
- 시민홀 및 대회의실은 이용빈도가 많은 장소로서 층고를 높게 하여 공공적인 성격을 강조
- 행정본관동 1층은 최소한의 면적(CPX 상환실, 물품창고,

기계, 전기실 등)을 제외한 실기능을 지상에 설치함으로써 채광 및 환기, 조망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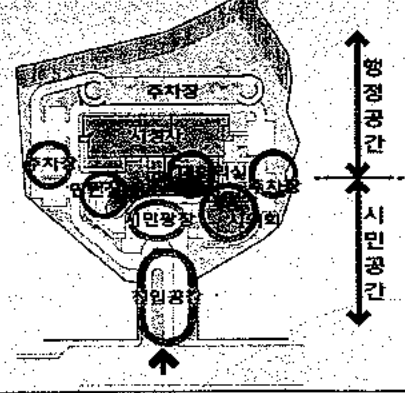
■ 도시축과 균형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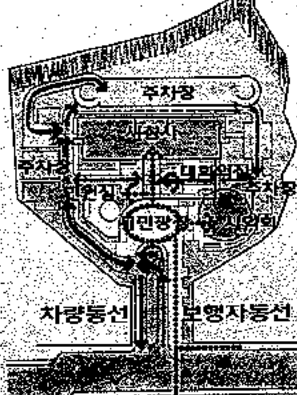
■ 대지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배치



■ 시민편의를 위한 공간구성



■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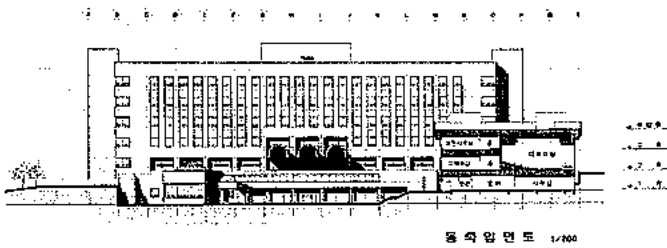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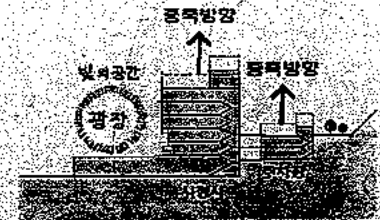


■ 이용자에 따른 공간의 분리와 유기적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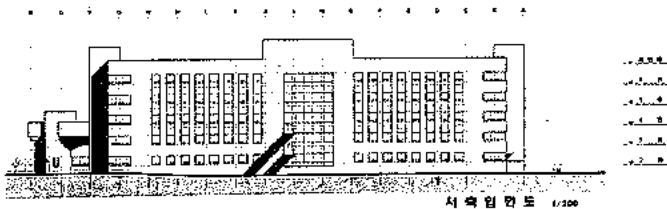


■ 장래 증축에 대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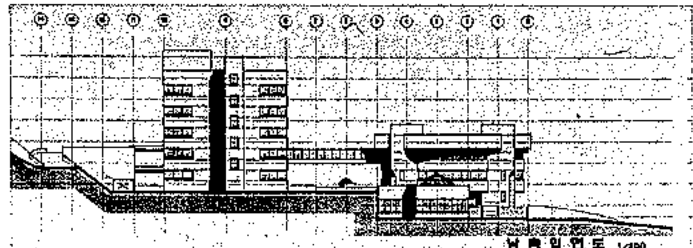
· 행정수요 확장에 따른 증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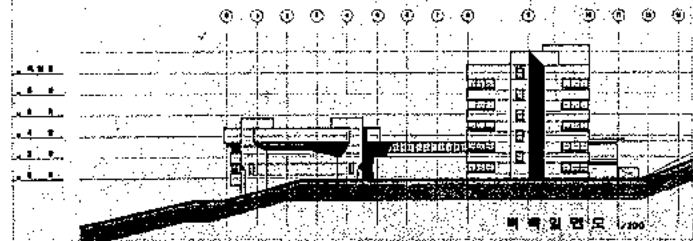
종축단면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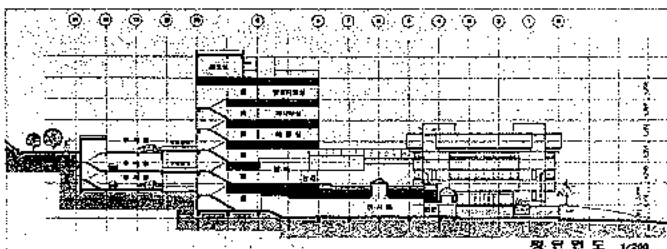
서측단면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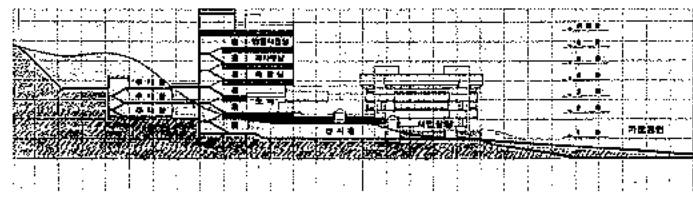
남측단면도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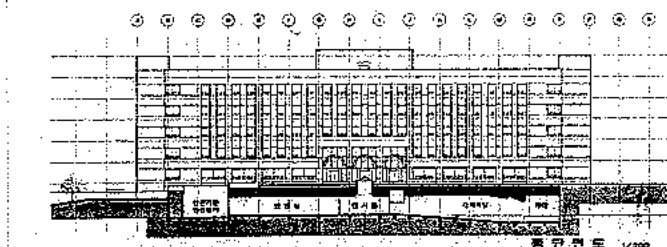
북측단면도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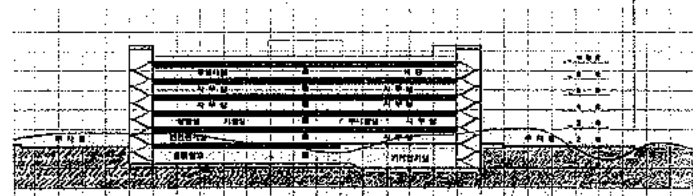
장단면도 1/200



대지평단면도 1/300



동단면도 1/300



대지종단면도 1/300

패러다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6)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吉成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프렌, 공학박사

by Kil, So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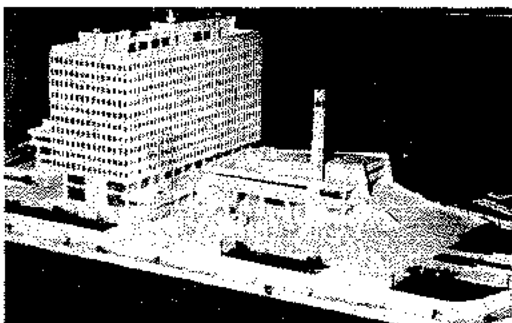
1. 패러다임(Paradigm)과 건축적 사고유형
2.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1)
3.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2)
4.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특성
5. 박물관 기념관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분석
6. 공공청사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분석
7.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디자인 접근 태도의 전망

⑥ 공공청사 설계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1. 건축적 사고유형의 다양성과 접근 태도

해방이후 시행된 시청사, 도청사, 종합청사, 법원청사 등 공공청사의 설계경기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건축적 사고유형은 기능적 사고유형, 유형학적 사고유형, 기하학적 사고유형,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 등으로 건물유형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기능적 사고유형에 의한 작품은 시청사 건축에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60년대에 시행된 부산시청사(1968)와 종합청사(1967)는 단순한 기능의 분리와 연결방식에 의존하는 초보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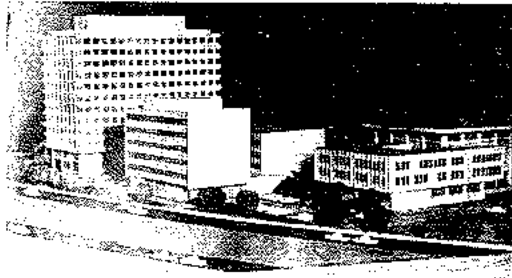
- ① 부산 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신옥강당선) 조감도
- ② 부산 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신옥강당선) 배치도

부산시청사의 경우 당선작인 부산중앙안(신옥강당선), 2등의 손한중안, 3등의 신진안(최창규 당선)은 모두 청사와 강당, 민원실 영역을 기능의 분리와 결합이라는 zoning 개념에 따라 접근하고 있어 기능적 사고유형의 접근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층의 청사는 권위의 상징을 위해 주축상에 배치되며 전면 또는 후면에 강당과 민원실이 기단식 데크에 의해 결합됨으로써 동선의 분리와 조형상의 효과를 피하고 있다. 특히 기단과 데크 조성에 의한 배치개념은 이보다 1년전에 시행된 정부 종합청사에서 제시된 바 있는 디자인 개념의 영향을 보여 준다. 그러나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시행된 인천시청사와 제2정부종합청사에서는 기능적 분리를 피하면서도 자연과의 조화(제2정부종합청사의 임·이안), 중정공간의 도입(인천시청사의 우원안), 조형적인 형태추구 등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 제한된 의미의 기능의 개념을 탈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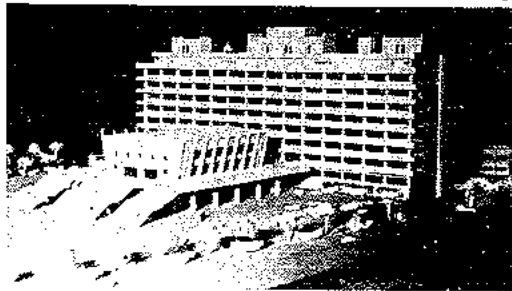
법원청사에서는 기능동선의 분리처리, 경제적 동선 계획, 자연 대지에의 순응 등이 형태적 표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2~3개의 기능적인



②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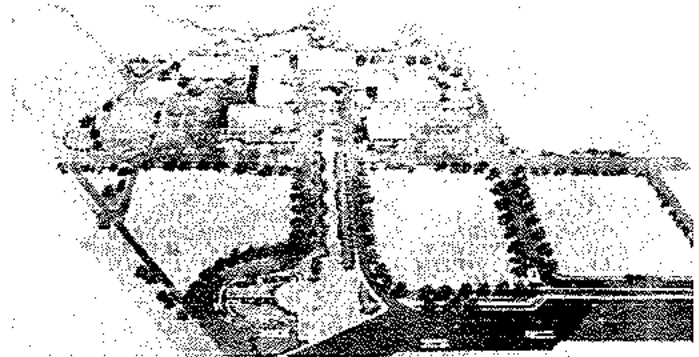
매스가 좌우대칭의 균제형식으로 구성되어진다. 서울법원의 건축문화안, 대법원 청사와 원도시안, 헌법재판소의 서울건축안 등의 기능적 사고에 기초한 작품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대법원청사의 당선작인 원도시안(윤승중안)은 “대법원의 상징적 이미지 부여와 대법원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디자인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기능 충족을 우선으로 한 후 이것에 부합되는 상징적 형태를 찾아내어 기능과 형태가 부합되는 이미지를 찾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저층부(6층)로 이루어진 H자형의 배치형식에 각 기능들을 분화하여 배열하고, 중앙부에 기념비적인 고층부(17층) 타워가 설정되어 대법원의 이미지를 부여하는에서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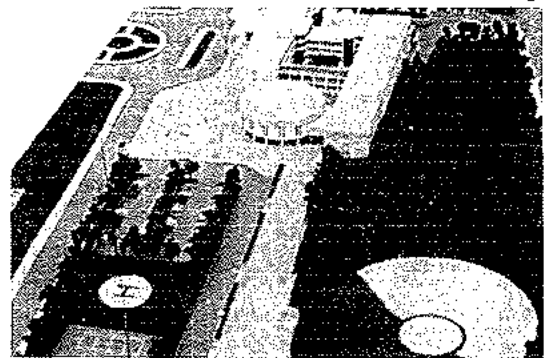
유형학적 사고유형의 작품은 60년대의 부산시청사의 유절안, 8년대의 인천시청사의 당선작인 삼우안, 제2정부종합청사의 우수작인 종합건축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배치기법과 중정형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형 평면형식을 취하고 건물을 저층화하여 내부공간이 자연 및 옥외공간과 강한 연계성을 갖도록 의도하는 공통된 경향을 보여 준다. □자형의 중정형의 경우 강한 내장적 형태구성에 Compact 한 평면구성이 지향되며, 모든 기능공간들이 이 질서 속에 수용되어진다. 열주, 피로티, 처마지붕, 회랑, 아트리움형 공간 등이 공간의 연결요소로 도입되어 공간의 영역을 경계화 시켜주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청사의 유절안은 그 배치형식에 있어서 고층건물의 개념을 탈피하고, 이미 유형화된 형식 즉, 전통적인 중정형의 □자형 형식을 먼저 설정하고 이 형식의 질서 안에서 다양한 기능군들을 배치함으로써 형태적 질서와 전통공간의 이미지를 재현하고자 하는 유형학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구성 개념은 후에 인천시청사와 여러 응모안들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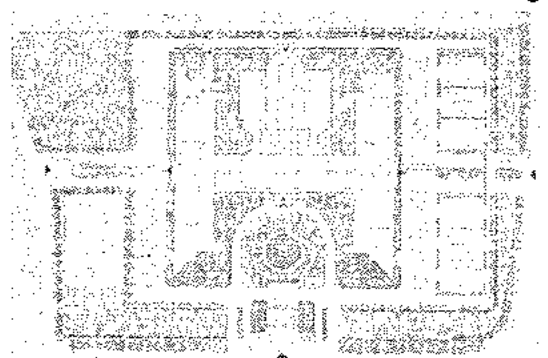
헌법재판소의 당선작인 현신안과 공간안, 대법원 청사의 진원안과 금성안은 중정성격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Compact 한 □자형이나 H자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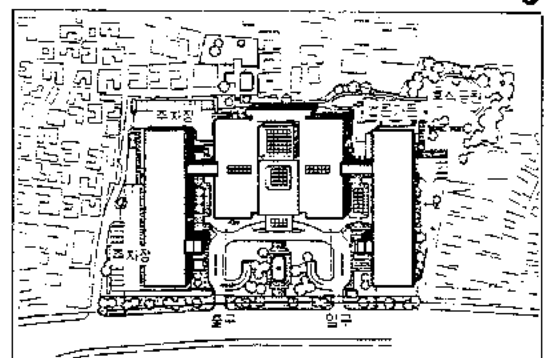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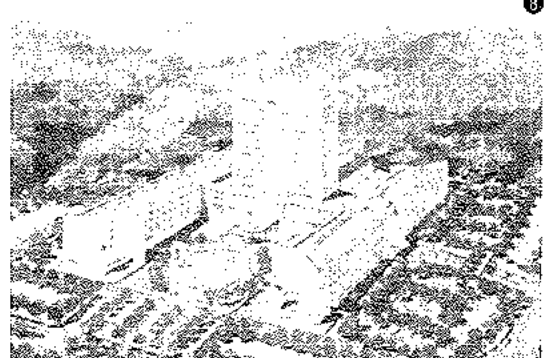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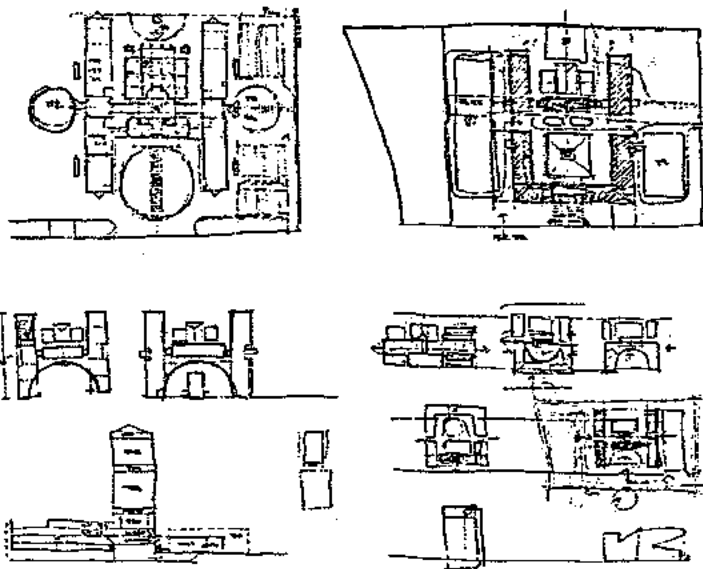


8



9

- 3 부산 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2등 순환중안)
- 4 부산 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3등 최창규안)
- 5 제2정부 종합청사 계획 설계경기 (1978년 : 당선작 임-이안)
- 6 인천 직할시 시청사 설계경기 (1982년 : 응모작 우원안)
- 7 대법원 신축계획 설계경기 (1989년 : 윤승중당선) 배치도
- 8 헌법재판소 청사 설계경기 (1989년 : 서울건축안)
- 9 대법원 청사 신축계획 설계경기 (1989년 : 윤승중당선) 조감도



평면형식과 함께 대청축에 의한 좌우대칭의 형태적 질서와 기단, 열주, 지붕으로 구성된 고전적 3분 구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아치 등의 역사적 이미지 요소의 인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법원 청사의 우수작인 진원안과 금성안은 상징적, 기능적 접근 축의 전개, 중첩된 기단식 정원의 구성 및 지형에 순응하는 계층적 질서의 형태전개(진원안)와 고전적 구성원리 및 사선진입에 의한 한국적 분위기(금성안) 재현을 전통적인 물리적 구성원리와 기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형학적 사고의 접근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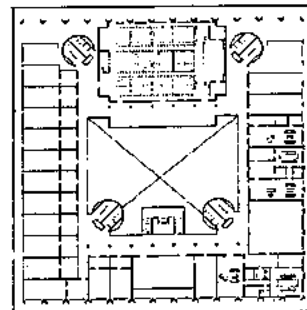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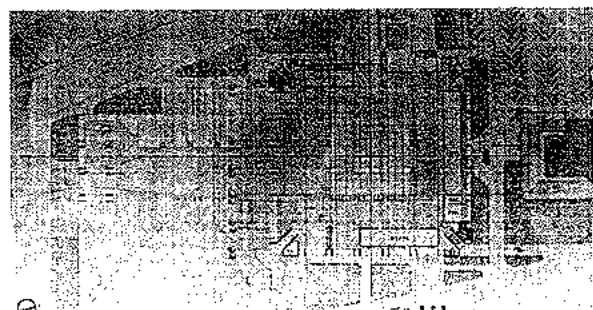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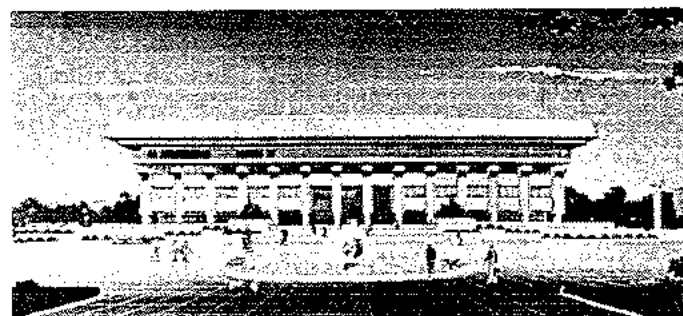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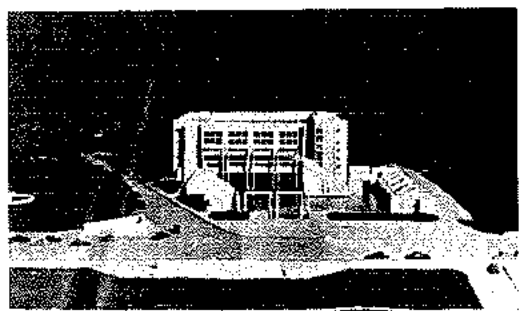
기하학적 사고유형은 건축의 기능이나 공간의 새로운 해석에 앞서 기하학적 형태구성에 의한 강한 조형성을 강조하며, 6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설계경기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청사의 장병화안은 당시의 건축사조인 조소적 형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인천시청사의 공간안, 정부종합청사의 종합건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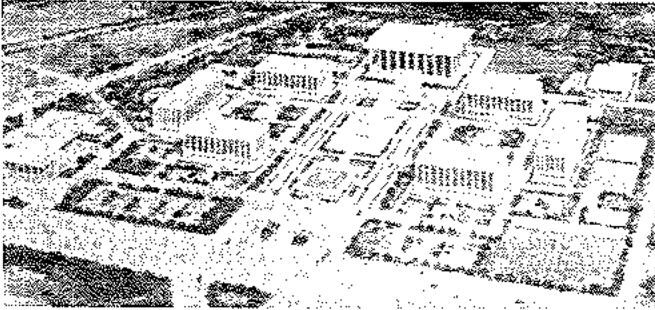
- ⑩ 대법원 청사 신축계획 설계경기(1989년 : 윤승중당선) 개념 스케치
- ⑪ 부산시청사 설계경기(1968년 : 응모작 유결안) 조감도
- ⑫ 부산시청사 설계경기(1968년 : 응모작 유결안) 배치도
- ⑬ 인천직할시 시청사 설계경기(1982년 : 당선작 김창수안) 투시도
- ⑭ 인천직할시 시청사 설계경기(1982년 : 당선작 김창수안) 2층 평면도

나상진안, 제2정부종합청사의 아도무안, 공간안 등은 기하학적 형태구성에 의한 강한 조형성을 무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능에 의한 형태적 분리가 요구되는 강당이나 대형공간을 기하학적 형태의 틀에 구속시킴으로써 형태의 미적 효과에 치중하게 되며, 건축이 외부공간과 맺게되는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서울법원의 당선작인 공간안과 마산 지방법원청사의 서한 종합안, 헌법재판소의 공간안 등에서도 조형적 의도가 중정형의 정방형 입방체나 H자형의 배치와 평면구성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역사적 요소의 사용이나 대지조건의 수용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서울법원 청사의 당선작인 공간안은 I 자형의 기하학 형태에 모든 기능을 분산하여 수용함으로써 형태적 질서 속에서 집약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수직의 두동(棟)은 단일의 형태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강한 조형성 추구에 의한 기하학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치개념에서 보여지는 전면광장의 타원형 계단과 내부의 전면 도로는 권위적인 상징적 전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I 자형의 양익부에 위치하는 사선진입 형식의 피로티는 중앙부에 조성된 중정(주공간)으로 접근하는 이용자 동선을 한번 의도적으로 꺾어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상징적 동선인 주 정면의 동선과는 달리 내부도로 - 전면광장 - 피로티 - 입구(주출입구) - 중정공간 - 각 기능공간으로 연결되는 진입공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경사지형과 조형적 표현의지와 조화를 작가는 전통적인 사선진입 방식에 의해 해결하고자 한 듯하며, 이것은 역사적 요소나 위계적 공간구성의 경직성 대신 전통성을 상기시키는 체험적 속성을 부여해 준다.

안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의 작품은 60년대에 시행된 시청사 설계경기 작품의 응모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산시청사의 윤승중안은 전통적인 배치형식을 취하면서도 이미지화 된 전통적 공간경험 구조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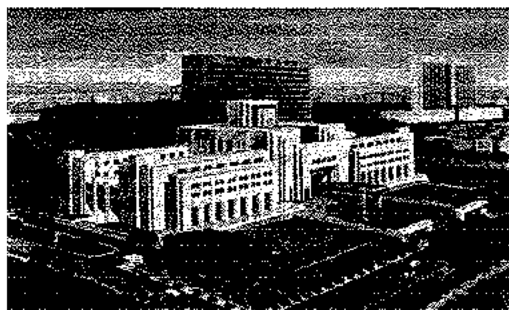
16

일상의 기능적 공간에서 다시 재현하기 위해 물리적 요소가 주는 연상적 이미지보다는 인지 - 행태적 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자형에서 벗어나 가람배치나 궁궐배치형과 ㄷ자형의 결합된 형식을 통해 다양한 외부공간의 위계적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강당을 건물의 전면이나 측면에 두는 기능적 사고유형의 안들이나 중정의 중앙부에 설정한 유결안과는 달리, 건물의 가장 깊은 단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시민동선을 이곳까지 유도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기벽과 일주문 형식의 진입부, 피로티 등으로 외부공간을 여러 영역으로 경계화시켜 중정형 옥외공간의 다양성을 체험시키고자 한데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공간적 질서는 상징적 전면광장 - 건물로 처리되는 기능적 사고유형의 개념과는 달리 진입공간 - ㄷ자형 중정공간 - □자형 중정공간 - 강당 등 축을 따른 공간적 시퀀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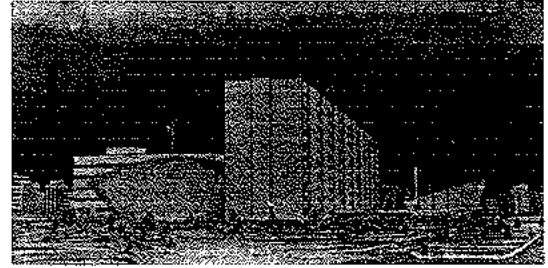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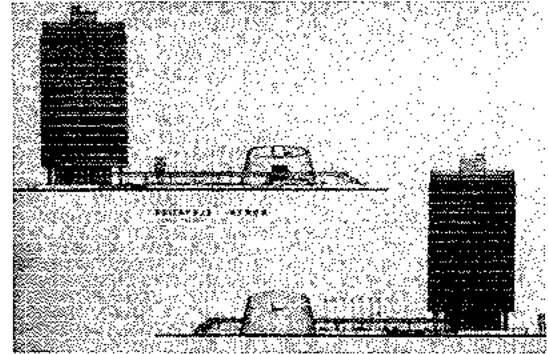


18

- 15 제2정부종합청사 계획설계경기(1978년 : 우수작 종합건축안)
- 16 헌법재판소청사 설계경기(1989년 : 김희수 당선)
- 17 대법원청사 신축계획 설계경기(1989년 : 우수작 금성건축안)
- 18 대법원청사 신축계획 설계경기(1989년 : 우수작 진원건축안)
- 19 부산시청사 설계경기(1988년 : 응모작 장병화안)
- 20 정부종합청사 설계경기(1967년 : 가작 나상진안)
- 21 제2정부종합청사 계획 설계경기(1978 : 응모작 공간안)
- 22 제2정부종합청사 계획 설계경기(1978년 : 응모작 아도무안)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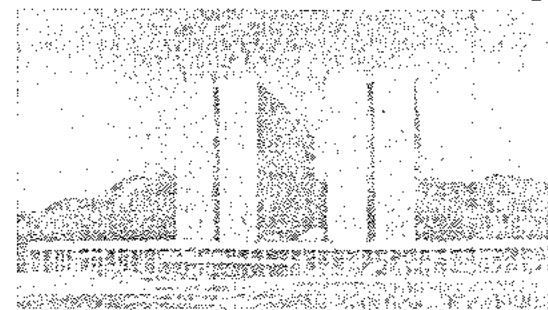
보여준다. 전통적 요소의 재현보다는 인지 - 행태적 속성의 시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한국적인 공간 경험의 의식을 일상의 공간경험으로 다시 엮어내고자 한 의도는 동일 작가에 의한 증권 거래소 응모안과 대법원 청사의 당선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정부 종합청사의 나상기 안에서는 부분적으로 수공간과 회랑에 의해 동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제2정부종합청사의 고려안은 연속된 공간의 전개로 장소에 대한 형태적 체험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지 - 행태적 체험이 배치와 평면공간구성의 기본적 원리가 되고 있는 경우는 서울법원의 금성안과 일전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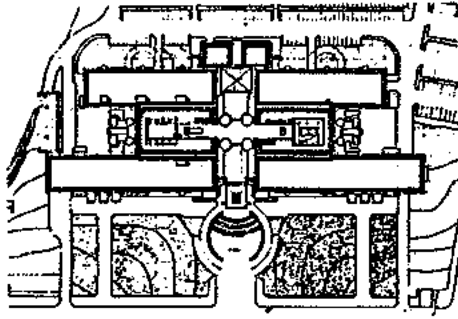
금성안은 공간안과 비슷한 매스형식과 결합개념을 보여주고 있으나, 축의 설정과 기능군의 배치 및 건물과 옥외공간의 연결관계가 민원광장 - 법정광장 - 중정 - 후정의 공간적 질서를 지니며, 내부 공간과 관련되어 체험되어지는 행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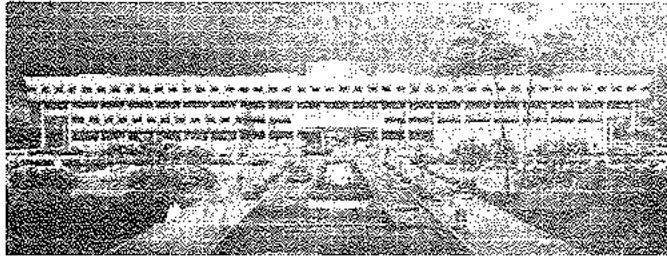
21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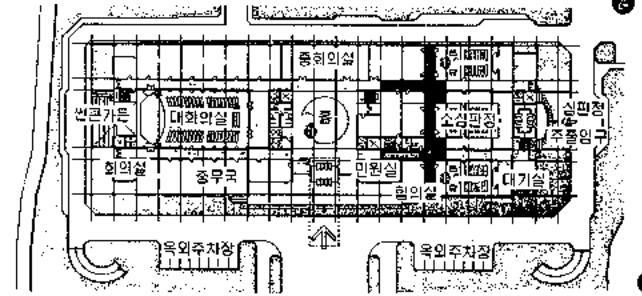
24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일건안은 2개의 법정동과 1개의 후생동으로 이루어지는 옥외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집합체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 옥외공간과 연결되는 아트리움 형태의 시민홀의 주공간이 법정동과 민원동의 메개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안에 비해 공간의 진행과 함께 공간의 이해와 지각이 명료하고 단순하게 처리되어 위계화 되어 있다.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의 작품은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청사의 김석철안과 신전안은 구조적 형태요소의 노출로 당시의 브루탈리즘적인 표현수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종합청사의 종합건축안은 P.C 패널에 의한 외관구성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2정부종합청사의 우수한 박춘명안은 전체의 디자인 개념차원에서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에 의한 디자인 접근태도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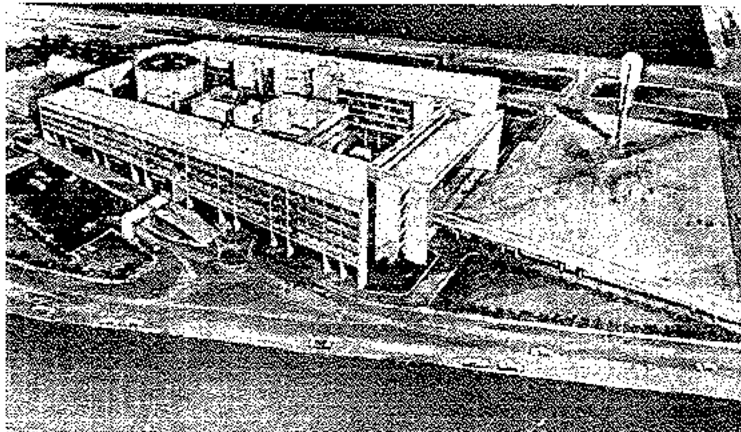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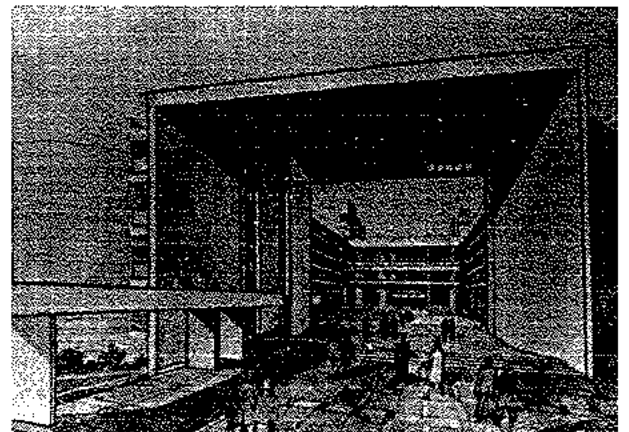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고층의 쌍둥이 타워는 구조적 공법을 표현하는 외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의 특징이 되는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개념, 자연채광의 실내유입과 투명성 공간의 강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법원청사의 경우,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과 심상적 사고유형에 의한 디자인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법원청사에 요구되는 강한 상징성과 권위적인 기념성이 강조되는 유형학적 사고나 기하학적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에 시행된 모든 법원청사의 설계경기 작품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건축적 사고의 측면에서 볼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공공청사 건축에 대한 접근태도는 기능적 사고유형에 의한 디자인 접근이 지배적이며, 이와 더불어 유형학적 사고와 기하학적 사고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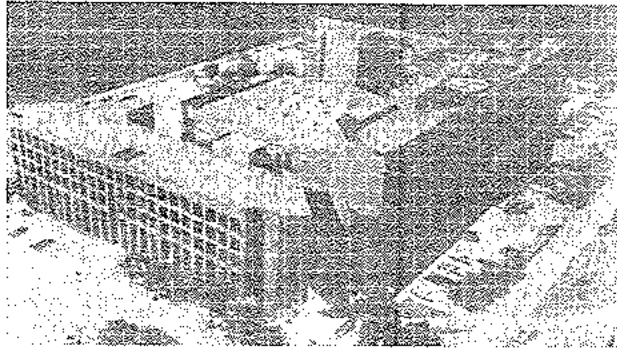
28

- 23 서울법원 종합청사 설계경기 (1983년 : 김수근 당선) 배치도
- 24 서울법원 종합청사 설계경기 (1983년 : 김수근 당선)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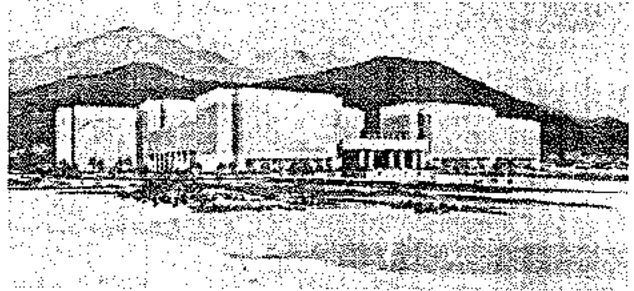
- 25 헌법재판소 청사 설계경기 (1989년 : 응모작 공간안) 투시도
- 26 헌법재판소 청사 설계경기 (1989년 : 응모작 공간안) 1층평면도

- 27 부산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응모작 윤승중안) 조감도
- 28 부산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응모작 윤승중안) 부분 투시도

- ㉔ 한국 증권거래소 설계경기
(1968년 : 응모작 윤승중안)
- ㉕ 제2정부 종합청사 계획 설계경기
(1978년 : 응모작 고려건축안)
- ㉖ 서울법원 종합청사 설계경기
(1983 : 우수작 금성건축안) 투시도
- ㉗ 서울법원 종합청사 설계경기
(1983년 : 우수작 금성건축안) 배치도



㉔



㉕

따라서, 공공청사 건축에서 나타나는 대지해석과 역사 및 맥락의 해석과 수용태도는 건축적 사고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능적 사고유형은 대지 여건의 활용과 이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보이며, 80년대에는 도시적 맥락까지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유형학적 사고유형과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축(軸)에 의한 구성방식은 건축의 규범형식을 대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성향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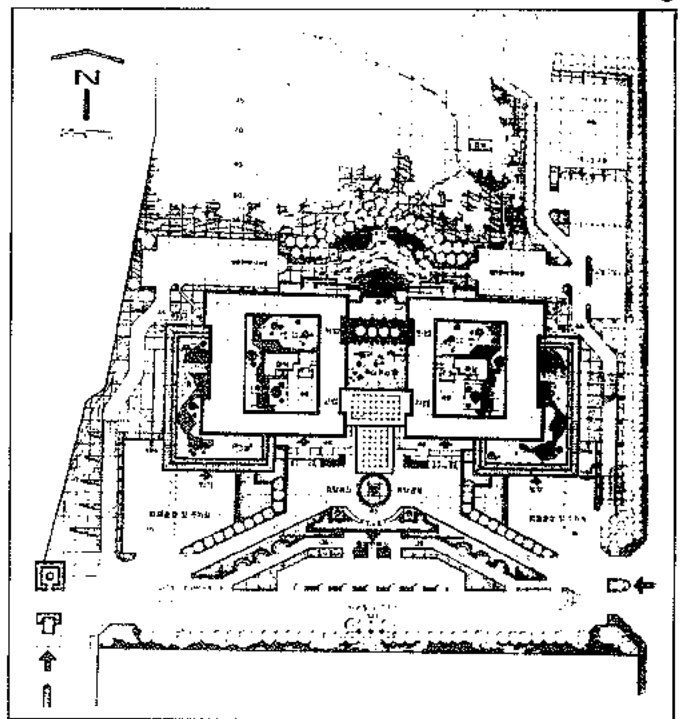
2. 평면형식 및 공간구성체계

평면 및 공간구성의 체계에 있어서 시청사 건축은 대청과 비대칭 구성의 배치와 평면형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청사, 종합청사의 경우는 건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상으로 대칭적 구성이 지배적이다. 박물관의 경우 자연과의 조화개념에 의해 비대칭적 구성이 지향되고, 기념관의 경우 매모리얼 홀과 호국관 등이 중심적 공간이 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기념성과 상징성의 형태적, 공간적 질서가 전개되는 반면, 시청사의 경우 중심적 공간의 복선이 결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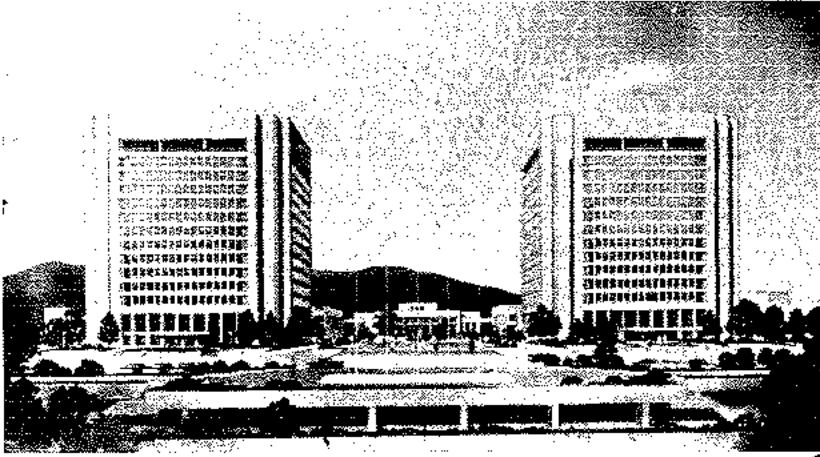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는 시청사 건축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종래의 중복지형의 평면구성에서 탈피하여 내부에 시민모임을 위한 중정 성격의 아트리움 공간이 도입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미 60년대에 부산 시청사의 유결안과 윤승중안에서 중정형 공간의 시민모임공간이 제안된바 있으며, 70년대에는 제2정부종합청사의 저층분산형 계획안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정형 공간을 시청사의 기능공간과 접속시키려는 의도는 80년대에 시민 모임의 공간영역이 중시되면서 중요한 공간구성의 개념으로 채택된 것이다. 인천 시청사의 공간안에서는 장방형 형태의 중정성격인 아트리움으로 나타나며, 우원안에서는 기능불력을 접속시켜주는 옥외형 중정으로 나타난다. 수원시청사의 당선작에서는 청사와 시민공간을 연결해주는 매개공간 성격의 아트리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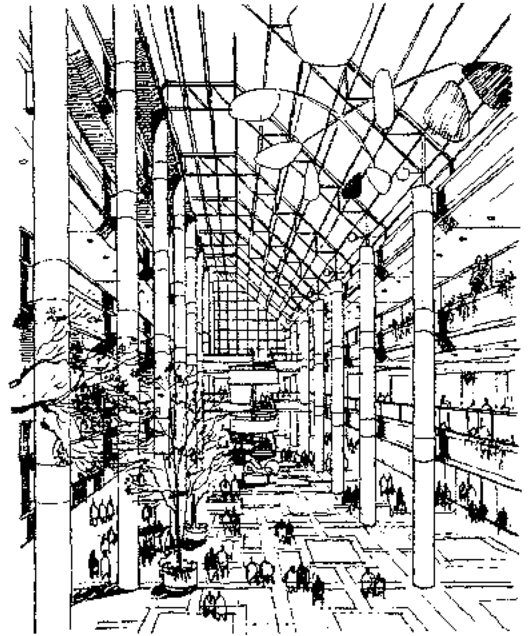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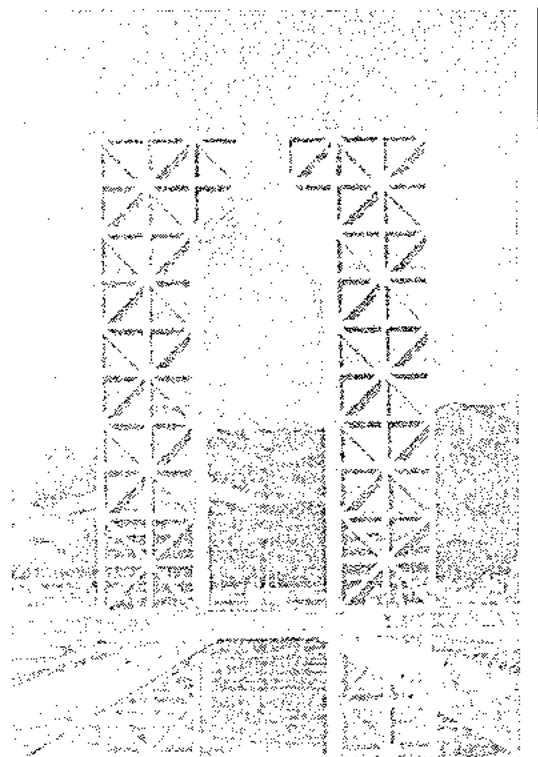
㉖



㉗



- ③ 서울법원 종합청사 설계경기
(1983년 : 우수작 일건건축안) 투시도
- ④ 서울법원 종합청사 설계경기
(1983년 : 우수작 일건건축안) 시민홀 스케치
- ⑤ 부산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응모작 김석철안)
- ⑥ 제2정부 종합청사 계획 설계경기
(1978년 : 우수작 박춘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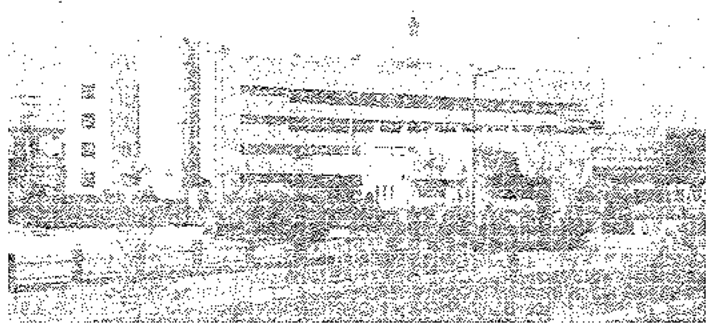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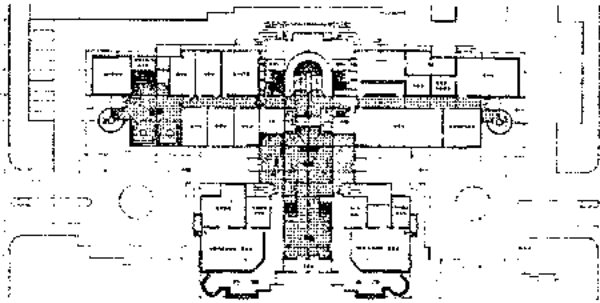


법원청사는 시청사와는 달리 대칭적 구성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법정은 가장 엄숙하고 신성한 공간의 의미를 지니며, 그 공간적 위치는 축 진행방향의 단부나 중앙에 설정되어져 기념관 건축의 메모리얼 홀이나 호국편과 같이 공간구성의 위계화와 체험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평면형식은 단일의 중정형 공간을 중앙에 지니고 있거나, 2개의 중정형 공간을 좌우대칭에 갖는 형식을 취한다. 이 중정형 공간은 복잡한 동선을 분리하거나 연결시켜주는 매개 공간적 역할을 한다. 특히 대법원 청사의 당선작인 원도시안은 좌우대칭의 절제된 평면형식에 각 기능이 구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요약된 동선을 통해 기능동선의 단순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의 상징축 상에는 중앙광장 - 대홀 - 대법정을 잇는 공간적 시퀀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의 극적 효과나 기념성은 강하지 않다. 핵심 공간인 법정은 중앙부에서 벗어난 축상의 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진원안은 핵심 공간인 법정이 6개층의 거대한 공간으로 되어 공간에 강한 기념성을 부여하여 전체 형태구성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금성안은 4~5층 높이의 중정형 아트리움이 부각되고 있어 홀과 좌우의 중정형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이 이루어진다.

또한 법원 기능의 새로운 해석은 만원기능의 공간영역을 종래의 건물 후면의 위치에서 탈피시켜 청사의 정면이나 측면에 둬으로써 이 공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서 발견된다. 서울법원의 금성안은 중정형의 법정공간 영역을 중앙 좌우측에 두고 전면 테크부에는 민원공간을 위치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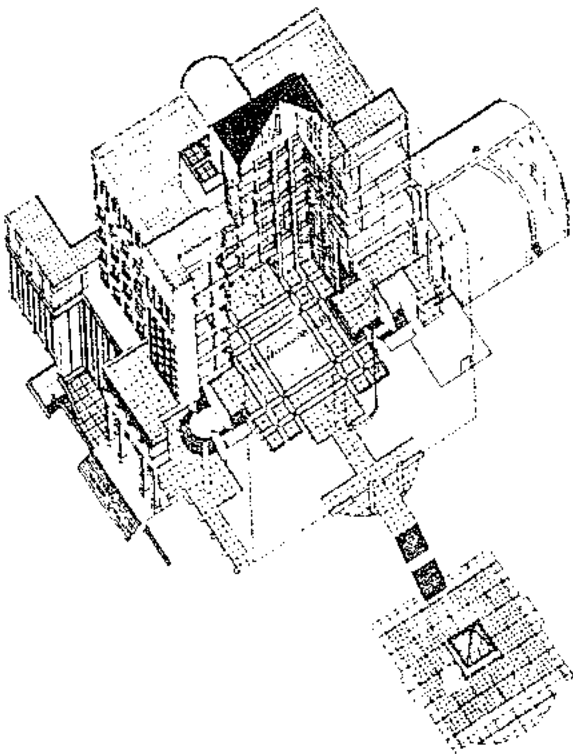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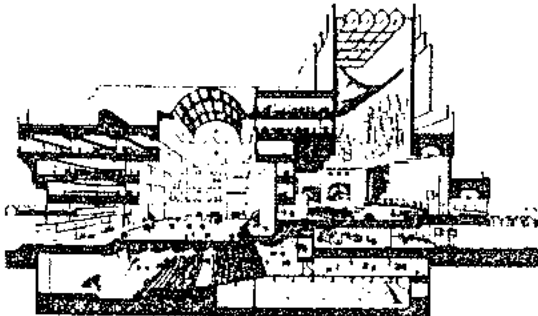
3. 형태 및 외관표현의 경향

시청사 건축은 강한 조형성과 기능성의 일치된 표현을 중시하는 기능적 사고유형의 접근태도가 지배적이다. 부산 시청사의 경우 입상작을 포함하여 많은 응모안들이 주변의 맥락과 외부공간의 관계보다는 건물 자체의 형태의 상징성과 조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형태 표현의



의도는 그 이전에 시행된 정부종합청사의 형태 이미지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선작과 2등안은 고층의 청사가 균일한 사면을 지니도록 의도되었으며, 수평창과 사각창에 의한 외관구성을 취하고 있다. 기능적 사고에 의한 고층위주의 형태구성, 2층의 데크식 기단의 형성, 입면구성의 패턴, 강당과 상징탑 등에서 연상에 의한 형태적 상징의도, 고전적 아치형상의 사용 등이 공통적으로 조형표현의 수단으로 채택되어 지고 있다. 이들의 안은 기능주의적 외관을 취하면서도 당시의

- ① 수원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임장렬당선) 1층 평면도
- ② 수원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 : 임장렬당선) 전경
- ③ 대법원 청사 설계경기 (1989년 : 우수작 진원건축안) 단면투시도
- ④ 대법원 청사 설계경기 (1989년 : 삼우건축안) 아이소메트릭



건축적 성향인 외국의 표현수법을 모방하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유결안과 윤승중안도 기단의 도입, 중정형 공간형태, 가벽, 피로티 등으로 전통적 이미지 요소를 표현하고 있으나, 외관표현에 있어서는 기능에 충실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고전적인 3분 구성의 원리에 기초해 지붕과 열주회랑, 기단 등이 도입되는 유형학적 사고에서도 형태상의 절제된 표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박물관, 기념관 건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합리성과 경제성의 개념이 시청사 건축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원 청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강한 조형성 표현의 개념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대칭적인 균제와 기하학적인 질서의 추구가 강조되고 있다.

서울법원의 당선작인 공간안은 강한 조형적 통일감을 위해 두 동(棟)이 결합된 강한 형태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여기서 두개의 매스로 분리된 기능군은 수직의 샤프트 기둥과 강한 형태적 율곽에 의해 결합되어 기하학적인 특성을 표현해 준다. 전면에 열주와 법원의 이미지를 상기시켜 주는 주 출입구의 동형 아치가 도입되고 있으나 역사적 요소의 사용은 절제되었다. 일견안의 경우 또한 돌과 유리의 사용으로 고전적인 구성과 대칭적인 입면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성안과 건축문화안은 수평성이 강조된 단순한 기능적인 오피스 외관과 같은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청사 건축에서 80년대 초반의 기능적, 기하학적인 사고성향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유형학적 사고의 접근태도로 흐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능적 사고에 있어서도 도시적 맥락과 장소성의 개념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법원 청사의 입상작 모두가 내지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통성에 대한 표현의도를 보여주고 있는에서 확인된다. 또한 형태나 모티브에 의한 방법보다는 구성원리와 체험의 속성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선작인 원도시안은 저층부위에 고층부를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좌·우대칭의 고전적 비례와 동 형태로 하여 전면 광장의 한국적인 이미지와 대조되는 서구적인 고전적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요소에 대한 참조에서 강한 이미지를 상기시키고자 한 예는 점진성을 갖도록 한 탑과의 조형개념(진원안)과 상징적 부여를 위해 고전적 아치요소를 도입한 유형학적 사고의 작품(금성안)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전통공간 요소인 열주, 회랑, 처마, 지붕 등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하공간 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

俞 浣 / 연세 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y Yu, Wan

1.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

1) 지하공간 개발의 배경

지하공간의 개발이라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혀되지 않은 일로 또는 새로이 거론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아직은 지상공간의 개발에 좀더 치중하고 공간수요가 좀더 각박해지면 지하공간을 고려해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도로 계획이 발표된 이래 지금은 대중교통 수단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자동차 교통을 위한 지하도로는 연기시켜야한다는 반대도 우리는 들어왔다.

지하 공간의 개발 계획이 일부 시민, 학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정부가 주도하였고, 새로운 용어가 귀에 설어 마치 새로운 관제유행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동안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철, 터널, 지하공동구, 지하주차장, 지하창고 등 많은 지하공간이 활용되어 왔다. 이들 시설은 개인이용을 위해 또는 공공이용을 위해 민간자본으로 또는 정부 투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지하공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하상가, 지하철 등 각각의 사업 이름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이와같이 개별사업으로 건설되면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가끔은 기론이 되고, 해결책도 제시되었으나 불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서울시청에서 플라자호텔로 가자면 지하보도를 두번씩이나 지나야 하는 불편이 있고, 서울역 지하층에서 대우빌딩이나 힐튼호텔은 지상으로 일단 나왔다가 지하보도를 건너 다시 지상으로 나와야만 연결이 된다. 지하철 역에서 주변의 지하상가, 호텔지하의 연결 등이 원활하지 못하며, 지하철끼리의 승환역도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시청앞 교통광장을 신호등 없이 처리하려면 자동차 통행을 위한 3층의 입체구조물이 들어야 한다. 이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통과로 5층의 입체구조물을 상상하지 않고는 해결 방안이 나오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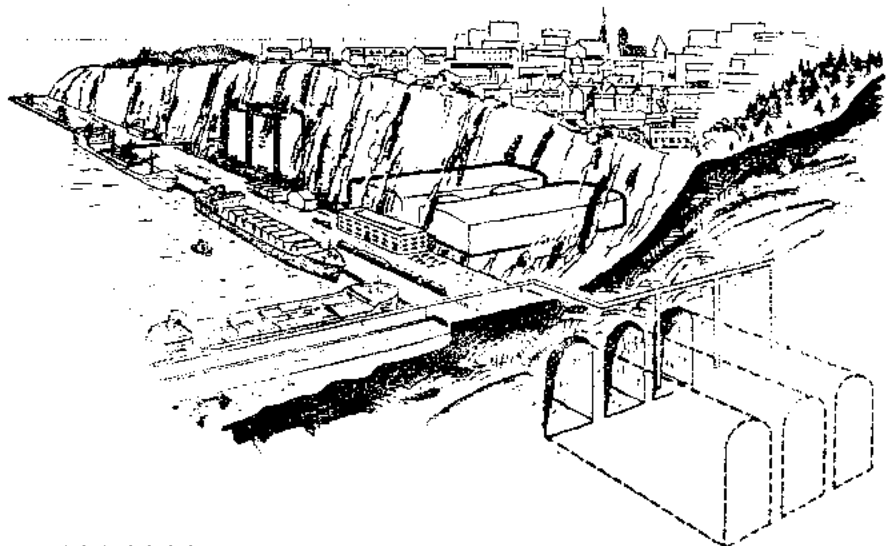
않는다. 분명해지는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공사는 적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계획 만큼은 총괄적으로 세워야하게 되었다. 오늘 지하철 공사를 마무리하고 10년후 이를 2~3미터 아래로 내리거나 옆으로 옮길 수는 없다. 따라서 도시하부 구조계획과 지하철 계획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20킬로미터 정도의 지하도로 공사기간이 최소한 6~7년은 걸리며, 60킬로미터의 지하도로는 15~20년이 걸린다면 지하도로의 도래는 21세기의 일이다. 과연 21세기에 우리는 지하도로의 도래를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을까? 지하철계획과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와 더불어 지하도로교통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도시의 지하공간은 일찌기 서빙고 등 역사 속에서부터 일제하에서의 방공호, 현재에 와서는 지하철, 지하상가 등 무수히 이루어졌으면서도 낯선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우선 앞서 왔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21세기를 향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 미래의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치구역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도시공간의 연계에 보다 넓은 가능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지하공간의 개념 및 종류

지하공간이란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특히 시민의 도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경제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경제적인 자원이란 이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희귀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공간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만족이 증대되는 효용이 있어야 하고, 공급에 한계가 있어 도시와 같은 지상공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가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깊이 측면에서 지하공간은 일반적으로 지하 50m 까지의 곳과 50m에서 150m의 층, 그보다 더 깊은 부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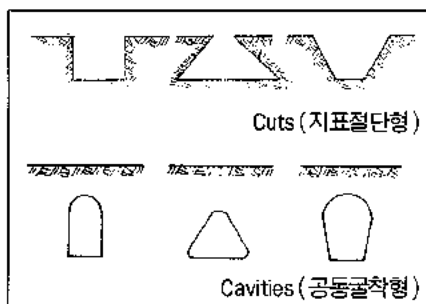


① 해변가의 지하시설
② 단면형태에 의한 지하공간의 분류

지하공간은 공간의 특성상 생성방법, 공간의 위치, 단면 형태 그리고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생성방법상 지하공간은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지하공간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하공간이다. 천연적인 지하공간은 천연동굴로 종유굴이나 용암동굴 등이다. 인위적인 지하공간은 채광을 위해 굴착된 후 버려진 폐광이나, 터널 등을 말한다. 공간의 위치에 따른 지하공간은 도심지의 지하공간, 군사시설과 같은 산악지역에 설치된 시설, 유류 및 곡물저장시설과 같은 해변가 지하시설로 나눌 수 있다(그림 1)

단면형태에 의한 지하공간은 지표절단형과 공동굴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2)

또한 지하공간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 등을 비롯하여 식료품 저장, 유류저장, 스포츠활동을 위한 각종 체육관,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 종류를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수송시설, 저장시설, 생산시설, 단말시설, 방어시설, 엄개시설, 기타시설등 <표 1>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지하시설은 그 특성에 따라 도시에 많이 있는 것도 있으며, 도시외곽이나 또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들도 있다. 도시내에는 교통망을 비롯하여 상하수도시설, 통신시설 등의 하부시설물이 많고, 도시 외곽에는 교통망에 의한 도시와의 연계라든가, 연구·실험시설, 식품저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비축, 저장, 혹은 자원채집 등에 적합하다. 이용의 형태로는 점, 선, 면의 3가지가 있다. 점으로서의 이용은 그 형태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립되어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이나 에너지의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발전소, 지하공장, 실험 연구시설 등이 있다. 선모양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형태이다. 지하철, 도로와 같은 교통·전송시설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시설, 통신케이블 등 시민생활에 밀착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면모양도 최근에 와서 도시부를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하거리,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스포츠 시설도 최근에는 지하에 있는 것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표 1> 지하시설물의 종류와 사용용도

시 설 종 류	사 용 용 도
수송시설 (Transportation)	교통용 터널 (Traffic Tunnel) 도로 (Automobile Traffic), 지하철 (Rail and Subway Traffic), 지하보도 (Pedestrian)
	도시공급터널 (Supply with Tunnels) 식수 (Portable Water), 폐수 (Waste Water), 하수 (Storm Water), 열수 (Heated Water), 가스 (Gas), 전기 (Electric Cables), 전화선 (Telecommunication Cables), 유해가스처리관 (Pneumatic Waste Disposal Tube)
	산업용 공급터널 (Industrial Supply Tunnel) 유류 파이프라인 (Oil Pipe Line), 일반/특수화물운송 (Bulk Freight Transport / Particle Transport), 자연수 (Fresh Water), 냉각수, 공업용수 (Cooling Water, Industrial Water)
	기타수송시설 (Other Transportation) 건설자재공급 (Soil Conveyor)
저장시설 (Storage)	유류저장 (Petroleum product) 원유, 연료유, 액화가스의 저장 (Crude Oil, Fuel, Liquid gas)
	에너지 저장 (Energy storage) 열수 (Heated Water) 압축공기 (Compressed Air)
	식료품 저장 (Food Storage) 냉동저장 (Cold Storage), 곡물저장 (Silo) 냉동실 (Refrigerated Chamber)
	기타저장시설 (Other Storage) 문서창고 (Archives), 주차장 (Parking Lot), 차고 (Garage)
생산및 처리 시설 (Production and Process Plant)	발전소 (Power Plant) 핵발전소 (Nuclear Power Station), 수력발전소 (Hydro Electric Power Station)
	처리시설 (Treatment Plant) 폐수처리 (Sewage Treatment Plant), 식수처리 (Portable Water Treatment Plant), 정수시설 (Water Purification System)
	기타생산시설 (Other Plant) 공장 (Factory), 농작물 재배 (Vegetable Cultivation), 채석장 (Quarry), 지역난방 (Regional-heating Plant)
단말시설 (Terminal)	운송단말 (Transportation Terminal) 버스정류장 (Bus Terminal), 기차역 (Train Station), 화물보관소 (Freight Storage)
	화물단말 (Freight Terminal) 통신단말 (Telecommunication Center) 변전소 (Transformer), 지하철역 (Subway Station)
방어시설 (Defence Installation)	군사시설 (Military Facility) 지휘소 (Command Center), 미사일 시설 (Missile Control)
	지하대피소 (Shelter) 핵공격 대피시설 (Bomb Shelter)
	전략시설 (Strategic Facility) 격납고 (Airplane Shed), 해안방어기지 (Coast Undercover), 지하해군기지 (Under Water Naval Base)
엄개시설 (Earth Sheltering)	주거시설 (Residential Facility) 엄개주택 (Earth Sheltered House)
	공공시설 (Public Use) 공원 (Public Park), 도서관 (Library)
기타시설 (Other Usage)	기타엄개시설 (Other Earth Shelter) 사무실 (Office Building), 학교 (School), 상가 (Shopping Center), 스포츠시설 (Sports Facility)
	사격장 (Shooting Range), 강의 및 회합실 (Lecture Room, Conference Room)
기타시설 (Other Usage)	산업폐기물 (Industrial Waste Disposal), 핵폐기물 (Nuclear Waste Disposal), 묘지시설 (Burial Facility)
	저장시설 (Storage)

3)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

지하공간의 지상공간 대신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하공간은 폐쇄적인 느낌이 들어 심리적 부담과 지상생활에 익숙한 우리 인간에게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할 수 있으나, 현대의 발달된 지하시설과 관련된 설비공법과 개선된 설계는 종래의 지하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도조절, 소음방지 등과 같이 지상의 시설에 비하여 지하공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상대적인 장점들은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오래전에 사용하던 지하 공간은 이제까지 도시활동의 무대였던 지상공간을 대체(代替財)하는 터전으로써 부각되었다.

지하공간개발의 필요성은 우선 지상공간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인간의 제반활동이 일상적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활동은 역사적 변천과 문화의 발달,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활동기반이 되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이들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만큼의 토지 공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활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도시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욕구의 변화는 많은 도시생활을 자연환경과 격리시켰으며, 많은 개방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활동의 터전이 지하로 옮겨 점으로써 지상의 건폐율을 낮추어, 더 많은 녹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시기적으로도 지하공간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하공간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하공간의 계획 및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서둘러 지하공간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하공간의 개발도중에 21세기를 맞이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건물들은 앞으로 지하공간의 개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도시 환경 측면에서 우리의 생활 환경과 격리시켜야 할 여러가지 도시하부시설물들을 위하여도 지하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도의 산업사회는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들 각종,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면 소음, 진동, 악취 등의 피해를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차단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생산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상의 공기오염으로부터도 격리시킬 수 있다.

에너지 절약면에서도 지하공간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 15미터 이하로 내려갈 경우 년중 15℃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지하공간은 흙이나 암석 그 자체를 보온재나 보냉재로 활용하여 계절에 따른 외부의 기온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시설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방위 목적으로도 지하공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록 세계는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며, 우리나라도 남북간의 적대 감성에서 동반교역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 및 국민의 방위, 안전 및 전략적인 목적으로도 지하공간의 개발은 필요하다. 일체전, 전체전화 되어가는 여러가지 전략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호 및 안전을 위한 대피소의 기능으로 지하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하공간이 갖는 장점들과 지하공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지하공간의 활용이 단편적이었고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굴착기술의 발달로 경제적인 지하공간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하시설의 공사비는 기술진보에 의해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도심공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부의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하공간 개발의 경제적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외국의 지하공간 개발 사례

오늘날 지상공간이 복잡해지면서 지하철, 터널,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의 지하공간 이용은 우리나라의 지하공간 이용에 비추어 볼때 활발한 편이다. 미국의 록펠러센터, 캐나다의 민간주도형 지하 네트워크의 형성, 프랑스의 경관보전 등은 주목할 만하다. 지하공간의 개발 방식과 이용 방법은 각각의 지역이나 국가가 갖고 있는 역사, 기후, 풍토, 지형, 철학 등의 차이가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종교적 배경, 환경보전과 같은 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유럽의 지하공간이용의 기본개념은, "서바이벌(살아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의 카타 콤포나 스톡홀름의 액셀타는 무조건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사명이라는 사상을 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스톡홀름의 지하 하수처리장, 파리의 포럼 디 알, 런던의 지하철 등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너러운 것, 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지하로"라는 점이다. 이것은 도시경관이나 도시환경의 보전에 대한 시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세계 각국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한 사례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여기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호주의 지하공간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지하공간 이용

뉴욕의 록펠러센터(Rockefeller Center)는 맨하탄(Manhattan)의 중심, 5번가, 6번가에 위치하여 업무 및 경제활동의 중심거점이다. 부지 8.9ha에 고층건물 19동을 소유하고 있다. 록펠러센터의 역사는 1928년 『뉴욕에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라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록펠러(John D. Rockefeller)는 오페라 하우스 건설운동의 선두에 서서 오페라 하우스와 상업빌딩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록펠러센터의 지하광장은 모든 쇼핑이나 서비스 시설을 갖춘 자기 완결형의 기능을 가진 『도시중의 도시』이다. 이 지하도시의 건설은 1958년에 센터의 중심인 RCA 건물과 타임라이프 건물을 지하로 연결하는 지하철역 건설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13블럭(Block)에 네트워드가 형성되었다. 록펠러센터 프로젝트는 개념의 선구성, 규모, 디자인, 서비스에 있어 세계최대의 업무, 상업, 오락의 복합시설이다. 이 계획은 그후의 다른 개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록펠러센터 프라자에서 볼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지하통로를 설치했다. 둘째, 입주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의 집포를 지하광장 등에 집중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서비스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항상 빌딩을 새롭게 하여 다른 신축건물과의 경합성을 유지시켰다. 넷째, 입주자 요구에 계속적 대응, Partnership 참가에 의한 상업시설을 강화시켰다. 센터의 지하개발은 지상교통의 폭주를 막기 위해, 물류시설과 보행자 네트워크(Network)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센터 계획단계에 있어, 사람과 차의 분리를 위해 지하 약 9m에 10개소의 트럭 터미널을 설치했다. 많은 건물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에 트럭을 주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통혼잡의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표2〉 각국의 지하공간 이용사례

분 류	내 용	사 례
1 생활시설	주택, 스포츠, 교회	야오통 (중국), Sewatd Town House (Minneapolis) 덴페리오키오교회 (Helsinki), 에데스필드하우스 (Washington DC) 등
2 도시시설	Office, 지하가, 창고, 지하주차장	Minnesota대학 자원공학부 (Minneapolis), Toronto, Mantreal, 포럼디알 (polis), 마드리드 지하주차장, Rockefeller Center (New) 등
3 공급처리시설 공급통신시설	에너지공급, 상하수도, 폐기물운반차, 카브, 공동구	Paris 하수도, Stockholm 하수처리장
4 생산시설	지하공장, 지하발전소	신문사의 지하공장 (Zurich : 스위스 북동부에 있는 최대의 도시)
5 저장시설	에너지저장, 식료저장	Cold Store (Sstockholm)
6 교통시설	도로, 철도	고속도로의 휴게시설 (America), 모스크바 지하철, Montreal지하철, Stokholm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일본 동경의 지하철
7 방재시설	지하방수로, 지하조정지 비축, Shelter	시카고 우수하수배수용지하터널, Milwau Kee (미국워싱턴주의 공업도시) 하수배수용 지하터널, 로체스터 우수하수배수용 터널, 쿠라라교회 공공용 Shelter (Stockholm)
8 기 타 (복합시설)	묘지, 도서관, 교정시설	Catacomble (로마), Minnesota교정시설 (옥버그 하이즈)

이들의 터미널은 지하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1일 1,000대 이상의 트럭이 출입하고 있다.

1937년에 건설된 이스턴 (Eastern) 항공 건물에는 뉴욕 최초의 지하 6층, 725대 수용의 주차장이 만들어져, 현재도 영업하고 있다. 보행자에 관해서는 1960년대, 센터의 확장과 함께 지하통로를 확대하여 건물과 건물,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 현재와 같은 지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뉴욕에서는 민간에 의해 공공도로 밑에 지하통로가 많이 건설되는데, 이들은 시장국에 청원을 하여 임대료를 시에 지불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역 이용자는 연간 약 1,700만 인이 되고 있다. 지하점포는 약 100개의 점포로 서비스 31%, 소매 38%, 음식 22%, 기타 9%로 되어 있다. 센터의 중심에 있는 지하의 로아광장은 여름에는 야외 레스토랑,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지하통로 전체가 가치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 캔사스 (Kansas) 주, 캔사스 시티 (Kansas City)는 폐광공동을 이용하여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캔사스 시티의 폐광공동은 지하창고로서만이 아니라, 주차장이나 사무소, 공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외국무역지대 및 면세창고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관해 거래세와 사용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유통업자 및 창고업자에 대해서는 자유항채도를 이용하여, 재고품에 관한 자산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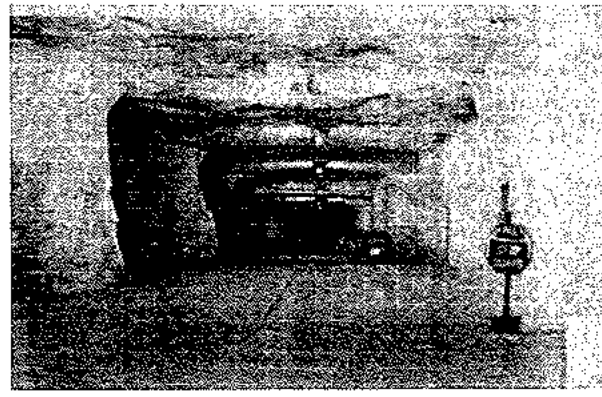
캔사스 시티에서의 지하공간은 기본적으로 폐광을 재이용하는 것으로 지하구조물이

비교적 많은 지중에 건설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하 30~60m에 미치는 상당히 깊은 지하공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하공간은 기존의 철도와 도로가 계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양방의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개발, 이용의 독특한 측면으로서는 굴삭지역의 부분에 대해 제품을 관세의 적용없이 수입, 집적, 저장 및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상의 이익이 생긴다. 더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개소가 적기 때문에, 외부의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동시에 유지비용이 적다는 이점도 있다. 지하의 깊은 위치에 있어 주위의 암반이 견고하고 외부의 잡음과 진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정밀기기의 제조에 적합하다고 하는 인식이 높아져 금후, 이러한 방면에서의 이용이 증가해 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캔사스 시티의 지하공간 이용은, 토지의 입체적이용(공중, 지상, 지하의 3중 이용)에 덧붙여 말하자면 4중 이용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시카고 (Chicago)의 지하공간 이용으로써는 지하 100m 깊이, 직경 6~10m의 터널, 길이 100km 이상의 저류계획 (Tunnel And Reservoir Plan, TARP)이다. 이것은 시카고에 내린 우수를 지하의 대터널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상수도원인 미시시피호의 수질을 보전함과 동시에, 우수에 의한 침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체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1985년에 완성한 맨스트립 프로젝트



③ 뉴욕의 지하철
④ 캔사스 시티의 하역장



④



5



6

규모만으로도 지하 100 m 가까이 약 50 km 에 이르는 직경 6~10 m 의 터널을 봤다. 계획당시(1950년부터)에는 우수저류시설만을 목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지하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는 전혀 구상외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이 정도의 대규모 지하우수저류시설의 실적이 없었고 착공당초에 예상 이상의 공비가 들었기 때문에, 공사의 수행에 대하여 정부를 포함해 내외로부터 강한 우려의 소리가 있었다. 공사는 예정 공기 이내에 완공하였고, 공사 완료 후 여러 도시의 다목적의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의 촉매제가 되었다.

필라델피아는 여러단계의 도시설계를 통하여 독립관, 예술박물관 그리고 시청 등이 위치하여 있는 도심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지역은 필라델피아에서 도시의 중심활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18세기의 건축물들이 위치한 중심지역이다. 지상의 건물들은 전체적인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계획아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심부의 모든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의 보행체계를 계획하게 되었다. 지하공간도 지상공간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어 지상공간과 조화된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공간 개발의 초기에는 'Shopping Concourse in Penn Center'라는 이름으로 도로 아래의 지하공간을 주요 보행 통로로만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폐쇄되고 단순한 지하공간의 활용으로부터 벗어나 지하공간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정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는 햇빛을 지하공간까지 끌어들이려는 적극적인 시도였다. 이와 같은 계획의 수정을 통하여 도심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도심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개발로 지하공간에는 지하철, 버스터미널, 주차장, 상가 등을 비롯하여 정원과 보행로 등이 위치하게 되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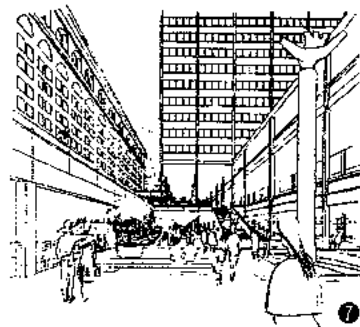
적극적인 지하공간의 활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상부분을 유리로 덮어 지하공간을 개방시킨 지하로비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청옆의 선콘가든인 West Plaza 는 지하공간의 보행자에게 지하에서도 지상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일본의 지하공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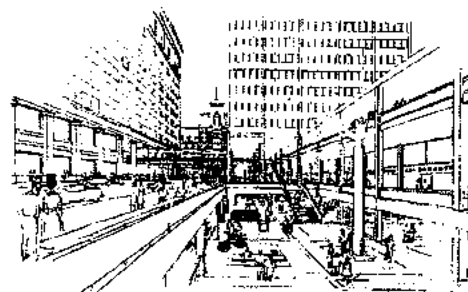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대도시의 토지부족, 자가양등을 배경으로 관민합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회로는 「도시지하공간 활용연구회」(건설성도시국), 「지하공간 도로이용 연구회」(건설성 도로국), 「대교심 지하철도 건설 조사연구회」(운수성), 「지하공간 활용 기술평가 위원회」(통신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1987년 12월에 발족한 「도시지하공간 활용연구회」는 건설, 부동산, 전력, 가스, 금융, 메이커 등 사회각계의 75개사를 회원으로 한 최대규모이다. 연구회는 도시시설계획, 토지이용, 법제도, 거주환경,

지하도시구상, 실현방안 등 6개 분야를 두어 도시지하의 질서있는 개발을 위한 종합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굴착기술의 진전과 지하소유권 내지 지역권의 제한 등 법체계 및 구체적 개발지침의 정비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구상된 지하공간 개발계획은 도시기능 중에서 주차장, 정보센터, 교통시스템과 같이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시설, 도시미화, 환경보존상 오염의 대상이 되는 각종 저장 및 처리시설, 연구실험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였다. 지상은 주거, 공원, 문화시설로 활용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한편 동경시는 지난 '86년 조직한 「지원회」가 중심이 되어 5개 부도심(신숙, 지대, 상야 등)을 대상으로 지하매설물 현황 및 매설계획을 조사하여 그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도로등 공공용지에서의 주차장과 같은 국지적이고 단편적인 이용을 벗어나서, 민유지도 적극 활용되는 지하공간 이용은 주목할만 하다.

동경에서는 지하 40 m 에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구상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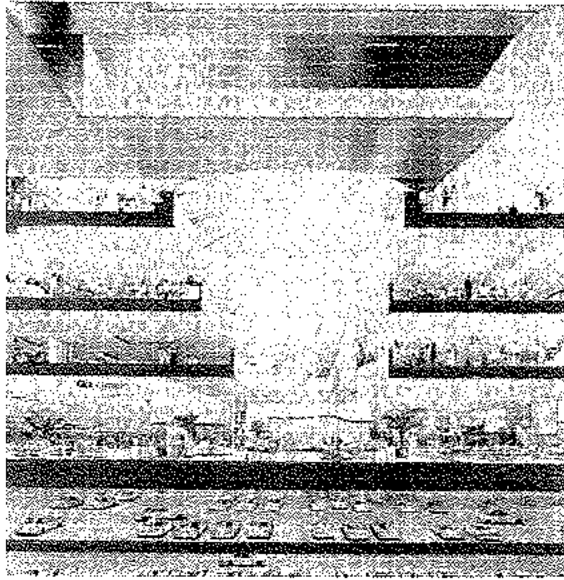


7



8

- 5 퀴스 시대의 주류참고
- 6 지하공간에 위치한 사무실
- 7 지하공원
- 8 West Plaza



⑨ 중심구조물 개념도
⑩ 복합지하공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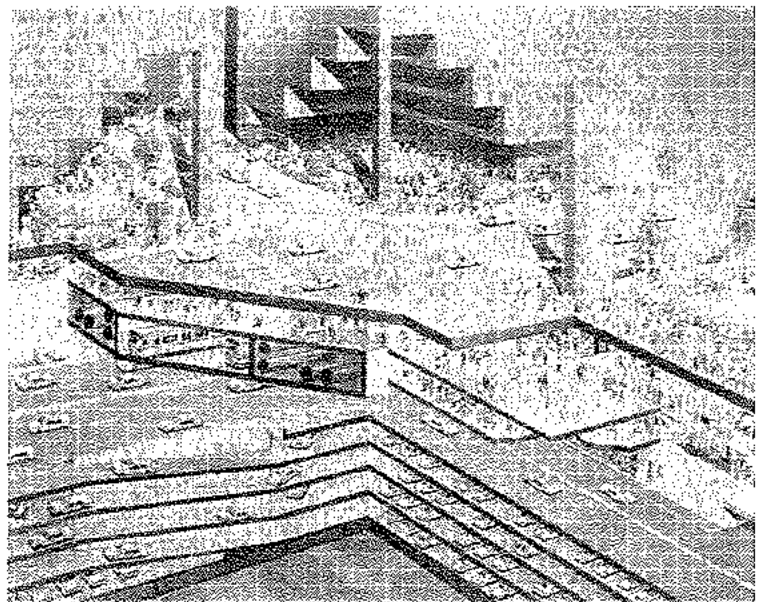
아직 설계도 작성과 경제성 검토 단계에 있지만, 지가가 높은 동경의 도시개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에 격자형(Grid Pattern)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Urban Geo-Grid 라고 명명한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공사비 10조엔을 투입하여 일본전왕이 기거하는 황거를 중심으로 반경 20 km 지역(서울면적 상당)에 10여개의 대형지하공간(Grid Station)과 300여개의 소형지하공간(Grid Point)을 건설하고, 이들 지하도시의 기점을 지하철도 교통수단을 위한 터널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동경의 대형지하공간 도시는 직경 100 m 정도에 지하8층, 총면적 4만 m² 규모로서 오피스 쇼핑센터 및 발전시설 등을 수용하며, 이러한 대형지하공간을 10 km 간격으로 10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격자간의 교차점에 위치한 소형지하공간은 직경 30 m 에 지하3층 규모로서 2 km 간격으로 300여개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공원, 체육관, 도서관 등 주로 공공시설이 수용되는 것이다. 교통 네트워크에 따르면 대형지하공간은 간선터널로 연결하되 각 지점은 소형 지하철로 연결하여 유기적인 교통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도로계획의 실현을 위해 현재의 건설기술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 아래 기술본부에 지하공간개발부를 신설하고 있다. 암반, 도시공학, 인간공학, 환경제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지하관계의 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운 설계와 건설의 수치계산을 검토하고 있어 지하도시개발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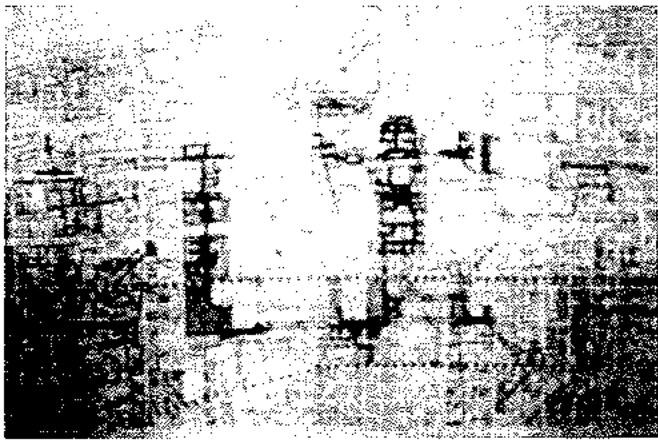
또 다른 지하공간 이용계획 중의 하나가 고급상업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동경 긴자의 지하이용 계획이다. 긴자지역은 일본에 있어서 소매와 문화의 표상이 되어 있으며 긴자 주변지역의 동경도 정부청사가 있는

시오도메, 히비야, 유라쿠초 지역 등은 재개발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이 완성되면 긴자의 위상이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계획 뿐 아니라 주변지역과 조화된 새로운 긴자지역의 개발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긴자 지하이용계획의 기본목표는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계획을 통하여 긴자와 인접한 지역과의 교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하도로, 지하주차장 그리고 지하보도 등을 연계한 보다 안전·편리·쾌적한 지하공간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하공간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개발촉진지역」, 「중심구조물 건설지역」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최종적인 마스터 플랜의 확정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하공간 이용계획에 두가지의 기본계획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긴자와 인접한 남북지역을 결합하기 위한 긴자거리를 따른 연결망의 구상이고, 둘째는 보다 안락한

지하공간을 형성하고 긴자에의 접근을 쉽게하기 위하여 보행자와 차량 모두를 위한 대규모의 중심구조물과 지하교통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긴자 거리의 북쪽인 유라쿠초와 동경국제포럼이 위치한 지역과, 남쪽인 신바시 및 시오도메 지역 그리고 중앙인 긴자사거리 지역에 대규모의 중심구조물을 건설할계획이다. 대규모 중심구조물의 지상에는 복합무역(Trade)센터와 사무소 건물을 건설하여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에는 쇼핑타운과 교통망 그리고 생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소매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과 북쪽 중심의 지하3층레벨에 각각 1,5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차량에 의한 긴자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보도와 연결되는 새로운 지하보도를 지하1층레벨에 지하상가와 함께 건설하여 보행자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쇼핑몰을 형성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공급시설과 지역 에너지체계, 고기능통신체계를 도입하여 지하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일본의 지하공간 이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해저터널의 건설이다. 일본 본토와 호카이도(북해도)를 연결하는 세이칸(청양)터널이 70년대초부터 24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최저수심 140 m, 총연장 54 km (해저 34 km 포함)의 세계최대의 해저터널이 1987년에 완공되었다. 세이칸 터널에는 주터널과 설비 수납용의 서비스터널이 만나는 지점 2곳에(본토부터 13.5 km 북해도부터 17.5 km 지점) 대피 내지 피난을 위한 해저역(비상역)이 개설되어





① 몬트리올 도심
지하보행 네트워크
② 토론토의 쇼핑몰

있다. 해저역에 있는 본향 양측에는 40m 간격으로 인명구조 및 대피통로를 설치하며 역에서 금항으로 유도되는 대피루트에는 승객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가지고 있다. 총 공사비는 6,900억엔(조사비용 140억엔, 선로공사비 1,500억엔 포함)으로 50% 국고보조, 30%가 「일본철도개발공사」의 공채로 조달되었다. 한편 세이칸 터널의 개발효과는 경제, 산업발전 및 복지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지대하다. 즉 1,200만명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시멘트 85만 ton, 17만 ton)이 활용되었다.

3) 캐나다의 지하공간 이용

캐나다의 몬트리올(Montreal)은 겨울에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하보도의 Network』를 가진 도시를 완성시켰다. 몬트리올에 지하가와 일체가 된 도시가 형성된 것은, 최근의 일로 그 이전의 지상은 오염된 공기, 교통마비와 소음에 골치였을 뿐이었다. 자상의 거리를 조용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싶은 소망이, 지하도시 형성이라는 의식혁명을 일으킨 최대의 이유였다. 현실적으로는 지하의 개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가 『원센트, 폰테』 등의 등장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졌다. 몬트리올 도시를 보면, 지하와 지상을 일체의 도시공간으로서 받아들여, 친근감이 높은 거리를 만들 필요성을 통감하게 된다. 지하도시의 형성은 1945년 이후의 중심 시가지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교통문제의 해결이 주요 요인으로 되었다. 겨울에는 제설의 문제 때문에 지하에 고속공공수송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여 지하철 및 오토버시스템(Autobus System)을 생각할 수 있었다. 동시에 보행자용 네트워크 구성이 검토되고, 주로 경관상의 이유로 지하공간을 개발하게 되었다. 지하도시의 건설은 1960년의 프러스의 건물, 마리의 개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53층 건물사무소 및 지하1층에 쇼핑몰(shopping Mall)을 가진 복합건물과 CN 안트랄역, 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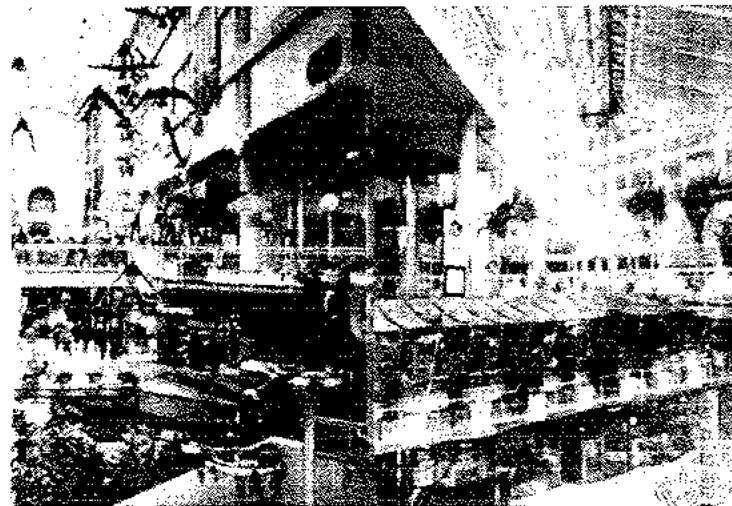
엘리자베스호텔(Queen Elizabeth Hotel)을 지하로 연결된 총상면적 50만 m²에 달하는 규모의 것이었다. 그후, 지하철의 개통에 따라 지하 네트워크는 확대됐지만, 이것은 지하철의 노선계획에 있어서 시의 중심도로인 센트, 카사린 도로 등을 피해 계획된 것이 큰 이유이다. 몬트리올에서의 지하 네트워크는 이처럼 지하철역과 민간건물의 지하계단과 가구를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져, 현재 290만 m²에 미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몬트리올의 지하도는 건물과 건물의 지하계단을 접속하여 지하철역을 기중점으로 연결하는 보행자 네트워크로 되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하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하도로는 고층건물 사이를 연결하고,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이기도 하다. 지하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센터 비즈니스 존에서 보여지듯이 빌딩의 지하층에 태양광선이 유입되도록 양측의 빌딩을 연결하는 공간에 강화유리를 끼운 창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방재설비의 경우, 방연셔터는 없고, 빌딩과 지하도로는 방화 차단문을 설치하여 비상시를 대비하도록 계획되었다. 스프링쿨러도 오래된 시설의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특히 겨울은 -20℃까지 내려가고 더욱이 적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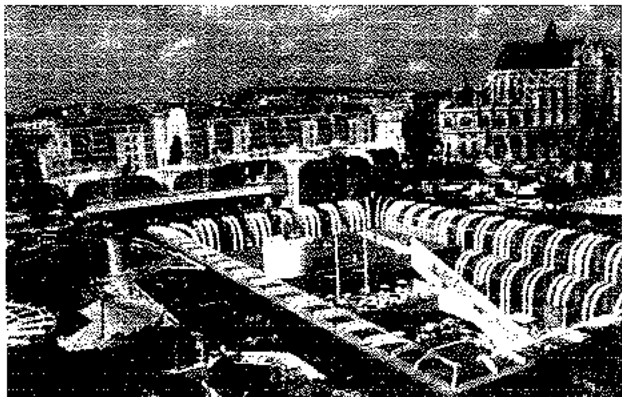
하므로 자치단체는 민간의 지하재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다.

프러스빌딩, 마리아는 명명은 1642년 시가 창립 당시의 명칭을 지은 것이다. 건물은 중정을 둘러싼 “ㄷ자형”으로 유리너머로 외광이 비쳐들고 옥외의 모양도 보이는 설계로, 외부에서 차단됐다는 인상은 받지 않는다. 일보 밖으로 나오면 센트 카사린 도로 상점가, 백화점이 4곳이나 있다. 또한 오피스타워(Office Tower)에는 1만5천인의 비즈니스맨이 일하고 있고, 대형주차장 설비(1,200대 수용)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발군의 입지조건을 자랑하고 있다.

베리드몬티니지구에서는 교육, 문화, 주거, 상업의 복합적인 편성으로 새로운 중심가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 몬트리올에 있어 지하 네트워크의 건설은 지금까지 민간주도하에 이루어지고 관측은 그것을 지켜보는 형태로 행하여져 왔지만, 최근은 관측의 적극적 지도하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도로아래를 지하도로로서 이용할 경우, 관측은 민간측에 대해 도로아래 이용을 저액의 점용료로 허가하는 대신에 건설,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비용을 민간측에 부담시키고 있다. 민간측은 빌딩의 지하에 공공통로를 설치하여 일반에게 개방하는 대신에 용적율의 할증 등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몬트리올에 있어서는 관민일치협력하에 지하 네트워크의 건설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민간빌딩이나 백화점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의 진흥과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토론토에 있는 이튼백화점의 지하 3층까지의 쇼핑몰은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이와같은 토론토의 지하개발은 지하철의 건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시청앞의 광장 아래에는 지하 5층으로 4,500대 수용의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시가지의 지하 보행자 네트워크를 검토하고, 설치하기 시작했던 것은 1950년대이다. 지상교통의 혼잡완화를 주요목표로 하여 보행자가





⑪ 레일광장
⑫ 레일 중앙아트리움

보행하기 쉬운 네트워크의 구성이 검토되어 몬트리올처럼 지하를 이용하는 방법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지하공간을 이용할 경우 겨울철의 추위로부터의 방호, 지상경관의 보호, 지하철과의 연결이 용이함 등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네트워크가 진행되었다. 특히 시의 청사에서 유니온역까지의 연결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지하공간 네트워크가 확대됨으로써 시민이 지하를 보행하게 되면, 건물 거주자의 편리성도 높아짐으로써 지하의 점포가 활성화되었다. 지하철 전철과 네트워크의 형성은 시의 도시계획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계획으로서 유니온역에서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로의 접속이 계획되고 있다. 주변지역에 있어서도 센트 크라이어역 등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10개소 이상의 지구에서 지하공간 이용이 계획되고 있다. 지하네트워크를 건설할 때, 사유지의 통로와 광장은 민간측에서 책임을 지고, 도로아래에 대해서는 시가 이용권을 민간에게 임대함으로써 1970년대 전반까지는 건설비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토론토의 지하통로는 몬트리올처럼 폭원 등의 규정이 없어 각기 다르다. 당초부터 지하네트워크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조를 계속 거듭하여 접속해왔던 것으로 빌딩의 지하에서 레벤프나 도로부분의 매설물 때문에 단차가 많게 되었다.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도로아래를 포함해 모두 민간이 행하게 되어있고, 방재설비로서는 스프링클러, 연기담지기, 소화전 등이 우리와 같은 정도이다. 또한 서터는 거의 없고, 지하네트워크에는 많은 코너가 있는데 그 요소요소에 벤치나 연통이 있다. 지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그 단조로움과 자연광이 없기 때문에 방향감각과 위치의 인식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지하네트워크의 확대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토론토에 있어서 빌딩의 개발에는 지하철과 접속하지 않는 빌딩은 비싸게 빌려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빌딩의 지하층은 주차장보다 점포를 만든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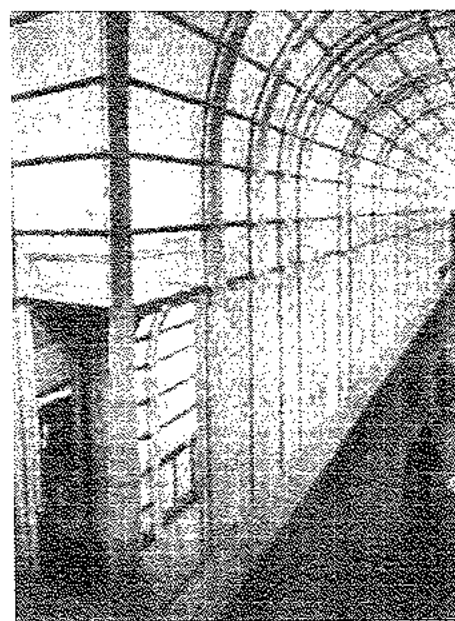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금융지구에는 현재 15만인이 일하고 있으며, 총 7만 m^2 의 지하점포가 있다. 토론토시는 현재 지하네트워크에 관해 2개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간판설치계획이 제각각이라 알기 어려운 점이다. 지금까지 민간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소유자 이외의 가구와는 간판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시와 민간에서 통일한 간판구성이나 안내판을 포함한 시스템을 검토중이다. 또다른 하나는 금융지구에는 네트워크의 활성화이다. 업무중으로, 일이 휴업이라 활기가 없기 때문에 금융지구도 토요일은 개업을 하여 연중 활기가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토시의 이튼센터(Eaton Center)는 상업지구의 중핵으로서, 북미최대의 매장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튼센터의 계획은 1967년부터 종래있었던 이튼백화점 주변의 재개발계획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주민의 반대나 교회의 보존 등의 문제가 있어 착공까지 7년을 요했지만, 1981년 10월에 완성했다. 이튼센터의 중심시설은 지하레벤프부터 3층의 일부까지 쇼핑몰로 그위에 미라노의 갤러리아를 참고로 한 높은 천장이 있고, 산책로에는 분수, 식재 등이 설치되어 쾌적성이 높은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쇼핑센터의 상면적은 5만 2천 m^2 로 300개의 전문점이 있다. 이튼센터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3개의 역으로부터 접근토록 되어있다. 이용객은 주로 150만인, 크리스마스주의 토요일이 되면 40만이 방문하고 있다.

4) 프랑스의 지하공간 이용

프랑스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계기가 된 것이 레알지구의 재개발이다. 1960년 초에 시작된 파리 재개발의 대표가 된 레알재개발지구는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 시설을 도입하였다. 레알지구는 파리지 중심부 세느강의 우안에 위치하여 16세기에 파리지 중앙시장으로서 개설되었다. 19세기 말에는 파리지 최대의 건축물이 되어, 에밀 졸라에 의해 『파리의 심장부』라 불리울

정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방대한 거래물량을 처리할 수 없어, 1960년대에는 청과물 유통부문이 란지지역으로, 식육부문이 라목비레트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것에 의해 레알재개발계획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재개발은 1979년에 교외 고속철도(REP)의 역을 중심으로 한 포람데알이 레알 제1기로서 완성되었다. 1986년에는 풀(Pool)과 체육관을 포함한 레알 제2기 문화시설이 완성되었다. 레알 제3기는 쿠스트박사가 주최하는 해양센터로서 현재 공사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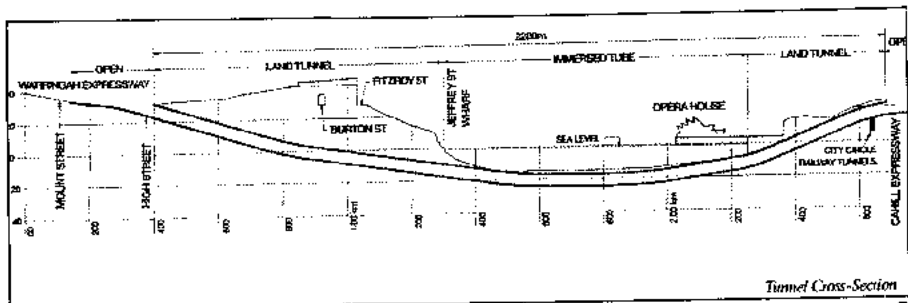
포람데알이라고 불리는 레알 제1기는 최하층 지하 25m에 길이 300m의 교외 고속철도의 중앙역과, 역과 지상까지의 3층의 구조물에 쇼핑센터, 공공통로, 지하도랑,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레알 제1기의 특징은 지하 3층에 설치된 버스프라사라 불리우는 1,000 m^2 의 Open Cut 된 광장을 중심으로 통로와 점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지하 각 층에는 자연광이 들도록 계획되어 지하에



있다는 감각을 갖지않게 배려되었다. 통로부분은 24시간 해방되어 지상의 일반가로와 같이 사용하게 되어있다. 제2기는 문화시설과 쇼핑센터부터 건설되었는데, 문화시설은 콘서트홀, 극장(600인 수용), 도서관, 풀(pool), 체육관, 유도장 및 450 m^2 의 열대식물원으로 되어있다. 제2기의 지상부에는 당초 국제무역센터를 만들 예정이었지만, 주변과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녹지공원으로 된 듯하다. 제2기는 중세의 회랑을 생각해 하는, 3층에 이르는 높이의 천장으로 되어 있어 그곳에 Top Light를 설치해 외광을 채광하고 있다. 열대식물원의 상부에서 자연광을 받아들여 통로 및 풀쪽으로 채광을 하고 있다. 제2기의

통로부분은 제3기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오전1시 ~ 5시까지 특별로서 폐쇄되어 있지만, 전면완성후 24시간 Open 될 예정이다. 레알건설은 1969년에 만들어진 새마(SEMAH)라고 불리는 제3섹타가 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루블미술관 개조계획은 지하공간의 이용중의 하나이다. 루블미술관은 총면적 85%가 전시면적이고, 나머지 15%만이 공공공간과 미술관의 후면공간으로 되어 있다. 입장자는 전체를 견학하는데 1km 나 걸어야 하고, 화장실, 휴게시설 등도 극히 적다. 현재의 미술관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서관 등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람자에 대한 서비스공간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1년 미테랑 대통령하에 루블개조 계획이 착수되어, 국가 프로젝트로서 루블공간이 설립되었고, 설계자로서 I.M. 페이가 선임되었다. 설계의 기본방침으로 역사적 건조물의 경관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던 나폴레옹 광장의 지하가 계획의 대상이 되었다. 계획의 프로젝트는 나폴레옹광장의 지하부분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지하부분은 5만 m²의 면적으로 넓이 110m × 120m의 지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지하라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 자연광을 채입하였다. 지상부분은 공공광장으로써 시민의 휴식장으로 하고, 디자인은 16세기의 르네상스가 요구한 기하학적인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진입홀이나 지하 1층에는 1번이 60m로 디자인 되어 있어, 이것에 유리를 끼워 자연광을 채광함과 동시에 루블궁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입구를 중심으로 주위에 미술관의 매점, 레스토랑이 2개소, 음악당, 아이들의 교육시설, 특별전시실, 단체전용 입구 등의 공공서비스 시설, 그 외측에 기계실, 물탱크, 방개센터 등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었다. 미술관으로의 연결은 진입홀에서 3기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루블궁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 통로에도 작은 피라미드가 설치되어 있어 지상의 루블궁전을 봄으로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자연광을 채광하여 지하에 있다는 감각을 없애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재료는 벽과 바닥이 석, 천정은 백콘크리트로 불연재이다. 공사에 임해서는 루블이 세느강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아 부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항구적으로 Pumpup 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로 지하에 구조물을 만들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수용인원에 의한



피난규정이 있어, 피난계단이나 비상계단의 수에 있어서도 지하 2m 이상이 되는 경우, 1m 내릴 때마다 규정수용인원을 10%씩 할증할 필요가 있다. 루블의 경우 지하 7m이기 때문에 50%가 할증되어, 이 결과 피난계단의 면적은 연상면적의 15%나 된다. 이와같은 규제는 「지상경관의 보존」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철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장소의 지하이용계획을 생각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5) 러시아의 지하공간 이용

모스크바의 지하공간 개발의 하나인 지하철은 1935년에 개통하여 1981년에는 전장 160km에 달하고, 100여개를 넘는 역이 이미 건설되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의 승객수는 약 600만인이다. 노선은 중심부에서 방사상으로 뻗어있고, 이것들과 교차하는 환상선으로 되었다. 러시아워에는 운행간격 50 ~ 70초로 운전하고,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운임은 전선 5 Kopeika (약 100원)로 갈아타는 것은 자유이다. 이 운임은 운전개시 이래 변경되지 않았다. 환상선은 길이 19.2km로 1949년부터 1954년까지 건설되어 지상의 도로패턴과는 무관하다. 또한, 방공상의 배려가 되어 지하 100m에 달하는 노선도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면 레루몬트 후스카야역(LR)이 그것이고, 상당히 강한 지압에 견디기 위해 강관의 상하를 지탱하는 각주나 원주의 열이 2열로 되어 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이라 하는 것은, 역, 광장, 플레툼의 장중한 장식으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장식의 역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건설된 것이 많고, 각지에서 운반되어 온 양질의 대리석, 화강암, 그리고 명목이나 도기가 많이 사용되었다. 모자이크 벽화, 조상, 회화 등으로 장식하여 마치 지하가 아름답고 장엄한 궁전같다. 특히, 초기에 건설된 역은 각각의 역이 독자적 테마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면 코무리모라스카이나 코우토세비야역은 제2차 대전에 있어 러시아군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방식이다. 대리석이나 화강암이 사용된 것은 장식을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내구성이 강해 빈번한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효율적인

일면도 있었다. 스베루트로주 광장역은 보리쇼며극장의 하차역이다. 역의 설계자 포빙기사는 이 역을 극장으로 연결하여 해방된 미술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설계했다. 거대도시라는 측면에서도 지하공간이라 하는 지역적인 자원공간을 의식적, 계획적으로 이용한다는 사고아래, 이용을 높이고 있다.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의 종합적, 계획적 전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교통서비스를 위해 가장 훌륭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1935년 모스크바 종합개발계획을 시초로 하여, 전국의 도시건설에 있어 지하공간이용을 도시의 종합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지하공간의 이용방침으로서 지하에 몇개의 레벨을 설정하여 각각의 이용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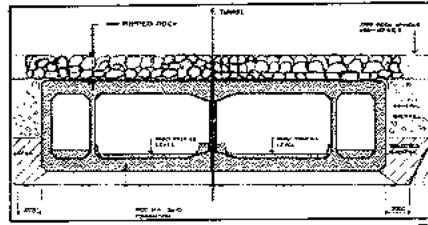
6) 호주의 지하공간 이용

얼마 전까지만해도 시드니의 도심부와 북부시드니는 1932년에 건설된 시드니 항구를 가로지르는 왕복 8차선의 Sydney Harbour Bridge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는 Sydney Harbour Tunnel이 새로이 건설되었다. 이 터널이 건설되기 전에는 하루 약 2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많은 교통량에 의하여 매일 장시간 동안의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시간과 연료의 낭비로 매일 수백만 달러가 낭비되었다. Sydney Harbour Bridge 만으로는 이러한 교통정체가 더욱 악화되어 2천년에 이르면 침묵시간이 1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는 엄청난 교통정체가 일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의 다리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였다. 새로운 다리의 건설은 비용과 환경에의 영향, 특히 진입로 건설을 위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해야 할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다른 건물의 파괴나 사유지를 점유하지 않는 최소한의 환경영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1986년 「터널」이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이 제안에는 기존의 다리 양쪽 접근로를 이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6년 후반에 수백만달러를 들여 타당성 조사와 상세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정부는

1987년에 그 계획을 승인하였다. 상세한 설계과정을 거쳐 199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1988년 1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는 Sydney Harbour Bridge와 더불어 시드니의 도심부와 북부시드니를 연결하는 비가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

Sydney Harbour Tunnel은 시드니항구 북쪽의 Warringah 고속도로와 남쪽의 Cahill 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2.3 km의 연결로이다. 이 터널은 Warringah 고속도로와 Milsons Point 사이를 연결하는 900 m의 육지터널부분, Milsons Point와 오페라하우스의 서쪽과 연결되는 8개의 Pre-Casted 철근콘크리트 단위들로 구성된 960 m의 물속에 잠긴 튜브부분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의 서쪽과 Cahill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00 m의 육지터널부분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의 육지터널은 Malison Point 부터, 그리고 남쪽의 육지터널은 Lower Domain 부터 시작된다. 항구의 양쪽 육지터널의 끝 부분은 cut-and-cover 공법을 이용하여 채굴되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터널 굴착공법을 이용하였다. 공기는 지하환기 장치에 있는 팬에 의하여 유입되고 터널을 순환하여 기존 다리의 지지탑 환기장치에 설치된 팬에 의하여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 덕트를 통하여 지지탑의 상부로 방출된다. 이 터널 공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페라하우스와 방파제의 기존 지지파일을 이동하고 공간을 마련하여 물속에 잠긴 튜브와 남쪽으로 터널을 연결하는 선이구조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물속에 잠긴 8개의 단위 콘크리트 튜브는 길이 120 m, 폭 26 m, 높이 7.5 m 그리고 무게는 2만 3천 t 의 거대한 구조물이다. 이 단위 튜브들은 시드니 남쪽의 Kembra 항구에 건설된 호안에서 제작되어 이동된 것이다. 단위 튜브는 방수막이 기반부에 장착되어 있고 외부의 나머지 부분에 방수봉인이 사용되었으며 양쪽 끝이 철제 방수간막이로 봉인되었다. 따라서 호에 물이 차면 각 단위들은 물에 뜨게 되고 이를 바지선을 이용하여 시드니까지 이동하였다. 튜브를 설치할 장소에 아크로 튜브의 내부에 있는 임시부력 탱크에 물이 들어가게 하여 평형상태를 유지시키며 가라앉힌다. 두 튜브의 끝을 기계적 잭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고무 Gina Gasket 을 압축하도록 연결하였다. 그후 부력탱크에 유입된 물은 콘크리트와 모래로 대체하였다. 또한 접합부 내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고 내부로부터 내오프렌 봉합하여 튜브를 연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항구를 가로질러서 준설된 부분을 따라 각각의 단위튜브를 위치시키고, 순서대로 연결하여 방수봉인을 한 후 바위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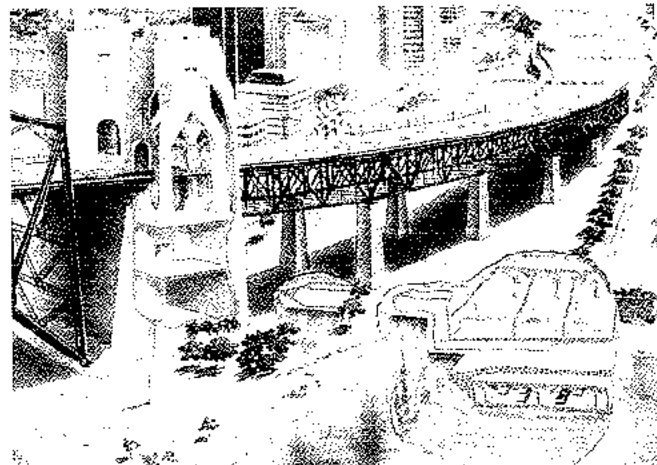
보호덮개를 씌운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튜브는 해수면에서 약 27미터 밑에 위치하며 청소선이나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

Sydney Harbour Tunnel의 교통은 응급 서비스를 갖춘 관제 센터에 의해 관찰되며 도로에 장치된 감지기는 터널 관제실에 교통의 혼잡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터널의 모든 부분은 폐쇄회로와 열감지기에 의해 모니터되고 있다. 터널안에 가설된 전화는 운전자들이 응급차를 호출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으며 소화기와 소화호스는 터널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환기시스템은 역순환이 가능하여 연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교차도로는 화재시 운전자가 인접도로로 피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든 종류의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하공간의 활용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지하철, 지하도 및 주차장으로서의 지하공간 활용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수영장, 스케이트장과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및 이대시설이 복합된 종합스포츠 센터로의 지하공간 활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술관, 음악관, 교회 등 문화시설들의 지하공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상시에 지하대피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설된 지하공간이 국민학교, 공장, 창고 및 문화회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역전시관 및 무역센터, 수력발전소, 변전소 등의 산업시설이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단편적인 지하공간의 활용

이외에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개발사례를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다. 이들 도시의 지하공간 활용은 도심부의 지하교통망을 중심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의 지하공간에 주차장, 상가, 공원 등 대부분의 도시시설을 수용하여 도심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하도시도 구상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이 지하공간이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지하공간의 활용이 단편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공간은 각각의 독립건물의 지하층과 지하철 및 일부 지하철도, 지하도 및 상가, 터널, 하수도, 지하공동구, 전신공동구, 사무실, 대피소, 유류창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하공간의 활용은 개별적으로, 상호연관이 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지하철에서 주변지하상가 또는 독립건물의 지하층으로의 직접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의 지하상가 개발은 활발이 이루어져 1990년 현재 8천 5백여개의 지하상가가 지하도와 함께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공간의 개발은 종합적이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지하공간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와 지하공간 내의 환경 그리고 다른 지하시설과의 연계 등 많은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도시의 기능을 살리고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하공간의 활용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지하공간의 이용은 불가피한 일이 되어 지하공간의 활용은 입체적 토지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 지하공간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기술적 경제적인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활용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체적인 계획으로 구상 되어져야 한다. 지하공간은 지하도시 건설, 지하상가, 지하(해저)터널, 지하매설물(처리장) 등을 포함하여 수평적 토지이용과 수직적 복합이용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⑬ Sydney Harbour Tunnel의 단면
⑭ 튜브의 단면
⑮ Sydney Harbour Tunnel의 환기시스템

한국설계경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in Korea and A Proposal for Its Improvements

禹 時 庸 / 중합건축사사무소 시공
by Woo, Si-Yong

I. 머리말

1. 연구목적

현대건축 발전과정에서 건축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상황의 하나로 설계경기의 의의와 효과는 매우 크다. 시드니오페라하우스, 폰피두문화센터, 슈투트가르트미술관 등 국제설계경기를 통하여서 좋은 작품이 탄생되어 건축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해방이후 다수의 설계경기"가 개최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수의계약시 과생되었던 제반바리를 없애고 경쟁을 통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한다는 취지"에서 설계경기로 계획안을 채택하는 방식이 점차로 보편화되고 있어서 설계경기의 재조명과 그의 위상에 대한 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가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또는 지명의 설계경기 운영에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1) "일반적으로 '상금'등을 내걸고 시행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현상설계'라는 용어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으나, 그 목적으로 보아서 상금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설계안'을 구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설계경기'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 『설계경기를 위한 조언』, 윤승중, 건축문화 1984. 8, p. 58.
- 2) 『정부제3청사 설계경기 판전평』, 심영섭, 플러스 1992. 1, p. 67.

2. 연구범위

- 1) 국제건축가연맹(UIA : L'Union International des Architectes)의 설계경기규준과 국제건축설계경기규준을 비교검토하고 그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 2) 1989년 1월-1992년 4월 동안 국내에서 시행된 주요 설계경기중 건축관계 잡지에 기재된 설계경기 총 115(국가기관 : 53, 공공단체 : 40, 민간 : 22)를 대상으로 한다.
- 3) 건축주, 응모건축가, 설계자참서, 작품, 심사, 저작권, 상금에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3. 연구방법

115개 대상프로젝트에 관련된 설계지참서의 문제점 분석, 응모건축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사위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설계경기의 응모과정과 평가 과정, 당선안의 집행과정 등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설계경기의 개념

1. 설계경기의 목적과 설계자의 선택

설계경기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응모안을 통해서 대상프로젝트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설계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둘째는 건축주의 성격과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경기는 훌륭한 계획안이나, 적합한 건축가를 선정하는 보편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건축주가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수의계약, 가격입찰, 현상설계경기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중 관, 공공의 성격을 띤 건축주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부조리를 막는다는 입장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가격입찰방식은 건축계의 담핑에 대한 반발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설계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형식의 요건을 갖춘 설계경기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설계경기를 통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기회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될 시설물이 다수의 불특정인이 사용하게 될 공공시설인 경우 관련된 전문가, 관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방법이 도입되는 등 기초계획단계에서부터 다수인이 개입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 경우의 대부분이 설계자와 계획안을 설계경기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다. 기능이 보편화 되어 있고 이용자가 특수층이 아닌 공공시설물로서 특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하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음악당, 기념관, 시청사, 문화회관 등의 경우 설계경기에 적합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2. 설계경기규준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국제설계경기규준(1978)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관계 3단체(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한 한국건축설계규준(1972년 제정, 1984년 개정)이 있다. 이것

은 총 1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계경기의 목적, 경기위원회, 설계경기의 종류 및 정의, 주최자의 의무, 설계경기의 조건, 제출도서, 응모자의 등록 및 질의응답,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대한 제한, 심사방법 및 비용, 심사위원 등의 보수, 당선자의 결정 및 발표, 상금 또는 제작비, 당선자와 실시설계자, 저작권, 당선자에 대한 추가보상, 응모작품의 전시, 작품의 반환 등 설계경기의 운용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3. 설계경기의 유형

설계경기는 디자인의 주요내용, 단계별 및 응모자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설계경기의 주요내용은 프로젝트경기와 아이디어경기가 있으며, 전자는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필요한 최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건축가를 지명하는 것이고, 후자는 건축적, 계획적인 문제에 관한 특정 측면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수상자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위임되는 것은 아니며 당선자 단독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없는 도시설계, 단지설계 및 조정설계 등의 경우나 또는 실시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계획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단계에 의한 분류는 1단계 설계경기와 2단계 설계경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아이디어 구상 및 계획설계를 동시에 실시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도록 비교적 완성된 도면이 필요하다. 후자는 아이디어 구상 및 계획설계를 분리해서 실시하므로 도시계획, 대규모의 프로젝트 등 특정한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제1단계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여기에서 소수의 작품을 선발하여 제2단계에서 계획설계에 대한 당선자를 선정한다.

응모자격에 의한 분류는 일반공개경기와 제한설계경기, 특별설계경기로 할 수 있다. 일반공개경기는 아무런 제한없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할 수 있는 설계경기이다. 제한설계경기는 설계경기의 주최자가 초정한 전문가에게만 참가가 허용되는 설계경기이다. 특별설계경기에는 위의 유형 이외에 디자인상의 문제뿐 아니라 도시계획이 관련된 경기, 공업화된 부재요소의 사용을 포함하는 경기, 개발업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 특정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축가 혹은 건축가그룹으로 참가를 제한하는 경기 등이 포함된다.

4. 설계경기의 구성

설계경기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은 건축주, 대상프로젝트, 응모건축가, 작품, 심사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들 상호간에는 밀접한

〈표1〉설계경기의 구분

구분	UIA기준	KIA기준
주요내용	프로젝트경기 (Project Competition) 아이디어경기 (Idea Competition)	프로젝트경기 아이디어경기
단계별	1단계설계경기 (Single Stage Competition) 2단계설계경기 (Two Stage Competition)	1단계설계경기 2단계설계경기
응모자격	일반공개경기 (Open Competition) 제한설계경기 (Limited Competition) 특별 설계경기 (Special Competition)	일반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

〈표2〉단계별 설계경기의 특징

구분	1단계 설계경기	2단계 설계경기
특성	- 아이디어 구상 및 계획설계를 동시에 진행 - 단일단계에서 당선작 선정 -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합	- 아이디어 구상 및 계획설계를 분리해서 진행 1단계 : 소수의 작품 선정 2단계 : 당선작 선정 - 도시계획, 대규모 및 특정 분야의 프로젝트에 적합
장점	소요기간 및 경비절감	- 참신한 아이디어 획득 가능 - 작품내용 충실
단점	작품내용에 소홀 우려	- 소요기간 및 경비 증가 1단계 선정안과 2단계 제출안이 상이할 수 있음
사례	88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 예술의 전당 - 전쟁기념관	- 아시아 선수촌 및 공원 - 독립기념관 - 올림픽회관

〈표3〉응모자격 분류에 따른 특징

구분	공개 설계경기	제한 설계경기
특성	- 공공성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 사회적 공인을 바랄때 - 신인 건축가들이 참여	-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좋은 인을 얻고자 할 때 - 전문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며 지명도가 높은 건축가들이 참여
장점	- 작가의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 공인성 인정	- 원료작가 지명 가능 (권위성) - 업무추진 및 응모작품 관리용이
단점	- 원료작가 기피 우려 - 보안사항 대외 유출 우려 - 참가자 예상 곤란	- 지명기준 설정 곤란 - 미 지명자 불만 소지 - 아이디어 구상의 제한 소지
사례	88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 전쟁기념관 -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 일본 동경 제2국립극장	- 한국종합무역센터 - 예술의 전당 - 국제방송센터 - 일본 동경도 신도청사
비고	국제경기로 진행시 UIA기준의 영향을 다소 받음	국제경기로 진행시 국내기준에 자율성 확보가능

관계가 있다.

1) 건축주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제4조에는 주최자인 건축주의 의무에 대하여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개인은 경기의 명확한 목표 및 설계조건을 미리 정하고 요구되는 기능 및 제

반 기술자료, 문제해결의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는 설계지침서 및 요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충실하게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할 의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설계지침서 및 요강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또한 이러한 내용

은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설계경기의 수준, 또는 건축계의 전반적인 수준을 기능하는 척도로서의 조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조건은 설계경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응모기간과 건축규모, 공사비, 설계용역비, 상금 등 자금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한다는 규정을 명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초기 기획단계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의 전례를 답습함으로써 설계경기가 전반적으로 담보의 수준을 유지해왔던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부족부분을 응모 건축가에게 요구함으로써 설계경기의 상금이나 참가비에 비하여 무리한 인적, 물적 출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2) 대상프로젝트

대상프로젝트를 설계경기에 의하여 진행시키려고 하는 경우 설계경기의 방식에 적합한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의 구분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용도 및 규모 등이 요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설계경기의 프로젝트로 적합한 성격은 '기능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용자가 특수한 계층이 아닌 불특정다수인 경우'이다. 이는 프로젝트의 성격 및 기능이 어느 건축가에게나 쉽게 파악되며 특별한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제안을 찾아내고자 동일한 건축직제와 문제해결의 조건 속에서 다양한 접근방법과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 경기의 본래 성격과 부합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음악당, 기념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이 아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건축주와 건축가의 많은 접촉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므로 설계경기를 통하기보다는 건축주의 의도와 프로젝트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축가를 선정 후 협의로 진행시켜야 한다.

3) 용모자

설계경기의 내적인 동기는 일반보편성을 띠고 있는 프로젝트의 탁월한 작품용 기대'하는데 있으므로 설계경기에 참여하는 건축가의 역량은 설계경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서 건축가들이 단순히 프로모션으로 설계경기에 참가함으로써 이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공정한 경기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응모자격의 제한유무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경기의 방식에 따른 제한이 있는데 경기방식은 일반공개경기과 지명초청 경기로 나뉘며 지명초청경기는 자격제한의 문제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공개경기인 경우는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4) 심사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제9조에는 "주최자는 심사위원회를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건축전문가로 구성하되 주최자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분야 이외의 관련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 심사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의 수를 규정하였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설계경기에서 건축주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는 데에 그 역할이 있으며, 경기의 결과를 결정하는 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성격에 정통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심사위원의 선정과 공정한 심사운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심사위원의 선정대상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나 원로건축가이며 이는 학식이 높고 경력이 많아서 공정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기대한 개연성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심사위원은 건축주의 의도와 프로젝트의 성격에 적합한 인물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심사위원이 추구하는 건축관이나 인격을 통하여 건설경기의 수준이 암시되고 응모자로 하여금 건축주의 의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에 심사위원을 공개함으로써 이해나 情實이 개입할 소지를 남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인물은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안고 있다.

설계경기의 목적은 보다 훌륭한 계획안과 건축가를 선택하여 궁극적으로는 훌륭한 건축을 완성'하는데 있다.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은 이런 목적으로 여러 조항을 만들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경기를 운영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이며 이를 위한 장치는 다양한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심사완료후 심사위원명단, 심사위원회의 심사평이 有關誌面에 반드시 공개되어 기록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공약

의 업수를 들 수 있는데, 심사운영은 당선안을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선택된 작품이 공약대로 시행되는가에 대한 감시, 감독의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공약은 발주측의 사회와 응모자에 대한 인격적 윤리인 만큼 심사위원회는 이의 실천에 대한 감독의 도덕적 책임'을 갖게 된다.

III. 국내설계경기 현황

국제건축가연맹(UIA: L'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의 설계경기규준과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에 따라 설계경기의 요소를 분류하고 국내의 설계경기 현황과 설계경기의 지침서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대상프로젝트의 현황

본 연구에서는 1989년 1월에서 1992년 4월 사이에 국내에서 개최된 설계경기 가운데 건축관계 서적의 지면상에 발표된 설계경기를 대상으로 시설의 용도, 규모, 설계기간의 현황과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1) 용도별 분포현황

용도별 현황은 프로젝트의 설계경기에의 적합성과 관계가 있으며, 특수기능을 요하는 시설들에 비해서 관람집회, 교육연구시설 등이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업무시설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가 대부분 관공서나 단체의 본부등으로 발주자나 프로젝트의 성격상 공공성을 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설계경기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시시설과 공공주택은 3년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무시설과 관람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공공업무시설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람집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최근의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서 시민회관, 공

- 1) 『건축현상설계의 체험적 허설』, 최창규, 건축문화 1984. 8, p. 57.
- 2) 『한국건축설계경기의 발전방향』, 송종석, 건축사 1985. 8, p. 61.
- 3) 『현상설계의 몇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이병재, 공간 1983. 10, p. 24.
- 4) 『현상설계경기에 대하여』, 류춘수, 건축가 1991. 5, p. 10.
- 5) 송종석, 앞의 책, p. 60.
- 6) 최창규, 앞의 책, p. 36.

립도서관 등 공공부분에서의 시설투자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특수 기능을 요구하는 의료시설, 통신촬영시설 등은 설계경기의 방식을 채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프로젝트임을 <표 4>에서 알 수 있다.

2) 규모별 분포현황

(가) 연면적에 따른 분류

③ 연면적에 따른 분류

중, 소규모(연면적 30,000㎡ 미만)의 프로젝트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전체경기의 83.5%에 해당하는 76개이며 공동주택, 행정기관, 공공단체의 중앙사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주로 단일성격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며 연면적 5,000㎡~15,000㎡ 사이에 전체의 61.8%가 분포되어 있고,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경기의 수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면적 30,000㎡ 이상의 프로젝트는 15개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경기중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연면적 90,000㎡ 이상의 프로젝트는 단지계획, 실외체육시설, 정부종합청사 등이며, 그 이외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기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공동주택(세대수에 의한 분류)

공동주택의 경우 1,000세대 이하의 규모는 설계경기에 의하여 계획이 진행되는 예가 드물게 나타나며, 주로 발주자가 공공기관임을 알 수 있다.

3) 용도/규모별 분포현황 분석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시설규모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용도에 대한 시설규모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시장, 관람집회시설은 주로 시(구)민회관으로 그 규모가 10,000㎡ 내외로 집중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상프로젝트가 예외없이 100,000㎡ 이상이다. 교육연구시설은 10,000㎡ 내가 가장 많으며, 관광휴게시설은 5,000㎡ 이하의 소규모와 100,000㎡ 이상의 대규모 단지계획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4) 규모/용도기간별 분포 현황

시설규모에 대한 용도기간의 관계는 대체로 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용도기간도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이면서 용도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이면서 용도기간이 짧은 프로젝트는 단지계획이나 공단 등의 개설계획으로 아이디어경기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표4> 설계경기의 시설용도별 분포현황 (1989-1991)

용도	'89		'90		'91		계	
	관	민	관	민	관	민	관	민
일반업무시설	1	5	3	5	4	11	8	21
공공업무시설	4	1	5	2	7	1	16	4
관람집회시설	1	2	4	2	6	2	11	6
공동주택	3	1	5	1	4	1	12	3
교육연구시설	2	2	2	1	5	2	9	5
전시장	1	1	2	-	3	-	6	1
관광휴게시설	1	-	2	1	-	-	3	1
통신촬영시설	1	-	-	-	1	-	2	-
의료시설	-	-	-	-	1	-	1	-
기타	2	-	1	1	1	1	4	2
합계	16	12	24	13	32	18	72	43

<표5> 규모에 의한 분포현황 - (1989-1991)

(단위 : 1,000㎡)

연면적	5 ~ ~5	10 ~ 10	15 ~ 15	20 ~ 20	25 ~ 25	30 ~ 30	45 ~ 45	60 ~ 60	75 ~ 75	90 ~ 90	계	
프로젝트수	14	25	22	6	6	3	6	2	1	-	6	101

<표6> 규모에 의한 분포현황 - (공동주택) (1989-1991)

(단위 : 1,000세대)

세대수	~ 1.0	1.0 ~ 2.0	2.0 ~ 3.0	3.0 ~ 4.0	5.0 ~	계
프로젝트수	1	6	3	4	2	16

<표7> 용도/ 규모별 분포현황 (1989-1991)

(단위 : 1,000㎡)

용도	규모	~5	5~10	10~15	15~20	20~30	30~45	45~60	60~90	90~	계
공공업무시설	2	6	11	5	4	2	1				21
일반업무시설		1	2	1	1	3	1	1	1	1	11
전시장		3					1				4
공동주택										16	16
의료시설			1								1
통신촬영시설		1		1							2
교육연구시설	2	4	1		1	1					9
관광휴게시설	2									1	1
관람집회시설	4	8	2	2						1	17
기타	1	3	2							1	7
계		11	26	19	9	6	6	3	1	20	101

2. 설계지침서 분석

본 절에서는 1989년-1991년 사이에 국내에서 개최된 설계경기중 관계지면에 발표된 115개 가운데 수집가능한 41개의 설계지침서를 통하여 경기와 관련된 항목을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제6조 '설계경기의 내용의 조건'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의 목적 및 방식
- 용모자격
- 경기의 단계 및 일정

- 질의 응답의 방법
- 제출도서의 내용 및 규격
-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작품제작비 또는 상금
- 용모작품의 전시 및 반환요령
- 기타 특별한 사항

1) 설계경기의 목적 및 유형

경기의 목적은 지침서 서두의 경기개요나 배경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경기의 개최 취지, 목표 등이 개괄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업무수용, 건물의 상징성,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의 목적이 명시된 지침서는 총 41개 중 31개(73.8%)로 나타났다.

경기방식은 일반공개경기와 지명초청경기로 양분할 수 있는데 총 41개의 표본은 일반공개경기가 29개(70.7%), 지명초청경기가 12개(29.3%)로 분포되어 있다.

발주자가 국가기관인 시(구)청사와 시(구)민회관의 경우 총 16개의 표본중 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공개경기로 치러졌으며, 건축규모가 큰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은 지명초청경기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 응모자격

총 41개의 표본 가운데 발주측에서 응모자를 미리 선택하는 지명초청경기를 제외하고, 일반공개경기(31개) 가운데 응모자격 제한을 두고있는 표본수는 15개(48.4%)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격의 제한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11개(73.3%), 일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3개(20.0%), 재확임자의 자격(기술사, 건축사, 해당분야의 박사)을 제한하는 경우도 1개로 나타났다.

시설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자격제한의 관계는 상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발주자의 성격에 따른 자격제한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자격제한의 유무는 특정한 조건이나 프로젝트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발주자의 관례에 의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의 전례를 참고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설계경기의 단계 및 응모기간

경기의 단계는 41개의 표본 전부 1단계경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단계에 관하여 언급이 있는 표본은 단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큰 공동 주택단지나 도시개발계획 등의 경우에도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하나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이디어나 계획의 참신성보다는 설계상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의 기간은 응모 접수일로부터 작품제출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파악된 35개의 표본가운데 경기기간은 1개월 이내가 5개(14.3%), 1개월-2개월 사이가 21개(60.0%), 2개월-3개월 사이가 3개(8.5%), 3개월 이상이 6개(17.1%)로 나타났다. 경기의 기간은 경기의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연면적 30,000㎡ 이상의 프로젝트는 공동주택단지, 운동장, 도시개발계획 등을 제외하고 6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5개가 업무시설로 경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의 기간은 시설규모의 증가

〈표8〉규모 / 응모기간별 분포현황 (1989-1991)

(단위 : 1,000㎡)

기간 규모	~30일	31~40일	41~50일	51~60일	61일~	계
-5	1	1			2	4
5-10	3	4	4	3	1	15
10-15	3	2	3		1	9
15-20	1	1			1	3
20-30			1			1
30-45	1	1		2		4
45-60				2		2
60-90					1	1
90~		2	4		7	13
계	9	11	12	7	13	52

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면적 15,000㎡~30,000㎡사이의 규모에서는 예외로 문화시설 1개가 1개월 이내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1개월~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소요한 프로젝트는 전화국 등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구)청사, 시(구)민회관 등 중소규모 공공시설물은 예외없이 1개월-2개월의 기간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응모기간 중 질의응답

질의응답에는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이 이용되었으며 전화나 방문의 방법이 서면의 방법과 중복되는 경우는 서면에 포함시켰다. 전체 41개의 표본가운데 서면이 17개(41.5%), 전화가 12개(29.3%), 질의응답의 방법에 대한 조항이 없는 표본이 12개(29.3%)로 나타났다.

서면응답의 경우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응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팩스나 전화를 통한 개별적인 질의응답 방법을 포함하는 표본도 다수 나타났다. 전화를 이용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은 주로 시(구)청사, 시(구)민회관의 경우에 국한되었으며, 질의응답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은 표본의 경우는 개별적인 경로를 통하여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특히 구민회관, 구청사, 전화국 등의 설계지침서에서는 질의응답의 방법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중앙관청, 직할시 이상의 행정기관이 발주자이거나 공공기관, 단체의 본부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서면 질의응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명초청경기일 경우는 예외로 전화나 질의응답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5) 제출도서의 내용 및 규격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제7조 제출도서에 관한 사항으로 “응모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서는 심사위원이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도서는 크게 도면, 투시도, 조감도, 모형, 설계설명서 외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도면에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기본도면과 개년도, 기능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투시도, 조감도는 별개의 요소로 취급하였다.

제출도서의 규정은 다른 조항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표본도 1개 발견되었으며, 도면의 규격에 대한 기준은 도면 크기에 제한을 둔 경우가 34개로 전체의 82.9%이며, 축척에 제한을 둔 경우가 16개로 전체의 39.0%, 도면규격과 축척을 함께 제한한 경우도 10개로 24.4%로 나타났다. 두가지 다 제한을 두지 않은 1개를 제외하고는 도면규격과 축척 두가지중 반드시 1가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로 두가지 다 제한하지 않더라도 도면규격이 확정되면 축척은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그 반대의 경우 도면의 크기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발주측에서 도면의 크기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출도면의 형식은 도판, 청사진, 원도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청사진 제출이 1개(2.4%), 청사진 + 원도가 3개(7.3%), 도판 + 청사진 제출이 18개(43.9%), 도판제출이 11개(26.8%)로 나타났으며 제출형식에 제한이 없는 표본도 8개(19.5%)로 나타났다.

도판을 제출하는 경우는 크게 패널에 청사진을 부착하는 방법과 사진판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기본도면은 채색을 하지 않는다는 제한은 공통으로 적용되었으며, 투시도와 조감도에만 채색하도

록 규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 41개중 투시도와 조감도중 1개를 요구한 표본은 30개(73.2%), 투시도와 조감도 두 종류 다 요구한 표본은 7개(17.1%)이었으며,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는 표본은 4개(9.8%)로 나타났다.

모형의 경우는 제출요구가 9개(22.0%), 제출가능 1개(2.4%), 제출불가 4개(9.8%)로 나타났다. 전체의 65.9%(27)가 모형에 관한 조항을 두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건축주의 작품에 대한 요구사항

지참서상에 나타난 일반지참사항은 건축주측의 응모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요구사항은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성격과 특수한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으로 설계경기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볼 수 있다.

전체 41개의 지참서에 나타난 요구사항은 <표 9>와 같이 조형성에 대한 항목이 38(92.7%)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기능성이 25개(60.9%), 대지이용의 효율성이 24개(58.5%), 설비계획(23개), 주차계획(1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된 사항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으로, 다음으로 건물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자에 대한 고려(5개)는 가장 빈도가 낮아서 공공건물 이외의 프로젝트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심사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설계경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공모이전에 완료되어 발표된 경우는 전체 41개 표본중 2개로 나타났다. 심사에 관한 지참서의 조항에는 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원회의 구성은 공모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관례로 분식되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모자는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준에 의하면 심사위원 중 건축전문가의 참여비율을 2/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의 수를 7인 이내의 홀수로 제한하고 있다. 89~91년간 실시된 건축설계경기 중 심사위원의 명단 및 건축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지상에 발표된 프로젝트는 28개로 이 중 건축전문가의 참여비율이 1/3이하가 2개로 7.1%, 2/3이하가 9개로 32.1%, 2/3상이 17개로 60.7%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수는 7인 이내 홀수가 11개로 39.9%, 8명이상이 17개로 60.7%로 8명에서 18

<표9>건축주의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빈 도	%
조 형 성	38	92.7%
기 능 성	25	60.9%
경 계 성	11	26.8%
대지이용 효율성	24	58.5%
주차계획	19	46.3%
조 경	17	41.5%
법규 검토	13	31.7%
설비 계획	23	56.1%
방재관리계획	12	29.3%
환경관리계획	9	22.0%
장애자 고려	5	12.2%

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건축전문가의 참여비율이 1/3이하인 프로젝트와 심사위원의 수가 10명이상인 프로젝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정자문위원 등 발주자측 인물이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상금/제작비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제14조에는 “일반공개경기의 입상자에게 줄 상금의 총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한 설계비 총액의 20%이상으로 한다. 지명초청경기의 초청자에게 1인당 앞의 설계비총액의 5%내외에 상당하는 제작경비를 지급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금과 제작비는 각각 일반공개경기과 지명초청경기의 경우로 분리해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공개경기 29개중 당선작에게만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그 외 우수작이나 가작 등에 대한 상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표본이 14개(48.3%)로 나타났고, 상금이 책정된 표본의 경우도 응모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상정하면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된 실비에 못미치는 수준의 상금이 우수작 및 가작 등에 주어지고 있으며 상금의 총액이 규준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명초청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발주자측에서 지명한 응모자에게 최소한의 제작설비조차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25%(12개 표본 중 3개)에 달하고 있으나 일반공개경기의 표본에 비해서 비교적 응모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9) 심사후 관리/작품반환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제18조는 “응모작품은 심사보고서와 함께 전시회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

정하여 공개적인 전시를 권하고 있다.

응모작품의 전시 및 반환에 대해서는 지명초청경기과 일반공개경기의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전시일정이나 계획에 관한 조항이 있는 표본수는 지명초청경기의 경우 12개중 2개(16.7%)에 불과하였으며 일반공개경기의 경우 29개중 3개(10.3%)로 나타났다. 응모작품의 반환에 관한 조항은 지명초청경기인 경우 일정기간내 반환이 2개(16.7%), 반환불가 5개(41.7%)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는 5개(41.7%)로 나타났다. 일반공개경기의 작품반환에 관한 조항은 일정기간 보관후 반환, 요청에 의한 반환등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18개(62.1%), 반환불가 2개(6.9%), 이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가 9개(31.0%)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전시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건축관계 잡지 등을 통하여 당선작, 우수작, 가작 등이 지상에 공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0) 작품의 저작권, 소유권 귀속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제16조에는 “설계된 작품의 저작권은 당선자와 실시설계자에게 귀속되며 작가의 동의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변형될 수 없다. 작가는 작품의 복제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UIA 규준 제29조 및 제30조에도 같은 내용인 판권, 변형, 사용에 대한 규준을 정하고 있다.

작품의 저작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참가비를 지불함으로써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개경기과 지명초청경기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지명초청경기에서 저작권이 발주자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3개(25%), 설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1개(8.3%)로 나타났으며, 저작권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는 8개(66.7%)로 나타났다. 작품의 사용, 복제, 변형 등에 관한 소유권에 대해서 당선작, 우수작 등 입상작인 경우는 모두 발주자측에 귀속되었으며,

제출된 작품의 소유권을 모두 발주자측에 귀속시키는 표본수는 7개(58.3%)로 나타났다.

일반공개경기에서 저작권에 관하여서는 발주자측에 귀속이 4개(13.8%), 설계자에게 귀속이 3개(10.3%), 저작권에 관한 조항이 없는 표본이 22개(75.9%)로 나타나서 지명초청경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선작의 소유권에 관하여서도 발주자측에 귀속이 7개(24.1%)로 나타났으며 소유권에 관한 조항이 없는 표본이 22개(75.9%)로 나타나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IV. 한국 설계경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상에서 드러난 설계경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적절한 적용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제시한 각 요소들을 정리하여 설문 구성하고 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삼는다.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설계경기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경기를 구성하는 제요소들을 앞서 제시한 분류들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설계경기에 직접 참가한 건축가 및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조사항목의 분류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3)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설문의 조사대상은 1989년부터 1992년 4월 사이에 실시된 설계경기에 참가한 사무소와 건축가를 중심으로 198명을 선정하였으며, 1992년 5월 9일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동년 5월 23일까지 우편으로 총 61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통계자료로 사용가능한 57부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심사위원은 1992년 5월 25일과 5월 29일 사이에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대상은 연구대상 기간동안 개최된 설계경기의 심사 참가한 대학교수 12명으로 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표 10> 조사항목 /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일반사항	•연령 •학력 •실무경력 •직책 •사무실내의 설계직인원	*선택형
설계경기일반	•참가목적 •계획 / 설계 참여인원 •응모횟수 / 당선횟수	*선택형
참가자격	•제한의 필요성 •제한 이유	*선택형
질의응답	•질의응답 방법 •질의응답 횟수	*선택형
제출도서	•종류 / 수량제한의 필요성 및 이유 •제출도면의 종류 (선호도) •제출도서의 중요도 순서 •지명초청경기의 참가비수준	*선택형 및 의견
심사위원 / 심사방법	•전문가의 참가비율 •심사위원의 일반적 대상 •심사위원의 공개시기 •당선안의 결정방식 •당선작의 작품수준에 대한 만족도	*선택형 및 서열척도
기초자료	•기초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자료 / Program에 대한 만족도	*선택형 및 서열척도
저작권 / 소유권		*도표
기타	•응모기간 •응모안과 실시설계안의 차이 •공개전시의 필요성	*선택형 및 의견

PC *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연구내용별 통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내용(일반사항, 경기일반, 참가자격, 질의응답, 제출도서,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기초자료, 기타)별로 각각의 빈도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나) 연령, 학력, 실무경력, 직책 등 일반사항과 나머지 각 항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s Tables)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유의도를 χ^2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다) 제공된 당선안의 작품수준 및 자료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태도의 측정을 할 수 있게 등간척도(Interval Scale)화 된 서열척도(Ordinal Scale)를 사용하였다. 즉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1, 만족-2, 약간 만족-3을,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4, 불만-5, 대단히 불만-6을 주어 만족도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2. 설문 및 면담 조사 분석

1) 응모자

가) 일반사항

응모자의 연령분포는 31세~35세 5명(8.8%), 36~40세 9명(15.8%)로 나타나서 가장 활동적인 연령은 45세 전후인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고졸 1명(1.8%), 대졸 28명(49.1%), 대학원졸 28명(49.1%)으로 나타났으며, 실무경력은 5년미만 1명(1.8%), 6년~10년 4명(7%), 11년~15년 16명(28.1%), 16년~20년(21.1%), 21년 이상 24명(42.1%)으로 15년 이상 경력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의 건축설계직 근무인원은 5명미만 3개소(5.3%), 6명~10명 11개소(19.3%), 11명~20명 12개소(21.1%), 21명~50명 16개소(28.1%), 51명~100명 11개소(19.3%), 101명 이상 4개소(7%)로 인원의 증가에 따라 정규분포에 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응모자 1명당 설계경기에 응모한 횟수는 평균 1989년 1.86회, 1990년 1.86회, 1991년 2.32회로 나타났으며, 당선된 횟수는 1989년

0.47회, 1990년 0.63회, 1991년 0.70회로 나타났다.

나) 설계경기 참가 목적

건축가의 입장에서 응모의 이유로 ①당선을 목적으로, ②자신의 새로운 건축관을 표현하기 위하여, ③경기를 통한 설계조직체의 디자인 의식과 능력고양, ④기타로 분류하였는데,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①당선목적이 23개로 57.5%, ②새로운 건축관 표현이 6개로 15.0%, ③직원의 디자인의식 고양에 8개로 20.0%, ④기타 3개로 7.5%로 나타났다.

3장에서 조사한 대상프로젝트의 용도별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는 설계경기의 방식에는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프로젝트가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나 공공단체의 성격상 공공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설계경기를 개최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참여하는 응모자도 설계경기를 통한 참신한 건축관의 표현이나 이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주측에서는 예산의 공정한 집행보다는 공공의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개입으로 프로젝트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경기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응모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건축주의 의지와 프로젝트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요구사항에 최대한 근접하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 응모자의 참가자격

응모자의 참가자격은 지명초청경기와 일반공개경기인 경우의 경기방식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반공개경기에서 응모자의 참가제한은 자격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3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48.4%이고 그 중 제한요건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개설자 73.3%, 건축사사무소개설자 20.0%이며 계획책임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에 응모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하여서는 ①'제한할 필요없다'가 26.8%, ②'제한이 필요하다' 8.9%, ③'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 64.3%로 나타났다. ③의 경우가 64.3%로 나타난 것은 지명초청경기와 일반공개경기의 구분 필요성을 상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8개로 19.0%, '사무소의 규모'가 7개로 16.7%, '동일 건물 설계실적'이 9개로 21.4%로 나타났으며 기타 이유로는 '무분별한 소모전 지양', '응모자의 과다출혈 방지', '인력낭비 방지' 등 주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

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설계경기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기방식을 지명초청경기나 일반공개경기로 결정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관계있는 것이며, 경기의 목적이 우수한 설계안을 얻고자하는 것이므로 일반공개경기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제한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 혹은 동일건물 설계실적이라는 조건은 지명초청경기로 실시할 경우에 건축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을 일반공개경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설계지침서

발주측의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은 공모요강이나 설계지침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결의응답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건축가의 의견교환이 제한되어 있는 설계경기에서 프로젝트의 기능, 성격,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Design Condition)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경기에서 프로젝트의 기능, 성격, 규모에 대한 지침이 그 분야의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됨으로써 응모자가 설계할 때 필요한 Space Program 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한 설계개념상의 혼선으로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방향의 설정이 정확하지 않게 되며, 설계안이 건축주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주최자의 의도 - 동일한 조건으로부터 최선의 안을 선택 - 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제공되는 기초자료 및 Space Program 의 수준(새공된 자료만으로 설계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아주만족 0, 만족 4, 약간만족 12, 약간불만 19, 불만 15, 아주불만 5명으로 아주 만족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70.9%가 불만으로 나타나서 제공되는 자료만으로는 설계를 진행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최자의 입장에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대체로 비전문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모기간 중 응모자의 자료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와 정보는 결의응답으로 대신하고 있다. UIA 의 설계경기규준이나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에는 충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건축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경기에서 응모자인 건축가에게 기초자료 조사, 수집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것은 당연히 인식되어야 할 문제이다. 주최자인 건축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응모자에게 기초자료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자료의 부정은 앞의 요구사항의 비전문성과 함께 설계경기를 통한 훌륭한 계획안이나 적합한 건축가를 선택하고자하는 의도와 배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따르는 기능, 성격, 규모에 의한 타당하고 적절한 요구조건과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최자인 건축주는 응모하는 건축가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설계경기를 개최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하며, 이를 구성함으로써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설계지침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응모자에게 계획방향을 제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축주의 의도에 충실한 계획안들을 모집할 수 있다.

3) 응모기간

대상프로젝트의 경기기간은 3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모접수일로부터 작품제출일까지로, 규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 중 60%가 응모기간 1~2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기간은 응모자의 51.1%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제공되는 기초자료 및 Space Program 이 완전하지 못하여 응모자가 자료연구조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응모기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2)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기간은 규모보다는 성격에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료 및 요구사항을 작성하면서 경기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응모자에게 프로젝트의 성격, 기능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4) 제출도서

제출도서에 관한 규정은 설계지침서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제출도면과 설계설명서의 규격과 매수까지 제한하고 있어 발주측에서 응모자에게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건하에서 심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모자의 입장에서 제출도서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는 이유로는 ①공정한 조건하에서 심사 20개로 35.1%, ②과다 경쟁방지가 10개로 17.5%, ③설계자 부담 경감이 6개로 10.5%, ④기타 4개로 7.0%로 나타났다. 3장에서 조사한 제출도서의 내용 및 규격현황에서 발주측에서 요구하는 제출도서의 내용과 응모자가 선호하는 제출도서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출도서의 제한에 관해서는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에 명기된 바와 마찬가지로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요구사항의 작성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도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확실하게 명기하는 동시에 규정의 위반시에 취해질 수 있는 조치에 관한 항목의 설정이 뒤따라야 한다.

3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여 발주처에서는 기본도면은 채색을 하지 않고 투시도, 조감도에만 채색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발주처에서 응모자에게 공정한 조건에서 심사가 되도록 하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보여진다. 설계경기에 참여하는 응모자의 입장에서는 제출도서중 중요도를 ① 기본도면이 26개로 45.6%, ② 조감도/투시도가 4개로 7.0%, ③ 개념도/기능도가 6개로 10.5%, ④ 스테디모형이 9개로 15.8%로 나타났다. 이는 응모자의 입장에서 조감도/투시도보다는 기본도면에 중요도를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심사

심사위원의 구성원은 설계경기에서 건축주의 의도가 확실하게 표현된 작품을 선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성격에 정당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심사위원의 선정과 공정한 심사운영에 있다.

가) 심사위원의 선정

응모자의 경우 건축전문가의 심사위원회 참여비율이 ① 50% 이상이 2개로 3.5%, ② 70% 이상이 21개로 36.8%, ③ 90% 이상이 17개로 29.8%, ④ 심사위원 전원이 15개로 26.3%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사위원수는 7인 이내의 홀수”라는 규정의 타당성에는 ① 타당하다 38개로 66.7%, ② 제한할 필요 없다 9개로 15.8%, ③ 많을수록 좋다 4개로 7.0%, ④ 적을수록 좋다 6개로 10.5%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심사위원의 대상으로는 ① 교수 16개로 28.1%, ② 건축가 33개로 57.9%, ③ 발주측인물 1개로 1.8%, ④ 기타 1개로 1.8%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대상이 교수와 건축가가 각각 50%로 조사되어, 건축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심사위원의 대상으로서 교수와 건축가의 우선순위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3장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경우 건축 전문가보다는 건축주측의 비전문인이 다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응모

자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의 선정대상으로 응모자의 경우 건축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아울러 외국의 경우 타국의 저명한 건축가를 심사위원이나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설계경기를 진행하는 것도 참고로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선정시기는 공모개시전이어야 하며 응모자와 함께 건축주의 의도를 파악하고 프로젝트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주의 의도에 가장 근접한 안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

3장에서 조사와 바에 의하면 심사위원의 구성이 공모이전에 발표된 것은 전체 표본중 2개로 나타났는데, 응모자의 경우 심사위원을 공개하기에 적당한 시기로 ① 공모시작전 27개로 47.4%, ② 심사후 26개로 45.6%, ③ 기타 3개로 5.3%로 나타났다.

또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공개시기에 대하여 공모전 발표와 심사후 발표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모전 발표가 적당하다는 이유는 경기 실행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프로젝트의 성격과 건축주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적합한 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심사후 발표가 적당하다는 이유로 공모전에 발표함으로써 경기에 情實이나 이해가 개입되어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공모전에 공개함으로써 경기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심사위원의 성격, 건축관에 따른 설계안의 성격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응모자가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전문가로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대부분 대학교수로 상기한 심사위원의 성격, 건축관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각 대학별로 심사위원의 수를 안배하고 있는 실정에서서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응모자가 심사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모전 심사위원의 발표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의견도 있다.

6) 심사과정/심사결과

가) 심사과정

심사의 과정은 공모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다 할 수 있다. 공모를 마감한 이후 작품에 대한 평가와 선택이 심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분석하고 건축주의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평가와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며, 심사위원의 선정시기가 공모 시작전이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경우 심사직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경기의 지침을 심사장에서 접하게 되어 경기의 성격이나 건축주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심사에 임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으로 미루어 심사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현장답사나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정한 조건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작품의 범구검토 및 요구조건의 준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행할 전문가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의 과정에 참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각 응모자의 제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대부분 심사위원의 의견은 보충설명을 배제하여 익명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타났다.

나) 심사방법

3장의 조사에 의하면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응모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설계지침서가 다수 나타났다. 당선안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응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① 위원장 결정 1개로 1.8%, ② 다수결 10개로 17.5%, ③ 채점방식 41개로 71.9%, ④ 기타 5개로 8.8%로 나타났으며,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다수결보다는 채점방식에 의한 선정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서 채점방식에 의한 당선안 선정이 다수결에 의한 선정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수결인 경우 심사위원회가 다수의 비전문가로 구성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의 비전문가에 의하여 무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채점방식이 각 심사항목에 대한 점수를 종합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심사결과와 발표 및 전시

응모작 및 당선작이 관련지상에 게재된 설계경기 가운데 임의 추출한 54개의 설계경기를 분석한 결과 심사평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이 발표된 것은 8개로 14.8%에 불과하며, 심사후 공개전시된 경우는 표본으로 수집된 41개의 경기 가운데 5개로 9.2%에 불과하다.

응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 공개전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반드시 필요하다 20개로 35.1%, ② 전시하는 것이 좋다 34개로 59.6%, ③ 필요없다 1개로 1.8%로 응모자의

94.7%가 공개전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공개전시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① 공정성 확보 14개로 29.7%, ② 발주자, 응모자, 심사위원 모두에게 책임감을 준다 8개로 17%, ③ 교육목적 및 건축문화의 발전 토대 6개로 12.7% ④ 기타 15개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서도 공개전시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나서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당선안의 작품수준에 대한 만족도

응모자의 경우 심사결과 당선안의 작품수준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결과는 ① 만족 3개로 5.3%, ② 약간만족 11개로 19.3%, ③ 약간불만이 22개로 38.6%, ④ 불만이 13개로 22.8%, ⑤ 아주불만 2개로 3.5%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평균이 약간불만으로 나타났다. 응모자가 작품의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은 발표나 전시회가 거의 없어 자신의 작품과 타작품을 비교할 기회가 적은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심사과정에 대한 발표 및 응모작품의 공개적인 전시의 기회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응모자 및 일반인에게 심사과정에 대한 의혹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발표 및 전시가 요구된다.

8) 당선안과 실시안의 차이

설계경기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설계지침서에 의거 응모자가 일정기간동안 작성한 도서를 발주처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에 의하여 당선작이 선정되며, 당선자는 실시설계를 가지고 당선작을 발전시켜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당선작과 실시된 안과의 차이에 대한 당선자의 응답은 ① 당선안대로 실시 2개, ② 부분적인 수정 21개, ③ 전반적인 수정 18개, ④ 별도의 안으로 실시 3개로서 44.7%에 해당하는 당선안이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당선안과는 다른 별도의 안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① 기초자료 및 Space Program의 불충분이 8개, ② 설계경기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단 3개, ③ 짧은 기간동안에 작성된 2개, ④ 심사위원이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 2개로 발주처에서 설계지침서 작성시 기초자료와 Space Program이 불충분하여 당선된 계획안의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 저작권/소유권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제16조에는 “설계된 작품의 저작권은 당선자와 실시설계자에게 귀속되며 작가의 동의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변형될 수 없다. 작가는 작품의 복제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UIA 기준의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판권, 변형, 사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작품의 저작권,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발주처에서 참가비나 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설계경기에 참가하는 응모자의 경우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한다”가 일반공개경기의 당선작은 89.5%, 우수작은 71.9%, 응모작은 71.9%로 나타났으며, 지명초청경기의 경우 당선작은 89.5%, 우수작은 71.9%, 응모작은 71.9%로 나타나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모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유권의 경우는 일반공개경기의 당선작이 49.1%, 우수작이 52.6%, 응모작이 56.1%로 나타났고, 지명초청경기의 당선작이 24.6%, 우수작이 40.3%, 응모작이 45.6%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저작권의 응모자에의 귀속’에 대한 인식은 형성되어 있으나, ‘소유권’의 경우 발주처의 ‘작품사용권’과 혼동하는 등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발주자측에서 당선작이나 응모작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관하여서는 UIA 경기규준 및 한국건축설계경기 규준에 공히 명시되어 있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반드시 설계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측은 1회에 한하여 당선작의 사용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발주측과 응모자는 이에 대한 인식의 필요가 있으며, 발주측이 작품에 대한 변경, 수정, 복제, 타용도에의 전용 등을 작가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도록 설계지침이나 요강에 이러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V. 결 론

최근에 우리나라는 적지않은 공공건축물의 설계발주가 설계경기를 통하여 설계안을 채택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1989~1991)의 설계경기자료를 분석하여 설계경기의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를 제로명하고 이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로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설계경기를 통하여 계획안과 건축가를 선

정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성격에 적합한 건축가를 선정하여 건축주와 건축가간의 많은 의견교환을 통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응모하는 건축가의 44.7%가 당선을 목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설계경기의 본래의 목적과 상반되고 있으나, 응모자들이 작가의식을 심도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확신의 기회이자 건축계 전반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 응모자에게 주어지는 설계지침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건축가는 51.1%이며, 응모기간중 부족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계구상이 오도되기 쉽고 나아가서는 당선후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되는 경우가 44.7%로 나타나서,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발전시켜 설계지침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건축전문가의 참여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모자의 86%가 응답하였으며, 심사위원의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건축전문가의 심사위원회 참가비율은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의 권장사항인 구성인원의 2/3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심사과정의 당선작 선정은 다수결에 의한 방식보다는 채점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심사후 당선자의 발표와 동시에 심사과정 및 평가내용의 유관지면에의 발표와 응모안의 공개적인 전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응모자의 경우 94.7%, 심사위원은 100%로 나타나서, 이를 통하여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주자, 건축가, 심사위원 모두에게 책임감있는 경기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지명초청경기의 경우 66.7%, 일반공개경기 75.9%가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건축주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각각 8.3%, 13.8%로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당선작 및 응모작의 변경, 수정, 복제,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이 발주측의 임의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는 설계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설계비의 책정에 대한 제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48.3%이고, 상금이 책정된 경우도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설계비와 상금, 제작비를 혼용하여서는 안되며, 당선작의 설계용역비와는 별도의 기준보수율에 의한 우수작, 가작 등의 상금, 제작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1992년 12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2월분 1천4백만9천8백9m² 보다 12.16%인 1백7십만3천 17m²가 증가한 1천5백71만2천8백26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12월 까지의 누계 1억3천6백29만7천6백7m² 보다 14.87%인 2천26만5천4백30m²가 감소한 1억1천6백3만2천1백77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11월분 9백48만1천1백48m² 보다 65.73%인 6백23만1천6백 78m²가 증가한 1천5백71만2천8백26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715,580	5,611,682	3,896,102 227.10%
	대전	336,612	731,072	394,460 117.19%
	강원	329,419	382,842	53,423 16.22%
	경북	603,230	900,034	296,804 49.20%
	제주	187,073	248,284	61,211 32.72%
감소지역	부산	1,729,428	1,386,554	(342,874) -19.83%
	대구	861,042	653,621	(207,421) -24.09%
	인천	727,824	602,375	(125,449) -17.24%
	광주	337,135	249,636	(87,499) -25.95%
	경기	3,050,538	2,137,942	(912,596) -29.92%
	충북	485,801	389,289	(96,512) -19.87%
	충남	556,533	454,231	(102,302) -18.38%
	전북	1,172,122	699,616	(472,506) -40.31%
	전남	554,668	261,091	(293,577) -52.93%
	경남	1,362,804	1,004,557	(358,247) -26.29%
합계	14,009,809	15,712,826	1,703,017	12.16%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용도별	11월분	12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684,611	1,987,489	1,302,878	190.31%
다세대주택	310,239	905,442	595,203	191.85%
연립주택	47,468	198,942	151,474	319.11%
아파트	2,869,574	5,642,004	2,772,430	96.61%
근린생활시설	1,736,104	2,847,445	1,111,341	64.01%
종교시설	66,922	157,455	90,533	135.28%
의료시설	79,513	119,226	39,713	49.95%
교육연구시설	649,918	663,513	13,595	2.09%
업무시설	984,566	733,261	(251,305)	-25.52%
숙박시설	78,512	181,850	103,338	131.62%
공장	996,954	1,115,842	118,888	11.93%
기타	976,767	1,160,357	183,590	18.80%
계	9,481,148	15,712,826	6,231,678	65.73%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2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계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축사회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서울	9,872	10,337	5,485,963	135	150	125,719	0	0	0	10,007	10,487	5,611,682
부산	876	1,246	1,259,181	101	150	82,084	27	32	45,289	1,004	1,428	1,386,554
대구	698	832	585,121	338	360	49,335	32	33	19,165	1,068	1,225	653,621
인천	746	772	567,846	45	45	23,580	24	24	10,949	815	841	602,375
광주	218	243	208,945	68	89	30,269	14	15	10,422	300	347	249,636
대전	412	498	560,706	48	48	25,173	78	126	145,193	538	672	731,072
경기	2,122	2,412	2,015,121	164	205	78,341	55	55	44,480	2,341	2,672	2,137,942
강원	672	745	333,300	123	127	45,946	8	8	3,596	803	880	382,842
충북	399	567	326,488	90	138	61,243	17	17	1,558	506	722	389,289
충남	291	308	383,102	75	75	61,325	10	10	9,804	376	393	454,231
전북	442	531	621,835	66	72	59,458	7	7	18,323	515	610	699,616
전남	313	415	180,262	116	151	75,464	26	30	5,365	455	596	261,091
경북	600	805	652,968	137	188	237,712	19	19	9,354	756	1,012	900,034
경남	724	988	870,949	176	237	122,071	18	18	11,537	918	1,243	1,004,557
제주	266	311	164,700	47	50	83,584	0	0	0	313	361	248,284
합계	18,651	21,010	14,216,487	1,729	2,085	1,161,304	335	394	335,035	20,715	23,489	15,712,826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12月 合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35,354	37,000	21,815,288	1,264	1,368	2,132,322	1	1	0	36,619	38,369	23,947,610
부산	12,944	17,010	11,167,337	1,585	2,026	566,274	487	548	361,958	15,016	19,584	12,095,569
대구	5,966	6,651	4,236,972	3,967	4,228	402,860	401	421	241,549	10,334	11,300	4,881,381
인천	4,998	6,249	4,843,475	402	407	250,441	266	269	106,793	5,666	6,925	5,200,709
광주	2,936	3,429	2,776,488	784	911	301,961	131	135	60,152	3,851	4,475	3,138,601
대전	3,500	4,171	4,565,415	587	615	298,356	852	960	528,673	4,939	5,746	5,392,444
경기	17,531	22,871	22,331,683	2,066	2,438	1,088,038	955	956	643,690	20,552	26,265	24,054,411
강원	5,777	6,769	3,620,420	1,282	1,453	421,842	173	176	43,772	7,232	8,398	4,086,034
충북	5,935	7,321	3,061,188	1,272	1,706	500,763	644	690	198,765	7,851	9,717	3,760,716
충남	4,277	4,619	3,906,834	1,315	1,343	502,944	255	274	181,738	5,847	6,236	4,591,516
전북	3,938	4,596	3,257,677	906	1,016	427,151	196	196	163,758	5,040	5,808	3,848,586
전남	4,778	6,064	3,342,928	1,285	1,671	471,736	292	322	83,756	6,355	8,057	3,898,420
경북	6,793	8,493	5,574,599	1,791	2,273	1,223,340	290	291	254,679	8,874	11,057	7,052,618
경남	10,066	12,532	7,627,651	2,146	2,918	1,090,321	388	393	218,870	12,600	15,843	8,936,842
제주	2,023	2,347	976,994	792	798	169,726	0	0	0	2,815	3,145	1,146,720
합 계	126,816	150,122	103,104,949	21,444	25,171	9,848,075	5,331	5,632	3,079,153	153,591	180,925	116,032,177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2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8,932	9,014	1,957,994	348	370	27,060	20	20	2,435	9,300	9,404	1,987,489
다세대주택	1,725	1,815	902,833	30	30	1,865	4	4	744	1,759	1,849	905,442
연립주택	103	141	198,332	2	2	152	2	2	458	107	145	198,942
아파트	174	1,307	5,602,760	9	24	39,206	0	0	38	183	1,331	5,642,004
근린생활시설	5,818	5,934	2,635,808	550	580	133,726	152	154	77,911	6,520	6,668	2,847,445
종교시설	108	146	96,667	53	66	45,294	6	6	15,494	167	218	157,455
의료시설	10	13	75,075	14	15	41,042	3	3	3,109	27	31	119,226
교육연구시설	90	112	338,245	67	81	207,171	12	59	118,097	169	252	663,513
업무시설	153	165	652,432	50	55	50,481	25	27	30,348	228	247	733,261
숙박시설	46	47	88,605	8	8	82,378	9	9	10,867	63	64	181,850
공장	537	924	736,853	248	414	339,783	37	38	39,206	822	1,376	1,115,842
기타	955	1,392	930,883	350	440	193,146	65	72	36,328	1,370	1,904	1,160,357
합 계	18,651	21,010	14,216,487	1,729	2,085	1,161,304	335	394	335,035	20,715	23,489	15,712,826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12月 合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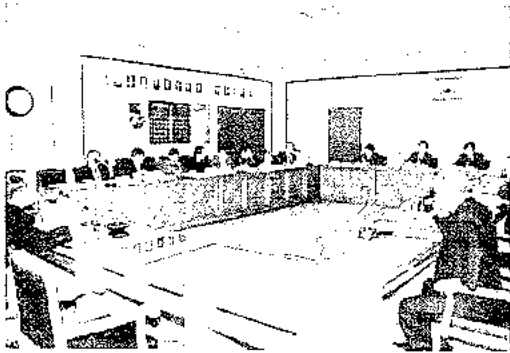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56,077	58,195	10,340,147	6,511	6,980	487,701	487	492	44,291	63,175	65,667	10,872,139
다세대주택	6,839	8,534	3,452,575	304	312	29,351	52	56	8,865	7,195	8,902	3,490,791
연립주택	634	856	1,106,601	31	31	5,413	12	12	1,442	677	899	1,113,456
아파트	1,762	10,754	48,139,172	122	216	196,525	37	50	151,078	1,921	11,020	48,486,775
근린생활시설	41,340	43,178	15,980,791	5,993	6,317	1,200,403	2,696	2,747	996,006	50,029	52,242	18,177,200
종교시설	901	1,114	679,084	540	629	246,364	65	66	34,333	1,506	1,809	959,781
의료시설	84	90	396,738	107	128	340,447	26	27	21,327	217	245	758,512
교육연구시설	761	1,018	2,378,347	737	896	1,604,173	249	346	442,397	1,747	2,260	4,424,917
업무시설	1,206	1,347	4,710,459	529	574	995,688	250	259	262,799	1,985	2,180	5,968,946
숙박시설	255	265	537,738	108	115	153,253	98	100	132,859	461	480	823,850
공장	5,148	8,817	7,380,087	2,574	4,145	2,731,222	550	630	571,111	8,272	13,592	10,682,420
기타	11,809	15,954	8,003,210	3,788	4,828	1,857,535	809	847	412,645	16,406	21,629	10,273,390
합 계	126,816	150,122	103,104,949	21,444	25,171	9,848,075	5,331	5,632	3,079,153	153,591	180,925	116,032,177

제1회 이사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지난달 26일 (화) 대회의실에서 93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영희 회장의 주제로 시행된 이번 회의는 '93한국건축대제전 기본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일자를 3월17일 (수) 오후 2시로

결정하고, 건축사 업무 및 보수 기준 개정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등 총 8개항의 부의사항을 처리하였고, 아울러 건축사자격 시험제도의 협회 이관에 따른 제반문제와 회원 확인업무 처리, 그리고 회관사용계획 등에 관한 문제도 함께 협의되었다.



이사회



순회 간담회

순회 간담회 개최

서울건축사회 (회장 김영수) 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강동, 송파 분회를 시작으로 22개 「분회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

김영수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분회의 실정을 파악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

를 통해 서울건축사회 발전은 물론, 분회의 고충해결 방안을 찾아 적극 협조함으로써 각 분회마다 독자적인 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93 전국건축사대회

1993.3.18.(목)~19(금)
한국종합전시장 대서양관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 건축사회장 간담회 개최

경기도 건축사회 (회장 송인창)에서는 지난 4일 경기도 건축사회 회의실에서 각시·도건축사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은 건설부의 「건축

사 관리지침」폐기와 현행 건축시법에 규정된 규제조치의 일부 완화 등 당면현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건설부에 건의해 줄 것을 본협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각 시·도건축사회 임시총회 일정

93년도 제1회 각 시·도건축사회 임시총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현재까지 확정된 건축사회와 그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서울건축사회 : 2월26일 분협회 강당
- 부산시건축사회 : 2월26일 오전10시 부산건축사회관
- 대구시건축사회 : 2월26일 오전10시 대구건축사회관
- 인천시건축사회 : 2월26일 오전10시 인천건축사회 회의실

- 대전시건축사회 : 2월23일 오전10시 프린스관광호텔 5층
- 경기도건축사회 : 2월26일 오전10시 수원 브라운관광호텔 1층 대회의실
- 충북건축사회 : 2월26일 오전10시30분 청석예식장
- 전북건축사회 : 2월26일 오전11시 전주쥬아호텔
- 전남건축사회 : 2월26일 오전11시 추선회관 5층
- 제주건축사회 : 2월26일 오후3시 하니관광호텔

김석철회원 해외건축전시회 개최

최근 준공을 한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오페라 극장을 갖춘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김석철회원의 건축 전시회가 "서울, 건축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2월25일부터 3월25일까지 한달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건축대학 트론궁 (도시 및 지역학과 건물)에서 열린다.

베네치아 건축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김회원의 그동안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물론, 서구 건축계에 한국의 현대건축사가 소개되는 첫번째 자리로서 현지의 반응과 앞으로 이어질 건축교류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26일에는 '김석철의 건축강연'과 명지대 김경수교수의 '한국현대건축 및 도시 서울'을 소개하는 건축세미나가 함께 마련되어 우리의 건축을 유럽건축계에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택 전람회 개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오는 3월 20일부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분당신도시 특별설계 구역에 건축하게 될 국내 20인 건축사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 주택전람회는 국내 유명 건축사를 초청하여 시도되는 획기

적인 사업으로 당초 분당신도시의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와 우리나라 주택수준을 전시하는 장으로 문화와 기술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국제 현상설계 공모

미국 로스앤젤리스 중앙에 도시 주민들에게 안전과 향상성을 제공하기 위한 현상 설계가 오는 3월 22일 마감, 5월 전시될 예정이다.

•위치 /

미국 로스앤젤리스 중앙 64에이커의 땅에 100세대 600명이상이 거주한다.

•심사위원 /

Eric Owen Moss, 건축가
Crombie Taylor, 건축가
Barbara Stauffacher Solomon, 조경디자이너

Hank Koning, 건축가

Dion Neutra, 건축가

Susan Whitin, SWA그룹

David Gebhard, 예술학박사

•등록신청 /

1) 등록비는 일반은 50달러, 학생은 20달러.

2) 등록신청시에는 등록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신청서와 함께, 등록비를 지불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자격요건 /

건축가, 디자이너, 계획가, 스크립터, 엔지니어, 예술가, 조경가, 교수, 학생 모두에게 오픈

•상금 /

1등 7500달러,

2등 2500달러,

3등 1000달러,

가작 250달러,

•문의처 /

C/O The End, Po Box 1332,

Culver City, CA 90232

전화, Fax : 213-296-6226

도시건축원(가칭) 정기포럼 개최

가칭 도시건축연구원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4차에 걸쳐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세미나룸에서 정기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포럼에서는 "건축사제도의 개선"이라는 개혁문제를 해의 주제로 설정, 각각의 소주제를 가지고 세미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1월 13일, 1차포럼에서는 '건축사의 업무'라는 소주제로 김우성(아키프렌)씨와 김영섭(건축문화)씨가,

1월 27일, 2차포럼에서는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업역구분을 위해 사무소 형태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는 방식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관해 강기세(법건축)씨와 손병석(건설부)씨가,

2월 10일, 3차 포럼에서는 '면허 및 시험제도'의 소주제로 심우갑(서울대)씨와 최명철(단우건축)씨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고,

2월 24일, 4차 포럼에서는 '사회협회 기능'에 대해서 본협회 이영희 회장과 이필원(건설부)씨가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법 건축계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이단체는 90년 3월 발기하여 건축계의 '관', '산', '학'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전문분야

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층들에 의해 현상화를 진단하고, 21세기 한국의 도시건축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관·민 연합, 법건축계 여론수렴, 그리고 기획 및 상업연구 주체 형성을 취지로 하여 건축의 공공성 추구를 위한 연구개발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포용력있는 구심적 조직체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도시건축연구원에 참여한 각계 인사는 다음과 같다.

김기호(서울대), 김우성(아키프렌), 이필원(건설부), 임창복(성균관대), 최영집(탐진축), 신기철(영지대), 최명철(단우건축), 강철구(동우건축), 김영기(서림건축), 김영섭(건축문화), 김민철(인제건축), 김진에(서울포럼), 류춘수(이공건축), 변 용(원도시), 양제현(건원건축), 윤승중(원도시), 이영희(회원건축), 장세양(공간), 조진영(기산건축), 조성룡(우원건축), 최동규(서인건축), 함인선(인우건축), 변영진(서울시), 성낙준(감사원), 손병석(건설부), 진철훈(서울시), 김익(홍익대), 박인석(주택공사), 심우갑(서울대), 안건희(국토개발연구원), 여흥구(한양대), 이정만(한양대), 최찬환(서울시립대), 이병담(현대사업개발), 홍성관(선경건설), 강기세(법건축)

'93 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개최시기 및 장소

- 1993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93한국건축대전과 병행하여 개최
- 1993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 순회전시 예정

■ 출품자격

- ◆ 건축사부문 : 1993년 1월 현재 개업 건축사
- ◆ 신인부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내인자도 응모할 수 있음)

■ 출품내용

- ◆ 건축사부문 : '90년 ~ '93년 2월까지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작품

◆ 신인 · 학생부문

◎ 주제 /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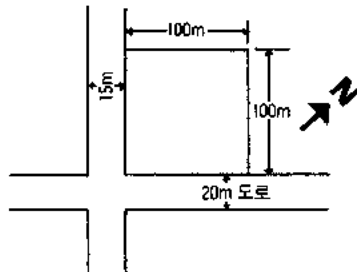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건축의 기능과 형태와 상징을 창의력있게 해석하고 표현하여 감동적으로 건축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함

● 신인부문

- 제목 : 이산가족 상봉센터
- 조건 : 대지규모 - 20,000m²
연 면 적 - 10,000m²
위 치 - DMZ(비무장지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 개요 : 통일을 대비한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장소로서 숙식시설, 관람집회시설 및 오락시설등이 복합된 내용으로 작가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현행건축법에 준하여 계획할 것

● 학생부문

- 제목 : 국제박람회 "한국관"
- 조건 : 대지규모 - 10,000m²
연 면 적 - 3,500m²
위 치 - 박람회장내에



- 개요 : 세계속의 만남을 상징적이며 기능적으로 표현하되 세부프로그램은 작가가 설정하여 전개시킬 것

■ 응모신청 및 작품접수

- ◆ 건축사부문 : 1993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패널제출 (작품제출시 작품집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슬라이드 또는 칼라 사진 5~6매, 잉킹도면, 설계개요 첨부)

-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4층 출판사업부

◆ 신인 · 학생부문 :

- 작품접수

- 일자 : 1993. 3. 5(금) ~ 3. 6(토) 09:00 ~ 18:00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강당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 건축사부문 : 90cm × 90cm의 규격 패널 1 ~ 4매 (모형출품도 가능함)

- ◆ 신인 · 학생부문 : 120cm × 120cm 규격패널 1매 및 100cm × 100cm이내의 모형 1점 (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 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로는 2인을 초과 할 수 없음 (신인 · 학생부문)
-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할 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신인 · 학생부문)

■ 시상내용

◆ 건축사부문 :

- '93한국건축대상(7) : 상장 및 트로피

◆ 신인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500만원 및 상장 (해외연수비 200만원 포함)
- 우 수 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장 려 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학생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우 수 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장 려 상(10)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각시 · 도시 건축사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입선(다수) : 상장

※ 학생작품 최우수상 수상자는 ARCASIA 학생멤버리 파견특전 부여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 - 53

☎ 581 - 5711 ~ 4, 587 - 8504